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14호 2006. 12

차례

특집 근대 동북아 각국의 간도인식과 간도정책

- 하원호 | 개화기 조선의 간도인식과 정책의 변화 7
오병수 | 중국 국민사학의 형성과 인종·강역문제 33
- 양계초·장병린의 만주 인식을 중심으로 -
구범진 | 清代 ‘滿洲’ 지역 행정체제의 변화 77
- ‘駐防體制’에서 ‘州縣體制’로 -
홍응호 | 1858~1898년 러시아의 동아시아 팽창과 만주 109

논문

- 박남수 | 高句麗 租稅制와 民戶編制 141
손희하 | 고구려어 재구를 위한 기초적 연구 201
- ‘ㅈ’ 자의 고대 새김 재구를 중심으로 -

특집

근대 동북아 각국의 간도인식과 간도정책



개화기 조선의 간도인식과 정책의 변화

하 원 호

「동북아역사논총」 14호

동북아역사재단

2006年 12月

개화기 조선의 간도인식과 정책의 변화

하 원 호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I. 머리말

1880년에 들어 간도지역의 영역 문제를 둘러싸고 조선과 청국 양국간 대립이 첨예했다. 1883년 어윤중의 감계 제의에 따라 1885년, 1887년 두 차례에 걸쳐 영토 문제에 대한 담판이 있었고, 1895년 청일전쟁에서의 청국의 패전, 1900년 의화단 사건으로 인한 러시아의 간도 점령, 1905년 러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 등으로 조선의 간도지역에 대한 영토 인식과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조선의 간도 인식과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이 같은 국제정세만이 아니라 조선과 청국 모두 전통적 화이질서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근대 국제법적인 영토의 개념이 자리 잡아 가던 역사적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 전통적 거점 중심의 영토 의식이 근대적인 경계개념으로서의 영토 의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국경 문제는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어갔던 것이다. 이 과정은 조선의 경우 화이론적 세계관이 만국공법적인 인식으로 전환되고 정책에서도 그 대로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1885년에 원세개가 監國으로 한국에 들어와 내외정을 간섭하고 조선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청일전쟁 이전까지 간도영유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대립은 청국의 강압적 자세로 조선의 주장은 제대로 관철될 수 없었다. 하지만 청일전쟁 이후 청국의 내정 간섭이 불가능해진 이후 조선은 대한제국시기에 들어 간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는 의식이 확산되고 나아가 간도의 조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폈다. 이 과정에서 청국과 외교적 충돌이 야기되었다.

이 시기 간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선학들의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주로 경계 문제에 천착한 것이어서 이 시기 조선의 인식과 정책 변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은 적다.¹⁾

간도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변화는 시기에 따라 변화하고 있었다. 청국과의 관계와 국내외 정세에 따라 정책상의 차이가 있었고, 인식상의 변화도 조공체제 아래서의 영토 인식에서 만국공법적 세계관으로 발전해 갔을 뿐만 아니라 민족 의식의 성장 역시 영토 의식을 확장시켜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근대민족국가 수립 과정에서의 영토정책의 변화가 보여주는 국가의 성격, 그리고 근대적 영토 의식과 민족 의식의 성장과정을 밝히는 좋은 연구주제가 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시기적으로 달라지는 조선의 간도에 대한 인식과 정책 변화를 추적해 이 시기 근대 민족 의식의 성장과 영토정책의 발전 과정을 밝혀보고자 한다. 시기는 1904년까지로 한정했다. 통감부 설치 이후 간도에 대한 정책은 일본이 주도하고 있어 조선의 간도정책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이에 관한 연구로는 秋月望, 1992, 「朝中勘界의發端과展開」, 『조선학보』 132 ; ———, 2002, 「朝淸境界問題にみられる朝鮮の‘領域觀」,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0 ; 李日杰, 2004, 「朝鮮의 對間島政策」, 『間島學報』 창간호 ; 李日杰, 1998, 「間島協約과 間島領有權 問題」, 『韓國의 北方領土』, 백산학회 등을 들 수 있다. 각 논문을 통해 秋月望은 러일전쟁까지의 인식변화를, 이일걸은 통감부시기에 이르기까지의 정책변화를 주된 연구주제로 삼는다. 박선영은 간도지역의 지도를 중심으로 근대 동아시아의 영토의식의 변화과정을 다루었다. 朴宣君, 2004, 「近代 東아시아의 國境認識과 間島」, 『中國史研究』 32.

II. 간도 문제의 발단과 영토 의식의 변화

전통적 영토 의식은 경계선보다는 거점 개념이었다.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산천을 경계로 주변의 토지와 인민을 지배하는 것이 전통적 영토의 지배방식이었다. 이는 전근대 사회의 지배방식이 토지에 대한 지배보다 인신에 대한 수취에 중점을 두었던 역사적 조건 때문이었다. 그래서 전통사회의 영토전쟁 역시 대부분 거점 획득을 위한 것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근대 국경선과는 달리 전근대의 경계 개념은 상대적으로 불분명했다.

그런데 러시아가 16세기 이후 동진하면서 청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게 되었다.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은 중국으로 하여금 거점 중심의 영토 의식을 국경선의 개념으로 전환시킨 조약이었다. 백두산정계비 문제도 이 같은 청국의 경계 의식의 성장과 관련이 있었다. 그래서 1708년에는 프랑스 신부 레지스(Jean Baptiste Regis : 雷孝思) 등을 파견해 서양식으로 산해관에서 동북지역을 측정하고 지도를 제작하도록 하고 이듬해에는 遼河유역을 먼저 측량하고 千山을 넘어 鳳凰城까지, 그리고 길림, 영고담에서 훈춘, 수분하를 거쳐 우수리강, 흑룡강 유역을 조사했다. 그러나 그들은 백두산 남쪽 기슭, 압록강원과 도문강원 지역은 측량하지 못했다.²⁾

백두산을 청조의 발상지로 받들면서 만주지역을 봉금지대로 설정한 중국은 만주지역에서 러시아와 조선과의 국경지역의 경계선도 확정하려 했고, 백두산정계비의 설치는 그 결과였다.³⁾ 백두산정계비는 조공체제 아래에서의 강압적 관계에서 청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서로는 압록강, 동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정했고, 조선 측의 의견이 영토문제에 제대로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백두산정계비 설치 이후 조선쪽의 실제 봉금지계는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

2) 張存武, 1971, 「清代中韓邊務問題探題」,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제2기, 臺灣, 475쪽.

3) 양태진, 1999, 『근세한국경역논고』, 경인문화사, 22~25쪽.

이었다. 청국이나 조선정부는 봉금지역으로의 犯越을 엄격하게 다루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경우 봉금지역에 들어간 자들을 참수에 처하는 등 엄하게 다스려 범월을 경계했다.⁴⁾ 뿐만 아니라 압록강, 두만강 대안에 청인이 출몰하고 犯境하는 것에 대해서도 직접 또는 청국에 통보해 막으려고 했다.⁵⁾ 이는 봉금지대를 설정한 청국과의 관계를 훼손할 수 없었던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지만 영토 의식은 반드시 봉금문제와 같은 것이 아니었다. 조선후기의 지식인들은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대개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그 이남을 영토로 인정했다.⁶⁾ 이 경우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었다. 조선후기에 그려진 지도의 상당수가 두만강과는 달리 백두산의 북쪽으로 토문강을 표시했던 것은 이 같은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⁷⁾

그러나 19세기 중엽 무렵에 이르면 압록 두만 양강의 강변지대에서는 청국과 조선의 유민이 유입되면서 개간이 이루어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었다. 조선의 경우 19세기 후반 이후 환곡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부담이 가중되자 함경도 북변의 주민들은 압록 두만 양 강 강중의 섬이나 대안지역을 개간해 새로운 경작지를 늘리기도 했는데 초기에는 왕래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나 장기간 머물거나 일가족이 모두 강을 건너 이주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갔다.⁸⁾ 1867년, 1869년, 1870년 흉작 이후 이주는 급증했다. 특히 1869년 무산부사 마행일의 포효으로 무산지역 인민이 대거 이 지역으로 이주했다.⁹⁾

4) 이에 대해서는 김경춘, 1984, 「朝鮮後期の 國境線에 대한 一考」, 『白山學報』 29, 24~31쪽; 양태진, 1999, 위의 글, 49~51쪽 참조.

5) 강석화, 2000, 『조선후기 함경도의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269~279쪽.

6) 趙珧, 1974, 「朝鮮後期の 邊境意識」, 『白山學報』 16, 181쪽.

7) 강석화, 2000, 앞의 책, 261~268쪽.

8) 유봉영, 1972,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문제」, 『백산학보』 12, 192쪽.

9) 『江北日記』 7월 2일조.

“정묘년(고종 4, 1867) 여름에 마행일(馬行逸)이 무산부사가 되어 명색이 없는 환포(還浦)로 10만석을 건너가니, 백성들이 이리에 먹히고 호랑이에 할퀴 듯해 반년사이에 한 고을 백성들이 몹시 어려운 지경에 빠져서…… 마침 이 땅에 탄 세상이 있다는 이야기가 방자하게 서로 전하니, 백성들이 백성들이 필듯이 기뻐하며 떠나니 마치 물이 바다로 모여들 듯하는데, 길은 백두산 허리로 나오니, 이 500리는 사는 사람이 없는 비어있는 땅이었다.”

1872년 간도지역을 탐문 조사한 최종범의 『강북일기』에 의하면, 함경도 삼수군에서 평안도 후창군까지의 압록강 건너의 靑金洞까지 400리(160km) 지역 18개 부락을 합해 이 지역 자치구역으로 1會上이라 하는데 조선인 193호, 1673명이 정착하고 있었다.¹⁰⁾ 또 청금동 아래 三道溝에서 往絶路까지 150리(60km)에는 277호, 1465명이 살고 있었다.¹¹⁾ 이들은 주로 청국인에게 소작을 부치거나 품팔이로 생계를 잇고 있었다. 실제로 이 시기 이후 중앙정부 내에서는 압록강, 두만강 대안으로의 犯越에 대한 논의가 일상적으로 계속되어 무조건 금압보다는 쇄환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성과는 그리 크지 못했다.

지방관이 주민들의 집단이주와 개간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1869년 회령부사 홍남주는 민생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월강 개간이 최선이라 판단하고 주민들을 동원해 개간 청원서를 내게 한 후 이를 허용하는 형식을 빌어 두만강 대안지역을 개간하게 했다. 그 결과 1870년 봄에는 길이 500리, 너비 4, 50리의 땅이 순식간에 개간되었다고 한다. 압록강의 대안지역에서도 1869년 강계군수가 중앙정부와는 무관하게 서간도 일대의 땅을 28개 면으로 분할해 7개 면은 강계군에, 8개 면은 초산군에, 9개 면은 자성군에, 4개 면은 후창군에 복속시켜 압록강 대안의 조선인을 관할했다.¹²⁾

압록강과 두만강 대안지역에 조선인들의 집단 이주와 개간이 활발해짐에도 청의 단속은 극히 소홀했다. 이주한 조선인들은 봉금지대이므로 조선 정부에서 이곳에 왕래를 금하고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국경침범이란 의식은 점차 희박해져 갔다. 또 이 지역에 冒入하는 청인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금지조치가 없자 조선인들은 봉금지대의 출입금지가 해제되고 거주나 경작이 허용된 것으로 보았다. 왕래나 거주, 경작행위에 대한 통제를 전혀 받지 않은 조선인들은 양국민 모두에게 개간과 거주와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¹³⁾

그런데 1867년 청국은 동북지역에 대한 봉금지책을 폐지했다. ‘봉금’을

10) 『江北日記』, 6월 3일조.

11) 『江北日記』, 6월 8일조.

12) 『江北日記』, 『한국이민사』(1967), 어문각, 136~139쪽.

13) 강석화, 2000, 앞의 책, 281~282쪽.

해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매우 적극적인 개간 정책을 추진하였다.¹⁴⁾ 청국은 1860년 북경조약 이후 연해주지역을 러시아에 내줌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영토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1880년 吳大澂을 파견해 동북변경지역에 招墾局을 설치하고 이민을 장려하고, 변경지역을 청의 영토로서 확실히 확보하고자 했고 조선인의 월경에 대해서도 엄령을 내렸다.¹⁵⁾ 이 같은 청국의 영토 의식은 간도지역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보고 두만강 이북의 간도지역을 영토로 확정하려 했다.

1881년 훈춘에 설치된 초간국에서 조사위원을 파견해 개간에 적합한 땅을 조사하도록 했을 때 두만강 대안 간도지역에는 수많은 조선인 개간민들이 경작하면서 이미 조선의 함경도 관찰사로부터 지권을 발급받아 장부에 등록되어 있었다. 길림장군의 보고에 의하면 두만강 대안 淸雅河에서 高麗鎭까지 200여리를 조사한 결과 조선 인민의 개간지가 많았는데 조선의 온성부사 조병직은 두만강 沿江之民에게 발급한 지권 중 반 이상이 강 북쪽이라고 했다.¹⁶⁾ 그래서 이에 대한 처분을 길림성은 청국 정부에 요청했다.¹⁷⁾ 두만강을 경계로 그 이북을 청국의 영토로 보았던 청국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조처가 필요했던 것이다.

길림장군 銘安과 오대징은 두만강 대안지역의 조선인에게 조세를 부과하고 호적을 훈춘과 돈화현 관할에 올려 청국인으로 귀화시키자고 주장했고, 청국 정부는 이를 조선에 통보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청국인으로 削髮入籍 한다는 자문 내용에 놀라 다음해 청국 예부에 보내 쇠환하도록 하겠다는 자문을 보냈다.¹⁸⁾ 이 지역에 대한 지리적 지식이 없었던 조선 정부에서는 경계 문제는 청국의 주장에 따라지만 간도지역의 조선 인민은 포기할 수 없어 쇠환하기로

14) 이 문제에 대해서는 尹輝鐸, 2001, 「'邊地'에서 '內地'로: 中國人 移民과 滿洲(國)」 『中國史研究』 16; 冬主編, 1999, 『中國東北史』 第5卷, 吉林文史出版社, 148~165쪽; 馬汝珩等主編, 1998, 『清代邊疆開發』, 山西人民出版社., 402~424쪽 참조.

15) 『清實錄』 光緒 7년 9월 9일조.

16) 吉林省 案館, 2000, 『吉林省 案館所藏 清季中朝關係史料選集』, 吉林出版社, 광서 7년 9월 3일, 10월 4일조, 16~19쪽.

17) 『清光緒東華錄』 光緒 7년 10월 22일조.

18) 國會圖書館, 1975, 『間島領有權關係拔萃文書』(이하 『발취문서』로 함), 278쪽.

했던 것이다.

1881년 길림성에 돈화현 등 주현이 설치되면서 봉금지역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되었고,¹⁹⁾ 이미 돈화현 설치 이전에 지방정부 차원이긴 해도 간도의 조선인에게 지권을 발행하는 등 사실상 영토로서 토지와 인민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지만, 조선의 중앙정부는 봉금과 관련해 두만강을 범월의 경계로 삼고 있어 청국의 주장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882년 11월 청국의 길림장군은 ‘토문강 서이북’에 거주 개간하는 조선 민민을 쇠환하라는 고시를 내리고, 이듬해 4월에는 돈화현에서 경성, 회령 양읍의 두만강 대안 조선인의 쇠환을 알리는 고시를 내렸다. 조선 정부 측에서는 어윤중을 서북경략사로 임명해 유민을 쇠환하도록 했다.²⁰⁾

하지만 개간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간도에 가지고 있었던 조선인들은 이 같은 청의 요구에 반발했다. 그래서 두만강 대안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직접 백두산에 올라 정계비의 내용을 확인하고 토문강원을 탐사했다. 이를 근거로 종성, 온성, 회령, 무산 4읍의 변민이 종성부사 이정래에게 소장을 내고 두만강과 토문강은 엄연히 별개의 것인데 이를 같은 것으로 보고 두만강 이북지역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청의 시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서북경략사 어윤중은 김우식을 파견해 정계비를 조사하도록 했다.²¹⁾ 탐

19) 청국은 1881년(광서 7년) 길림성 산하에 이통주, 쌍성청, 빈주청, 오상청, 돈화현 등의 주현을 설치했다. 牛漢平 主編, 1990, 『清代政區沿革綜表』, 北京: 中國地圖出版社, 79~119쪽.

20) 『발취문서』, 278쪽.

21) 國史編纂委員會, 『統監府文書』 間島問題에 關한 書類 一·二·三 (北間島事實). “今上陛下壬午冬에 淸吉林將軍이 我國에 行文 ㅎ되土門江以西以北에 墾 ㅎ는 朝鮮貧民을 刷還 ㅎ라 ㅎ고 癸未四月에 又 敦化縣으로 鍾城會寧兩邑越邊에 告示 ㅎ되使民으로 回歸淨盡 ㅎ라 ㅎ거늘 於是에 邊民이 敦化縣에서 豆滿江을 土門으로 誤認 ㅎ을 始知 ㅎ고 白頭山立碑處를 往審 ㅎ니 碑東에 連 石堆土堆爲限 ㅎ야 下有土門 ㅎ야 兩岸對立如門에 非石伊土어는 鍾城穩城會寧茂山四邑邊民이 鍾城府使李正來의 會訴 ㅎ야 日敦化縣에서 界限을 不審 ㅎ고 豆滿以北을 指 ㅎ야 土門以北이라 稱 ㅎ니 淸國咨文과 吉林札飭을 考 ㅎ되 러도 土門을 爲界 ㅎ엿스니 土門則分水嶺定界處에 在 ㅎ고 豆滿즉本國界內에 出源 ㅎ야 淸國에 知 ㅎ을 비 아니어늘 淸國에 或稱土門 ㅎ고 或稱圖們이 皆有所由 ㅎ니 土門은 分界處土門이오 圖們은 慶源以下入海處이니 請以此意로 照會 敦化縣 ㅎ야 卽歸正

사보고를 들은 魚允中은 종성부사를 시켜 간도 거주 조선 인민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보고 토문강과 두만강은 다르니 둔화현에 백두산을 답사해 勘界하도록 하자고 했다.²²⁾

어윤중은 서울로 돌아와 고종을 만나 고종이 분계강 이내의 경계에 대해 묻자 두만강 북에는 또한 토문강원이 있어 백두산 분수령에 사람을 파견해 경계선을 조사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²³⁾ 그래서 조선 정부는 청조에 토문강 이남의 중간지대는 조선영토임을 통고하고 이의가 있으면 재감계할 것을 1884년 청국 예부에 문서로 전달하고, 1885년 정식으로 사절을 보내 감계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청국 예부는 황제에게 상주해 길림성 장군에게 사람을 파견해 감계하도록 칙유를 내리게 했다.²⁴⁾ 이에 따라 1885년, 1887년의 감계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종래 거점 중심의 전통적 영토의식이나 봉금지제로 인해 경계가 불분명했지만, 조선의 중앙정부 역시 봉금지역의 범월 문제와 관련해 두만강을 경계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청국의 간도지역 조선인의 귀화방침에 인민을 쇠환하려던 조선 정부는 이 지역 조선인에 의해 토문강이 두만강이 아니라는 경계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책적으로 영토와 인민을 모두 포기하지 않게 되었다.

이 같은 조선의 정책상의 변화는 이 지역 인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현실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그 배경에는 만국공법, 곧 근대적 국제법 인식이 이 시기에 확산되면서 백두산정계비 설치 때와는 달리 청국과도 대등한 외교로 만국

云翕 이어늘是時에西北經略魚允中이在慶源 訶야聞其事 訶고五月十五日에遂遣鍾城人金禹軾 訶야分水嶺定界碑를刻期往探 訶니二十九日에金禹軾이還報經略使 訶다”

22) 『北輿要選』 下, 探界公文攷.

“경계를 조사해 본 결과 양국의 국경은 土門으로 한다. 본국에서는 두만강 외에 土門江이 따로 있음을 알고 있다. 고지도가 증거가 되나 邊民들이 康熙朝 목극등의 碑記와 토문의 源流를 답사하였던 바 변민의 보고와 서로 부합한다. 두만강은 토문강과는 다른 別派이었다. 청건대 貴縣(둔화현)은 사람을 파견하여 함께 백두산정계비를 답사하여 土門江의 발원처를 알고 界限을 查明하여 강토를 辨別하자.”

23) 魚允中, 『從政年表』 3, 고종 20년 10월4일조.

24) 임계순, 1998, 「백두산정계비와 조청간의 을유 정해국경회담」, 『韓國의 北方領土』, 백산자료원, 29~30쪽.

공법에 의해 국경 문제를 해결하려던 인식상의 전환에서 비롯되었다.

1880년 2차 수신사로 파견된 金弘集 일행이 귀국하면서 가져온 鄭觀應의 『易言』은 이미 1880년대 초 한글로 번역 인쇄되어 유포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입히고 있었다. 1882년 이후 개화상소는 대부분 이 『이언』의 내용을 반영했다. 『이언』의 만국공법적 세계관은 전통적 조공체제에서의 화이론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있었다. 더구나 1880년대 초는 서양 열강과의 조약을 통해 근대적 국가 의식이 확장되어가는 과정이었다. 조선 정부의 청국으로의 감계 제의 역시 단순히 지리적 인식의 차이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실제로 1884년 부호군 池慶龍은 간도지역의 국경 문제에 대해 상소를 올리고, 토문강이 두만강이 아니라면서 중국과 담판해서 간도지역을 확보할 것을 주장했다. 지경룡은 실학사상의 강역 의식을 계승하면서 어윤중의 토문강이 두만강이 아니라는 논의를 그대로 이어 아무런 연고가 없는 러시아 역시 연해주지역을 확보한 사례에 비추어 조선의 입장에서는 영토로서 역사적 근거가 있는 이 지역을 중국과 협상을 통해 얻어내자고 했다. “세계 각국이 크고 작은 나라를 따지지 않고 교섭하는 날을 당하여”라는 그의 주장은 전통적 조공체제에서의 화이론을 벗어나 만국공법적인 세계관에서 국경문제를 주장했던 것이다.²⁵⁾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가 타국과의 관계처럼 근대 국제법적인 관계에만 있

25) 『承政院日記』 고종 21년 6월 17일조. 지경룡의 상소에 대해서는 秋月望의 연구가 참조된다. 秋月望, 1992, 앞의 책. 경계문제와 관련한 지경룡의 상소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희(康熙) 계미년(1703, 숙종 29) 5월, 중국의 오랄총관(烏喇總管) 목극등(穆克登)이 황제의 칙서를 받들어 변지(邊地)를 조사하면서 돌을 깎아 비석을 세우고 새기기를, ‘서쪽은 압록강이고 동쪽은 토문강(土門江)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는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세운 것이 아니요 실로 중국에서 경계를 정한 것으로, 척촌(尺寸)의 땅도 공도(公道)로 분할한 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까닭 없이 그것을 상국에 돌려준 것은 본디 예가 아니며, 까닭 없이 포기하고 받지 않는 것 역시 의가 아닙니다. 그 땅을 순시하고 사실을 채집한 자는 바로 작년 서북 경략사(西北經略使) 신 어윤중(魚允中)입니다. 이제 만약 우리 백성들을 몰아넣어 장애 없이 그 땅을 차지한 채 씨앗을 뿌려 중국에 신의를 보이면, 반드시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1883년 체결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전문에 조선을 속국으로 규정했다. 1882년의 임오군란과 1884년의 갑신정변을 무력으로 진압한 청국과의 관계는 근대 국제법과 관념적이지만 전통적 조공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따라서 경계문제 역시 이 같은 사정이 반영되었고, 1885년, 1887년의 두 차례의 감계회담에서도 이 같은 사정은 반영되고 있었다.

백두산정계비 설치 이후 조선쪽의 봉금경계는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이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경우 봉금지역으로의 범위를 엄하게 다스렸다. 이는 봉금지대를 설정한 청국과의 관계를 훼손할 수 없었던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지만 영토 의식은 봉금의 경계와는 달랐다. 조선후기의 지식인들은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대개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그 이남을 영토로 인정했다. 토문강 경계론은 1880년대에 들어 청국이 간도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조선 측에서 제기되었고, 감계회담이 열리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또 이 시기 열강과의 조약체결과 만국공법의 광범한 유포는 종래 조공체제 아래서의 화이론적 사고를 극복하고 청국과 영토 문제를 근대적 영토 의식을 바탕으로 논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만약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거할 만한 것이 셋이요, 증빙할 만한 것이 하나입니다. 중성(鍾城) 건너편의 온성(穩城), 유원진(柔遠鎭)의 접구(接口)인 감토산(甘土山) 아래에 강이 있는데, 분계강(分界江)이라 합니다. 중국에서 그 북안(北岸)에다 세관(稅關)을 세웠으며, 분계강은 토문강의 다른 이름입니다. 따라서 경계가 여기에 이르러 그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근거의 하나입니다. 종전에는 회령(會寧)에서 개시(開市)할 때에 중국 상인들이 화물을 싣고 돌아가는 길에 반드시 우리나라 백성과 소를 이용해서 그들 경계까지 호송하게 하였는데, 만약 중로에서 교대해 수송하려고 하면 저들이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을 책망하기를, ‘토문 이서가 너희들의 한계이다’ 라고 하였으니, 둘째 증거입니다. 두만과 토문은 그 음이 서로 비슷한 것으로 말하자면, 목 총관이 변방을 조사하는 날에 왜 비석을 두만강 언덕에 세우지 않고 토문강 상류 분수령 아래에다 세웠겠습니까. 그 셋째 증거입니다.”

III. 청의 내정간섭과 勘界회담의 결렬

청국은 1882년 임오군란 이후 군대를 파견하고 이해 청의 종주권을 확인하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했다. 1884년 갑신정변도 무력으로 좌절시키면서 1885년에는 원세개를 감국으로 파견해 조선의 내정과 외정을 간섭했다. 이 같은 청국의 대조선정책은 전통적 종주권의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공체제에 가탁한 제국주의적 식민지배를 기도한 것이었다.²⁶⁾ 따라서 1884년의 양국간 합의에 의해 1885년, 1887년에 이루어진 감계회담에서 청은 외교적으로 상대적 우위에 있었고, 회담 과정에서도 강압적 자세로 임했다.

1885년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조선 측에서는 안변부사 李重夏를 勘界使로 파견하고, 청국은 琿春副都統이 파견한 琿春協領 德玉, 초간 국위원 賈元桂, 督理商務委員 秦煥 등을 보내 제1차 감계회담을 했다. 이들은 회령, 무산, 三江口에서 여러 차례 회담을 하고 백두산정계비와 江源 등을 답사했다.

그런데 감계회담 전인 1885년 7월 20일 청국의 總理各國事務衙門은 광서제에게 두만강 토문의 음이 바뀐 것이고 방언으로 서로 다르나 실제로 같은 강으로써 조선에서 다른 두 개의 강이라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상주했다. 그래서 청 조정은 길림장군에게 훈령을 내려 강희제 때 국경 문제를 다룬 舊案을 조사하고 위원을 파견해 양국이 공동으로 경계를 밝히게 했다.²⁷⁾ 감계회담 이전에 이미 두만강 경계를 방침으로 삼은 청국 측의 입장은 회담 자체를 성과가 없게 만들었다.

청은 두만강 중심의 감계를 주장하면서 토문강과 두만강, 도문강이 동일하다는 두만강설을 주장하였다. 반면 조선은 정계비 중심의 감계를 주장했다. 이미 두만강을 경계로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정계비의 위치 자체를 의심하는

26) 구선희, 1998, 『한국근대 조청관계사연구』, 선인, 68~125쪽 참조.

27) 장준무, 1971, 앞의 글, 466~467쪽.

청국과 정계비 설치지역의 토문강으로 국경을 정하려는 양국간 입장의 차이는 좁혀질 수 없었고, 1차 감계회담이 결렬되었다.²⁸⁾

1885년 12월 이중하의 보고를 받은 영의정 심순택은 원세개에게 토문과 두만은 다르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내용을 통보했다.²⁹⁾ 원세개는 1886년 1월 이를 청국의 총리아문에 보고했다. 이 해 3월 25일 총리각국사무아문에서는 광서제에게 재감계할 것을 상주해 재감계하기로 결정했다. 9월 23일 원세개는 外務督辦 김윤식에게 감계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토문강과 두만강은 다르다는 주장과 토문강을 경계로 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두만강을 경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윤식은 다시 감계할 필요가 없고, 조선 유민은 그대로 안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원세개는 김윤식에게 이를 구체적 문건으로 정할 것을 요청했다. 10월 23일 김윤식은 재감계에 응하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紅土水 수원이 분수령에서 발원하고 비석을 따라 축조한 흠더미 끝과는 40리 떨어져 있으며, 紅丹水와의 거리가 아주 가까우므로 이를 경계수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 내용은 북양대신 이홍장에게도 보냈다.³⁰⁾

1887년의 2차 감계 회담에서 청은 처음에 홍단수를 주장하다가 석을수로 변경 주장하였다. 조선의 감계사 이중하는 청이 무산 이동의 두만강을 천연의 국경으로 보고 무산 상류만 감계할 것이라는 독단적 명령으로써 재감을 제의

28) 이에 대해서는 임계순, 1998, 앞의 글, 33~34쪽 참조.

29) 장준무, 1971, 앞의 글, 470~471쪽 참조. 照會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만강은 분수령에서 발원하지 않으며 정계비에서 멀리 떨어진 서남쪽에서 발원하고 일반적으로 경원 이하의 강을 두만강이라 부른다. 그러나 목비 동쪽에 있는 강은 바로 목비가 세워진 분수령에서 발원하며 이를 토문이라 부르고 비문에도 토문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 물줄기가 복류하는 곳을 따라 돌더미, 흠더미로 설책을 하였으며 이 물줄기는 두만강 이북에 있는 분계강과 합류한다. 그리하여 중국인들도 토문을 경계로 알고 있으나 강의 근원을 구별하지 못하고 두만과 토문을 혼칭하였으며 발음 또한 비슷하여 하나의 강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목극동은 당시 비 동쪽의 계곡을 두만강 상원으로 알고 이곳에 비석을 건립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강원과 이 계곡과는 연결이 안 되나 수년 후 계곡을 따라 흠과 돌을 쌓을 때 계곡과 강원 간의 평평한 언덕에 목책을 세웠으며 이를 토문강원이라 하였다. 이후 수백 년이 지나 목책은 모두 썩어버리고 산림이 우거져 그 표식을 찾을 수 없다.

30) 임계순, 1998, 앞의 글, 35~36쪽 ; 장준무, 1971, 앞의 글, 470~471쪽.

한 까닭으로 자신의 주장이 서지 않을 것을 알았다. 따라서 이증하는 고종에게 감계사의 교체와 조정에서 감계의 근본방침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국왕은 이증하에게 감계사의 임무를 계속 맡도록 했다.³¹⁾

청의 대표가 억압적이고 독단적으로 경계를 정하려고 하자 이증하는 1차 감계 시에 주장한 토문강설을 변경하여 김윤식의 주장과 같은 홍토수설을 제의하였다.³²⁾ 청은 여전히 홍단수설을 주장하다가 석을수로 국경으로 정하고자 제의하였지만 이증하는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증하의 견해는 청국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2차 감계도 결렬되고 말았다. 그러나 淸의 이홍장은 이듬해 1888년 4월 20일자 咨文에서 양국 관리를 파견 會同勘界하자고 요구하였지만 李重夏의 회담 연기론에 따라 제3차 감계회담은 성립되지 못했다.³³⁾ 조선 측으로서는 청국의 강압적 회담 태도에 주장을 관철시킬 수 없었기에 회담 자체를 결렬시켰던 것이다. 그 뒤 청국은 원세개를 통해 조선 측에 해란강과 도문강 사이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길림에 속한다는 통고를 해왔다.

그런데 1887년 2차 회담이 열리기 전 김윤식은 2차례에 걸쳐 원세개와 회담을 하면서 영토는 청국쪽 입장을 인정하되 ‘借地安民’을 주장했다. 김윤식이 말하는 ‘차지안민’은 간도지역을 청국의 영토로 양보하면서 간도지역에 대한 수세의 대행권, 소송, 통치권을 조선이 행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근대 국제법의 입장에서 간도지역을 영토로 확정하려는 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³⁴⁾ 김윤식의 입장은 인민에 대한 지배를 포기할 수 없었던 전 근대 영토지배 의식과 조공체제 아래에서의 ‘上國의 恩惠’를 바라는 사고에

31) 申基碩, 1979, 『간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탐구당, 59~61쪽.

32) 1908년 통감부파출소의 보고에 의하면, 2차회담 당시 수원이었던 무산군수 池昌翰은 “(청국대표)들이 군기대신으로부터 수령한 훈령을 남몰래 가지고 와서 이를 등사해 비로소 청국 측이 토문강과 서두수와의 중간에서 절충하려는 뜻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증하는 토문강설은 도저히 그들로 하여금 승인케 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이에 이르러 비로소 독단으로 홍토수로 양보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발췌문서』, 88~89쪽.

33) 篠田治策, 1938, 『간도는 조선땅이다』(신영길 역, 2005, 지선당), 223~226쪽.

34) 이에 대해서는 秋月望, 1992, 앞의 글, 96~101쪽 참조.

서 나온 것으로 청의 강압적 경계 확정 요구라는 현실적 힘의 논리를 피해가려는 공색한 변통론이었다.³⁵⁾

감계사 이중하는 감계전말에서 토문강을 다음과 같이 파악했다.

“정계비는 천지 남쪽 십리쯤에 있으며 정계비의 서편 몇 보 지점에 골짜기가 있어 압록강의 근원이 되고 정계비의 동편 몇 보 지점에 골짜기가 있어 토문강의 근원이 된다. 석퇴와 토퇴를 구십 리에 연하여 설치했는데 높이는 수척이고 흙무지 위에는 나무들이 자라나서 아름드리 고목이 되어 있으니 이것이 분면 당시의 界限 표시다. 대각봉의 끝에 이르러서는 중간의 골짜기 형태가 갑자기 좁아지니 흙벼랑이 마주서서 마치 門과 같다는 것은 바로 이곳을 가리킨다. 두만강 상류의 여러 수원 가운데 돌무지, 흙무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홍토산 수원이니 편편한 언덕이 가로막혀 서로 거리가 이미 4, 50리 먼 거리이다. 토문강 상하류의 형편을 말하면 정계비의 동편에 乾川이 동쪽으로 백 여리를 뻗치다가 비로소 물이 나와서 동북쪽으로 흐르다가 굽이쳐 북쪽으로 송화강으로 들어가니 송화강은 곧 흑룡강 상류의 한 가닥이며 길림, 영고, 탐 등이 모두 그 가운데 있다.”³⁶⁾ 이중하는 土門의 자연적 형태가 土門이기 때문에 이름을 명명한 것이며 강의 이름이 예부터 토문강이고 조선의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으며 수백 년 전래된 이름이라고 하였다.³⁷⁾

청국이 조선의 토문강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토문강이 송화강의 상류로 그 동쪽을 경계로 할 경우 이중하의 주장대로 송화강 이동, 곧 길림까지도 영역 주장이 가능한데서 기인한 것이었다. 실제로 1886년 2월 원세개는 김윤식에게 정계비를 근거로 한 五道白河 상류를 토문강이라는 조선 측의 주장은 길림 전체가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³⁸⁾ 그런데

35) 秋月望은 김윤식의 제안이 국제법의 논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그러나 김윤식이 국제법의 이해가 부족했다기 보다는 청의 강압에 의한 변통론에 불과했다.

36) 『北輿要選』 下, 勘界公文攷.

37) 『발취문서』, 281~282쪽.

38) 『동리교섭통상사무아문일기』 고종 23년 3월 23일조.

토문강 이동을 조선의 영역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이중하의 주장은 후일 대한제국 시기 민족주의적 인식이 고조되면서 간도영토론을 넘어 송화강, 흑룡강 이동까지 영토로 보는 변경의식으로 발전해 갔다.

이미 청국이 조선의 내외정을 간섭하고 있고, 원세개가 조선의 국정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전통적 조공체제에 가탁해 근대적 식민지배를 기도하던 상황에서 조선 측으로서는 감계 문제에 대해 조선이 주장하는 입장을 관철시키기 어려웠다. 하지만 청국측 주장대로 두만강을 경계로 할 경우 간도지역에서의 영토와 인민에 대한 지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조선 측으로서는 청의 감계 요구를 회피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두 차례의 감계 회담은 청국의 강압적 경계 확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조선 정부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은 채 결론을 맺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영토 의식의 성장과 함께 조선후기 이래 실학자의 토문강 경계설이 정부의 정책으로 되는 계기가 되었다.

IV. 대한제국의 간도정책과 영토 의식의 성장

청일전쟁이 청국의 패배로 끝나고 청국의 내정간섭에서 벗어나자 조선은 간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청국과의 전통적 관계에서 벗어난 조선은 특히 대한제국의 성립과 함께 근대국가 수립을 지향하면서 만국공법의 입장에서 간도의 인민과 영토를 지배하고자 했다. 더구나 이 시기 민족의식의 성장으로 간도를 조선의 영토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다.³⁹⁾

실제로 1900년 의화단 사건 이후 청국의 통제력이 약화된 사정을 기회로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정책과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39) 이 시기 『皇城新聞』에 보이는 민족 의식의 성장과 제국주의적 영토관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백동현, 2005, 「한말 민족의식과 영토관」, 『韓國史研究』 129.

1897년 함경북도 관찰사 趙存愚는 경계 문제를 탐색해 지도를 작성하면서 5개조의 영역 문제를 제시했다. 내용은 앞서 이중하의 보고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경계 문제를 독일 국제법학자의 저서로 이 시기 국제법 관련서적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公法會通』을 인용해서 국제공법상 土門江을 경계라고 주장했다.⁴⁰⁾ 대한제국 시기에 들어오면 만국공법적 사고는 일반화되어 가고 있었고 간도 문제도 이에 의해 사고하면서 조선의 영역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1898년에는 함경북도 鍾城 거주 吳三甲(前五衛將) 등이 간도의 감계 문제에 대해 상소하자 이듬해 내부대신 李乾夏는 함북관찰사 李鍾觀에게 훈령을 내려 이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했다. 그 보고 내용에는 토문강이 여러 강과 함께 송화강과 합해지고, 다시 흑룡강과 함께 바다로 흘러들어가니 이 경계가 다 內地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처음에 변경의 분쟁을 우려해 유민을 엄금하고 이 땅을 비워두었는데 청국이 자기들 땅이라고 해 먼저 선점하고 러시아에 천여리의 땅을 할양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청러 3국이 서로 회동해 백두산정계비를 감계하고 토문에서 바다에 이르는 땅을 답사해 각국통행지법에 의해 공평하게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¹⁾

이 주장은 송화강 흑룡강 동쪽을 역사적으로 조선의 영토로 보고 이를 점거한 청국과 러시아와 국제법에 따라 영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한제국 시기 민족주의적 의식의 성장이 만국공법과 결합되면서 토문강설을 넘어 송화강 흑룡강 이동까지 영토로서 확보할 것을 주장하는 인식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현실적인 관료의 인식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인 비현실적 영토 의식의 확장은 민족 의식의 발전만이 아니라 청일전쟁 이후 전통적 화이관을 벗어나 만국공법의 입장에서 청국을 대등한 국가 간의 관계로 보던 당시의 사회적 인식과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와의 긴밀해진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오삼갑의 상소는 『皇城新聞』에도 게재되어 지식인 사이에 간도를 우리 영토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는 한 계기가 되었다.⁴²⁾

40) 『北輿要選』下, 蔡界公文攷.

41) 위의 책, 查界公文攷.

또한 대한제국은 정책적으로도 간도의 토지와 인민을 관리하고자 했다.

1897년 徐相懋를 西邊界管理使로 임명해 서간도 조선인을 보호하도록 했다.⁴³⁾ 그는 압록강 대안지역의 인민을 방문해 그 고충을 듣다가 淸國嚮匪에게 피납되기도 하고⁴⁴⁾ 厚昌郡守 李載植과 楚山郡守 李秉弘이 沿邊 10邑 對岸流民들을 마음대로 兩邑에 分屬시키고 討索하는 것을 적발하는 등 인민을 보호하는데 힘을 기울였다.⁴⁵⁾ 그러나 1904년 청국에서는 서상무가 通化·懷仁·臨江·寬甸 4현에 있는 越墾韓民을 관리하기 위해 越界하여 建署하려 했던 것이 조약에 위배되므로 그를 징치할 것을 요청했다.⁴⁶⁾

결국 청국의 항의로 서상무는 소환되고 말았는데 그의 소환에 대해 李沂는 소환을 안타까워하면서 간도는 고구려 발해 이후 우리 땅, 우리 인민이라는 데 異說이 있을 수 없다면서 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⁷⁾ 이기는 압록강 대안 역시 우리의 영역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이 시기 민족 의식의 성장에 따른 영토 인식이 확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기의 주장은 단순히 확대된 영토 의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정책적으로 시행되기도 했다. 1900년경 平北 관찰사 李道宰는 압록강 대안지역을 각 군에 배속시키고 忠義社를 조직하여 이 지역 인민을 보호하게 했던 것이다.⁴⁸⁾

1901년에는 함경북도 대안 간도지역에 비적이 출몰해 조선 인민을 약탈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邊界警務署를 회령에 두고 무산, 중성에 분서를 설치해 간도 인민의 위생, 행정, 사법권을 관할하도록 했다. 주임관인 경무관 2인, 판임관인 總巡 4인, 그밖에 巡檢은 200인으로 하고,⁴⁹⁾ 예산규모는 27,098원으로 정했다.⁵⁰⁾ 변계경무서 설치는 대안지역의 간도 인민에게도 고

42) 『皇城新聞』 1898년 10월 20일자.

43) 『발취문서』, 89쪽.

44) 『高宗時代史』 5, 1902년 10월 7일조.

45) 『高宗時代史』 5, 1903년 6월 18조.

46) 『各司謄錄』 근대편, 起案 光武 8년 3월 7일조.

47) 『海鶴遺書』 권5 文錄 3 書牘 代西墾島民致內部書 甲辰.

48) 玄圭煥, 1976, 『한국유민사』 상, 삼화인쇄출판부, 139~140쪽.

49) 『各司謄錄』 근대편, 各部請議書存案, 광무 6년 2월.

시되고, 설치 이후 각종 민원사항이 접수 처리되어 사실상 간도 인민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다.⁵¹⁾

1902년 5월 21일 李範允을 간도시찰로 임명해 위원 李秉純, 李昇鎬와 함께 6월 23일 두만강을 건너 간도로 인민을 위무하니 民의 版籍에 든 자가 2만 7천 4백여 호이고 남녀 십여 만 명이였다.⁵²⁾ 간도지역에서의 이범윤의 활동을 비난하는 청국 지방관에 대해 이범윤은 조약상으로도 우리 인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고 만국공법의 통례라고 하면서 청국 관헌이 또 갖가지 명목의 잡세로 토색하는 것을 비판했다.⁵³⁾ 이듬해 8월 11일 이범윤은 내부대신서리 金奎弘의 주청에 따라 北間島視察로 北間島管理에 특차되어 간도에 머물면서 事務를 전관케 했다. 김규홍은 최범윤의 보고에 따라 청국인의 간도 인민에 대한 학대를 막기 위해 군대를 설치하고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계 문제만 하더라도 토문강 이남지역은 우리 강역으로 확정해서 수세해야 마땅하다고 했다.⁵⁴⁾

이미 이 시기에 들면 중앙정부 역시 토문강을 경계로 삼는 인식이 일반화 되어 있었고, 간도의 토지와 인민을 모두 우리의 영역 아래 두고자 했던 것이

50) 『各司謄錄』 근대편, 各部請議書存案, 광무 6년 3월 6일.

51) 『발취문서』, 89~113쪽.

52) 『발취문서』, 10쪽.

53) 『발취문서』, 10~11쪽.

54) 『舊韓國外交文書』 9 淸案 2425호 光武 7年 9月 4日조.

“北間島는 韓淸兩國의 交界로 數百年 동안 空曠되어 있던 中 數十年 以來로 北道沿邊의 我民들이 移住하여 居生하는 者가 이제는 數萬戶 100,000名에 이르고 있는 바 淸國人の 侵漁를 酷毒하게 입는 까닭에 昨年에 議政府에서 視察 李範允을 派遣하여 皇化를 宣布하고 戶口를 調査하였던 것이다. 이제 該 視察 李範允의 報告書에 依하면 淸國人들의 我民虐待를 枚陳하기 어려우므로 外部로 移照, 淸國公使와 詰辦하여 淸國官員의 虐待를 막고 建官設兵하여야 할 것이며 우선 編籍된 者가 13,000餘名에 達하고 있다고 하는 바 먼저 外部에서 淸國公使와 商辦한 後 該地方附近官員에게 文移하여 法外의 虐待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疆界로 論하더라도 分水嶺 定界碑 以下 土門江 以南區域은 마땅히 我國界限으로 確定, 執結 定稅해야 할 것이 나 數百年 空曠된 地界를 바로 安定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우선 保護官을 特置해야 할 것이며 또한 該 島民의 請願도 있으므로 視察 李範允을 管理로 特差, 該島에 駐劄시켜 事務를 專管케하여 島民의 生命財産을 保護해야 할 것이다.”

다. 역사적 연고를 바탕으로 간도 조선 인민에 대한 보호를 넘어 행정구역까지 설정하는 대한제국의 간도정책은 간도를 영토로 '식민화' 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외부대신서리 李重夏가 淸國出使大臣 許台身에게 조회하여 北間島視察 李範允이 駐劄北間島管理에 특차되었음을 통보하였는데, 이날 허대신은 그와 같이 파원하여 越界管理하는 것이 조약에 위배되므로 곧 撤還할 것을 요청했다.⁵⁵⁾

간도지역을 두고 양국 간에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자 간도 인민들이 청인들에게서 받는 박해와 참상이 심해졌다.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이범윤은 변계 경무관과 진위대에 그 실상을 말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나 경무서와 진위대가 서로 시기하여 조선인 보호의 책임을 서로 미루었기 때문에 조선인의 참상은 날로 심해졌다. 이것은 정부가 경무서와 진위대를 설치하고서도 진위대병의 渡江 순찰을 불허하였던 까닭이었다. 이에 이범윤은 隊兵의 간도 파병과 호위병의 대동 및 청국공사의 증명서 송부를 정부에 요청하였지만 정부에선 이범윤의 요청을 불허하고 다만 청국공사의 公文交附만을 청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청은 수차에 걸쳐 이범윤의 철퇴를 요청하였다. 이에 李範允은 이러한 정황을 간파하고 스스로 私砲隊를 조직하고 간도 조선인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그 비용에 충당하고 帽子山, 馬鞍山, 頭道溝 등에 營所를 설치하였다. 이후 청병과의 충돌이 증가되어 상호 교전, 주민의 살해, 가옥의 방화 등으로 전개되어 간도의 분쟁이 끊임 사이가 없었다. 한편 청국도 간도지역에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간도 조선인에 대한 변발역복을 강요하였다. 계속하여 양국인 사이에 충돌사건이 일어났으며 큰 사건들은 외교 문제화되었다고 청국은 이범윤의 철퇴를 요구했다.⁵⁶⁾

이범윤의 철퇴 문제는 점차 감계 문제로 비화되었으며, 1904년 5월 14일 내부대신 李容泰와 외부대신 李夏榮은 간도에 派員하여 청 관리와 會勘 후 國

55) 『舊韓國外交文書』 9 淸案 2426호 광무 7년 9월 7일조.

56) 李日杰, 2004, 앞의 글, 92~93쪽 ; _____, 1998, 앞의 글, 55~58쪽 참조.

계를 설정하여 강토를 회복하여 우리 유민을 회무시키는 것이 지금의 가장 급한 임무라 하면서 黃祐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원하였다.

황우영의견서는 경흥감리 황우영이 간도지역의 조선 인민의 참상을 보고하고 영역 문제를 만국공법에 의거 재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조선인은 간도지역에서 소작인이 되어 온갖 잡역에 시달리고 청 관헌의 침학이 심할 뿐만 아니라 마적에게까지 생명을 빼앗기거나 재산을 강탈당한다면서 비록 강북이지만 이를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백두산정계비를 답사하고 토문강이 500~600리를 흘러 송화강과 합류하고 흑룡강으로 들어가 바다로 가니 이것이 경계라고 하면서 국제법 서적인 『공법회통』을 인용해 외국관원과 함께 감계해서 영토를 확정하자고 했다.⁵⁷⁾ 황우영의견서는 영토 문제에 관한 한 앞서 본 함북관찰사 李鍾觀의 보고와 유사하다. 간도지역 조선 인민에 대한 청국측의 침탈을 비판하는 민족 의식이 영토 의식과 결합되어 이종관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토문강 경계론을 넘어 송화강, 흑룡강 경계설로까지 확산되고 있었다. 더구나 내부대신과 외부대신이 이 같은 영토의식을 수용할 정도로 정부 내부에서도 간도를 영토로 생각하는 인식이 일반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露·日 간에 전운이 감도는 상황 아래에서 ‘국외중립’을 선언(1904. 1. 21)하였으며 공수동맹을 전제로 한 ‘한일의정서’를 체결(1904. 2. 23)하는 등 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매우 복잡한 감계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⁵⁸⁾ 특히 私砲隊의 활동으로 양국 간의 분쟁이 더욱 심화되자 양국 변계 관리들이 서로 분쟁해결의 방법을 모색하여, 임의로 韓·淸邊界善後章程을 약정하였다(1904. 6. 15).⁵⁹⁾ 이章程의 내용은 한·청국 경계의 미정을 명시하였고 양국의 경계는 백두산 碑記를 입증하여 양국의 派員會勘을 기다린다고 하였으며 10조항 중 5조항이 이범윤

57) 『발취문서』, 1~4쪽.

58) 李日杰, 1996, 『間島紛爭과 國際關係』, 『정치외교사논총』 14,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19쪽.

59) 韓 淸邊界善後章程에 대해서는 李日杰, 1992, 『韓 淸邊界善後章程에 관한 研究』, 『국제법학회논총』 제37권 제1호 참조.

과 私砲隊의 철회를 규정하였다. 이 점은 이범윤의 사포대 활동으로 말미암아 변계관들의 입장이 난처하였으며, 이범윤과 이들 간에 불화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범윤은 간도관리사로 승진된 지 3개월도 못되어 경성과 총성군으로부터 철회의 독촉을 받았다. 이것은 경성군수가 의정부에 視察員의 철회를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간도분쟁은 정부 내 대신들의 갈등을 야기했다. 이범윤이 수차 건의한 간도 파병 문제는, 당시의 내부대신, 경무대신, 원수부 將官 등의 알력으로 결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부관리들 간의 알력으로 인해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변계관들도 간도 조선인의 보호보다는 이범윤을 철퇴시키는 방법으로써 善後章程의 체결에 동의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범윤과 사포대의 활동이 억제당함으로써 간도의 실제 관할권이 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한편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이범윤은 러시아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에 가담하였다. 이와 같이 이범윤의 철퇴로 간도 조선인의 참상은 더욱 심화되었다.⁶⁰⁾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한 후 북경주재 일본공사는 청국 정부에 전쟁이 끝날 국면에 이르렀으니 저간의 간도 문제의 논의를 중지할 것을 권고해 왔다. 따라서 韓·淸 간에 간도 문제 논의가 일시 중지되었다고 통감부 설치 이후 일본이 간도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대한제국의 간도정책은 일본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청일전쟁 이후 청국의 간섭을 벗어난 대한제국의 간도정책은 청국의 강압적 태도로 소극적 입장을 보이던 것과는 달리 간도의 인민과 토지를 지배하려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간도지역에서의 청국인들에게 침략을 당하는 조선인의 참상을 구제하려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지만, 정책의 변화는 영토에 대한 근대적 인식이 확산된 결과였다. 간도지역을 영토로써 영유하려는 대한제국의 정책은 이 지역의 역사적 연고에 근거해 간도를 식민화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이미 간도를 자국의 영토로 삼고 있던 청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대한제국의 간도정책은 청국과 외교문제로 비화하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 영토의식은 만국공법을 근거로 간도지역을 대한

60) 李日杰, 2004, 앞의 책, 94~95쪽 ; _____, 1998, 앞의 책, 58~59쪽 참조.

제국의 영토로 인식할 뿐 아니라 나아가 토문강의 하류 송화강, 흑룡강 이동 지역까지 영토로 보는 영토 의식의 확장을 가져왔다. 이같은 비현실적인 영토 인식의 확장은 이 시기 민족 의식의 성장을 그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다.

V.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 영토 의식은 경계선보다는 거점 개념이었다.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산천을 경계로 주변의 토지와 인민을 지배하는 것이 전통적 영토의 지배방식이었다. 그런데 러시아가 16세기 이후 동진하면서 청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게 되었다.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은 중국으로 하여금 거점 중심의 영토 의식을 국경선의 개념으로 전환시킨 조약이었다. 백두산정계비 문제도 이 같은 청국의 경계 의식의 성장과 관련이 있었다.

백두산정계비 설치 이후 조선쪽의 실제 봉금경계는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이었다. 청국이나 조선 정부는 봉금지역으로의 범월(犯越)을 엄격하게 다루었다. 이는 봉금지대를 설정한 청국과의 관계를 훼손할 수 없었던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지만 영토 의식은 반드시 봉금문제와 같은 것이 아니었다. 조선후기의 지식인들은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대개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그 이남을 영토로 인정했다.

그런데 19세기 중엽 무렵에 이르면 압록 두만 양강의 강변지대에서는 청국과 조선의 유민이 유입되면서 개간이 이루어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었고, 1867년 청국은 동북지역에 대한 봉금정책을 폐지하고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을 서둘렀다. 그래서 1880년 오대징을 파견해 동북변경지역에 초간국을 설치하고 이민을 장려하고, 변경지역을 청의 영토로서 확실히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미 간도지역에 조선인이 개간경작하면서 조선쪽의 지권을 발급받는

상황이라서 두만강 이북의 조선 인민의 쇠환을 요구했다. 쇠환을 위해 경략사로 온 어윤중은 간도 거주 조선인이 백두산정계비를 답사하고 두만강과 토문강은 다르다는 문제 제기를 하자 청국에 감계회담을 요청했다.

감계회담은 직접적으로는 간도지역 조선 인민의 생존권과 관련 있었고, 이 지역 인민에 지배를 포기할 수 없었던 조선 정부의 입장이 계기가 된 것이지만, 멀리는 실학자의 토문강 경계론과 이 시기 열강과의 조약체결, 만공공법의 유포로 종래 조공체제 아래서의 화이론적 사고를 극복한 근대적 영토의식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 배경이 되었다.

청국은 1882년 임오군란 이후 군대를 파견하고 이 해 청의 종주권을 확인하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했다. 1884년 갑신정변도 무력으로 좌절시키면서 1885년에는 원세개를 감국으로 파견해 조선의 내정과 외정을 간섭했다. 이 같은 청국의 대조선정책은 전통적 종주권의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공체제에 가탁한 제국주의적 식민지배를 기도한 것이었다. 따라서 1884년의 양국간 합의에 의해 1885년, 1887년에 이루어진 감계회담에서 청은 외교적으로 상대적 우위에 있었고, 회담과정에서도 강압적 자세로 임했다.

1885년의 감계회담에서 청은 두만강 중심의 감계를 주장하면서 토문강과 두만강이 동일하다는 두만강 경계설을 주장했다. 반면 조선은 정계비 중심의 감계를 주장하면 토문강과 두만강이 달라 정계비에 근거한 토문강 경계설을 제기했다. 이미 두만강을 경계로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정계비의 위치 자체를 의심하는 청국과 정계비 설치지역의 토문강으로 국경을 정하려는 조선의 입장 차이는 좁혀질 수 없어 1차 감계회담은 결렬되었다. 1887년의 2차 감계회담에서 청은 처음에 홍단수를 주장하다가 석을수로 변경 주장하였다. 조선측 대표 이중하는 도저히 토문강설을 청국 측이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고 정계비에서 가까운 홍토수를 경계로 제안했지만, 2차회담 역시 결렬되었다. 이홍장은 1888년 3차 감계회담을 제의했지만 조선 측은 청국의 강압적 회담 태도에 주장을 관철시킬 수 없었기에 회담 자체를 결렬시켰다. 청국측 주장대로 두만강을 경계로 할 경우 간도지역에서의 영토와 인민에 대한 지배가 불가능해지

기 때문에 조선 측으로서는 청의 감계 요구를 회피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두 차례의 감계회담은 청국의 강압적 경계 확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조선 정부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은 채 결론을 맺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영토 의식의 성장과 함께 조선후기 이래 실학자의 토문강 경계설이 정부의 정책으로 되는 계기가 되었다.

청국이 조선의 토문강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토문강이 송화강의 상류로 그 동쪽을 경계로 할 경우 송화강 이동, 곧 길림까지도 영역 주장이 가능한 데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토문강 이동을 조선의 영역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이중하의 주장은 후일 대한제국 시기 민족주의적 인식이 고조되면서 간도영토론을 넘어 송화강, 흑룡강 이동까지 영토로 보는 변경의식으로 발전해 갔다.

청일전쟁 이후 청국의 간섭을 벗어난 대한제국의 간도정책은 청국의 강압적 태도로 소극적 입장을 보이던 것과는 달리 간도의 인민과 토지를 지배하려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청국과의 관계에서 간도 문제를 만국공법적인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대한제국의 정책 변화는 간도지역에서 청국인들에게 침략을 당하는 조선 인민의 구제가 일차적 목적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이 지역의 역사적 연고에 근거해 간도를 '식민화' 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대안을 행정구역에 편입시키고, 변계경무서의 운영, 이범윤을 간도시찰로 파견해 민적을 파악하는 정책 등은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이 같은 정책은 이미 간도를 자국의 영토로 삼고 있던 청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대한제국의 간도정책은 청국과 외교문제로 비화하고 있었다. 특히 이범윤의 사포대 활동은 양국 간의 긴장을 야기했다. 그러나 러일전쟁의 발발 이후 일본 측의 제의로 간도 문제에 대해 양국은 논의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 뒤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통감부에 넘어가면서 간도정책은 대한제국을 대신해 일본에 의해 이루어지고 말았다.

대한제국시기의 영토의식은 만국공법을 근거로 두만강 대안 간도지역을 대한제국의 영토로 인식할 뿐 아니라 압록강 대안 역시 영역으로 주장하기도

하고 나아가 토문강의 하류 송화강, 흑룡강 이동지역까지 영토로 보는 인식의 확장을 가져왔다. 이 같은 영토 인식의 확대는 이 시기 근대 민족 의식의 성장을 그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다.



중국 국민사학의 형성과 인종·강역문제

- 양계초·장병린의 만주 인식을 중심으로 -

오 병 수

「동북아역사논총」 14호

동북아역사재단

2006年 12月

중국 국민사학의 인종·강역문제

- 양계초·장병린의 만주 인식을 중심으로 -

오 병 수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I. 머리말

최근 고구려사를 자국사에 편입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우리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물론 그 자체는 학술적인 차원을 벗어난 非常識的인 것이어서,¹⁾ 오히려 그러한 무리한 시도를 감행하는 현실 배경이 더욱 궁금증을 유발하였다. 1990년대 이후 부쩍 강화되고 있는 ‘중화민족주의’의 논리 구조나 그 배경에 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현상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중국인들의 만주 또는 東北에 대한 인식, 특히 역사 강역으로서 동북에 대한 인식 문제는 여전히 看過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문제가 ‘東北’이라는 일정 지역의 過去를 국가의 역사로 편입·전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未久에 ‘閩島 문제’ 등과 관련하여 양국 간의 갈등으로 비화할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1) 이는 중국인들도 공유하는 점이다. 예컨대 葛兆光은 이를 중국사 서술의 패러다임의 위기라는 넓은 시각에서 조명하였다. 葛兆光, 2005, 「重建關於「中國」的歷史論述：從民族國家中拯救歷史，還是在歷史中理解民族國家？」, 『二十一世紀』十月號, 香港.

물론 이러한 입장에서 이미 적잖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현재 중국의 공식 이론인 이른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등 변강·민족·역사강역과 관련한 논리 및 실제, 중국의 전통적인 공간 인식 체계 및 범주,²⁾ 그리고 근대 이후 동북을 역사강역으로 편입하는 기제로서 동북의 지정학적 위상 및 '중화민족주의'에 대한 분석들이 그것이다.³⁾

이를 통해 중국이自古로 域외의 영역이던 동북을 자기 강역으로 편입·인식하는 현상은 근대 민족주의의 등장 및 발전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천하국가체제의 위기가 심화되는 청말에 시작되어 1930~40년대 항일전을 거치면서 기본 틀을 완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북공정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왕의 사학사, 변강사 연구를 기초로 한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동북을 역사강역으로 편입하는 구체적인 논거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중국의 국민사학이 근거하고 있는 영역·인종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동북의 역사화 과정과 이론 근거에 대한 분석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⁴⁾

강역과 인종,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 문제는 전통 역사학은 물론이고, 민족사를 표방하는 근대 역사학을 구성하는 핵심 요체이다. 특히 중국의 근대국가 건설과정에서 청조라는 대제국을 승계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다양하고 광범위

2) 李成珪, 2005, 「中華帝國的 팽창과 축소」, 『歷史學報』 189; 추명엽, 2005, 「高麗時期 '海東' 인식과 海東天下」, 『韓國史研究』 129.

3) 박선영, 2002, 「국민 국가 曠麗矮 민족; 근대 중국의 국경 의식을 통해 본 국민국가 형성과 과제」, 『東洋史學研究』 81; 윤휘탁, 2003, 「현대 중국의 변강·민족인식과 「동북공정」, 『역사비평』, 겨울호; 이강원, 2000, 「중국 변강에서 민족과 공간의 사회적 구성」, 『지리학논총』 별호37; 김유리, 2005,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역사교육론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北方史論叢』 6; 柳鏞泰, 2005, 「중화민족론과 동북지정학; 「東北工程」의 논리 근거」, 『東洋史學研究』 93.

4) 물론 중국이 영역국가로 전환 과정에서 추구하였던 일련의 국민적 통합정책에 대한 연구가 다수 있다. 박장배, 2003, 「근현대 중국의 역사교육과 중화민족 정체성」, 『중국근현대사연구』 19; 이병인, 2005, 「'종족'에서 국민으로의 전환모색과 굴절; 중화민국시기 역사교과서와 변강교육」, 『역사교육』 96.

한 인종·강역의 통합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고, 국민사학 역시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여 수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이민족이자 지배 종족이었던 만주족의 역사와 강역의 통합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중국이 동북을 역사화하는 논리 및 과정에 대한 분석은 중국의 국민사학의 본질과 동북 공정의 논리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은 중국의 국민사학의 형성 과정에 나타난 강역, 그리고 인종으로서 만주 인식을 계통적으로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작업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우선 중국의 국민국가 건설과정에서 만주가 차지하는 지정학적 위상과 그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그 역사화의 계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강역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인 공간 인식과 함께 국민국가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는 중국의 국민사학이 표방한 중국사의 범주와 논리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0세기 초반 서로 다른 방식의 국가 건설 전망 속에서 중국사 서술을 구상하였던 梁啓超와 章炳麟의 만주 인식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국민사학을 구성하는 논리와 방법이 대략 양자의 구상과 실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중국의 근대 역사학이 추구하는 강역 인식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려는 것이다. 셋째는 만주에 대한 역사적 편입이 이루어지는 1930~40년대 주류 역사학의 만주 인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양계초와 장병린의 만주 인식이 어떻게 국민사학의 틀로 계승되는지를 밝힘으로써, 중국 역사학이 만주를 편입하는 내재논리를 계통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중국의 국민사학이 만주에 대한 역사적 편입의 논리를 계통적으로 이해하면서 동북공정 및 현재 중화민족주의가 내장하고 있는 강역 의식, 그리고 우리의 만주 인식을 돌아보는데도 유용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중국과 ‘만주’ : 만주 역사화의 전개

중국은 최근 國家淸史編纂委員會(2002년 12월)를 설립하고, 이른바 ‘淸史工程’이라는 대규모의 국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⁵⁾ ‘探源工程’, ‘東北工程’과는 별개의 역사 공정이다. 기왕에 正史로서 편찬된 『淸史稿』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청조사 편찬이 그 목표이다. 이미 北京, 上海 등지에서 數十次 학술회의를 열어, 서술 체제 및 참여 인원을 확정하였고, ‘文獻叢刊’, ‘案叢刊’, ‘研究叢刊’ 등 방대한 자료를 정리 출간하였다. 100여년 전 혁명을 통해 克復한 전통 왕조의 역사를 방대한 국가적 사업으로 정리하고 있는 셈이다. 그 배경과 의도가 궁금하다.

그 총괄 책임자인 戴逸에 따르면 가장 큰 요인은 역시 『淸史稿』가 正史로서 부를 수 없을 만큼 不實하기 때문이라고 한다.⁶⁾ 淸史는 그동안 많은 저술과 重修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정리되지 못했고, 이는 ‘易代修史’의 전통에 비추어 不當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요인으로 강조한 것은 중국 역사상 疆域 개척과 민족 統合이란 측면에서 가장 성공한 王朝로서 청조의 유산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⁷⁾ 역사 관행과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청조사를 중국 역사로서 새롭게 정리하려는 것이니, 이른바 21세기형 ‘國史’ 건설인 셈이다.

물론 부실한 正史의 補修가 전례 없는 일도 아니고,⁸⁾ 실제 淸史 정리는 중

5) 정식 명칭은 ‘纂修淸史工程’이다. 2012년까지 『淸史考』의 4배인 3000만자(열권 분량)의 청사 편찬과, 관련 당안 및 사료의 정리·수집·출판이 공정의 주요한 내용이다. 『光明日報』(2005. 10. 14)의 보도에 의하면 이미 총 33종 359권의 자료를 출간하였다고 한다. 國家淸史纂委員會體裁體例工作小組, 2004, 『淸史編纂體裁體例討論集(上·下)』, 中國人民大學出版社; 鄭明, 2005, 「淸史纂修紀實(一)」, 『社會科學戰線』 5期.

6) 『淸史考』의 편찬 과정 및 한계에 대해서는 修史에 참여한 朱師轍의 『淸史述聞』, 1977, 臺北: 樂天出版社에 잘 정리되어 있다.

7) 戴逸, 2004, 「在國家淸史編纂委員會第一次工作會議上的講話」, 國家淸史纂委員會體裁體例工作小組.

국 역사학계의 宿願이었다. 특히 『淸史考』의 한계와 그에 대한 重修 논의는 刊行 직후부터 있었다. 청사 연구는 시각과 자료의 측면에서 정리할 점이 많다는 것은 학계의 상식이었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차원의 방대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구체적인 배경에 관심이 가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중국의 근대 역사학은 한결같이 經世 史學의 전통 속에서 국가 사회의 구체적인 정치 목표에 복무해 왔다는 점이고,¹⁰⁾ 둘째는 工程의 내용이 최후의 전통 왕조이자 이민족 왕조의 역사화를 추구하면서 과거 帝國 意識의 산물인 正史體制의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古朝鮮·高句麗史를 自國史에 편입하려는 시도 역시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이다.¹¹⁾

이러한 점에서 중국인들의 청조(사)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는 것이 순서이나, 우선 그 전제로 중국인들의 만주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만주는 ‘종족’ 명이자 ‘지역’의 이름으로서 청조의 代稱이었으니, 中華民國가 건설 과정에서 형성된 만주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청사공정’의 기본 전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중국이 현재와 같이 만주를 스스로의 영역으로 편입한 것은 신해혁명 이후였다. 청조를 타도하고 들어선 중화민국이 ‘五族共和’의 이념과 함께 옛 淸 帝國의 강역 승계를 선언하였고, 이후의 정치권력이 이를 慣習의으로 계승해 온 것이다. 해방 이후 중국이 소련과 영토분쟁에서 내세우는 방어논리 역시 청조 계승론이었다.¹²⁾

8) 예컨대 청대 활발하게 이루어진 ‘元史’ 연구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黃兆強, 1990, 『淸人元史學探研』, 臺北: 稻鄉出版社.

9) E. S. Rawski, 1996, “The Reenvisioning the Qing : The Significance of the Qing Period in Chinese History,” *JAS* 55-4.

10) 彭明輝, 1995, 『歷史地理學與現代中國史學』, 臺北: 東大圖書公司; _____, 2002, 『晚淸的經世史學』, 臺北: 麥田出版社.

11) 기획하고 있는 청사는 ‘通記’, ‘通志’, ‘傳記’, ‘史表’, ‘圖錄’ 등으로 구성되는 종합사를 지향하고 있다. 역대 정사의 서술체제를 참작한 것이다(鄭明, 2005, 앞의 책).

12) 예컨대 珍寶島 사건 등 영토 분쟁에서 중국이 제시한 논리가 그러하다. 즉 당시 중국은 “흑룡강 유역까지 동북의 전 영역은 만주족의 강역이었고, 특히 입관 전 청조 대부터 이미 강역으로 經略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다. 입관 전 청은 명의 직접적인

그러나 만주에 대한 이같은 영역적 편입이 곧 국민국가적 통합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신해혁명 자체가 만주족의 불만을 살만큼 종족 혁명의 성격이 적지 않았지만¹³⁾ 인종과 강역에 대한 중국인들의 뿌리 깊은 사고도 크게 작용한 까닭이다. 청조가 마지막까지 만·몽·회·장족의 ‘평등 및 私有權 보장’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던 것은 한족과 구별되는 만주족 및 소수 종족의 존재를 대변하는 것이다.¹⁴⁾

사실 만주는 근대 중국에서 關內와 구별된 역외의 지역으로서 그 위상이 독특하였다. 그것은 滿洲國(1932)의 성립에서 알 수 있지만, 근대 정치 상황 및 국민 일반의 정서와 관련하여 나타난 事情이었다. 이는 특히 신해혁명 이후 국민국가 건설 과정에서 慣行的으로 진행되었으니, 東三省은 애초부터 혁명 역량이 미약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국민혁명에의 참여도 드물었다.¹⁵⁾ 5·4운동 직후, 일부 학생의 流動과 間島지역 韓人들의 反日運動을 제외하면, 지역적으로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의 집단적 참여는 미미하였다. 國民黨省府도 전국적으로 가장 늦은 1927년 이후에야 조직될 정도였다. 1929년 張學良이 국민당에 합류하기까지 東北은 奉天軍閥 지배하에 있었다. 청말 동북 신정이나, 이후 大連~上海 간의 활발한 무역 및 내지에서 인구 유입,¹⁶⁾ 그리고 치열하게

통치를 받는 변강 민족의 하나라는 것이 부가 논리였다. 해방 이후 동북에 대한 역사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歷史政治地理’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동북공정의 전신이라 할 수 있겠다. 黃盛璋 等, 2002, 『近年我國歷史地理研究的進展』, 華林甫 編, 『中國歷史地理學五十年』, 學苑出版社, 7~8쪽(原載『中國史研究動態』1979年 3期).

- 13) 신해 이후 만주족의 宗社黨 결성 및 종족적 자치권 획득 시도, 그리고 정치적 복벽 운동에 대해서는 胡平生, 1985, 『民國初期的復 派』, 臺灣: 學生書局.
- 14) 胡平生, 1992, 『復 運動史料』, 正中書局, 21쪽.
- 15) 奉川, 吉林, 黑龍江은 무창기의 이후 가독립 상태에 있다가, 한 달이 지난 1911년 11월 12일, 16일, 17일 되어서야 독립을 선언하였다. 당시 혁명파는 별다른 구실을 못 했다. 이지영, 2003, 『청말동북신정』,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冬 主編, 『東北通史』 5, 吉林文史出版社(이하 동북의 정치상황은 同書); 鄒魯, 1961, 『東三省起義』, 『辛亥革命回憶錄』, 文史資料出版社.
- 16) 상해와 대련 간의 곡물무역은 조선·일본과의 거래량에 비하면 지금도 여전히 적었다. 또 建省 이후 본격화 된 관내 한인의 동북 이민은 이전의 농업이민과 달리 임시적 노동이민이 압도적이었다. 譚水玉, 2003, 『清末民初奉天東部地區城市化啓東因

전개되었던 항일전의 무대였음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적 통합 양상은 관내와 경우와 사뭇 달랐던 것이다.

물론 만주가 중국인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관내와 구별되는 域외의 지역으로서 인식되고 있었다. 그것은 만주가 중국의 근대적 강역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사실 중국인들의 만주에 대한 관심은 19세기 러시아의 침략 및 청일전쟁 이후, 중국 안위와 직결된 요충지로서 부각되면서부터였다.¹⁷⁾ 이에 따라 만주는 중국의 변강으로 편입되었으니, 이후 封禁 解除 및 實邊 정책, 군사 중심의 邊務體系의 형성되었고, 만주개방론과 같은 외교적 형편을 고려한 경영이 강구되었다. 러일전쟁 직후 行省化 조치나(1907),¹⁸⁾ 간도문제에 대두에 따른 間島邊務使 설치 역시 그 연장이었다.¹⁹⁾ 이러한 변강으로서 만주는 중국 지식인들의 강역적 민족주의를 추동하는 촉매작용을 하기도 하였다. 러일전쟁, 5·4운동, 9·18사변 등 중요 계기 때마다 만주는 중국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부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는 관내와의 통합은 느슨하였고, 여전히 만주족의 고향이자 域外 또는 邊界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華夷論 또는 천하관에 기초한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時空 관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었다. 화이론은 정치·인종·문화적 관계 속에서 스스로와 주변을 인식하고 표상하는 중국 특유의 공간 인식 체제였다. 이러한 틀 속에서 滿洲는 華와 구별되는 夷로서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었고, 특히 遼河 以東은 별개의 세계로 인식하는 것이 관례였다.²⁰⁾ 중국인들의 상투적 주장과는 달리 만주는 사실 정치, 인종, 문화

素初探, 『吉林師大學報』 4期; 范立君·譚玉秀, 2005, 「民國時期東北官內移民動態的考察」, 『中國社會經濟史研究』 1期; 趙中孚, 1989, 「近代東北移民開發史研究回顧」, 『六十年來的中國近代史研究(下)』,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7) 徐世昌, 2004, 「東三省政略·卷一 邊務」, 『東北史志』 3-1,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211~212쪽.

18) 趙云田, 2002, 「清末新政期東北邊疆的政治改革」, 『中國邊疆史地研究』 12卷3期.

19) 馬陵合, 2004, 「從“開門通商”到“厚集洋債”」, 『中國邊疆史地研究』 14卷2期; 趙興元, 2001, 「徐世昌與延吉邊務交涉」, 『中國邊疆史地研究』 10卷3期.

20) 李成珪, 2005, 앞의 책; 추명엽, 2005, 앞의 책.

적인 측면에서 거의 중국화 된 적이 없었다. 명대에도 만주는 요·금·원에 대한 기억 속에 復仇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고,²¹⁾ 청초까지도 『柳邊紀略』(楊賓), 『寧古塔紀略』 등 영세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인들의 동북에 대한 지리 지식도 소략할 뿐 아니라, 그 관점도 '내지인'의 관점에서 化外の 땅을 바라보는 피상적인 것이었다.²²⁾ 만주가 청조 입관을 계기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곤 하지만, 여전히 청조의 발상지이자 다민족의 거주지로서 만청 정권 및 소수민족과 연관하여 인식되었다.

또 종족의 이름인 만주가 영역 개념으로 정착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疆域과 人種으로서 만주에 대한 인식에는 일정한 대상화가 전제되어 있었다.²³⁾ 그것은 정복왕조로서 만주 왕조 및 만·한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청조의 통치 관행이 유산으로 작용하였다.

사실 청조는 多民族國家로서 大帝國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漢人에 대한 유래 없는 威壓·통제 정책으로 일관하였다.²⁴⁾ 만주지역에 대한 봉금 및 『만주원류고』의 편찬 역시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었다.²⁵⁾ 그러나 이러한 청조의 분리 정책은 인종과 강역에 따른 집단성을 전제로 소수의 만인과 다수 한인 간의 끊임없는 긴장관계를 속성으로 하고 있어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심각한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²⁶⁾ 실제 서양의 침략에 따른 제국질서의 정당성이 위기에 처하면서 현실로 나타났으니, 후술할 청말 혁명과의 반

21) (明)楊循吉, 『金小史 卷一』, 『遼海叢書』.

22) 金毓, 2001, 『中國史學史』, 河北教育出版社, 376쪽(原著 1941년 출판).

23) 孟森, 2006, 『滿洲名稱考』, 『滿洲開國史講義』, 中華書局; Mark C. Elliott, 2000, 8, "The Limits of Tartary: Manchuria in Imperial and National Geographie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59, No. 3.

24) Pamela K. Crossley, 1990, 6, "Thinking about Ethnicity in Early Modern China," *Late Imperial China* 11-1.

25) Pamela K. Crossley, 1987, "Manzhou Yuanliu Kao and the Formalization of the Manchu Heritage,"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46-4.

26) 이러한 내용은 당시 조선사신 기록에 의해서도 다수 확인된 것이지만, 만청의 관료였던 孫寶宣의 일기에서도 생생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손은 당시 중국의 처지를 인도와 비교하면서 민족적 자치 회복을 희구하였다. 孫寶宣, 『忘山廬日記』(癸卯·1903. 7. 11), 上海古籍出版社, 728쪽.

만 운동은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의 근대 역사학은 국가 건설 논의를 배경으로 탄생하고 전개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태생적으로 청 帝國의 臣民과 疆域을 계승하면서도 인종, 강역, 문화를 매개로 한 새로운 정체성 창안을 과제로 한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제 지역과 종족의 역사를 국가사의 영역으로 용해하는 것이어야 하였으니, 청조의 전 강역을 포괄하면서 종족을 초월하는 중화민족사의 창안에 의해 완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당연히 그것은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동북공정과 청사의 편찬은 이것이 미완의 진행 과정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화외의 땅을 변강으로서 편입한 동북의 편입은 난제 중의 난제였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은 가능한 것이었을까? 강역과 인종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중국의 근대 사학의 형성 과정을 통해 살펴보자.

Ⅲ. 中國 ‘국민사학’의 모색과 만주 인식

일반적으로 국민사학은 영역내 각 집단·종족·계층의 기억을 국가의 기억으로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상상의 공동체’로서 ‘국가’, ‘民族’의 역사를 계통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영토·인종·문화를 매개로 한 국민적 정체성을 형상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사학은 당연히 근대국가 건설 과정과 보조를 같이하여 진행된다. 국가 건설에 참여하는 제 세력의 역량관계 및 노선에 따라 기억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다.

중국에서 이 같은 국민사학은 20세기 초반 국가 건설 논의와 함께 본격화적으로 모색되었다. 서구 침략에 대한 위기의식과 청조에 실망한 한족 지식인들이 국민국가 건설의 일환으로 새로운 역사-국사의 서술을 구상한 것이다. 양계초를 중심으로 章炳麟, 鄧實, 劉師培, 夏曾佑 등에 의한 신사학 논의가 그것이었다. 帝王 위주의 君史를 대신한 民史·國史 서술이 그 목표였다.²⁷⁾

물론 이들의 모색이 모두 역사 서술로 구체화 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구상한 중국사의 내용과 범주의 문제였다. 이는 국민국가의 방향과 그 주체인 국민적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후 국민사학의 전개 과정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추구한 국가 건설의 목표인 서구의 침략에 대응과 이민족 지배자인 청조의 극복은 역사 서술 구상의 내용을 지배하였다. 특히 만주족 및 한화되지 않는 소수민족의 강역과 역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핵심 사항이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양계초, 장병린의 국민사학 구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다양한 모색과정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양자는 모두 국민사학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인물이면서도 혁명과 입헌이라는 국가 건설 방향을 달리하였던 만큼 만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통상 정치적 입장의 차이로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그 학술 배경과 함께 근대국가 건설에 대한 종합적 전망 속에서 비교함으로써 그 다양성을 재현하고자 한다. 이로써 중국 지식인의 만주 인식 및 중국의 근대 역사학이 만주를 포섭하는 논리적 근거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는 단서를 모색하고자 한다.

1_ 梁啓超의 新史學과 만주 인식

통상 梁啓超가 「中國史序論」(1901, 『清議報』 90冊)과 「新史學」(1902, 『新民叢報』)을 통해 주창한 新史學을 중국 근대 역사학의 출발점으로 평가한다. 그 이유는 대략 두 가지이다. 하나는 왕조사 중심의 전통 역사학을 비판하고, 代案

27) 예컨대 鄧實은 중국에는 그동안 제왕의 역사(君史)만 있었지 사실상 역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서구 역사와 같은 民史를 적극 제창하였다. 그가 말한 民史의 범주는 種族史, 言語文字史, 風俗史, 宗教史, 學術史, 教育史, 地理史, 戶口史, 實業史 등이었다. 이를 통해 民知, 民權, 民德, 民力의 暢達하고 입헌정체를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鷄鳴鳳雨樓民書·總論」, 『甲辰政藝叢書』.

으로 국민주의 역사학을 제기하였다는 점이고, 둘째는 이른바 因果論적인 설명 등 과학적 역사를 주창하면서 그에 걸맞는 새로운 서술체계를 모색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國家와 國民, 人種과 民族, 競爭과 進歩, ‘群’, ‘社會’ 등 근대 개념들을 폭넓게 구사하면서 朝代를 초월한 國家·民族史로서 중국사를 구상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²⁸⁾ 물론 양계초의 이러한 구상은 당시 그의 국가 건설 구상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歷代의 正統論을 ‘君統’으로서 부정하고 대신 ‘民統’, ‘國統’을 주장하였던 점에서 歷史를 王朝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데서 잘 알 수 있다.²⁹⁾

양계초의 역사 인식은 5·4운동을 계기로 뚜렷히 구별되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애초 정치사를 중심으로 법칙적 파악을 강조하던 것과 달리 사회사, 문화사를 중시하면서 역사 상대주의에 기초하여 해석의 자율성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³⁰⁾ 유럽여행을 통해 당시 유행한 새로운 사조를 수용함으로써 국가 건설 구상을 달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양계초가 구상한 중국사의 범주이다. 특히 인종과 강역을 중심으로 만주를 중국사의 영역으로 포섭하는 구체적인 논리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가 중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였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양계초는 애초 ‘역사’를 국가 건설에 필요한 유용한 지식 체계의 일부로 파악하였다. 전통적인 경세치용의 관점과 유사하지만, 근대국가 건설에 필요한 지식 체계, 특히 근대 서양의 지식체계로서 이해하였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³¹⁾ 특히 양계초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서구의 근대국가 건설 경험이었다. 국가 건설과 관련한 유용한 지식을 얻으려는 것이니, 그가 주창한 신

28) 王汎森, 2001, 「晚清的政治概念與“新史學”」, 羅志田 編, 『20世紀的中國：史學卷(上)』, 山東人民出版社.

29) “民有統而君無統也”, “統也者 在國非在君也, 在衆人非一人也, 舍國而求諸君, 舍衆人而求諸一人也, 必無統之可言, 更無正之可言” 梁啓超, 「新史學」, 『飲冰室文集』4冊.

30) 梁啓超, 1923, 「關於文化研究的幾個重要問題」, 『飲冰室文集』7冊.

31) 이점은 그가 輯刊한 『西政叢書』(1897)에 「羅馬地略」 등 西洋歷史書를 포함시킨 점이나, 歷史를 官制, 學制, 法律 등과 함께 西政諸書로 인식한 데서 잘 알 수 있다.

사학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양계초가 신사학을 구체화한 것은 일본 망명 직후였다. 당시 일본에서 다양하게 번역된 다양한 서구 근대 지식을 흡수한 결과였다.³²⁾ 유신 실패 이후 일본으로 망명한 처지에서 새로운 국가 건설을 모색하면서 그에 필요한 새로운 개념을 수용하거나, 기왕의 지식과 개념을 재해석한 것이다.³³⁾ 특히 국가·사회 및 進化論, 人種論 등 개념이나 불루칠리의 국가사상, 浮田和民의 『史學概論』, 『西洋史論』을 적극 수용하였다. 역사를 인종, 강역, 문화를 근거로 이루어진 국가 간의 경쟁으로 파악하는 발상 역시 그러한 영향의 결과였다.

이에 따라 양계초는 당시 상식대로 피부 색깔을 기준으로 인종을 나누고, 疆土와 部落을 단위로 각 국가를 구별한 뒤, 그 進化의 정도에 따라 優劣관계로 인식하였다. 그 기준은 국가 사회의 형성 여부였다. 인간의 진화의 최종 단계를 국가 형성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³⁴⁾ 국가의 有無는 곧 文明과 野蠻을 가르는 기준이며, '역사'와 현실 역시 국가 형성을 위한 또는 국가를 단위로 한 인종·민족 간의 경쟁에 불과하였다.

역사란 무엇인가? 인종의 발달과 경쟁을 서술한 것일 뿐이다. ……역사는 人群에서 발생하며, 사람이 群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안으로 능히 뭉치는 바가 있고, 밖으로 배척하는 바가 있음으로 種界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은 國族으로 결합하고, 배척하는 시대이다.³⁵⁾

自結하면 역사에 남고 그렇지 못 하면 역사가 될 수 없다. 왜인가? 自

『泰西新史札要』와 같은 역사서를 필독서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梁啓超, 1896, 『西學書目表』, 上海時報館(石印).

32) 梁啓超, 「論學日本文之益」(1899), 「東籍月旦」(1902), 『飲水室文集』二冊.

33) 문명, 群, 진화론 등은 기왕의 인식을 재해석한 것이었다. 石川禎浩, 1999, 「梁啓超の文明の視點, 狹間直樹 編, 『梁啓超: 西洋近代思想受容と明治日本』, 東京: みすず書房; Philip C. Huang, 1972, *Liang Ch'i-Cha'o and Modern Chinese Liberalism*, Washington UP.

34) “人群之初級也 有部民而無國民, 由部民而進爲國民, 此文野所由分也. ……天下未有無國民而可以成國家者也” 梁啓超, 「新民說」, 『飲水室專集』三冊, 16쪽.

35) 梁啓超, 「中國史敘論」, 『飲水室文集』六冊.

結者は 남을 배척하고, 自結하지 못하는 자는 남에게 배척당하기 때문이다. 남을 배척하는 자는 本種을 擴散하여 他種을 침식할 수 있어서 당당히 세계 역사무대를 壟斷할 수 있지만, 남에게 배척당하는 자는 본종이 날로 찌그러지고 쇠미하여서 밖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안으로 멸망할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역사적 지위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³⁶⁾

역사를 인종 간의 경쟁을 통한 群의 형성·확대 과정으로 파악하고, 그 최종 단계를 국가·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國族(民族)의 형성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서 역사는 국가 형성을 위한 제 인종 간의 경쟁 및 그 흥망 성쇠의 원인을 탐구하고 그에 기초하여 진보의 법칙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群’ 또는 競爭은 현실을 인식하는 중요 개념이었다. 양계초는 당시 현실을 ‘민족제국주의’ 시대로 파악하였다. 인종 경쟁이 그 최종 단계인 민족 국가 간의 경쟁으로 轉化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세계적인 민족국가의 건설과정과, 서구 열강에 의한 제국주의적 식민지배가 그 징표였다. 그것은 劣等(人種)民族에 대한 優等(人種)民族의 끊임없는 同化·征服을 본질로 하는 것이니, 強權과 弱肉強食이아말로 세계를 구성하는 唯一無二한 原理였다.

“천하는 強權이 있을 뿐이요, 平權은 없다. 권리는 自強을 통해 스스로 爭取하는 것이다. 이것이 천연의 公例다. 弱肉強食의 惡德이 天然의 公理가 된 것이 民族帝國主義의 內因인 것이다.”³⁷⁾

이러한 입장은 영국, 독일, 러시아, 미국의 식민지 경영 사례와 조선·베트남의 패망 원인에 대한 인식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분석의 초점을 열강의 성공 요인을 밝히는데 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망국 역시 일본의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의 결과로서 이해하였다. 동시에 양계초는 敗亡을 곧 역사 주권의

36) 梁啓超, 「新史學」, 『飲水室文集』 九冊.

37) 梁啓超, 「論民族競爭之大勢」, 『飲水室文集』 四冊.

상실과 등치시키고, 이를 불가역적이고 현실적 추세로 승인하였다.³⁸⁾

물론 이러한 인식은 열강과 같은 강대한 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특히 양계초는 중국이 무한한 확장을 통해 강대한 국가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로마제국, 또는 미국과 같은 다민족 국가가 그 궁극적인 모델이었다. 단일 민족국가 보다는 수종의 인종이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민족 국가를 보다 강한 국가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로마제국이나 美國을 우월한 제도와 문화를 통해 주변 민족, 또는 열등한 토착 민족을 동화시킴으로써 강한 國族(민족)을 형성한 모범 사례로 이해하고, 중국 역시 그러한 국가, 즉 강대한 帝國이 되기를 희망한 것이다.³⁹⁾

물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강한 민족과 국민의 형성이 필수적이었다. 양계초는 민족 형성요인으로서 혈연, 언어 등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애국심이라고 파악하였다. 제 종족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룰 수 있는 '민족의식'과 국민적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강대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애국심의 고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역사의 효능도 여기에 있다고 보았다. 역사는 '애국심의 원천'으로서 '서구 열강에서 민족주의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것'이 모두 역사의 공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가 새로 중국사를 구상하게 된 배경이었다.⁴⁰⁾

그렇다면 그가 구상한 중국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위대한 중화민족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 중국이 제국과 같은 강대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한족을 중심으로 種界를 넘어서 大中國에 대한 희구가 역사 서술 구상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양계초는 우선 漢族을 根幹으로 제민족이 용화되어 이루어지는 중화 민족의 형성 과정을 밝히고, 동

38) 조선의 역사를 중국에 복속된 시기, 독립국 시기, 일본에 역속한 시기, 일본에 병탄된 시기로 나누고 특히 만주를 한대 이후 군현을 설치한 이래 대대로 기미해 온 지역으로 파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梁啓超, 「日本併吞朝鮮詳記」, 『國風報』 22·23, 『飲水室文集』 四冊.

39) 梁啓超, 「論民族競爭之大勢」, 『飲水室文集』 二冊.

40) 梁啓超, 「新史學」, 『飲水室文集』 九冊.

시에 세계와 구별되는 중국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세계사 중에서 중국사의 위치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양계초는 우선 중국의 역사 문헌을 근거로 중원에 거주하던 제 종족의 근거지를 추적하였다. 특히 동화의 주체인 한족을 중심으로 苗蠻, 蜀族, 西淮族 등 중국 경내의 古民族과 北狄(흉노) 등 關外 제 민족과의 관계를 세세하게 밝히고자 한 것이다. 중국이 다민족의 융합을 통해 이루어졌고, 따라서 강대한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논증하려는 것이었다.⁴¹⁾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가 설정한 중국사의 범주였다. 양계초는 ‘중국사’를 구상하면서 중국과 아시아 각 민족의 교섭으로 구성되는 ‘지나 문명’ 권을 설정하였다. 그것은 몽고, 티베트(西藏)는 물론 조선, 일본, 안남, 미얀마까지를 포괄하는 것이었다.⁴²⁾ 인도와 시베리아를 제외하고 전 아시아를 ‘지나 문명권’으로 설정한 것이니 일본식 동양사의 범주와 같은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범주가 현실적인 국가 주권이 미치는 의미인 국가영역과는 다른 차원임은 분명하다. 다만 地理와 種族을 매개로 그 역사강역을 모두 중국사의 범주로 파악한 것이니, 특히 이러한 ‘지나 문명권’은 과거 천하국가의 영역을 고스란히 근대국가의 영역으로 치환할 것을 전제한 것이기도 하였다. “中國은自古로 禹域, 天下만 있었지. 國은 없었다. 禹域, 天下의 疆域을 모두 國(의 영역)으로 바꾸어야 한다.”⁴³⁾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양은 중국사의 강역을 ①中國本部, ②新疆, ③淸海, ④蒙古, ⑤滿洲로 나누었다. 그리고 본부를 제외한 기타 지역을 屬部로 파악하였다. 또 인종적으로 苗種, 漢種, 티베트종, 蒙古, 匈奴, 통구스족 등 6부족을 망라하였다. 중국과 역사 관계를 맺어온 제 민족들이었다. 예컨대 통구스 종은 “조선북부에서 만주 및 흑룡강 연안에 살고 있는 東胡, 鮮卑, 靺鞨, 滿洲 등”이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목해야 할 점이 숨어 있다. 첫째는 범주 내의 종족 간의

41) 梁啓超, 1905, 「歷史上中國民族之觀察」, 『新民叢報』 65-66號; 『專集』 十一冊,

42) 梁啓超, 「亞細亞地理大勢論」, 『飲水室文集』 三冊.

43) 梁啓超, 「愛國論」, 『飲水室文集』 三冊.

관계 문제이다. 한족 중심주의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선 제 종족을 한족과의 우열 관계 속에서 인식하는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예컨대 한족과 苗族의 관계를 백인과 인디언의 관계로 등치하고, 한족을 승리자로 서술하였다. 즉 苗族은 “아메리카 인디언, 호주의 원주민처럼 역사 이전에는 중요한 종족이었으나 현재는 남부지역으로 밀려나 殘命을 유지하고 있는” “中國의 土種”에 불과하였다. 이는 “文明의 으뜸인 黃帝의 자손”으로, “황제는 곤륜산에서 나와서, 파미르고원을 넘어 중국에 들어와 황하 연안 사방에 번식하기를 수천년 만에 세계에 빛나는 이름을 떨쳤으니 이른바 아세아의 문명은 모두 우리 종이 퍼트리고 거둔 것이다.”라는 한중에 대한 인식과 대조되는 것이었다.

양계초는 또 매우 일찍부터 한족과 주변 종족을 智愚 또는 발전단계의 차이로 인식하고 있었다.

“문명인일수록 머리 쓰는 것이 자세하고 지식이 繁多하다. 禽獸는 아는 것이 간단한 고로 범과 호랑이는 사람이 능히 제지할 수 있는 바이요, 野人 또한 아는 것이 간단한 까닭에 苗, 黎, 番, 回는 비록 사나우나 (한족이) 능히 제지할 수 있는 것이다. 智愚之分이 강약을 가르는 큰 원리이다.”⁴⁴⁾

“지금의 蒙古, 回疆, 生藩, 土司, 아프리카, 남양, 아메리카, 호주의 토인들은 모두 우리 夏候氏 以前の 세계라.”⁴⁵⁾

이러한 종족주의는 중국사의 서술 계획으로 구체화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계초는 중국사의 전개 과정을 한족과 제 종족 간의 경쟁, 그리고 한족에 의한 동화과정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그에게 있어서 중국사의 주체는 夏·商·代에 이미 그 기초를 형성한 諸 夏族을 근간으로 제 종족을 동화시킴으로써 형성된 中華族이었다.⁴⁶⁾ 그리고 中原의 풍부한 지리 조건과 우수한 문

44) 梁啓超, 「西學書目表序例」, 『飲氷室文集』 一冊, 122쪽.

45) 梁啓超, 「論君政民政相參之理」, 『飲氷室文集』 二冊, 7쪽.

46) 梁啓超, 「中國歷史上民族之研究」, 『飲氷室專集』 四十二冊.

화를 지속적인 동화 발전의 동력으로 꼽았다.

양계초는 이러한 동화의 범위 역시 중국사의 범주와 마찬가지로 전 아시아로 확대하여 인식하였다. 이는 일본의 동양사 서술 방식을 원용하여 제시한 중국사 시대 구분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양계초는 중국사를 上世, 中世, 近世로 구분하였다. 黃帝에서 秦의 一統까지를 上世史, 秦에서 청 건륭 연간까지를 中世史, 그리고 건륭 이후를 近世史로 파악하고, 각각 '中國의 中國', '아세아의 中國', '세계의 中國'으로 명명한 것이다.⁴⁷⁾ 중국 민족 내부의 경쟁, 아시아 각 민족과 중국 민족과의 경쟁, 서양 각 민족 간의 교류와 교섭이 각 시대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모두 한족을 주체로 하여 苗族(上世), 흉노, 서장, 몽고, 퉁구스 각 종족(中世)이 갈등·경쟁하는 과정이었다. 제 종족의 융합을 통해 위대한 중화민족의 탄생을 설명하려는 것이었다. 특히 滿清 등 정복왕조에 대해서는 “항상 처음에는 漢種이 실패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승리하여, 결과적으로 아시아 각 종족(중국사에 포함된 제 민족)이 전체로 흡수하면서 외부의 보다 큰 別種과 구별되는 것이다.”⁴⁸⁾라고 파악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근세는 통합된 중국이 아시아 각 종족을 대표하여 西洋과 대결하는 시대였다. 전제군주시대를 대체한 국민국가를 이런 형태로 가정한 것인데, 사실상 漢族을 중심으로 통합된 大國 建設을 希求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회구는 그의 역사 서술 계획에도 투영되었다. 예컨대 신해혁명 이후 청사 편찬과 관련한 그의 주장에서 알 수 있다. 양은 당시 魏書, 元史의 예에 따라 淸史의 체제를 갖추되 高麗(朝鮮)는 유구, 安南, 버마, 태국 등과 함께 屬國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다.⁴⁹⁾ 동아시아 제 민족과의 관계를 전통

47) 당시 중국에 가장 널리 유행하였던 桑原 藏, 1900, 『初等東洋史』, 大日本圖書株式會社の 논리와 유사하다. 『中等歷史』(上·下)의 경우 1. 上古期：漢人膨脹時代 2. 中古期：漢人優勢時代, 3. 近古期：蒙古人種 最盛時代, 4. 近世期：歐人東漸時代로 편제하였다.

48) 梁啓超, 「中國史敘論」, 『飲冰室文集』 六冊, 12쪽.

49) 梁啓超, 「淸史商例初稿」, 『飲冰室專集』 八冊, 31쪽.

적인 천하질서 속에서 파악하려는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대국주의는 극단적인 국가주의로 나아갈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그것은 역사를 국가를 향한 群의 확대로서 파악하는 그의 역사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⁵⁰⁾ 실제로 양계초는 ‘國界의 초월’을 희망하였던 康有爲를 비판하고, 오히려 갈수록 민족 간의 경쟁이 더욱 드세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동시에 중국이 동양의 아리안족으로서 文化와 武力을 바탕으로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세계 민족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특히 양계초는 이러한 입장에서 『春秋』를 근거로 夷夏를 엄격하게 구별하였던 劉師培, 章炳麟을 비판하였다. 또 문화와 종족적 차이를 華夷로서 절대화한 章炳麟과 달리 양계초는 公羊傳의 長三世를 國 → 諸夏 → 天下로의 확대과정으로 해석하였다. 각 단계를 거치면서 집단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進歩요 進化라는 것이었다.

夷狄說에 대해서도 양계초는 夷狄의 범주는 중국의 확대에 따라 달라져왔으며, 아직도 西南夷 등 동화시킬 대상이 많다는 점에서 중국은 그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자부하였다.⁵¹⁾ 滿洲 역시 夷狄이지만 버릴 것이 아니라, 중국의 넓은 틀 속에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滿洲와 東北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매우 자명한 것이었다. 이미 동양을 中國으로 代稱하였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中國 외의 또 다른 민족국가를 인정할 여지는 없었다.⁵²⁾ 滿洲 역시 무한히 확대되는 중국의 일부로 편입되어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편입의 형식인데 이와 관련하여 양계초가 고려한 것은 전통적인 屬民·屬州였다. 이는 明代 기미주인 屬藩·屬州의 전통을 고려한 것이지만, 역시 전통 중

50) 梁啓超, 「開明專題論」, 『飲水室文集』十七冊, 14쪽.

51) 梁啓超, 「春秋中國夷狄辯序」, 『飲水室文集』二冊, 50쪽.

52) 양은 당시 만청정권을 內亂에 의해 일시적으로 중앙정권을 장악한 部族政權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정당한 국가권력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梁啓超, 1906. 9, 「雜答某報」, 『新民叢報』86(夏曉虹 輯, 2005, 『飲水室合集外文』, 北京大學出版社, 401~403쪽).

국의 영역 개념인 천하관의 논리 속에서 만주를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계초가 만주를 屬部로 파악한 것 역시 역사적인 함의가 다분한 것이었다.⁵³⁾ 우선 일본의 만주 침탈을 비판한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언급은 이를 잘 증명한다.

“……關外地方은 일찍부터 중국의 판도였다. 堯舜時代의 유주 영주는 현재의 동삼성 지방이다. …… 정사 기록상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전국시대 기원전 400년 이전 奉天 全省과 朝鮮은 모두 戰國七雄 중의 일국인 燕의 영토였다. 燕國은 기원전 1134년 수봉받았는데 처음 임금은 周文王의 아들이니, 中華民族의 血脈이다. 燕의 영토는 당연히 중국의 영토인 것이다. 秦始皇이 六國을 멸할 때 燕은 봉천으로 옮겨 6년을 버텼으니 기원전 226년부터 222년 사이의 일이다. 진한 통일 이후 2000년 이상 동안 이 지역은 중국의 郡縣이었으니 중간에 독자적인 무력이 접거한 경우가 있었으나 곧 회복되곤 하였다.”⁵⁴⁾

만주에 대한 역사적 연고를 강조한 셈인데, 이는 인종으로서 만주에 대한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즉 만주를 한족에 의한 동화 통합된 諸夷의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본 것이다.⁵⁵⁾ 다음의 언급은 이를 잘 함축하고 있다.

“신해혁명시기, 만청의 遜位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크다. 민족의 확대라는 하나의 측면만으로 보더라도 그 가치가 적지 않다. 원래 東胡民族과 우리는 서로 다투며 지내온 지 1700년이 넘었다. 남북조시대의 鮮卑, 모용씨 연, 탁발 위 …… 이후 거란이 와서 요라 하였고, 女眞이 달려와서 금이라 하고 滿洲가 와서 淸이라 하였다. 이들이 모두 동호족이다. …… 이들은 올 때마다 우리에게 대를 이어 동화되었는데 만주는 최후로 동화된 것이다. 이는 2000년 동안의 동호족이 완전히

53) 본부와 변부는 청말 행정제도의 실시를 근거로 구별하던 관용어이다. 織田萬, 1906, 『淸國行政法』, 上海: 廣智書局(李秀淸 點校, 2003, 中國法政大學出版社 重印).

54) 梁啓超, 1921, 『太平洋會議中兩種外論 謬』, 『飲水室文集』 十三冊.

55) 예컨대 梁啓超, 『淸代通史序』, 『飲水室文集』 四十一冊; ———, 『近代學風之地理分布』, 『飲水室文集』 四十一冊.

융합되어 완전히 중국인의 성분이 되는 것이다. 중화민족이 한 단계 넓어진 것이다.⁵⁶⁾

동호족을 ‘우리’와 區別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東胡族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狹義의 동호족은 고래에 동삼성 및 조선반도에 거주하던 자를 가르킨다. 史籍 중의 肅慎, 婁, 물길, 말갈, 고구려, 발해, 여진 등이다. 최근 만주의 중국에 들어 온 것이 이 族의 전성시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대 200여 년간 우리에게 동화되어 지금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그 민족으로서 지위를 잃었다.⁵⁷⁾

청의 멸망을 사실상 한화로 파악한 썬인데, 특히 만주족이 이미 고유의 언어와 풍속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同化的 完成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양계초가 만주를 자국사의 범주로 파악하는 논리는 매우 단순하다. 만주는 역대 이래로 중국의 군현지배를 받은 屬州였고, 범 東胡계로 분류되는 만주의 제 종족은 역대 중국에 침략과 동화를 반복하여 왔지만, 청의 멸망으로 사실상 최종적으로 동화되었다는 것이었다. 동화는 곧 한화를 의미함과 동시에 그 강역과 역사 역시 주권의 상실을 의미하였다. 동호의 역사 역시 모두 중국사로 귀속된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화이를 구별하지 않고 동화와 정복에 의해 중국의 무한한 확대를 추구하는 현실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전통적인 중화주의를 당시 유행하던 국가주의의 논리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남은 문제는 屬民으로서 동화된 만주족(기인)을 철저하게 국민화=한화하면서 새로 편입된 만주를 경

56) 梁啓超, 「五十年中國進化概論」, 『飲氷室文集』 三十九冊.

57) 梁啓超, 「中國歷史上民族之研究」, 『飲氷室專集』 四十二冊, 7쪽. 동호의 역사적 명칭 중 발해, 금, 청의 동화 과정을 언급하였으나 고구려에 대한 언급은 없다. 고구려를 전통적인 백제 신라와 더불어 고려(조선)사로 인식하던 상식의 반영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글에서 조선이 청의 속국이었다는 점을 예로 들어 강조하고 있다.

영하는 일이었다. 특히 양계초는 후자와 관련하여 일본이 대만을 경영한 것처럼 중국이 차후 경영해야 할 식민지로서 인식하였다. 당연한 귀결이었다.⁵⁸⁾

2_ 章炳태의 國粹學과 滿洲認識

청말 중국 지식인의 만주 인식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극단적인 種族主義에 기초한 排滿 革命論이다. 이는 유신 실패 이후 급속하게 확산된 것으로, 漢族 지식인들의 清朝에 실망과 瓜分의 危機에 대한 민족주의적 각성의 표현이었다. 청조가 서구의 침략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漢族이 아닌 異族 政權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滿洲 政權을 타도하고 漢族 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이러한 주장은 鄒容, 陳天華의 『革命軍』(1903), 『猛回頭』(1903) 등을 통해 다양한 논리로 표현·유포되었다. 漢族을 ‘순수한 혈연적 정체성’에 기초한 超歷史的 實體로 전제하여, 漢族의 조상으로서 黃帝를 復原하고, 청조를 禽獸로서 夷狄視하는 가운데, 國民-奴隸 담론을 통해 국민 의식의 각성을 촉구하는 형식이었다.⁵⁹⁾ 부수적으로 明末 이래의 女眞에 대한 극단적인 적개감, 특히 청조 入關時 한족에 가했던 가혹한 탄압을 강조하고, 歷代의 漢奸과 民族英雄을 典型化함으로써 滿清에 대한 국민적 復仇意識을 고취하였다. 이러한 논지는 전통적인 華夷論과 王夫之의 논리를 계승한 것이지만, 당시 일본을 통해 수용한 進化論 및 人種學, 社會學, 민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이었다.⁶⁰⁾

58) 양계초는 대만에 대한 일본의 식민 통치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방식을 만주 및 신강 몽고지역에도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梁啓超, 『遊臺灣書牘』, 『合集·專集』之二十二, 197~198쪽.

59) 沈松橋, 1997, 「我以我血薦軒轅-皇帝神話與晚清的國族建構」, 『臺灣社會研究季刊』, 28; 王明珂, 2002, 「論攀附: 近代炎黃子孫國族建構的古代基礎」,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73, 583~624쪽; 王春霞, 2005, 「漢族之史: 國史的重建」, 『排滿與民族主義』, 社會科學文獻出版社.

그런데 이러한 논리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 국수주의 역사학이었다.⁶¹⁾ 특히 장병린의 영향력이 컸다. 장병린은 역사를 매개로 국수학을 체계화하고 혁명의 논리로 이론화하였기 때문이었다.⁶²⁾ 특히 장병린은 궁극적으로 전통적인 경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 체계의 건설을 구상하면서,⁶³⁾ 그 근거이자 방법으로서 역사학을 중시하였다. 전통 지식체계를 歷史로서 포괄하고, 그 방법에 따라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한 것이다.

孔氏의 學은, 본래 歷史를 宗으로 한다. …… 『春秋』 위로는 『六經』이 있으니 孔氏의 歷史學이요, 『春秋』 아래로는 『史記』, 『漢書』 및 歷代 書誌, 傳記가 있으니 또한 孔氏의 歷史學이라. …… 혹은 말하기를 중국의 舊史는 譜牒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帝王에 속한 것이나. 世系를 모으면, 譜牒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전국에 실행되어 民生에 절실한 제도를 어찌 私家가 專有할 수 있겠는가? …… 또 중국 역사는 帝記, 年表 이외에 書志, 列傳이 있고, 또 史籍, 論議, 文學을 서술한 것이 있으니, 그 燦爛함이 불 만하다.⁶⁴⁾

- 60) 孫隆基, 2000, 「清末民族主義與黃帝崇拜之發明」, 『歷史研究』 3; 姜義華, 1993. 2, 「中華民族主義的特點及新階段」, 『二十一世紀』 15; 坂原ひろ子, 1995. 3, 「中國民族主義의 神話: 進化論·人種論·博覽會事件」, 『思想』 849.
- 61) 國粹主義는 20세기 초반 鄧實, 劉師培 등이 상해에서 조직한 國學保存會(1905) 및 그 전신이라 할 수 있는 中國教育會(1903)를 중심으로 진행된 일련의 학술 문화 운동의 논리이다. 『政藝通報』, 『國粹學報』 등을 통해 “發明國學, 保存國粹”(『國粹學報』의 창간 취지)을 표방하였다.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문화적 위기 상황을 국학의 혁신을 통해 대응하려는 것이 그 목표였다. 명치시기 일본 국수 사조의 영향을 받았지만, 중서융합을 통한 학술의 현대화를 추구하였다는 점에 특색이 있었다. 특히 역사를 중심으로 전통 학문체계의 정리를 모색하였다. 鄭師渠, 1998, 『晚清國粹派: 文化思想研究』, 北京師範大學出版社.
- 62) 장병린은 양계초의 경우처럼 체계적인 역사이론을 남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中國通史略例」, 「近史略略」, 「中國通史綱目」과 「(다)書」, 『國故論衡』 및 반만적 입장에 따른 다수의 사론을 남겼다. 종족적 민족주의를 고취함으로써 한족 중심의 국가건설을 전망하던 혁명파의 역사인식을 대변하였다. 특히 「國粹로써 種性을 擊發」하고, “역사를 통해 國性을 보존하자”는 등 선명한 사론에서 그의 역사학의 성격을 잘 알 수 있었다. 馮國康, 1999, 「章太炎清史研究述評」, 善同文教基金會 編, 『章太炎與近代中國』, 臺北: 里仁書局.
- 63) 李朝津, 1999, 「章太炎之史學」, 善同文教基金會, 위의 책, 里仁書局.

이러한 입장은 전통 역사학을 명쾌하게 비판하고 서구적인 개념을 수용한 梁啓超와는 그 방향을 달리한 것이지만, 서구 학문을 排斥하거나 復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⁶⁵⁾ 장병린에게 있어서 역사는 민족주의의 핵심 근거이자 청조 또는 서구적 근대에 의해 훼손된 한족 고유의 문화 또는 정체성을 복원(광복)할 수 있는 열쇠였다. 곧 國粹, 國性과 동일시 되었던 것이다.⁶⁶⁾

장병린은 역사 연구의 범주를 중국의 歷代 正史 및 史類만이 아니라, 經書 및 諸子書를 아우르고, 經世之學, 方輿地學 등 중국 고대 典籍 등 전통문화 전반으로 확대하였다.⁶⁷⁾ 육경 및 제자서에 대해 엄격한 사료 분석을 통한 합리적 해석을 시도하는 식이었다. 의리학의 근거로서 종교적 경전을 制度와 史籍을 考據하는 史料, 또는 方法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장병린의 역사 인식과 시도는 기본적으로 한족 중심의 종족주의에 기초한 것이었으니, 기본적으로 인종·민족을 절대적인 역사 발전의 단위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敎述의 변화는(인)종의 다름에서 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크기가 다르고, 黃白이 구별되니, 德性, 風俗 또한 다른 것이다. 옛날 바라문의 여러 종이 族別로 敎를 칭한 것과 같다. 우리의 빛나는 땅에 五德을 두루 갖추었으니, 敎는 바르지 않는 것이 없고, 種은 귀하지 않을 수가 없다.”⁶⁸⁾

章炳麟은 같은 입장에서 언어, 풍속 등 문화적 정체성을 민족 형성의 조건

64) 章太炎, 1907, 「答鐵錚」, 馬勇 編(2003), 『章太炎書信集』, 河北人民出版社, 179~180쪽.

65) “진정한 역사는 格物考徵 하듯이 중국과 서양을 牽強附會로 일치시키지 않고, 공양 학파들처럼. 함부로 우리 것을 내세우지 않는다.” 章炳麟, 1906. 7. 15, 「東京留學生歡迎會演說辭」, 『章太炎政論集』, 269쪽.

66) 章太炎, 「春秋左氏疑義答問」, 『章太炎文集』; _____, 1902. 7, 「與梁啓超」, 『章太炎書信集』, 41~43쪽.

67) 章太炎, 1902. 2. 29, 「致吳君遂書」, 『章太炎政論集』, 165~166쪽; _____, 1902. 7, 「興浙會章程」, 『經世報』 3책.

68) 章太炎, 1977, 「論學會有大益于黃人(2)宜保護」(1897. 3. 3), 『章太炎政論集』, 中華書局, 8쪽.

으로 전제하고, 터키로부터 독립한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을 사례로 들어 일민족 단위의 국가 건설을 전망하였다. 이것이 漢族의 支那와 東胡族인 滿洲를 구별하는 배만 혁명론의 근거였다.

이러한 장병린의 종족주의는 문화적 복고주의와 함께⁶⁹⁾ 만주인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과 배제를 수반하였다.⁷⁰⁾ 장래 국가인 支那를 만주족을 배제한 한족만의 국가로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이른바 개혁적 만주인에 대한 다음의 언급에서 잘 알 수 있다.

“이들 만주지식인은) 재주가 많을수록 忌漢之心이 깊을 것이요, 지혜가 많을수록 한을 제압하는 교활함이 많을 것이다. 입으로는 大同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남을 먹으려 하며, 겉으로는 平權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專制를 구한다. ……”⁷¹⁾

장병린의 이러한 종족주의는 蘇報案(1903) 이후 보다 정형화되었다. 이후 장병린은 각종 정론을 통해 神州-支那-四億同胞, 그리고 혁명을 담론화하면서 광복회를 결성하고 혁명세력을 결집하였다. 특히 ‘광복’에 대해 장병린은 “改制同族, 謂之革命, 驅逐異族 謂之光復”이라 하여 종족 혁명임을 분명히 하였다.⁷²⁾ 동시에 장병린은 이를 소수 종족의 전제에 대한 다수 인민의 부정이라는 정치적 평등주의로 정당화 하였다. “소수의 만주가 다수의 한인을 지배

69) 장병린은 스스로 변발을 자르고 양복을 착용하는 한편, 스스로 청국인이 아닌 支那人를 자처하였다. 髮과 의복은 오랑캐의 풍속이며, 양복이 그나마 중국 고대의 복장과 유사하다는 이유였다. 章炳麟, 1977, 「解髮」(1900. 8), 湯志鈞編, 『章太炎政論選集』, 中華書局, 148~149쪽.

70) 그것은 1900년 上海 愚園에서 성립한 中國議會에서 만주인의 축출 요구로 표면화되었다. 당시 장병린은 容沔, 嚴復 등 80명의 명류가 참여하여 구성한 중국 의회에서 의제인 근왕론과, 의회 구성에 만주인을 참여시킨 것을 격렬히 비판하고 즉각적인 축출을 요구하였다. 章炳麟, 「請嚴拒滿蒙人入國會狀」(1900. 8. 9), 『章炳麟書信集』, 56~57쪽(원재 『中國旬報』, 19冊); 桑兵, 2004, 「中國會議」, 『庚子勤王與晚清政局』, 北京大學出版社.

71) 章炳麟, 56~57쪽.

72) 「光復會序」(1903. 6. 10), 『蘇報』.

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정치개혁은 불가하며, 그것은 만주에 대한 復仇가 아니라 順天 革命”이라는 것이었다. 종족 혁명을 정치 혁명, 사회 혁명을 겸한 것으로 의미를 확장한 것이지만,⁷³⁾ “非我族類, 其心必異”식의 전통적 화이론이 깊숙하게 내장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병린의 역사학 및 국학 정리는 청조의 권위 쇠퇴에 따라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황제 및 한족의 기원에 대한 주장이었다.⁷⁴⁾ 章炳麟은 중국 인종 자체가 西歐에서 왔으며, 주변 종족과의 전쟁 끝에 周代 宗法制的 완성을 계기로 민족 사회가 안정적인 형성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⁷⁵⁾ 한족과 백인은 본래 一國이었으며, 식민 개척을 위해 동방에 왔다는 것이니, 중국과 서구문명의 同源성과 함께 만·한의 종족적 차이를 강조한 것이었다. 한족은 동방의 야만적 제 종족보다는 서구의 그리이스·로마 등 제 종족과 문화적 공통성이 더 많다는 것이었다.

장병린은 또 한걸음 나아가, 서구 사회학적 지식과 古文獻을 근거로 漢·滿의 차이를 文·野 = 人·獸 = 漢·戎으로 구별하였다. 『춘추』, 『좌씨전』, 王夫之의 배만사상, 그리고 서구의 인종이론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⁷⁶⁾ 동시에 장병린은 모든 문명은 種族을 단위로 하여 개별적으로 발전 진화하며, 역사적 계보상 同種이 아니면 드러난 性質이 비슷해도 같은 種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華夷의 차이를 절대화 하여 사실상 동화론을 부정한 셈이니, 滿洲 및 몽고·요·금 등 역대 이민족 정권 및 그 역사 역시 모두 부정의 대상일 뿐

73) 章太炎, 『駁革命駁議』(1903. 6), 『章太炎政論集』.

74) 물론 애초 ‘黃帝’를 한족의 조상으로 복원하여 종족주의 상징으로 제시한 사람은 劉師培였다. 황제를 국민적 정체성의 상징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일본 천황의 萬世一系에 비견하려는 뜻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 논리에서 특이한 것은 이른바 ‘黃帝東遷說’이었다. “漢族의 조상인 황제가 古 바빌로니아의 한 부족장이었고, 식민을 위해 東遷하여 원주민인 苗民을 축출하고 華夏族의 鼻祖가 되었다”는 것이다. 劉師培, 『黃帝紀年說』, 『劉師培辛亥前文選』, 3~7쪽. 이러한 논리는 프랑스 중국학자 La Couperie(1844~1894)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일세를 풍미하였다. Yu Ying-Shih, of cit, 162쪽.

75) 李朝津, 1996. 1, 「章太炎의 民族主義」, 『臺灣社會研究季刊』 21.

76) 王汎森, 1985, 『章太炎의 思想及其對儒學的衝擊』, 臺北: 時報出版有限公司, 69쪽.

이었다.⁷⁷⁾ 또 같은 맥락에서 장은 아시아의 여러 종족 중에서 禮儀 衣帶之族인 震旦, 朝鮮, 日本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를 모두 夷狄으로 규정하였다.⁷⁸⁾ 犬種(狄), 豕種(貳), 蛇種(蠻), 羊種(羌) 등은 본성이 上해서 절대 교화가 불가능하며 華夏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康有爲의 滿漢同源論, 同化論⁷⁹⁾에 대한 비판적 의미가 강했다. 康有爲가 華夷의 구분을 상대화 시키고, 만청정권의 漢化를 근거로 입헌군주론을 주장한데 대한 비판인 셈이었다.⁸⁰⁾ 한족의 입장에서 만주는 동화(한화)된 것이 아니라 억압자이기 때문에, 혁명을 통해서 타파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⁸¹⁾ 또 500만 만주인이 4억의 한인을 통치하는 상황에서 兩院制 議會를 개설하자는 것은 현재의 불합리한 정치 구조를 지속하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서구와 같은 혁명을 통해서 정치 현대화를 모색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치·문화적 차별성에 근거한 종족주의는 청조에 대한 비판 및 한족 중심의 문화 민족주의를 수반하였다.⁸²⁾ 장병린의 논리에 따르면 種族이 다르면 그 성격이 다르고 그 문화가 다른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특히 禽獸와 같은 만주족이 지배하는 한 한족의 풍습과 문화는 왜곡·위축될

77) 章太炎, 2001, 『다書 初刻本·蒙古盛衰27』, 三聯書店, 63쪽.

78) 章太炎, 2001, 위의 책, 22쪽.

79) 강유위는 몽고, 회족, 티베트와 달리 이미 만주족은 한족과 같은 문화 수준에 도달했다고 전제하고 이들을 두루 포괄하는 '中華國'의 건설을 주장하였다. 康有爲, 『答南北美洲諸華僑論中國之可行立憲不可行革命書』(光緒壬寅), 『康南海先生遺著彙刊』; ———, 『與同學諸子梁啓超等論印度亡國由於各省自立書』, 『康有爲政論集』上, 中華書局, 502쪽.

80) “康有爲는 …… 種界의 打破를 주장하면서 『匈奴列傳』을 인용하여 그 조상인 淳維는 禹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滿洲族은 東胡로서 …… 불모지에 거주하며, 언어정교, 음식 처치가 域內와 확연히 다르다. 어찌 동종이라 할 수 있는가?” 『駁康有爲論革命書』(1903. 5), 『章太炎政論集』

81) “今滿洲者 其爲漢人乎? 其爲陵制漢人乎? 堂子妖神 非郊丘之教, 髮纓珞, 非弁冕之服, 淸書國語, 非斯모(走貌)之文. 徒以尊事孔子, 奉行儒術, 崇飾觀聽, 斯乃不得已而爲之, 而卽以便其南面之術, 愚民之計. 若言同種, 卽非使滿人爲漢種, 乃適使漢人爲灣滿種” 章太炎, 『與康有爲』(1903. 5), 馬勇編(2003), 『章太炎書信集』, 河北人民出版社, 26쪽.

82) 『攘書·華夏篇』, 『劉師培辛亥前文選』, 9~10쪽.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청조의 사상 통제와 문화 정책, 사료 인멸, 文字의 獄 등은 중국인의 역사 정신의 훼손을 야기한 사건들이었다.⁸³⁾ 당시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정치적 혼란 역시 만주족의 獸性에서 비롯되었으니 法슈·제도 차원과 함께 天性和 習慣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었다.⁸⁴⁾ 反滿은 원래의 種性 회복, 즉 光復의 의미였다.

이러한 광복을 위해서는 고유한 역사와 언어 = 國粹를 연구하고 국민 도덕(혁명적 도덕)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였다.⁸⁵⁾ 특히 小學(言語), 諸子學 및 역사 연구를 유럽의 문예부흥에 버금가는 의미있는 작업이었다.⁸⁶⁾ 장병린에게 있어서 언어 연구는 곧 국가 건설의 전제로서 문화적 특색을 지닌 언어 체계의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었고,⁸⁷⁾ 제자학은 곧 중국 문화의 본령을 세우는 근거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정치 사회적 진화의 원리를 밝히고, 民氣를 고양”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족 단위의 역사 서술을 통해 민족 문화를 총체적 복원하는 것이었다.⁸⁸⁾ 특히 종족의 유래와 역사를 서술하는 가운데 夏夷의 구별을 분명히 함으로써 한족의 우월성을 밝히는 것도 목적 중의 하나였다.

장병린은 이를 위해 통사 서술을 모색하였다.⁸⁹⁾ 특히 역대 정전, 書志는 물론 사회학 및 역사서를 대량으로 참고하였다. 굳이 통사 서술을 의도한 것은 개념 및 사실 관계의 오류, 지나친 類比를 피하려는 뜻도 있었다. “오늘날 역사를 쓸 때 일대만을 전문으로 하자면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기 힘들고, 또 사실

83) 章太炎, 2001, 「哀禁書」·「哀清史」, 『(다)書』, 三聯書店, 63쪽.

84) 王汎森, 『章太炎的思想』, 80쪽.

85) 「革命之道德」(1906. 10), 『民報』 8.

86) “15세기는 유럽의 문예부흥의 시대였는데, 20세기는 아시아(亞洲) 古學의 復興시대라” 鄧實(1905. 10), 「古學復興論」, 『國粹學報』 9; 朱維錚, 1989, 「失落了的「文藝復興」」, 『五四……多元的反思』, 香港 三聯, 84쪽.

87) 「正名雜義」, 「方言」, 『(다)書』 重刻本.

88) 章太炎, 「民報一周年記念祝辭」, 『章太炎政論選集』 上, 326쪽.

89) 章太炎, 「與錢玄同書」(1906. 10. 8), 『章太炎書信集』, 99~100쪽.

을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 오로지 수천년의 通史만이 필요하되, 인물에 대한 포폄이나 사실 및 현상에 대한 서술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典志, 즉 心理, 社會, 宗教 등 여러 학문을 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장병린은 通考나 會要, 通志 및 기전을 토대로 민족사의 계통적 정리를 모색하였다. 진화론을 활용하여 중국 문명의 발전 과정을 부각시키려는 것이었다.⁹⁰⁾

여기에서 문제는 장병린이 설정한 중국사의 강역 문제이다. 장병린 역시 이를 중요한 문제로서 의식하였다. 예컨대 『世本』을 그 서사방식과 내용이 “중국사의 시간형식과 생존 공간을 특정했다.”고 하여 높게 평가하면서 중화 민족의 본원과 그 변화를 추적하는 자료로 삼은 예에서 잘 알 수 있다. 다만 장병린은 종족을 단위로 한 문명사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그 범주는 한족 諸姓의 역사적 생활 공간을 의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장병린은 華와 夷를 철저히 분리하고 이를 華夏로서 표현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장병린은 공간에 따른 환경(위경도의 차이 포함) 및 감각작용의 차이가 객관적 인식을 규정한다는 전제 하에 자연과 인간이 서로 통해서 同類로 어울려 살 수 있는 공간적 범주가 절대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⁹¹⁾ 세계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절대 公理란 있을 수 없으며, 위도에 따라 태양의 각도가 달라지면 인간이 느끼는 색채가 달라지듯이 중화문명이 통용되는 중화 세계라는 한정된 범주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用夏變夷論, 진화론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었다.

이처럼 장병린이 설정한 중국사의 공간은 전통적인 화이론적 공간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다. 그것은 왕부지 등이 구상하였던 중화의 범주, 즉 장성이남-갈석-사천-감숙 정도를 경계로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⁹²⁾

이 점은 1907년 장병린이 중화민국을 구상하면서 밝힌 강역에 대한 사고

90) 『致梁啓超書』(1902. 7), 『章太炎政論集』 167쪽.

91) 『다書』, 14~15쪽.

92) 이성규, 2005, 앞의 책, 92쪽.

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장병린은 당시 華, 夏, 漢 등은 모두 황제 이래 한족이 거주하는 공간을 異族의 그것과 구별하여 부른 이름임을 고증하고, 중화민국의 강역은 漢代 華人在 활동한 범위를 경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티베트·몽고·회족은 자결에 맡기되, 최소한 20년 정도의 중국화를 거친 이후에야 중국으로 편입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⁹³⁾ 청조의 강역을 전제로 華夏와 夷狄(胡虜)의 공간을 구별한 셈이다.

그러나 장병린의 이러한 강역관은 만주가 중국의 강역으로 정식 편입된 이후 현실과 결합하면서 구체화하였다. 신해혁명 직후 장병린은 새 공화국의 영역으로 동삼성, 신강의 편입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그곳 역시 본부와 다른 外蕃, 또는 邊疆으로 구별하였으니,⁹⁴⁾ 한족의 적극적인 이민을 통한 중국화를 거친 이후에나 본부와 대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장건에 보낸 다음의 편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동삼성과 新疆 등지는 域內와 政體가 조금 다르고, 더욱이 蒙古, 티베트는 王號와 神權을 계승하고 있으니, 총독을 두어 감리할 것이다. 이민 정책이 이루어져 언어 풍속 일체가 域中에 同化된 연후에 동등한 정치를 부여할 것이다.”⁹⁵⁾

동삼성을 化外の 땅으로 보는 전통적인 인식과 청조의 강역을 그대로 승계한 정치 현실을 절충하려는 입장이었다. 특히 화이로 대별되던 문화적 차이를 일정 정도 이민과 개발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국민국가적 통합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물론 장병린 역시 동삼성과 몽고 등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이는 임시정부시기 원세개를 견제하려는 남경 천도론에 대한 반대에서

93) 章太炎, 「中華民國解」, 『章太炎政論集』 上, 227~278쪽.

94) 章太炎, 「中華民國聯合會第一次大會演說辭」(1912. 1. 3), 『章太炎政論選集』, 532~533쪽 ; —, 「致南京參議會論建都書」(1912. 2. 13), 『章太炎政論選集』, 562~563쪽.

95) 章炳麟, 「與張君論政書」(1912. 1. 20), 『章太炎政論集』, 553쪽.

읽을 수 있겠다. 수도를 남방으로 옮길 경우 통제력이 약화되어 장성 이복을 상실하거나 심하면 화북 일대까지도 몽고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러한 장병린의 강역 인식은 1932년 일본의 만주 침략을 계기로 보다 강력하게 표현되었다. 그것은 지인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학교 교육과정에서 역사가 가장 소홀한데…… 그禍는 마침내 국가에 미치고 있다. 遼東 玄 가 한의 군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東北을 絕域으로 여긴다. 한의 右北平郡의 縣들이 많이 熱河에 있었는데, 열하를 塞外로 여긴다. 심지어 공문서에서 東三省을 滿洲라 칭하기도 한다. 만주가 성하게 된 것은 명대 때부터이고, 그 전의 鮮卑, 거란은 만주와 다른 종이다. 근세 漢人이 몇 삼천만인데, 만주인은 5분의 1에 불과하다. 東寇가 披猖으로서 僞主를 기로 쓰는 것을 당연시한다. 藩籬를 일단 없게 되면 燕 〇가 極邊이 된다. 史家들로 하여금 약간이라도 역사를 보게 하였으면 昏忘함이 여기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⁹⁶⁾

일제의 만주 침략을 계기로 역사 교육의 문제점을 자책하는 글이지만, 동삼성의 역사적 연고, 변강으로서 지정학적 중요성, 특히 다수 인구인 한족 민족적 자결주의를 근거로 중국을 강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⁷⁾ 만주족의 거주지역으로 만주와 동삼성을 구별하고, 다수 거주 종족이 한족임을 원칙으로 중국의 강역임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러한 언급은 일제의 만주 침략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표현된 것으로, 동삼성을 중국의 현실적 강역으로 편입하려는 장병린 식의 방어 논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러한 현실논리와는 별도로 여전히 역사 강역으로서 만주에 대한 인식은 화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사로의 편입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그가 극단적 배만주의·종족

96) 「與鄧之誠」, 『章太炎書信集』, 934쪽(『制言』 51期, 1939. 4. 25).

97) 馬相伯·章太炎, 1933. 2. 10, 「告世界人書」, 『申報』.

주의에도 불구하고, 망국을 역사 주권의 상실과 등치시켰던 양계초와 달리 문화적 다원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을 예시하는 것이기도 하였다.⁹⁸⁾

특히 이는 그가 조선에 대한 인식에서도 드러나는데 장병린은 조선을 문화적으로 인도, 지나는 물론 일본과 확연히 구별된다고 인식하고, 광복을 지지하였다. 중국의 일반 지식인들의 인식을 대변하였던 양계초와 달리 장병린은 조선이 대대로 일본에 문화를 전해주는 등 선진국이었음을 들어 일본의 조선지배 정책을 비판하였다.⁹⁹⁾ 물론 장병린의 종족주의적 인식과, 청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국수학의 방법론과 함께 이후 국민사학의 전개 및 만주 강역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IV. 國民史學의 전개와 滿洲의 疆域化

신사학에서 시작된 중국의 국민사학은 신해혁명, 5·4운동, 그리고 국민혁명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구체화 되었다. 국민국가 건설 단계와 짝하여 발전한 것이다. 특히 신해혁명 직후 중화민국 수립은 광대한 종족과 인종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 서술을 시대적 과제로서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五族共和가 이념으로 자리 잡고, 중화민족주의가 유행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당연한 대세였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선결되어야 했다. 우선 新史學의 연장이지만, 학술의 현대화를 바탕으로 전통 전반에 대한 비판적 정리가 그것이었다. 그것은 근대국가로서 중화민국을 전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였다. 둘째는 漢族을 중심으로 제 종족의 역사를 통합한 새로운 민족사 서술 문제였

98) 汪榮祖, 2005, 『康章合論』, 新星出版社.

99) 章炳麟, 「印度人之觀日本」, 『太炎文錄初編』; ……최근 韓國之士가 국련에 대하여 옛 땅의 광복을 표시하였으니, ……公理에 따르면 (일본)은 마땅히 高麗 밖으로 물러서야 할 것이다. 人道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일치하여 公理를 위해 노력하자. 馬相伯·章太炎, 1933. 2. 20, 「告世界人書」, 『申報』.

다. 그것은 양계초와 章炳麟의 발상을 계승하면서도 단순한 한만 또는 화이론적 논리를 극복한 새로운 차원의 중국사에 대한 요구였다.¹⁰⁰⁾

우선 주목할 것은 청조사의 정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였다. 1914년 국사관 설립 및 청사 편찬 착수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청조는 이민족 왕조였지만, “국토를 통일하고, 인민을 통치하였으며, 수년에 걸쳐 정권을 행사한” 정통왕조라는 점에서 청사 편찬이 당연시 되었다. 특히 “大清은 開國 이래 文物이 燦然하고, 治具가 갖추어지고, 영토를 넓혔으며, 마침내 문명을 수용하여 공화를 이룬 왕조”라는 점에서¹⁰¹⁾ 청조와 민국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찾으려는 논리도 대두되었다.¹⁰²⁾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학술적인 성과로서 구체화된 것은 오사운동 이후였다. 청대 학술사 및 통사 서술 시도가 그것이었다. 즉 양계초의 「前清一代思想界之脫變」(『改造雜誌』 후에 『清代學術概論』으로 출판됨)나, 『동방잡지』(1924)에 연재한 「중국근삼백년학술사」는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전자는 청대의 학술을 계몽기, 전성기, 탈분기, 쇠락기로 나누어 흐름을 서술한 것이고, 후자는 명말부터 청말 장태엄, 엄복에 이르기까지 300년간의 학술 성과를 사학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었다. 또 양계초의 제자인 蕭一山(『清代通史』(1925, 北京中華印刷局))의 청대 통사 서술 역시 같은 맥락이었다. 이러한 작업들은 청조사를 중국의 전통 속에서 규정지으려는 것으로 당시 상황에서 개창적인 의의가 컸다. 특히 청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拂拭하고, 당대의 관점에서 청대사를 평가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물론 현재적 관점이 강해서 청조의 주체였던 만주인 및 그 강역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역사학의 두드러진 추세는 과학적 역사학 및 전통 전반에 대한 비판 사조였다. 각종 고고자료의 발굴에 따른 사료의 확대 및 새로운 역사이론의 수용, 분과체제로서 역사학의 성립이라는 학문적 조건과 ‘과학’과 ‘민

100) 黃興濤, 2002, 「現代“中華民族”觀念形成的歷史考察」, 『浙江社會科學』1期.

101) 孟森, 2005, 『清史講義』, 廣西師範大學出版社, 3쪽.

102) 梁啓超, 「清史商例」, 朱師轍, 앞의 책.

주주의'를 표어로 한 반전통주의적 사조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¹⁰³⁾ 특히 북경대학, 칭화대학 등 각 대학을 중심으로 학과체제가 갖추어지면서 근대 역사학의 방법론에 입각한 현대 역사학의 건립이 시도된 것이다. 이는 '整理國故', '古史辨' 운동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 학술' 운동으로 표현되었다.

물론 이는 대상과 방법 면에서 장병린을 계승하고 있었다. 예컨대 호적이 정리국고를 표방하면서 그 대상을 민족, 언어, 문자, 경제, 정치 등을 포괄하는 중국 문화사를 든 것이나, "우리들의 유일한 목적은 각 시대의 추세 속에서 각 시대의 전설과 고사를 해석하는 것……"¹⁰⁴⁾이라는 고사변의 표어가 그러하다. 전통의 해부라는 측면에서 장병린을 계승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가치를 배제한 철저한 실증을 강조하고, 언어, 민속 중심의 평민주의적 입장을 중시함으로써 스스로를 장병린과 차별화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중화문명의 기원을 '의고' 적인 실증주의에 따라 해부하였다. 특히 기왕의 삼황오제 중심의 일원론적 중화문명론을 비판·해체하고자 하였다. 顧詒綱의 累層的 偽造說이나 傅斯年的 夷夏東西說 등은 그러한 예였다. 삼황오제를 전구 이후의 위작으로 보거나, 중국문명의 일원성을 부정한 논리였다. 이러한 주장은 물론 章炳麟, 王國維 등의 비판을 받았지만,¹⁰⁵⁾ 국학의 범주 또는 중국문명의 범주 자체를 사료와 시각 면에서 현격하게 확대시켰다. 왕국유 스스로가 서구 철학과 심리, 언어학을 배경으로 광범위 자료를 구사한 것, 특히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서북사 연구나 陳寅恪이 중앙아시아, 그리고 돈황의 자료를 활용한 異族에 대한 연구가 그러한 예이다.¹⁰⁶⁾ 이들은 다원적 고대사상의 구축과 소수민족에 대한 개척적 연구를 통해서 한족 중심의 시각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동북

103) 王汎森, 2001, 『民國的新史學及其批評者』, 羅志田, 『20世紀的中國：學術與社會』(史學卷), 山東人民出版社.

104) 顧詒綱, 『古史辨序』.

105) 王國維, 『古史新證』, 清華大學出版社, 1~3쪽; 章炳麟, 『致柳翼謨(治徵)書』(1922. 6. 15), 『章太炎書信集』, 740쪽.

106) 王汎森, 2001, 앞의 책, 61~67쪽.

관련 연구, 특히 만주를 주체로 한 역사는 서술은 물론 제 종족사를 통합한 중국사 서술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만문당안 등 자료정리나 이용이 한계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른바 만몽사를 본격적으로 중국사에 편입시키면서 통사 서술을 모색한 것은 1930년대 이후 민족 위기의식의 결과였다. 일본의 침략에 따른 민족적 위기의식과 국민 동원의 절박성, 그리고 1920년대 시작된 역사학의 현대화 과정과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수용이라는 두 과정이 선결적인 조건이었다.

오단계설에 바탕을 둔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은 1920년대 말부터 연구 성과를 내기 시작하여 연안시기에 전형화 되었다. 항전의 승리를 역사적인 필연성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세계사적인 보편성에 입각해서 설명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동시에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은 혁명과 관련한 論戰거리를 제공하면서 통사체 서술을 가능케 하는 형식을 제공하였다.¹⁰⁷⁾ 대표적인 것이 范文의 『中國通史簡編』(上冊, 1941; 中冊, 1943; 1947)¹⁰⁸⁾이었다.

범문란의 저서는 역사 유산을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정리함으로써 그 대중화를 추구하였다. 그런데 중국사를 오단계설에 입각하여 설명하면서도 한족과 외족의 투쟁관계를 강조하는 데 그 특색이 있었다. 아래와 같은 단원명에서 잘 알 수 있다.¹⁰⁹⁾

- ① 原始共同體에서 中央集權의 民族國家의 成立
- ② 민족통일적 중앙집권적 봉건국가 성립후 대외확장에서 외족의 내침까지
- ③ 봉건제도의 나선식의 계속발전에서 서양 자본주의의 침입까지

107) 呂振羽, 1941. 3, 『簡明 中國通史』, 전백찬, 『中國史綱簡編』, 『中國通史簡編』.

108) 범문란의 저서는 1940년대 연안에서 간부학교 교육용 교재로서 모택동 등 중국공산당 상층 인사의 역사 인식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시 모택동은 역사학습과 연구를 마르크스주의 이론 및 실제와 같은 위상에 두면서, 중공당사와 함께 중국 근대사를 중시하였다(毛澤東, 1991, 「中國共產黨在民族戰爭中的地位」, 『毛澤東選集』 2, 人民出版社, 533~534쪽).

109) 范文, 『中國通史簡編』.

중앙집권적 ‘민족국가’의 성립과 확장, 외족의 침입에 대한 민족적 저항이라는 주제와 사회발전 오단계설을 결합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논리의 열개는 漢族과 外族의 침략·동화에 맞추고 있었는데, 예컨대 南北朝時期 北朝를 ‘異族同化時代’, 금과 남송의 대립을 ‘外族의 북방침입과 남북 분열시대’로 서술하고 있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또 清代史와 관련해서는 ‘外族統治, 엄격한 쇄국, 社會政體, 서양자본주의의 침입시대’라는 단원 아래 入關時의 반청운동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였다. 사실상 장병린의 반청적인 인식과 양계초의 동화론을 결합한 것으로 滿洲를 중국사의 주체로 포섭하기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만주를 外族으로 보는 인식은 당시 중국의 일반적 상식이었다. 예컨대 일제의 만주 침략을 계기로 기획된 『동북통사』의 집필에 참여한 蔣廷 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만주를 입관을 전후로 外族과 변강으로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음은 여전하다.

“만주는 청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르다. 종전에 동북에서 我族과 서로 겨룬 것은 당지의 부락이 아니라 가까운 경내의 민족이었다. 그들은 我族에 비해 문화 정도가 낮았다. 그러나 최근 3백년의 형세는 매우 달라서 청초에서 현재까지 3백년 동안 동북은 처음에는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고 최근에는 서양화된 일본에게 점령된 가운데 기타 열강이 손을 뻗치고 있다.”¹¹⁰⁾

이같은 한족 중심의 역사 인식은 대중적인 통사체제를 통해 더욱 확산되었다. 예컨대 당시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대중에게 읽힌 呂思勉¹¹¹⁾의 『白話本

110) 蔣廷 , 1932, 「最近三百年東北外患史」, 『清華學報』 8卷1期, 2006(重印), 『中國近代史大綱』, 江蘇教育出版社, 100쪽.

111) 呂思勉(1884~1957)은 광화대학 역사계 주임을 거쳐 화동사대 교수를 역임하였다. 건국초기 중등학교, 고등학교 교재편찬에도 깊이 간여하였다. 『白話本中國史』 四冊은 상해대학의 문과학생의 학습교재로 편찬된 것으로 대중적으로 장기간 가장 많이 읽힌 책이다. 상책(정치사)은 1940년 開明書店에서, 하책(문화사)은 1945년 출판되었다.

『中國通史』(1928)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이 경우 중국사를 한족을 중심으로 한 민족의 기원과 발전, 확대, 투쟁 등 전형적인 종족사 형태를 취하였다. 특히 한족에 의한 제 민족의 동화와 그를 통한 중국문화의 확산으로 중국사 서술의 뼈대를 구성하였다. 이는 책머리에서부터 잘 드러났다.

“중국은 …… 많은 소민족을 융합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중 또한 하나의 주체가 있는 법이니, 중국 민족의 주체는 말할 것도 없이 한족이다.” “한족의 문화가 높아서 주변민족을 동화시키고 그에 따라 강역도 점차 넓어졌다.”¹¹²⁾

이러한 인식에서 중국문화의 주도자로서 한족의 형성과 북방, 동방 제 민족과의 관계가 중요한 주제였다. 물론 주체가 한족인만큼 동방 제 민족은 그에 따른 동화의 대상에 불과하였다. 특히 한족주의는 과거 화이론적 발상을 바탕으로 깔기도 하였다.

“北朝의 君主는 荒淫暴虐한 경우도 있고, 麗政道治한 경우도 있었다. 전자는 胡風을 대표하고, 후자는 漢化를 대표한다. 수문제는 後者の 전형이고, 양제는 전자의 전형이다.”¹¹³⁾

사실상 화이론은 遼金元史에 두루 적용되었다. 다만 한족에 의한 문화적 동화 및 확산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계초의 논리 틀을 계승한 것이었다. 이 점은 제 종족을 연원적으로 분류한 뒤, 한족에 의한 동화과정을 밝히는 동방 제 민족에 대한 서술에서 두드러졌다. 다만 그 문화전파의 매개로서 조선의 역할을 중시한 점에 특색이 있었다.

“遼東 遼西는 기원전 4세기부터 中國의 郡縣이었으나, 中原에서 거리

112) 呂思勉, 1992, 『呂著中國通史』, 華東師範大學出版社, 308·358쪽.

113) 呂思勉, 1992, 위의 책, 406쪽.

가 멀어 통치력이 미치지 못했다. …… 吉林의 東北地域은 역대 세력이 모두 기미할 뿐이었다. …… 이 지역 중에서 송화강 유역이 가장 기름진데, 그 땅은 조선과 매우 가까워서, 중국 문화는 朝鮮으로부터 동심원을 그리면서 그 땅의 여진민족을 간접적으로 개화시켰다. 발해, 금, 청의 勃興이 모두 이와 같다.”

중국사의 주체인 한족 문화가 조선을 거쳐 뒤늦게 만주에 전파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처럼 조선을 특별하게 취급한 것은 문화전파에 따른 동화론을 직접 동북 제 민족사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 때문이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선의 독자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呂思勉은 조선은 중국 내지에 있던 기자조선이 한반도에 옮겨간 것으로, 한무제에 의한 고조선 침략 이래 중국화 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동북의 문명은 대략 요동·요서와 한사군을 경계로 한다. 그 이남은 중국 문명의 젖을 먹은 貊族이고 북쪽은 開化하지 못한 滿族이니, 漢代에는 炖婁이고 이후 勿吉, 靺鞨이다. 맥족 세력은 전한시 이미 장춘 부근에 이르러 부여국을 세웠고, 후한시 通貢했다. 晉初에 선비 모용씨에 파괴되어 이후 요동요서 이북은 모두 선비와 말갈의 수중에 들어갔다. 맥족은 조선반도로 방향을 바꾸어 발전하였다. 그 중 일족이 고구려로서 중국이 동북에 대한 실력이 쇠퇴한 틈을 타 독립국을 이루었다. 모용씨가 중원에 들어온 이후 고구려는 요동을 병합하여, 요서에 미쳤으며 그 지족이 남쪽에 백제를 세웠다. 반도의 남부는 진 이래로 漢인이 잡거하고 있어서 秦韓이라 하였다. 후에 자립하여 신라가 되었다. 고구려가 강성하여 백제 신라가 연합하여 고구려를 제어하였으나, 후에 백제가 고구려에 오로지 의부하자 고립된 신라는 부득불 중국에 구원을 요청하면서 수당과 백제 고구려가 분쟁하는 원인이 되었다.”¹¹⁴⁾

“조선반도의 주요 민족인 맥족은 자고로 한족문화에 점차 물들었는

114) 呂思勉, 1992, 앞의 책, 338·408쪽.

데, 다시 이 긴 시간(한사군)의 보육을 거치면서 한화가 더욱 심해지고 반도 남부인 삼한에도 미쳤다. 해동의 일본과 함께 아시아 동북부에서 중국문화의 최대의 근거지일 뿐이다.”¹¹⁵⁾

물론 이러한 서술은 일제 침략에 대한 투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초점은 중국화 과정에 있었으니, 동북의 제 종족과 중원왕조와의 관계를 문화적인 동화와 복속관계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조선의 경우 정치적 관계는 애매한 점이 있지만 예외는 아니었다. 모두 중국적 세계가 확대되는 공간을 묘사한 것이다. 사실상 양계초의 논리를 계승하여 구체화한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겠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동북의 제 민족을 주체로 한 역사 인식을 획득하기는 어려웠다.

강역으로서 동북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1930년대 顧詰剛과 그가 주도한 禹貢學會(1935), 邊疆史地學會(1936)의 활동이다. 특히 顧詰綱, 譚其讓, 史念海 등이 주도한 『우공』은 일제의 침략과 만철연구소의 만주 관련 연구에 자극받아 등장한 것으로 주로 동북의 역사적 연혁 고증에 치중하였다. 물론 모든 기사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동북에 대한 역사지리 연구를 통해 역사강역으로서 논거를 개발하는데 기여하였다.¹¹⁶⁾

이런 점에서 1941년 간행한 金毓의 『동북통사』는 동북사에 관한 한 대표적인 저작이었다. 이 책의 저술 동기는 일제의 만선사관에 맞서 동북지역을 중국사의 범주 속에서 정당화 함으로써 영토수복의 근거를 밝히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고대사의 경우 동북에 출현하였던 제 종족을 滿洲族과 夫餘族 두 계통으로 정리하는 한편, 선사시대 이래 한족의 이주와 개발, 즉 한화과정 및 역대 중앙정권과 동북지역과의 관계를 서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만선

115) 呂思勉, 1992, 앞의 책, 360쪽.

116) 그러나 이러한 지리학은 전통적인 체제에서 『禹貢』, 『漢書』, 『地理志』 등이 그러하듯 역사학의 보조학문으로서 역사를 읽을 때 공간개념을 제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많았다. 姜義華 主編, 2005. 9, 『二十世紀中國社會科學：歷史學卷』, 上海人民出版社, 294~295·300쪽.

사가 포괄하는 한반도 북부 및 중국의 동북지방이 古來로 중국 중앙정권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논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尙書』, 『史記』, 『朝鮮傳』 등 역대 사서의 관련 기사를 토대로 箕子의 東適과 周에 의한 虜, 燕·漢에 의한 郡縣지배와 경략 등을 충실하게 서술하는 한편, 遼·金·元에 대해서 전면적인 서술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체제는 『만주원류고』의 서술의 기초 위에서 중국의 정통왕조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역전시킨 것에 불과한 것으로, 동북의 자율성보다는 중앙 한족정권의 일부로 포섭시키려는 의도가 역력하였다.

이러한 한족주의는 일제의 항일전쟁이 격렬해질수록 더욱 심화되었다. 문화적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錢穆의 서술¹¹⁷⁾은 대표적인 경우이다. 민족주의의 핵심으로서 문화를 중시하면서 한족 정영문화의 골자를 주로 서술하고 있으니 동북을 역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었다. 청조를 협의의 부족정권 정도로 서술할 뿐만 아니라 청초 출사한 명의 사대부를 漢奸으로 표현하는 등 장병린 류의 청사 인식에 충실하였다. 일제에 대한 저항을 시대적 과제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한족주의가 역력함을 알 수 있다.

물론 항전을 거치면서 이에 대한 반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소수민족 출신이었던 伯贊의 한족주의적 역사 인식에 대한 비판은 정곡을 찌르는 것이었다.

“중국의 역사가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모두 漢族主義를 중심으로 역사를 처리하였다.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중국사 저술은 모두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 모두 大漢族史일 뿐이다. …… 眞正한 中國史는 大漢族 및 그 외 중국 境內에 거주하는 기타 종족의 역사 활동의 總和여야 한다. 중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족 중심의 협애한 종족주의적 입장을 버리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大漢族 및 기타 민족을 모두 중국사를 구성하는 역사단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역사 단위의 상호 교류 중에서 중국사의 전면적 운동과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¹¹⁸⁾

117) 錢穆, 1943, 『國史大綱』, 商務印書館.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의 전거인 역대 정사 및 전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였다.

“諸夏와 夷狄를 안팎으로 구별하는 것”은 춘추이래의 좁은 종족사상이다. 이는 24사에 가득 차 있다. 24사는 모두 대한족을 중심으로 하여서 국내 기타 종족의 활동은, 四夷列傳에 넣거나, 또는 전혀 기록이 없다. 예컨대, 『삼국지』의 「족지」, 「오지」 및 『진서』, 『북제서』는 모두 列傳이 없다. 『四夷列傳』이 있어도, 그 기록이 지극히 소략하여서 中原王朝와 전쟁을 하거나 중대한 교섭이 있어야 한번 나올 뿐이다. 각 종족의 연원 및 자기의 발전에 대해서는 거의 계통적인 기록이 없다. 있어도 각 한족의 후예라고 불히거나, 그 종족을 부정함으로써 모욕을 더하는 것이다. 전자는 匈奴를 夏桀의 후예라 하거나 朝鮮을 箕子의 후예라 하는 것이요, 후자는 北狄을 犬羊과 같은 種族이라 하고, 南蠻을 ‘狃犍’라 하는 것이다. 또 사방 국가에 대한 한족의 침략은 왕화와 교화의 확대라고 서술하고 기타 종족이 중원을 향해 발전하면, 예컨대 흉노가 장성을 넘거나, ……동호가 요동을 향하기만 하면… 모두 叛變이요 入寇라 표현한다. 한족이 명명백백하게 외족을 향해 미너를 바치고 세공을 바치며 칭신 칭질하면, 그것을 미화하여 ‘懷柔’라 하고, 반대로 기타 종족이 중원에 와서 무역을 구하면 꼭 ‘四夷來往’이라고 한다. 이러한 편견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¹¹⁹⁾

중국의 전통 사서에 근거한 중화주의적 역사 인식을 비판하면서 제 종족을 통합을 통한 중국사 서술의 방향을 밝힌 셈이다. 물론 이러한 입장에 따라 소수민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동북에 대한 연구 역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다만 이후 주류가 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은 기본적으로 제 종족의 역사를 사회발전 단계에 따라 선진과 후진으로 구별함으로써 사회주의 체

118) 伯贊, 2000, 『略論中國史研究』, 『歷史哲學教程』, 河北教育出版社, 260~261쪽 (原載 重慶『學習生活』10卷5期, 1943. 5. 1).

119) 伯贊, 2005, 『略論中國文獻學上的史料』(1945. 8), 『史料與史學』, 北京出版社, 30~31쪽(原載『史料與史學』(1946), 上海國際服務社).

제의 성립을 정당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동북을 중심에 넣을 여유는 없었다. 게다가 해방 이후에도 여전한 변강문제는 ‘정치지리’ 차원의 연구가 성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에서 동북공정의 논리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의 근대 역사학이 역사 강역으로서 동북을 포섭하는 논리들을 살펴보았다. 국토 또는 疆域에 대한 인식은 민족국가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강역에 대한 인식은 오랜 역사적 경험과 국민국가적 통합 과정에서 형성되며, 영토, 인종, 문화적 정체성을 기초로 민족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계통적으로 서술하는 국민사학=국사 통해 구체화된다.

중국은 과거 청 제국의 영역과 민족을 계승하면서 현재와 같은 거대 국가로 탄생하였다. 따라서 境內的 다양한 이민족과 그 강역을 민족국가의 틀로 수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민사학은 이민족이자 지배종족인 만주와 그 강역 편입이 핵심적인 과제였다. 그러나 만주는 전통적으로 만주는 화와 구별되는 이로써 인식되는 공간이었을 뿐 아니라, 근대국가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변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 편입이 쉽지는 않았다.

중국의 국민사학이 만주를 역사강역으로 편입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다. 우선 서구형 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근대주의·국가주의로 포장된 논리였다. 청조의 영역을 새로운 국가영역으로 포섭하되 한만관계를 우열론에 입각하여 처리하고, 전체 강역을 본부와 속부의 구별하면서 한족이 주도하는 거대 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논리였다. 양계초로 대표되는 이러한 입장은 한족과 제 종족은 동화와 복속 관계로 파악하면서 중국의 무한한 확대를 추구하는 논리였다. 과거의 천하 인식을 근대적인 국가주의 논리로 개조한

것으로 만주를 새로 획득한 식민지로 인식한 것은 대표적인 예였다.

다른 한 계열은 전통적인 화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한족 중심의 중국 건설을 지향하는 논리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특히 장병린 등의 국수주의가 대표적이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중국사는 한족의 기원과 그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었고, 만주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중화의 세계를 방어하기 위한 변강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장병린은 정치 문화 등 역사적 발전단위를 종족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 다원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도 있었다.

이러한 두 논리는 1920년대 역사학의 과학화 단계와 마르크시즘을 수용한 1930년대 계통적인 통사 서술로 구체화 되었다. 范文蘭의 『중국통사강요』나, 呂思勉의 『중국통사』는 그 대표적인 예였다. 이들은 중국사의 주역으로 한족을 내세우는 한편, 한족과 동방 제 종족과의 관계를 동화와 개척의 관계로 인식하였다. 사실상 양계초와 장병린의 논리를 현실적 필요에 따라 계승한 것이다. 물론 金毓의 『동북통사』의 경우처럼 동북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가 서술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 초점은 모두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두되 종족주의·문화주의적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사실상 최근에 이르기까지 중국인들의 동북에 대한 인식은 중국 문화에 의한 동화·정복의 대상이거나, 중국에 부수하여 연관되는 변강으로서의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셈이다.

특히 이러한 인식은 모두 한족주의를 기초로 한 것으로 그에 따른 논리의 전거인 정사체제의 재해석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반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원인에 대해서는 차후의 검토가 요망된다.

[ABSTRACT]The Viewpoint on National Territory and Race in National
Historiography of Modern China

Oh, Byung - Soo

Territory is essential element for constituting Imaging Community and the symbol of National Identity. National history is the core system makes it. This these is to clarify this Chinese nationalism by making an analysis of the Manchuria view of modern Chinese historiography.

Unification problem of Manchuria race region was presented as a core issue of Nation building in the early 20c China. But the direction was appeared as two tendencies. One was Yang Qi Chao's position of political nationalism, and the other was Zhang Tai yan's position of racial-nationalism.

The former included the territory and Manchurian of Qing as a new national territory and people. But he dealt it with on the theory of evolution, distinguished all territory as headquarter and vassal department and thus intended to construct great nation guided by han. The latter succeeded traditional hwa-yi theory(華夷論), wanted to make the Chinese history that regarded the Han race as a center on the position of culture. These two theories were embodied by National History in 1930s. But that is only writing about regional history in view on central light.

keywords

Territory-view, Race National history, Yang Qi Chao, Zhang Tai yan



清代 ‘滿洲’ 지역 행정체제의 변화

— ‘駐防體制’ 에서 ‘州縣體制’ 로 —

구 범 진

「동북아역사논총」 14호

동북아역사재단

2006年 12月

清代 '滿洲' 지역 행정체제의 변화

- '駐防體制' 에서 '州縣縉體制' 로 -

구 범 진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조교수

I. 緒論

최근 우리나라의 언론계와 학술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바 있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귀속 문제는, 근대 국민국가의 '영토' 개념이 19세기 후반 이후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어떤 양태로 수용되었는가를 검토하지 않고는 제대로 접근할 수 없는 논제라고 판단된다. 이 문제는 관련 당사자들의 현실적 이해 계산에만 휘둘리는 시각을 통해서서는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성격인 만큼, 장기간에 걸친 역사의 변화를 시야에 넣은 상태에서 문제의 해법을 추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전통 왕조국가가 근대 국민국가(또는 민족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은 우리의 눈길을 강하게 끌어당긴다.

중국이 오늘날의 '영토'와 민족 구성을 갖게 된 역사적 연원을 따져 보면, 그것이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란 별로 어렵지 않다. 漢族이 건설한 왕조국가였던 明朝가 17세기 전반에 멸망하지 않고 20세기 초까지 지속되었을 경우를 상상해 보자. 아마도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은 현재의

50%에도 채 못 미치는 약 400만 km²의 영토를 보유한 漢族의 민족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각각의 지역에 어떤 이름의 근대국가가 건설되었을까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날 중국의 ‘東北’,¹⁾ 몽골, 신강, 티베트 등이 중국 국민국가의 일부로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오늘날 중국의 ‘영토’와 민족 구성은 清代에서 그 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淸朝의 藩部(몽골, 신강, 티베트)에 대한 지배는 “느슨한 다원적 지배”로,²⁾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국제질서에서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어느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를 ‘영토’로 인정하는 근대 국민국가의 개념에 기초한 근대적인 국제질서 속에서는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에 청조는 19세기 말부터 근대적 국제질서 속에서 배타적 주권이 인정되는 ‘영토’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본격화하였다. 하지만 20세기 초에 벌어진 청조의 멸망이라는 중대 사건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영토’와 관련된 난제들을 던져주었다. 예컨대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이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청조와 티베트의 역사적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외몽골’의 독립과 ‘내몽골’의 중국 귀속 역시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는 결코 쉽사리 논단을 내릴 문제가 아니다. 신강의 무슬림 공동체가 그 지역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지도 선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우리에게 ‘동북공정’이나 고구려사 문제, 또는 ‘간도’ 귀속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東北’의 경우는 몽골, 신강, 티베트 등과 또 다른 독특한 특성을 안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문제가 더 복잡하다고도 할 수 있다. ‘동북’

1) 이 글에서는 오늘날 중국 영토의 동북부에 대하여 ‘東北’이라는 용어와 ‘滿洲’라는 용어를 동시에 사용할 것이지만, 餘論의 부제에서 엿볼 수 있듯이 두 용어의 용법은 엄격하게 구분할 것이다. 즉 ‘동북’은 中華人民共和國의 동북부를 지칭할 때 사용할 것이고, ‘만주’는 淸의 동북부를 가리킬 때 사용할 것이다. 한편, ‘만주’라는 말은 원래 ‘女眞’을 대체한 族名이었으나, 19세기에 이르러 地名으로서의 용례도 정착하였다(Elliot, Mark C., 2000, “The Limits of Tartary: Manchuria in Imperial and National Geographie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9-3 참조).

2) 오쿠무라 사토시, 박선영 옮김, 2000, 『새롭게 쓴 중국 현대사』, 서울 : 소나무, 59쪽.

지역은 몽골, 신강, 티베트 등과는 인구 구성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근대 전환기의 '滿洲' 는 더 이상 '만주족' 의 땅이 아니었던 것이다. '封禁' 의 해제와 철로의 건설 등에 힘을 입어 漢人의 이주가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만주' 의 '漢化' 와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義和團戰爭 이후 한층 노골화된 러시아의 영토적 야심 때문에 청조가 더 이상 '만주' 의 전통적인 통치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의화단전쟁 이후 청조는 근대 국민국가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개혁, 즉 新政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근대 국민국가를 향한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명확한 국경선을 그어 '영토' 를 확정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 동안 清末의 '만주' 에 대한 연구는 대개가 청조 '봉금' 정책의 해제와 한인의 이주 및 지역 개발, 그리고 '建省改制' (東三省의 성립)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중국에서는 이루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고, 국내에서도 숫자는 적지만 수준 높은 연구 성과가 나온 것이 사실이다.³⁾ 그러나 앞서 지적한 사실들을 놓고 볼 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만주' 는 단순히 지역개발사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중국의 왕조국가가 근대 국민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대적 의미의 '영토' 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를 검토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인식에서 출발하여,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청조가 '滿洲' 에 대한 통치체제를 어떻게 바꾸어 나갔는지 고찰해보려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청대 중기에 해당하는 18세기 후반 '만주' 의 행정체제와 청말 신정시기의 행정체제를 省級 아래 단위까지 비교하여, 그 성격의 변화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근대 국민국가의 '영토' 를 확정하려는 청조의 노력이 이 지역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가,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는 무엇이었는가를 검토해볼 것이다. 이와 같은 본고의 시도는 '영토' 문제와 관

3) 윤휘탁, 2001, 「'邊地' 에서 '內地' 로 : 中國人 移民과 滿洲(國)」, 『中國史研究』 16 ;李志英, 2004, 『清末 東北地域의 行政改編과 그 意味 : 1907年의 建省改制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석사학위논문. 기타 외국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이 두 논문의 序論을 참조.

련하여 지난 100여 년 동안 중국의 국가가 밝아온 궤적을 되짚어보고 그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힌다는 견지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되리라 기대해본다.

II. 清代 中期 ‘滿洲’ 행정체제의 性格 : ‘駐防體制’

1_ 清代 中期 ‘滿洲’ 의 행정체제

청조의 ‘만주’에 대한 행정은 단일한 제도에 의해 운영되지 않았다. 행정의 대상이 되는 지역과 대상 주민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의 제도가 적용되었다. 청대 중기에 해당하는 18세기 후반, ‘만주’의 행정체제를 구성했던 제도는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즉 ① 八旗制度, ② 州縣制度, ③ 盟旗制度, ④ (U)冊制度 등이 그것이다.⁴⁾ 이들 제도는 각각 ① 旗籍戶口, ② 民籍戶口, ③ 蒙民, ④ 기타 소수 부족 등, 당시 ‘만주’에 거주하고 있던 네 종류의 주민에 대한 지배에 적용되고 있었다.

1) 奉天將軍과 그 휘하의 八旗駐防

順治 원년(1644)의 入關 이후, 청조는 왕조의 발상지인 ‘만주’에 八旗駐防을 설치하였다.⁵⁾ 팔기주방이 가장 먼저 설치된 곳은 盛京이었다. 순치 원년 8월 북경으로 천도를 단행한 청조는, 본래의 수도였던 성경을 陪都로 삼고, 正黃

4) 冬 主編, 1999a, 『中國東北史』 第4卷,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281쪽.

5) 이하 ‘만주’의 팔기주방에 관한 서술은 별도의 주석을 달지 않는 한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한 것이다. 『清史稿』 권117, 권130(1977), 北京: 中華書局; 冬 主編, 1999a, 앞의 책, 1281~1346쪽; 馬汝珩 等 主編, 1998, 『清代邊疆開發』,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380~383쪽; 劉子揚, 1994, 『清代地方官制考』, 北京: 紫禁城出版社, 303~322쪽; 張博泉 等, 1981, 『東北歷代疆域史』,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297~316쪽; 定宜庄, 2002, 『清代八旗駐防研究』,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59~83쪽.

旗 內大臣 何洛會에게 성경 留守의 책임을 맡겼다. 내대신은 이듬해 阿立哈大(alihada: 總管)로 개칭되었다가, 순치 3년(1646) 5월에 다시 昂邦章京(amban janggin)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康熙 원년(1662)에는 성경의 昂邦章京을 鎮守遼東等處將軍으로 개칭하였고, 강희 4년(1665) 鎮守奉天等處將軍을 거쳐, 乾隆 12년(1747)에 다시 鎮守盛京等處將軍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이를 줄여서 성경장군이라 불렀다. 그러나 성경장군은 관습적으로 강희 연간의 명칭인 봉천장군으로 불렸으므로, 본고의 이하 서술에서도 봉천장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봉천장군의 관할구역은 건륭 12년부터 盛京省(이하 본고에서는 奉天省으로 통일)으로 불렸지만,⁶⁾ 이는 어디까지 편의적인 명칭이었을 뿐으로, 봉천장군 관할구역의 행정체제가 다른 直省의 府廳州縣과 같았다는 의미는 아니다.⁷⁾ 강희 연간까지 봉천성의 모든 팔기주방은 봉천장군의 직할 아래에 있었지만, 雍正 5년(1727)부터는 세 명의 副都統이 駐防 各城의 관리를 분담하기 시작했다. 盛京城의 盛京副都統은 興京城, 遼陽城, 開原城의 城守尉와 牛莊城의 防守尉, 그리고 鐵嶺城과 撫順城의 防禦 등을 관할하였다. 熊岳城의 熊岳副都統은 蓋平城, 金州城, 復州城, 岫巖城, 鳳凰城의 城守尉와 旅順의 水師營을 맡았다. 錦州城의 錦州副都統은 義州城의 城守尉와 廣寧城의 防守尉를 관할 아래에 두었다. 各城의 주방 장령들은 또한 인근의 邊門駐防과 分○駐防을 나누어 맡았다. 明水塘邊門을 비롯한 서부의 10개 변문주방은 금주부도통, 의주성수위, 광녕방수위, 개원성수위 등이 나누어 관리하였다.⁸⁾ 금주부도통은 寧遠城, 中前所城, 中後所城, 小凌河城 등의 分○駐防을, 광녕방수위는 巨流河, 白旗堡, 小黑山, 閭陽驛 등의 分○駐防을 책임졌다. 건륭 말년 防守尉(정4품) 이상

6) 牛漢平 主編, 1990, 『清代政區沿革綜表』, 北京: 中國地圖出版社, 79쪽.

7) 청대 直省의 府廳州縣과 그 배치 원리에 대해서는, 劉子揚, 1994, 위의 책, 北京: 紫禁城出版社, 96~114쪽; G. William, Skinner, 1977, "Cities and the Hierarchy of Local Systems," Skinner, ed., *The C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275~351 등을 참조.

8) 鳳凰城邊門, 柞陽邊門, 莫廠邊門, 汪清邊門, 英額邊門, 威遠堡邊門 등 동부의 6개 변문주방은 盛京兵部의 관할 아래에 있었다(冬 主編, 1999a, 앞의 책, 1286쪽).

의 주방 장령이 주둔했던 專城駐防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奉天將軍 휘하의 八旗駐防

駐防地	長官	隸下 駐防地
盛京城	副都統	
興京城	城守尉	撫順城(防禦)
遼陽城	城守尉	
開原城	城守尉	鐵嶺城(防禦), 法庫邊門
牛莊城	防守尉	
熊岳城	副都統	
復州城	城守尉	
金州城	城守尉	
岫巖城	城守尉	
鳳凰城	城守尉	
蓋州城	防守尉	
錦州城	副都統	寧遠城, 中前所城, 中後所城, 小凌河城 明水塘邊門, 白石咀邊門, 梨樹溝邊門, 新臺邊門, 松嶺子邊門
義州城	城守尉	九關臺邊門, 清河邊門, 白土廠邊門
廣寧城	防守尉	巨流河, 白旗堡, 小黑山, 閭陽驛 彰武臺邊門

2) 吉林將軍과 그 휘하의 八旗駐防

순치 10년(1653) 청조는 寧古塔城에 昂邦章京을 설치하고 盛京昂邦章京 관할 구역의 동부지역을 떼어내어 그 관할구역으로 삼았다. 강희 원년 寧古塔昂邦章京을 鎮守寧古塔等處將軍으로 개칭하였고, 강희 15년(1676)에는 장군의 주둔지를 吉林烏拉城으로 옮겼으며, 건륭 22년(1757)에 장군의 명칭을 鎮守吉林等處將軍으로 바꾸었는데, 이를 줄여서 吉林장군이라고 부른다. 吉林장군 아래에는 吉林副都統, 寧古塔副都統, 白都隴內副都統, 三姓副都統, 阿勒楚喀副都統 등이 설치되어 각각의 팔기주방을 관리하였다. 또한 건륭 12년에 설치된 吉林廳은 민적호구를 관리하였지만 역시 吉林장군의 관할 아래에 두어졌고, 黑龍江 하류와 烏蘇里江 동쪽에서 시행된 噶珊制度 아래의 姓長과 鄉長들도 역시 吉林장군의 관할 아래에 있었다.

〈표 2〉 吉林將軍 휘하의 八旗駐防

駐防地	長官	隸下 駐防地
吉林城	副都統	伊通, 額穆赫索 布爾圖庫蘇邊門, 赫爾蘇邊門, 伊通邊門, 巴延鄂佛 邊門
打牲烏拉城	協 領	
寧古塔城	副都統	
琿春城	協 領	
白都訥城	副都統	
三姓城	副都統	
阿勒楚喀城	副都統	
拉林城	協 領	

3) 黑龍江將軍과 그 휘하의 八旗駐防

강희 22년(1683) 청조는 흑룡강 동안의 舊 琿春에 鎮守黑龍江等處將軍을 설치하고 鎮守寧古塔等處將軍 관할구역의 일부를 떼어내어 그 관할구역으로 삼았는데, 이를 줄여서 흑룡강장군이라고 부른다. 흑룡강장군의 治所는 강희 23년(1684) 흑룡강 서안의 黑龍江城(琿)으로 바뀌었다가, 강희 24년(1685) 墨爾根城을 거쳐, 강희 38년(1699) 齊齊哈爾城으로 옮겨졌다. 흑룡강장군 관할구역의 주민들은 八旗滿洲 이외에 達斡爾, 索倫, 鄂倫春, 厄魯特, 巴爾虎 등으로 구성되었지만 모두가 주방팔기로 편성되었다.

〈표 3〉 黑龍江將軍 휘하의 八旗駐防

駐防地	長官	隸下 駐防地
齊齊哈爾城	副都統	
呼蘭城	城守尉	
黑龍江城	副都統	
墨爾根城	副都統	
呼倫貝爾	副都統銜總管	
布特哈	總管	

4) 청대 滿洲의 州縣

청초 '만주'에 최초로 直省의 府廳州縣처럼 民籍戶口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이하 '주현'으로 簡稱)이 설치된 것은 순치 10년의 일이었다.⁹⁾ 순치 10년 청조는 遼陽府를 설치하고 遼陽縣과 海城縣을 그 屬縣으로 삼았다. 순치 14년(1657) 요양부를 없애고 奉天府를 설치하였다. 강희 원년에는 錦縣을 설치하였으며, 강희 3년(1664)까지 遼東에 1부 6주현(봉천부와 그 예하 주현)과 遼西에 1부 3주현(금주부와 그 예하 주현)을 설치하여 청초 '만주'의 주현제도를 확립하였다. 그 후 건륭 말년까지 '만주'에는 2부(봉천부, 금주부)와 1직(예칭(길림칭)의 주현)이 설치되었다(표 4 참조). 이 중에서 陪都(또는 留都)인 盛京에 설치된 봉천부는 북경의 順天府와 동급인 京府였기 때문에 그 장관은 知府가 아니라 府尹이었다.¹⁰⁾ 官秩이 정3품이었던 奉天府尹의 관할 범위는 보통의 지부와 달리 예하 주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봉천부윤에게는 直省의 巡撫와 같은 권한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봉천부윤은 금주부까지도 그 관할 아래에 두었다.

한편 길림장군 관할구역의 주민들은 흑룡강 하류와 오소리강 동쪽을 제외하고 모두 팔기에 편입되어 있었으므로 청초의 길림성에는 주현이 설치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민적호구가 점차 증가하여 옹정 연간에 永吉州, 泰寧縣, 長寧縣 등의 주현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들 주현은 길림장군과 무관하여 봉천부윤의 관할 아래에 있었으며, 그나마 얼마 못 가서 모두 폐지되었다. 대신에 건륭 12년에 길림청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길림장군의 관할 아래에 두어졌

9) 이하 주현에 관한 서술은 별도의 주석을 달지 않는 한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한 것이다. 『淸史稿』권55~권57; 冬 主編, 1999a, 앞의 책, 1289~1296쪽, 1304~1307쪽; 馬汝珩 等 主編, 1998, 앞의 책, 380~383쪽; 牛漢平 主編, 1990, 앞의 책, 79~119쪽; 劉子揚, 1994, 앞의 책, 303~322쪽; 張博泉 等, 1981, 앞의 책, 297~316쪽.

10) 『淸史稿』권116, 3333~3336쪽. 건륭 30년부터 盛京五部侍郎 가운데 한 사람을 골라 兼管奉天府尹의 직무를 맡겼는데, 이는 북경 육부의 상서나 시랑에게 兼管順天府尹을 맡겼던 제도를 적용한 것이었다(冬 主編, 1999a, 앞의 책, 1289쪽). 盛京侍郎은 官秩이 정2품이었으므로, 兼管奉天府尹이 奉天府尹(정3품)보다 지위가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다. 끝으로 흑룡강장군의 관할구역에는 건륭 연간까지 주현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¹¹⁾

〈표 4〉 乾隆末年 '만주'의 州縣¹²⁾

① 奉天府	순치 14년 봉천부
遼陽州	순치 10년 요양현 → 강희 3년 요양주
海成縣	순치 10년 해성현
承德縣	강희 3년 승덕현(봉천부의 附郭縣)
蓋平縣	강희 3년 개평현
鐵嶺縣	강희 3년 철령현
開原縣	강희 3년 개원현
復州	옹정 5년 복주청 → 옹정 11년 복주
寧海縣	옹정 11년 영해현 → 도광 23년 金州廳
興京廳	건륭 28년 흥경청
岫巖廳	건륭 37년 수암청
② 錦州府	강희 3년 광녕부, 강희 3년 금주부
錦縣	강희 원년 금현(금주부의 附郭縣)
寧遠州	강희 2년 영원주
廣寧縣	강희 3년 광녕현
義州	옹정 11년 의주
③ 吉林直隸廳	옹정 4년 永吉州(奉天府尹屬下) → 건륭 12년 길림청(寧古塔將軍屬下)

5) 서부 초원지역의 몽골 盟旗

청대 '만주'의 서부는 초원지대로서 몽골의 유목지역이었다. 이 지역에는 理藩院이 관리하는 盟旗制度가 실시되었다. 맹기제도는 몽골 고유의 씨족부락에 팔기제도를 결합시킨 것으로, '만주' 서부 초원의 몽골 유목민은 漠南 몽골의 東三盟(哲里木盟, 昭烏達盟, 卓索圖盟) 가운데 哲里木盟에 속해 있었다.

11) 冬 主編, 1999a, 앞의 책, 1328쪽.

12) 牛漢平 主編, 1990, 앞의 책, 79~109쪽.

哲里木盟에는 札賚特部(1旗), 杜爾伯特部(1旗), 郭爾羅斯部(2旗), 科爾沁部(6旗) 등 4部 10旗가 편성되어 있었다.¹³⁾

6) (U)冊制度

흑룡강 하류와 오소리강 동쪽에 거주하던 赫哲, 費雅喀, 奇勒爾, 庫葉, 鄂倫春, 恰克拉 등의 소수 부족들은¹⁴⁾ 哈拉(Hala : 姓)과 (U)冊(Gašan : 鄉)이라는 고유의 사회 단위와 취락 형태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었다.¹⁵⁾ 이들은 길림장군 휘하 三姓副都統의 관할 아래에 있었는데, 三姓副都統은 이들 哈拉와 (U)冊에 기초하여 조직된 여러 소수 부족의 姓長과 鄉長들을 관리하였다.¹⁶⁾

2_ 18세기 후반 ‘滿洲’ 행정체제의 性格

몽골 各旗의 유목지역을 제외한다면, 청대 ‘만주’의 행정구역은 봉천장군, 길림장군, 흑룡강장군 등 세 장군의 관할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세 구역을 편의상 봉천성, 길림성, 흑룡강성으로 부르기로 하겠다. 이 가운데 흑룡강성에는 팔기주방 이외의 행정제도가 보이지 않으므로 흑룡강성은 전적으로 흑룡강장군 휘하의 ‘駐防體制’ 아래에 있었다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길림성의 경우에는 팔기주방, 주현(길림청), (U)冊 등 세 종류의 제도가 병존하여 각각 旗籍戶口, 民籍戶口, 기타 소수 부족 등에 대한 행정에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두가 팔기주방의 최고 책임자인 길림장군

13) 冬主編, 1999a, 앞의 책, 1346~1353쪽; 劉子揚, 1994, 앞의 책, 369~372쪽.

14) 청대 ‘만주’의 여러 소수 부족에 대해서는, 冬主編, 1999a, 앞의 책, 1407~1461쪽; 張博泉等, 1981, 앞의 책, 282~297쪽 등을 참고.

15) 哈拉과 (U)冊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劉小萌, 2001, 『滿族從部落到國家的發展』, 沈陽: 遼寧民族出版社, 21~67쪽을 참고.

16) 馬汝珩等主編, 1998, 앞의 책, 386~388쪽; 冬主編, 1999a, 앞의 책, 1310~1324쪽.

의 관할 아래에 있었으므로, 길림성의 지방행정을 일괄하여 '주방체제' 로 간주해도 큰 지장은 없을 듯하다. 더구나 유일한 주현이었던 길림청의 장관인 理事同知는, 아래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滿缺' 이었다.¹⁷⁾ 한편 청대 直省의 일부에 실시되었던 土司制度와¹⁸⁾ 성격이 매우 유사했다고 판단되는 (U) 棚制度는, 나중에 그 해당 지역이 대부분 러시아의 영토로 귀속되는 만큼, 청대 중기와 말기 '만주' 의 행정체제를 비교하여 그 변화의 성격을 파악하려는 본고의 목적에서 볼 때 의미 있는 변수가 되지는 못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기적호구를 관리하는 駐防制度和 민적호구를 관리하는 州縣編制가 서로 다른 계통을 이루며 병존하고 있던 봉천성의 경우는 그 성격을 한 마디로 규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봉천장군 휘하의 駐防과 봉천부윤 휘하의 州縣이 병존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을 증시한다면, 봉천성의 행정체제는 '旗-民二重體制' 로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旗-民二重體制' 는 실제의 행정에서 심각한 문제-가령 '捕拿逃犯' 등에 관한 법령의 집행 을 노정하였다. 그 때문에 청조는 건륭 27년(1762)에 봉천성의 행정체제를 일원화하여 봉천부윤이 봉천장군의 '節制' 를 받도록 하였다.¹⁹⁾ 두 계통 간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봉천부윤이 아니라 봉천장군에게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었던 것이다. 이는 봉천부윤(정3품)과 봉천장군(종1품)의 官秩 차이만을 보아도 당연히 예상되는 현상이라 하겠다.²⁰⁾ 하지만 봉천장군의 봉천부윤에 대한 '節制' 는 얼마 되지 않아 취소되었다(건륭 30년). 대신에 청조는 盛京侍郎 가운데 한 사람에게 兼管奉天府尹의 책임을 맡김으로써 '旗-民二重體制' 를 복구시켰다.²¹⁾

17) 청대의 '滿缺' 관직인 理事同知와 理事通判에 대해서는, 定宜庄, 2002, 앞의 책, 177~188쪽을 참조.

18) 청대의 土司에 대해서는, 劉子揚, 1994, 앞의 책, 384~384쪽; 李世愉, 1998, 『清代土司制度論考』, 北京: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등을 참조.

19) 冬主編, 1999a, 앞의 책, 1288~1289쪽.

20) 將軍의 官秩은 본래 정1품이었으나 건륭 33년에 종1품으로 낮춰졌다. 副都統은 정2품, 城守尉는 정3품, 防守尉는 정4품, 總管은 정3품, 協領은 종3품이었다(『清史稿』권117, 3383쪽).

〈표 5〉 18세기 후반 ‘만주’ 府廳州縣 長官의 出身 (괄호 안은 근거 자료)

봉 천 부 윤	漢(건6)-(건11)Ma-Ma-Ma-Ma-Ma-Ma-Ma-Ma-Ma-Ma-Ma-漢-Ma-Ma (『盛京通志』, 728쪽 ; 『奉天通志』, 3025~3026쪽)
요 양 지 주	漢(건14)-(건17)Ma-Ma-Ma-Ma-Ma-Ma-Ma-漢-Ma-漢-Ma (『성경통지』, 737쪽 ; 『봉천통지』, 3088~3089쪽)
해 성 지 현	漢(건11)-(건28)Ba-Ma-Ma-Ma-Ma-Ma-Ma-漢-漢-Ma-漢-Mo-漢 (『성경통지』, 739쪽 ; 『봉천통지』, 3102쪽)
승 덕 지 현	漢(건11)-(건18)Ma-Ma-Ma-Ma-Ma-Ma-Ma-Ma-漢 (『성경통지』, 735쪽 ; 『봉천통지』, 3099쪽)
개 평 지 현	漢(건10)-(건19)Ma-Ma-Ma-Ma-Ma-Ma-Mo-Ma (『성경통지』, 741쪽 ; 『봉천통지』, 3105쪽)
철 령 지 현	漢(건15)-(건17)Mo-Ma-Ma-Ma-Mo-Ma-Ma-Ma-Ma-Ma-Mo-漢-Ma-Ma-Ma-Ma-Ma (『성경통지』, 745쪽 ; 『봉천통지』, 3110쪽)
개 원 지 현	漢(건12)-(건12)Ma-Ma-Ma-Ma-Ha-Ma-Ma (『성경통지』, 743쪽 ; 『봉천통지』, 3108쪽)
복 주 지 주	漢(건12)-(건28)Ma-Ma-Ma-Ma-Ma-Ma-Ma-漢-Mo (『성경통지』, 746쪽 ; 『봉천통지』, 3091쪽)
영 해 지 현	漢(건11)-(건20)Ma-Mo-Ma-Ma-Mo-Ma-Ma-漢-Ma (『성경통지』, 747쪽 ; 『봉천통지』, 3117쪽)
수 암 통 판	(건37)Ma-Ma-Ma-Mo-Ma-Ma-Ma-Ma (『성경통지』, 732쪽 ; 『봉천통지』, 3027~3028쪽)
흥경이사통판	(건28)Ma-Ma-Ma-Mo-Ma-Ma-Ma-Ma-Mo-Mo-Mo-Ma (『성경통지』, 732쪽 ; 『봉천통지』, 3026~3027쪽)
금 주 지 부	漢(건8)-(건13)Ma-Ma-Ma-Mo-Ma-Ma-Ma-Ma-Ma (『성경통지』, 750쪽 ; 『봉천통지』, 3025쪽)
금 현 지 현	漢(건18)-(건19)Ma-Ma-Mo-Ma-Ma-Ma-Ma-Ma-Ma-Mo-Ma-漢-Ma (『성경통지』, 752쪽 ; 『봉천통지』, 3113쪽)
영 원 지 주	漢(건19)-(건27)Ma-Ma-Ma-Ma-Ma-Ma-Ma (『성경통지』, 754쪽 ; 『봉천통지』, 3093쪽)
광 녕 지 현	漢(건17)-(건17)Ma-Ma-Ma-Ma-Ma-Ma-Ma-漢-漢-Ma-漢 (『성경통지』, 757쪽 ; 『봉천통지』, 3115쪽)
의 주 지 주	漢(건12)-(건17)Ma-Ma-Ma-Ma-Ma-Ma-Ma-Ma (『성경통지』, 759쪽 ; 『봉천통지』, 3095쪽)
길림이사동지	(건12)Ma-Ma-Ma-Ma-Ma-Ma-Ma-Ma (『성경통지』, 760쪽)

* 범례 : 'Ma'는 八旗滿洲, 'Mo'는 八旗蒙古, 'Ha'는 八旗漢軍, 'Ba'는 包衣八旗, '漢'은 漢人

* 부임하지 않은 자는 제외하였고, 출신이 불확실한 경우, 滿名은 팔기만주로, 漢名은 한인으로 추정하였다.

* 근거자료 : 『盛京通志』(130卷本), 1997, 沈陽 : 遼海出版社 ; 『奉天通志』, 1982, 東北文史叢書編輯委員會.

그런데 봉천성의 兼管奉天府尹-奉天府尹-州縣으로 이어지는 민적호구에 대한 행정체제는, 그 人事 운영의 측면에서 直省의 주현체제와는 내용을 달리 하였다는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兼管奉天府尹은 盛京侍郎이 겸직하였는데, 청대 盛京侍郎은 대표적인 '滿缺' 관직 가운데 하나였다.²²⁾ 또한 奉天府尹 이하 주현의 장관 역시 그 인사의 실재를 살펴보면 直省의 경우와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왼쪽의 <표 5>는 건륭 연간 '만주'의 2부 1직예청과 그 예하 주현 장관의 출신을 분석한 것인데, 매우 뚜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건륭 20년(1755) 이후 '만주' 소재 부청주현의 장관은 거의 전부가 八旗滿洲 또는 八旗蒙古 출신의 旗人이었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표 5>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패턴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다. 『清朝文獻通考』에 의하면, 이는 종래 “滿洲와 漢人을 兼用” 하던 봉천의 州縣 各官에 “滿員을 專用” 한다는 건륭 16년(1751)의 조치에 따른 것이었다. 이 조치는 건륭 41년(1776)에 이르러 반복되어 다시금 “滿洲와 漢人을 通用” 하도록 하였다.²³⁾ 그렇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건륭 말년까지 “滿洲”의 등용이 계속 해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또한 봉천부속 10개 주현청과 금주부속 4개 주현, 그리고 길림직예청 등 모두 15개 주현청 가운데, 3개 주현(해성현, 철령현, 영원주)을 제외한 12개 주현청은 防守尉 이상의 八旗駐防과 同城에 治所를 두고 있었다(표 1과 표 4 참조). 그런데 이들 주현청 장관의 官秩은 지부가 종4품, 지주가 종5품, 통판이 정7품, 지현이 정7품 등으로 모두가 同城 팔기주방의 장령보다 관질이 낮았다. 예를 들어 개평성의 경우 정7품 지현이 정3품의 城守尉와 함께 주둔하였는데, 양자의 관질은 무려 4품의 차이가 있었다. 더구나 봉천성의 城守尉는 “宗室專缺”이었기 때문에 府尹조차도 안중에 두지 않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

21) 冬 主編, 1999a, 앞의 책, 1289쪽.

22) 『清史稿』 권114, 3294쪽.

23) 『清朝文獻通考』 2000,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5615쪽.

로 그 위세가 대단하였다.²⁴⁾ 이런 까닭에 지현과 城守尉가 함께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민인과 기인 사이에 벌어진 분쟁이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렇듯 봉천성에 설치된 주현 장관이 거의 대부분 기인으로 채워지고, 민인과 기인의 분쟁이 구조적으로 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되는 상황에 있었다면, 설사 ‘旗-民二重體制’의 외양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18세기 후반 봉천성 행정체제의 성격은 봉천장군 휘하의 ‘주방체제’를 근간으로 삼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듯하다. 그렇다면 18세기 후반 봉천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모두 포괄하는 ‘만주’ 지역 행정체제의 기본 성격을 ‘주방체제’로 규정해도 무방하리라 판단된다.

Ⅲ. 清末 新政時期 ‘滿洲’ 행정체제의 性格 : ‘州縣體制’

제Ⅱ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18세기 후반 ‘만주’ 행정체제의 성격을 ‘주방체제’로 이해할 수 있다면, 청말 新政時期를 거친 宣統 연간 행정체제의 성격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19세기에 접어든 이후 ‘만주’ 행정체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현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嘉慶~道光 연간 ‘만주’ 전역에 추가로 설치된 주현은 봉천성의 昌圖廳(가경 11년)과 新民廳(가경 18년), 길림성의 長春廳(가경 5년)과 白都納廳(가경 15년) 등 4청에 불과하였다. 이 중에서 장춘청과 창도청은, 몽골의 왕공들이 押荒과 地租 수입을 목적으로 유민을 끌어들여 경내의 토지를 개간함에 따라 郭爾羅斯前旗와 科爾沁左翼後旗에 유입된 민적호구를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었다. 길림성의 백도농청은 옹정 연간 잠깐 長寧縣이 설치된 적이 있던 백도농에 건륭 중엽 이

24) 冬 主編, 1999b, 第5卷, 84쪽.

후 민적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자 설치된 것이었으며, 봉천성의 신민청은 新民屯 지방의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설치된 것이었다.²⁵⁾ 그러나 이들 4청의 添設은 '만주' 행정체제의 성격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다. 왜냐하면 길림성의 장춘청과 백도늘청은 길림장군의 관할 아래에 설치된 것이었으며, 신민청을 제외한 3청의 장관은 이사동지(백도늘청) 또는 이사통판(장춘청과 창도청)으로 모두가 '滿缺'이었기 때문이다.²⁶⁾ 한편 신민청의 장관은 撫民同知였지만, 嘉道 연간의 역대 新民撫民同知는 모두가 旗人 출신이었다.²⁷⁾ 따라서 적어도 19세기 전반 '만주'의 지방행정은 건륭 연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19세기 중엽의 咸豐~同治 연간에도 주현의 신규 설치는 흑룡강성의 呼蘭廳(동치 원년)과 봉천성의 營口廳(동치 5년) 등 두 곳에 그쳤다. 그러나 光緒 연간에 접어들면서 주현의 숫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광서 2년(1876) 봉천성의 鳳凰廳과 安東縣을 필두로, 광서 7년(1881)까지 봉천성과 길

〈표 6〉 광서 초년의 주현 설치²⁸⁾

① 奉天省	
광서 2년	鳳凰廳, 安東縣
광서 3년	寬甸縣, 通化縣, 懷仁縣, 奉化縣, 懷德縣
광서 5년	海龍廳
광서 6년	康平縣
② 吉林省	
광서 7년	伊通州, 雙城廳, 賓州廳, 五常廳, 敦化縣
광서 14년	農安縣
③ 黑龍江省	
광서 11년	광서 11년 綏化廳

25) 冬 主編, 1999a, 앞의 책, 1294~1296 · 1304~1307쪽.

26) 위와 같음.

27) 『奉天通志』, 3036 · 3044쪽.

28) 牛漢平 主編, 1990, 앞의 책, 79~119쪽.

〈표 7〉 清末 新政시기의 주현 설치²⁹⁾

① 奉天省	
광서 28년	興仁縣, 綏中縣, 鎮安縣, 彰武縣, 輯安縣, 臨江縣, 東平縣, 西豐縣, 西安縣, 柳河縣, 遼源州
광서 30년	南府, 靖安縣, 開通縣
광서 31년	安廣縣
광서 32년	遼中縣, 江家屯廳, 法庫門廳, 本溪縣, 盤山廳, 莊河廳
광서 34년	長白府
선통 원년	輝南廳, 禮泉縣, 安圖縣, 撫松縣
선통 2년	鎮東縣
② 吉林省	
광서 28년	盤石縣, 長壽縣, 延吉廳, 綏芬廳
광서 31년	依蘭府, 臨江州, 大通縣, 湯原縣
광서 32년	榆樹縣
광서 33년	珲江州, 長嶺縣, 密山府
선통 원년	賓江廳, 東寧廳, 琿春廳, 穆稜縣, 額穆縣, 汪清縣, 和龍縣, 綏遠州, 方正縣, 樺川縣, 富錦縣, 瑪瑙廳, 阿城縣
선통 2년	舒蘭縣, 樺甸縣, 雙陽縣, 饒河縣
③ 黑龍江省	
광서 30년	黑水廳, 巴彥州, 蘭西縣, 木蘭縣, 餘慶縣, 海倫廳, 青岡縣, 拜泉縣, 大賚廳
광서 32년	肇州廳, 安達廳
광서 34년	嫩江府, 琿廳, 黑河府, 呼倫廳, 綏濱府
선통 2년	訥河廳

림성에 모두 합해서 14개 주현청이 새로이 설치되었던 것이다(표 6 참조).

광서 10년대에는 흑룡강성의 수화청과 길림성의 농안현만이 신규로 설치되었을 뿐이어서, 주현의 증가 추세가 멈춘 듯 보였지만, 의화단전쟁 이후의 신정시기에 접어들어 '만주'의 주현은 실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광서 28년(1902) 봉천성에 11개 주현, 길림성에 4개 청현, 광서 30년(1904) 봉천성에 3개 부현, 흑룡강성에 9개 청주현, 광

29) 위와 같음.

서 31년(1905) 봉천성에 1개 현, 길림성에 4개 주현, 광서 32년(1906) 봉천성에 6개 청현, 길림성에 1개 현, 흑룡강성에 2개 청, 광서 33년(1907) 길림성에 3개 부주현, 광서 34년(1908) 봉천성에 1개 부, 흑룡강성에 5개 부청, 신통 원년(1909) 봉천성에 4개 청현, 길림성에 13개 청주현, 신통 2년(1910) 봉천성에 1개 현, 길림성에 4개 현, 흑룡강성에 1개 청 등이 새로 설치되었다. 광서 28년부터 신통 2년까지 불과 9년 동안에 모두 합해서 73개의 주현이 신설되었던 것이다.

한편 같은 시기에 '만주'의 팔기주방은 주현의 극적인 증가 추세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³⁰⁾ 먼저 봉천성의 팔기주방을 보자. 도광 23년(1843) 청조는 봉천성의 팔기주방에 약간의 변화를 가하여, 웅악성을 부도통에서 防守尉의 專城駐防으로 변경하고, 그 대신 金州城에 부도통을 두었다. 그러나 팔기주방의 숫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광서 6년(1880) 海龍總管이 신설되었지만, 신통 2년에 폐지되었다. 따라서 봉천성의 팔기주방은 외형적인 측면에서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광서 33년 3월 이른바 '東三省改制'의 결과 봉천성의 팔기주방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미 소멸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東三省改制'로 인한 將軍職의 폐지와 팔기주방의 소멸이라는 사정은 길림성과 흑룡강성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두 성의 경우는 외형적인 측면에서도 팔기주방의 소멸이 확인됐다. 먼저 길림성의 경우를 보자. 길림성의 팔기주방은 가경 23년(1818)에 雙城堡協領이, 동치 8년(1869)에 五常協領이 새로 설치되었으며, 광서 7년 혼춘에 협령 대신 부도통이 설치된 바 있지만, 신통 원년에 이르러 길림부도통, 영고탑부도통, 혼춘부도통, 아록초객부도통, 삼성부도통, 백도눌부도통 등이 모두 폐지되고 말았다.

다음으로 흑룡강성의 경우를 보자. 광서 4년(1878) 호란의 城守尉가 부도통으로, 광서 6년 호문패이의 총관이 부도통으로 각각 승격되었고, 광서 8년(1882) 興安城總管이 신설되었으며, 광서 25년(1899) 通肯副都統이 새로 설치

30) 이하 팔기주방에 관한 서술은, 牛漢平 主編, 1990, 앞의 책, 79~119쪽에 근거하였다.

됨으로써, 흑룡강성의 팔기주방은 잠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광서 20년(1894) 흥안성총관이, 광서 31년 호란부도통, 포특합부도통, 통공부도통 등이 폐지되었고, 광서 34년에는 흑룡강성부도통, 묵이근부도통, 호륜패이부도통 등이 폐지됨으로써, 흑룡강성의 모든 팔기주방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특히 광서 34년에 폐지된 흑룡강성부도통, 묵이근부도통, 호륜패이부도통 등은 각각 애훈청, 눈강부, 호륜청 등의 주현으로 대체되었다. 즉 주현이 주방을 대체한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변화를 ‘주방체제’의 소멸로 규정한다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말 ‘만주’ 지역 주현의 人事 운영은 18세기 후반의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후술하겠지만, 청말의 주현 인사는 건륭 연간의 그것과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광서 원년(1875) 7월 봉천장군 崇實이 마련한 〈變通奉天吏治章程〉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장정에 의해, 盛京五部の 권한이 크게 줄어든 대신에 봉천장군의 권한은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봉천장군이 侍郎 대신에 兼管奉天府尹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봉천부윤 이하 봉천성의 주현 관원들은 모두 봉천장군의 관할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봉천장군의 권한 강화는 언뜻 ‘주방체제’의 강화로 비치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였다. 왜냐하면 〈變通奉天吏治章程〉에는 앞으로 지방의 일체 안건은 旗人과 民人을 막론하고 오로지 주현 관원에게만 맡기고 팔기주방의 대소 관원에게는 “旗租의 經理와 盜賊의 緝捕”만을 허락할 뿐 그 밖의 모든 행정 업무에 터럭만큼도 간여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주현과 同城인 팔기주방 장령의 일반 행정에 대한 간섭이 봉쇄되어 버렸던 것이다.³¹⁾

그런데 崇實의 개혁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았다. 崇實은 또한 모든 주현의 인사에서 기인이든 한인이든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한다는 “滿漢兼用”의 방식을 채용하고, 모든 주현 장관에게 이사동지나 이사통관의 자격을 추가해 줌으로써 기인과 민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까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31) 李志英, 2004, 앞의 책, 10~11쪽.

하였다.³²⁾ 그렇다면, 이 “만한검용”의 인사 원칙 아래에서 주현 장관의 출신은 실제로 어떠한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말에는 주현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제Ⅱ장의 <표 5>처럼 일정 기간에 걸쳐 모든 주현 장관의 출신을 정리하기란 매우 곤란하다. 그래서 먼저 <표 5>에 실린 주현 가운데 해성, 개평, 철령, 개원 등 4개 현만을 추출하여, 광서 연간에 임명된 지현들의 출신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해성현의 경우, 광서 연간의 지현 32명 가운데 기인은 7명에 불과했으며, 7명의 기인 가운데 2명은 廣州駐防의 八旗漢軍 출신이었다.³³⁾ 개평현은 39명의 역대 지현 가운데 9명만이 기인이었고, 이 중에서 2명은 팔기한군 출신이었다.³⁴⁾ 개원현은 20명의 역대 지현 가운데 팔기한군 출신 1명을 포함한 7명이 기인이었다.³⁵⁾ 철령현은 37명의 지현 중에서 7명만이 기인이었다.³⁶⁾ 이들 4개 현 전체를 놓고 보면, 128명의 지현 중에서 기인 출신은 팔기한군을 포함해서 모두 30명으로 전체의 약 23%에 머물렀다. 다시 말해서 8할에 가까운 지현이 한인 출신이었던 것이다. <표 5>를 보면, 18세기 후반 이들 4현의 지현 47명 가운데 한인 출신이 겨우 9명으로 전체의 약 19%에 그쳤던 사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선통 연간 봉천성 소속 모든 부청주현의 마지막 장관들이 어떤 출신이었는지 살펴보자. 선통 3년 봉천성에는 모두 54개 부청주현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金州廳(당시 일본의 조계)을 제외한 53개 부청주현 장관의 출신은, 한인이 46명, 팔기한군이 4명, 팔기만주가 2명 등이었다.³⁷⁾ 한인이 전체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광서 초년 崇實의 개혁 이후 “만한검용”의 인사 원칙 아래에서 봉

32) 冬 主編, 1999b, 앞의 책, 84~85쪽; 林士鉉, 2001, 『清季東北移民實邊政策之研究』, 臺北: 國立政治大學歷史學系, 205~206쪽.

33) 『奉天通志』, 3103~3104쪽.

34) 『奉天通志』, 3106~3107쪽.

35) 『奉天通志』, 3109쪽.

36) 『奉天通志』, 3111~3112쪽.

천성 소속 주현의 인사는 건륭 연간의 경우와 정반대의 패턴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앞서 밝힌 대로, 기인과 민인 간의 분쟁을 주현에서 전담하였고, 주현 관원의 약 8할이 한인이었다면, 이런 종류의 분쟁은 18세기 후반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서 초년 崇實의 개혁은 ‘만주’의 행정 기인이 주도하는 ‘주방체제’로부터 한인이 주도하는 ‘주현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해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서 청 중기 ‘주방체제’를 근간으로 삼았던 ‘만주’의 행정체제가 청말 신정시기를 거치면서 ‘주현체제’로 변화해 버렸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여기서 ‘주현체제’란 청대 直省의 행정체제를 가리킨다. 청말 ‘만주’에서 진행된 ‘주방체제’로부터 ‘주현체제’로의 변화는, 광서 33년에 실시된 ‘建省改制’를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³⁷⁾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광서 33년의 개혁으로 봉천장군, 길림장군, 흑룡강장군이 폐지되고, 그 대신에 동삼성총독, 봉천순무, 길림순무, 흑룡강순무 등이 설치되었다. 물론 동삼성총독 이하의 각급 官制가 다른 直省의 그것과 다른 특성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督撫를 장관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直省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 것이다. 둘째, 독무의 출신 역시 다른 直省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광서 33년의 개혁 이전 팔기주방의 장관이었던 將軍職은 ‘滿缺’이었다. 그러나 아래의 <표 8>에서 보듯이, 광서 33년의 ‘改制’ 이후 독무의 출신은 錫良과 趙爾巽을 제외한 전원이 한인 출신이었다. 특히 ‘改制’ 직후에는 徐世昌 이하 독무 전원이 한인 출신으로 채워졌던 것이다.

37) 『奉天通志』 「職官志」. 출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漢名은 한인으로, 滿名은 만인으로 간주하였다.

38) 광서 33년의 ‘建省改制’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은, 李志英, 2004, 앞의 책을 참조.

〈표 8〉 광서 33년 이후 '東三省'의 督撫³⁹⁾

東三省總督	徐世昌(漢)-錫良(八旗蒙古)-趙爾巽(八旗漢軍)
奉天巡撫	唐紹儀(漢)-程德全(漢)
吉林巡撫	朱家寶(漢)-陳昭常(漢)
黑龍江巡撫	段芝貴(漢)-程德全(漢)-周樹模(漢)

IV. 清末 '州縣縉制' 確立의 背景 : 對外危機와 社會變化

제Ⅲ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은, '주방체제'로부터 '주현체제'로의 이행을 본질로 하는 청말 '만주'의 행정체제 변화가, 19세기 후반 이후 점차로 고조되던 대외위기와, 그에 대한 청조의 대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⁴⁰⁾ 1840년 영국군이 復州와 寧海縣 일대에 상륙한 적이 있고 1860년에도 大連灣을 점령한 적이 있었지만, '만주'에 본격적인 대외위기를 조성한 나라는 역시 러시아였다. 러시아군은 함풍 연간 네 차례에 걸쳐 흑룡강 수역에서 '武裝航行' 활동을 벌여 흑룡강 북안과 하류 일대를 점령하고 흑룡강 연안에 초소들을 설치하였다. 이어서 러시아는 국경을 다시 획정하지는 요구를 청조에 들이밀었다. 1858년 러시아는 영불연합군이 大沽와 天津을 점령한 틈을 타서 흑룡강장군 奕山을 압박하여 마침내 〈璦琿條約〉을 맺었고, 1860년에는 〈北京條約〉을 체결하였다. 이 두 조약으로 청조는 흑룡강 이북과 오소리강 동쪽의 약 100만 km²에 달하는 영토를 러시아에게 내주었다. 한편 영국과 맺은 〈天津條約〉으로 봉천성 남부의 營口가 개항장이 되었다. 1870년대 말에서 1880년대 초에 걸쳐서는 일리(Или :伊犁) 문제로 인해 러시아와의 긴장이 다시 한 번 고조되었고, 1890년대 중엽에는 청일전쟁이 발발

39) 錢實甫 編, 1980, 『清代職官年表』, 北京 : 中華書局.

40) 청말 '만주'를 둘러싸고 감지되었던 대외위기에 대해서는, 冬主編, 1999b, 앞의 책, 1~49 · 93~102 · 148~149 · 171~390쪽을 참조.

하여 '만주'가 전쟁터로 변화하였다. 이 전쟁의 결과 청조는 요동반도를 일본에 내줄 뻔한 위기를 겪어야 했다. 곧이어 러시아는 1896년에 東清鐵路의 부설권을 취득하였고, 1898년에는 여순과 대련을 조차하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1900년에는 의화단 진압을 명분으로 대군을 출동시켜 '만주'를 점령하였다. 1904년에는 러일전쟁이 발발하여 '만주'가 다시 한 번 전쟁터로 변하고 말았다.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전락시킨 일본은, 일찍이 1880년대부터 청조와 조선 간에 국경 분쟁을 야기했던 '간도' 영유권 문제를 청조와의 외교 교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이처럼 러시아와 일본의 '만주'에 대한 침략이 점차로 강화되는 현실에 직면한 청조는, '만주'에 대한 '봉금' 정책을 단계적으로 포기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청말 신정시기에 들어서서는 '만주' 전역에 걸쳐 '봉금'을 해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매우 적극적인 개간 정책을 추진하였다.⁴¹⁾ 광서 28년 이후 '만주' 주현의 폭발적인 증가는 청조의 적극적인 移民實邊政策 추진과 표리를 이루며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청말 '만주'의 개간은 이 지역의 토지와 인구 상황을 크게 변화시켰다. 순치 연간에 봉천부와 금주부의 民地는 모두 합해서 60,933무에 불과했지만,⁴²⁾ 건륭 45년(1780)에 이르러 '만주'의 민지는 7,883,330무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八旗公田 등을 제외한 '만주'의 전체 경지에서 민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8.56%에 그쳤고, 皇莊·王莊·官莊이 5,066,670무로 전체의 11.94%, 一般旗地가 29,514,210무로 전체의 69.5%를 차지하고 있었다.⁴³⁾ 한편 비슷한 시기인 건륭 41년(1776) '만주'의 민적호구는 봉천부 39만, 금주부 22만, 길림성 29.4만, 흑룡강성 10.8만으로 모두 합해서 101.2만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⁴⁴⁾ 이는 아마도 당시 기적호구의 전체 숫자를 넘어서는 규모였을 것

41) 尹輝鐸, 2001, 앞의 책; 冬 主編, 1999b, 앞의 책, 148~165쪽; 馬汝珩等 主編, 1998, 앞의 책, 402~424쪽; 林士鉉, 2001, 앞의 책 등을 참조.

42) 孔經偉 主編, 1990, 『清代東北地區經濟史』,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59쪽.

43) 冬 主編, 1999a, 앞의 책, 1494쪽.

44) 曹樹基, 2001, 『中國人口史』第5卷,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454쪽.

으로 판단되긴 하지만,⁴⁵⁾ 건륭 연간 '만주' 행정체제의 성격을 바꿀 정도의 규모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보아야 할 듯하다.

그러나 청말 '봉금'의 해제와 적극적인 개간 정책은 '만주'에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초래했다. <표 9>에서 보는 것처럼, 선통 연간 '만주'의 인구는 기적호구와 민적호구를 모두 합해서 18,415,714명에 도달하였다. 이 무렵 기적호구가 봉천성에 963,116명,⁴⁶⁾ 길림성에 410,101명⁴⁷⁾ 정도 있었다는 통계를 참작하면, 민적호구의 숫자는 적어도 약 1,650만 이상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처럼 민적호구가 전체 인구의 약 9할을 차지하는 상황이라면, '만주'의 행정체제가 '주현체제'로 이행한 일은 '만주' 인구 구성의 변화를 반영한 불가피한 변화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한 통계에 의하면, 광서 34년 '만주'의 경지 면적은 旗地와 民地를 합해서 봉천성 39,409,464무, 길림성 49,324,580무, 흑룡강 21,103,970무, 합계 109,839,014무에 이르렀다.⁴⁸⁾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만주'의 기지 면적이 줄곧 2,300만 무 전후의 수준에서 거의 정체하는 추세였고,⁴⁹⁾ 19세기 후반 이후 진행된 '만주'의 개간이 민지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⁵⁰⁾ 선통 연간 '만주'의 민지가 약 8,000만 무에 달했을 가능성까지 상정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런 추정치가 사실과 그다지 거리가 멀지 않다면, 이 역시 '만주' 행정체제의 성격 변화와 조응하는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45) 건륭 중엽 '만주'의 기적호구에 관한 통계는 없지만, 당시 팔기주방의 관원은 1,835명, 병정은 40,064명에 달했다는 연구가 있다(冬主編, 1999a, 앞의 책, 1495쪽).

46) 徐世昌, 1989, 『東三省政略』, 吉林文史出版社, 1314~1315쪽. 광서 33~34년 봉천성의 팔기 인구를 674,117명으로 전하는 통계도 있다(定宜庄, 2002, 앞의 책, 75쪽).

47) 徐世昌, 1989, 위의 책, 1055쪽. 선통 연간 길림성의 기인이 144,661명이었다는 통계도 있다(侯揚方, 2001, 『中國人口史』第6卷, 上海:復旦大學出版社, 146쪽).

48) 林士鉉, 2001, 앞의 책, 311쪽.

49) 尹輝鐸, 2001, 앞의 책, 64쪽.

50) 孔經偉 主編, 1990, 앞의 책, 223~270쪽 참조.

〈표 9〉 선통 연간 ‘東三省’의 인구⁵¹⁾

	戶	男(A)	女(B)	計(A+B)
奉天	1,707,642	6,093,637	4,924,880	11,018,517
吉林	800,099	3,151,611	2,386,794	5,538,405
黑龍江	245,957	1,017,064	841,728	1,858,792
合計	2,753,698	10,262,312	8,153,402	18,415,714

V. 餘論：‘大清’의 ‘滿洲’에서 ‘中國’의 ‘東北’으로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서, 18세기 후반 ‘주방체제’를 근간으로 했던 ‘만주’의 행정체제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그 성격이 ‘주현체제’로 변화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9세기 후반 이래 러시아와 일본의 침략으로 점차 심각해지고 있던 대외위기에 대하여 청조가 취한 대응 전략은 ‘만주’에 대한 ‘봉금’의 해제와 적극적인 개간 정책의 추진이었다. 그 효과로 ‘만주’의 민적호구와 민지는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민적호구와 민지의 증가는 ‘만주’의 대규모 주현 증설과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만주’ 행정체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주현체제’가 다름 아닌 秦漢帝國 이래 郡縣制를 골간으로 하는 역대 중원 왕조의 토지와 인민에 대한 직접지배체제였다고 할 때, 20세기 초에 이르러 ‘만주’에 이 같은 ‘주현체제’가 확립되었다는 역사적 현상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실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신중하고도 치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는 본고의 고찰 범위와 필자의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아래에서는, 중국의 왕조국가가 근대 국민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51) 侯楊方, 2001, 앞의 책, 147쪽.

근대적 의미의 '영토'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를 검토해 본다는 거대한 과제를 염두에 두면서, 필자 나름의 '가설' -이 '가설'은 장차 충분한 논증을 필요로 하며, 그 작업은 미래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에 기초하여 위에서 정리한 본고의 결론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시도해 볼까 한다.

淸朝가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최대의 규모로 팽창한 제국을 동남부와 서북부로 나누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표시하였다.⁵²⁾ 이 주장에 따르면, 제국의 동남부에는 한족의 왕조였던 明朝의 통치방식이, 서북부에는 청조가 창안한 통치방식인 理藩院 관리 아래의 藩部 통치방식이 각각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자에는 이른바 '내지'의 18개 직성이, 후자에는 몽골과 신강, 그리고 티베트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 같은 이분법적 틀 안에서는 청대의 '만주'에 부합하는 위치를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 문제를 의식한 탓인지 몰라도, '만주'를 제3의 영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⁵³⁾ 필자는 '만주'를 직성이나 번부와 구분하는 견해에 찬동한다. 본고의 제Ⅱ장에서 고찰한 대로, 18세기 후반 '만주'의 행정체제는 '주현체제'가 아닌 '주방체제'를 근간으로 했다는 점에서 직성과 달랐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토지와 인민에 대한 직접지배를 관철시키고 있었다는 점에서 번부와도 성격을 달리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만주'의 특수성을 시야에 넣는다면 18세기 중엽 대청 제국의 통치체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걸쳐 '만주'를 근거지로 삼아 흥기한 청조는, 팔기제도를 통해서 입관 전에 이미 滿-蒙-漢으로 구성된 정복집단을 형성하였다. 1644년의 입관 이후 18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100년이 약간 넘는 기

52) Mark. Mancall, 1968, "The Ch'ing Tribute System: An Interpretive Essay,"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모테기 도시오, 2004, 「국민국가 건설과 내국 식민지: 중국 변강(邊疆)의 '해방」, 임지현 등 역음,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서울: 휴머니스트.

53) 石橋崇雄, 1998, 「淸朝國家論」, 『岩波講座 世界歷史』 13, 東京: 岩波書店; _____, 2000, 『大清帝國』, 東京: 講談社.

간 동안에, 이 정복집단은 명조의 영토는 물론 몽골초원 전체와 신강 및 티베트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였다. 청조는 제국의 판도에 들어온 다양한 지역에 ‘因俗而治’의 원리에 기초한 다원적인 통치체제를 구축하였다. 과거 명조의 영토에는 명조의 제도를 계승 발전시켜 18개의 直省을 설치하였다. 몽골의 유목민들에 대해서는 몽골 고유의 부족제도에 팔기 편성의 원리를 결합시킨 盟旗制度를 실시하였다. 신강에서는 천산북로의 유목민에게 盟旗制度를, 천산남로의 위구르족에게 伯克(beg)制度를 각각 적용하였다. 티베트에서는 黃敎의 수장인 달라이 라마의 권위를 인정하는 등 티베트 고유의 종교 및 정치 조직을 활용하였다. 청조는 또한 각 지역의 이처럼 다양한 통치체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지배층을 지배의 파트너로 끌어들었다. 그리고 제국의 판도에 들어온 모든 지역의 요지에 팔기주방을 배치하였다. 요컨대 청조가 건설한 제국의 판도 안에 들어온 모든 지역의 요지에는 정복집단의 일부가 팔기주방의 형태로 주둔하였고, 각 지역에는 종래의 제도를 계승 발전시키거나 변형시킨 행정제도를 토착 지배층의 협력 아래 적용하였다. 이 변원의 관리 아래에 있던 번부(몽골, 신강, 티베트)에는 간접통치를, 18개 직성에는 직접통치를 구현하였다. 한편 제국의 발상지였던 ‘만주’의 경우에도 ‘因俗而治’의 원리가 적용되어 팔기제도에 기초한 ‘주방체제’가 성립되었다. 원래 기인의 세계였던 ‘만주’는 여전히 기인의 세계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이 ‘만주’와 번부의 통치에서 한인은 원칙적으로 배제되었다. 한편 직성과 ‘만주’에는 기본적으로 직접통치가 관철되긴 하였지만, 직성의 서남 일부 지역과 ‘만주’의 동북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여러 소수 집단에 대해서는 간접통치의 방식이 인정되었다(전자의 土司制度和 후자의 烏爾圖制度).

이처럼 하나의 거대한 제국에 다양한 종류의 통치체제가 병존하는 형태를 필자는 ‘大清’의 ‘版圖支配’라고 부르고자 한다. 18세기 중엽에 완성을 보았던 이 ‘大清’의 ‘판도지배’는 19세기 중엽 이후 점차 심화되는 대외위기 속에서 중대한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大清’이 ‘萬國公法’ 아래에서 온전한 주권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선 근대 국민국가로 스스로를 탈바꿈시켜야

했다. 열강의 위협에 직면한 '大清'의 근대 국민국가= '중국'을 향한 변신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경의 확정과 '영토'의 확보였다. 그리고 이 '영토'에서는 '중국'의 배타적인 주권이 어디에서나 균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어야 했다. 이제 '大清'의 '판도지배'는 '中國'의 '領土支配'로 전환되어야 했던 것이다.

19세기 말 사방의 대외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大清'은 이러한 변신의 작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될 사실은, 19세기 말 '판도지배'로부터 '영토지배'로의 이행 과정이 전부터 조금씩 진행되어 오던 변화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大清'의 '판도지배'가 '중국'의 '영토지배'로 이행하는 과정의 요체는 다른 아닌 '주현체제'의 확산과 建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주현체제'의 확산 현상은 이미 18세기 초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옹정 연간에 실시된 대규모의 改土歸流를 들 수 있다.

하지만 '大清'의 '판도지배'에서 '中國'의 '영토지배'로의 변화 과정으로서 '주현체제'의 확산과 建省이 동시에 진행된 것은 역시 19세기 후반의 일이었다. 1870년대 중엽 대외위기의식의 심화를 배경으로 전개된 塞防-海防 논쟁 이후 청조는 영구 상실의 위협에 처해 있던 신강에 대하여 대대적인 군사 작전에 돌입하였다. 원정의 성공 이후 청조는 신강의 행정체제를 일변시켰다. 신강에 '주현체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新疆省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동남쪽 바다의 대만에서도 건성과 함께 '주현체제'의 확산이 진행되었다. 몽골의 동남부 초원에서는 이미 18세기부터 화북 각지의 한인 유민에 의해 농지 개간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일부 지역에 주현이 설치된 바 있었는데, 광서 28년 청조가 몽골 목지에 대한 봉금을 해제함에⁵⁴⁾ 따라 개간과 함께 한인의 몽골 유입이 가속화되었다. 이런 변화 추세는 민국 시기 熱河省, 察哈爾省, 綏遠省 등의 건성에 기초가 되었다. 광서 30년 <라사조약>의 체결 이후 영국의 티베트 침략이 노골화되자, 청조는 티베트를 '중국'의 '영토'로 확정하기 위

54) 孔經偉 主編, 1990, 앞의 책, 273쪽.

한 본격적인 노력에 돌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천 서부 티베트인 거주지역에서 巴塘事件이 발발하자, 청조는 사천 서부지역에서 피로 얼룩진 대규모의 개토귀류를 단행하였다. 이 개토귀류의 성과로 확산된 '주현체제'는 나중에 西康省의 건성으로 이어졌다.⁵⁵⁾

본고에서 다룬 청말 '만주' 행정체제의 변화 역시 바로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청대 '만주'의 '주방체제'는 20세기 초 신정시기에 이르러 '주현체제'로 대체되었고, 광서 33년에는 동삼성의 건성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만주'의 몽골 유목 지역도 급속하게 개간되어 동삼성의 '주현체제'로 편입되었다. '만주'가 '大清'의 '판도'로부터 '중국'의 '영토'로 변화하는 거대한 물결 속으로 팔기주방만이 아니라 몽골 유목민들까지 끌려가 버렸던 것이다. 또한 동치 연간까지 琿春의 팔기주방을 제외하면 常設의 행정 治所가 전무했던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의 경우에는, 광서 2년과 3년에 압록강 북안 지역에 봉황청, 안동현, 관전현, 회인현 등 4개 주현이 설치되었고, 신정기에 접어들어서는 봉천성 관할 아래에 집안현과 임강현(광서 28년), 장백부(광서 34년), 안도현과 무송현(신통 원년) 등이, 길림성 관할 아래에 연길청(광서 28년), 훈춘청, 왕청현, 화룡현(신통 원년) 등의 주현이 설치되었다. 이처럼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상설의 행정 治所가 대거 신설되었던 것은, '邊務' 즉 국경의 확정과 그에 따른 '영토'의 확보를 제일의 要務로 꼽고 있는 초대 동삼성총독 서세창의 『東三省政略』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듯이, 무엇보다도 대한제국과의 국경 문제를 의식한 것이었다.⁵⁶⁾ 청말 '만주'의 행정체제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변화를 19세기 말 이후 진행된 '大清'에서 '중국'으로의 변신 과정의 일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면, 이제 '大清'의 '滿洲'는 '中國'의 '東北'으로 변화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55) 『清末川 邊務檔案史料』, 北京: 中華書局(1989), 1~10쪽.

56) 徐世昌, 1989, 앞의 책, 53쪽.

[ABSTRACT]

Transformation of the Administration System in 'Manchuria' during the Qing Period : From 'the System of Banner Garrison' to 'the System of *Zhouxian*'

Koo, Bum-Jin

In this paper, I compared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Manchuria' in the second half of the 18th century, when the Qing Empire was in its heyday, with that of the last decade of the Empire, and tried to figure out the difference between them. In the eighteenth century, the Qing administration system in 'Manchuria' was composed of several kinds of institutions, each of which was designed to be applied to each group of the various peoples in the area, or the Manchu banner people, the Han Chinese, the Mongol tribes, and the other minority peoples. In its outlook, this system appeared to be 'the dual administration system of banner garrison and *zhouxian*州縣', but its nature could be characterized as 'the system of banner garrison' since this administration was managed mainly by the Manchus and the superiority of banner garrison over *zhouxian* was maintained in the administrative chain of command. This kind of system 'Manchuria for the Manchus' continued without significant changes until the mid-19th century.

Entering Guangxu光緒 reign, the number of *zhouxian*, or unit of the centralized bureaucratic administration, which was the

administrative institution for the Han Chinese in its nature under the Qing rule, began to increase tremendously. Fourteen *zhouxian* were newly installed in the early Guangxu reign and as many as seventy three *zhouxian* were established only in the first decade of the 20th century. In 1907, the Qing court implemented a comprehensive reform program in 'Manchuria', by which 'the system of banner garrison' was abolished and the Three Eastern Provinces, or *dong san sheng* 東三省 were set up based upon 'the system of *zhouxian*'. The officials who run the new administration system were mostly of the Han origin.

The transformative change of the administration system in 'Manchuria' was caused by the foreign threats by Russia and Japan, which were getting worse and worse ever since the mid-19th century and inflicted the most serious security crisis upon the Qing in the first decade of the 20th century. In its response to this crisis, the Qing court abandoned its traditional policy of the closing of 'Manchuria' and encouraged the Han Chinese to immigrate and reclaim the land of 'Manchuria'. This brought about the rapid increase of the Han Chinese population and their cultivated land, which went along with the massive establishment of new *zhouxian*. This in turn resulted in the transformative change of the administration system in the northeastern part of the state. From a long term perspective, this change can be viewed in a historical context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state from an empire to a modern state : 'Manchuria' as a part of the '*bantu*' 版圖, or the domain, of the Qing Empire began its transformation into '*dongbei*' 東北, or 'Northeast China' as a part of the '*lingtu*' 領土, or the territory, of the Chinese modern state.

keywords

Manchuria, Northeast China, system of banner garrison, system of *zhouxian*, rule over domain(*bantu*), rule over territory(*lingtu*)



1858~1898년 러시아의 동아시아 팽창과 만주

홍 응 호

「동북아역사논총」 14호

동북아역사재단

2006年 12月

1858~1898년 러시아의 동아시아 팽창과 만주

홍 응 호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I. 서론

16세기 이후 시베리아로 영토 팽창을 추진해 온 러시아는 19세기 후반 연해주를 획득하면서 동아시아 영역국가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중엽까지 정치와 경제의 중심무대였던 유럽의 러시아에서 멀리 떨어진 극동은 부차적으로 취급되었다. 그때까지 러시아는 부동항을 확보하여 해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또한 러시아는 유럽국가의 한 일원이라 여겨 유럽과 경제적, 정치적 교류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해 왔었다.

19세기에 들어와 영국과 프랑스 등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은 산업혁명을 통해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 상품 판매시장이자 원료 공급처로서 식민지 확보를 꾀했다. 흑해를 통한 해양으로의 진출하고자 했던 러시아는 크림반도에서 영국의 러시아 남하저지정책과 전면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후진적인 국가 중의 하나인 러시아의 패배는 어쩌면 당연했다. 1856년 크림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는 1861년 농노제를 폐지하는 급격한 국내 개혁을 단행, 근대화와 산업화의 기반을 조성했다. 보다 중

요한 것은 러시아의 대외정책의 변화였다. 러시아는 19세기 중반까지 부차적으로 취급했던 극동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19세기 중반 이후 러시아의 동아시아 팽창정책을 담당한 사람은 외무대신이었던 고르차코프(A.M. Горчаков)와 기르스(M.H. Гирс)였다. 크림전쟁 패배 후 외무대신이 된 고르차코프(재임기간 : 1856. 7~1882. 3)¹⁾는 크림전쟁의 패배 원인을 러시아가 서유럽 국가보다 근대화에 뒤쳐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러시아 국내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구열강들의 제국주의적 동아시아 침투에 대응하는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취하면서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에 관한 밑그림을 그렸다. 고르차코프에 이어 기르스(재임기간 : 1882~1895)²⁾가 외무대신으로 임명되었다.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국장을 역임한 기르스가 외무대신에 임명된 것은 러시아가 극동지역 및 동아시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러시아의 동아시아 팽창정책을 1894년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러시아의 동아시아 팽창정책에 결정적인 변화를 초래한 사건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동아시아로의 팽창정책에서 목표로 삼았던 것이 무엇 인지를 해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가 지니는 의미와 그 부설과정의 구체적 논의과정에 대해 조망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대륙으로의 진출을 위한 기반으로 삼았던 만주를 획득하기 위해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동청철도 부설권 획득과정을 재구성하고, 그 의미를 구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태평양으로의 출구를 확보하기 위한 북동항 획득을 위한 러시아의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이 지니는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다.

1) <http://www.hronos.km.ru/biograf/gorchakov.html>

2) http://www.hronos.km.ru/biograf/bio_g/girs.html

II. 러시아의 동아시아로의 팽창

19세기 후반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다른 제국주의 세력과 경쟁하면서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러시아는 제국주의 세력들의 식민지 쟁탈과 영토 확장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미 시베리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광활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서구의 다른 국가들이 해양으로 진출하여 식민지를 개척한 것과는 달리 유라시아의 북부 내륙에 둘러싸인 러시아는 고립된 지정학적 위치를 탈출하기 위해 동쪽 대륙으로 진출해 나갔다. 보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동아시아로의 진출은 1581년부터 시작되었다. 1581년 이반뇌제의 명을 받은 예르마르크(Юрдакчи)와 그의 카작인들은 이리티슈강까지 진출하여 시베리아간국을 점령했다. 러시아가 동아시아로 진출해 오며 따라 중국과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1619년 비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시작하였으나 공식적인 접촉은 1654년 러시아의 차르가 청에 사절단을 파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당시 양국 간의 주요현안은 몽골문제였다. 러시아는 몽골의 일부였던 부랴트(부랴트족)의 거주 지역을 병합하여 식민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이 몽골에 대하여 가져왔던 오랜 기득권을 위협하였던 것이다. 몽골문제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협상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향후 동아시아에서 러시아가 주요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사건이었다. 결국 1689년 8월 27일 러시아는 중국과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면서 동아시아 남부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했다.³⁾

3) 국경문제와 관련한 조약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아무르강 지류인 실까강으로 합류하는 고르비차(Горбича) 및 스타노보이 산맥을 러·청 양국의 경계로 하고 산남 아무르강으로 유입하는 계하는 청나라에 속하며 산북은 러시아에 속한다. 제2조, 아르군(Аркун)강을 러청 양국의 경계로 하여 우안은 청나라에 속하며 좌안은 러시아에 속한다. 제3조, 실까강과 아르군강이 합류하는 북방 우르카(Урка) 일대를 보유하고 중립지대로 한다. 김경춘, 1985, 「두만강 하류의 Korea Irredenta에 관한 일고」, 『백산학보』 30권31호 합본, 177쪽 ; W. Coxe, 1970, *Account to Russian Discoveries between Asia and America*, New York.

의 좌안에서 제야 하구까지로부터 남방지역에 종래 거주했던 청나라인은 의연 청나라 정부의 관할을 받고 그 지역에 영주할 권리를 갖는다. 더불어 러시아 주민들에 대한 모욕과 강제는 행사하지 않는다.

제2조, 아무르강, 송화강 및 우수리강에 있어서의 무역의 보호는 그 지방장관이 책임진다.¹¹⁾

그리고 2년 후 러시아 북경주재 이그나티예프(닐.뉘.뉘닌공작)의 공사는 영불 연합군 측과 청의 화의를 주선하고 그 대가로 1860년 11월 14일 북경조약을 체결하였다.¹²⁾ 전문 15개조의 북경조약을 체결한 러시아는 아이훈 조약에서 청러공동관리지역으로 두었던 아무르강 남쪽 우수리강 동쪽 연해주 지방을 기어코 러시아령으로 확정시켰다. 즉 우수리강과 송화강을 거쳐 두만강 강구에 달하는 국경선을 설정하였다.¹³⁾ 이제 러시아는 네르친스크 조약의 국경 '지역'을 국경 '선'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다.¹⁴⁾ 또한 국동지역에 정치적으로 진출해 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확보한 셈이었다. 즉 러시아는 동해로 흘러들어가는 두만강을 경계로 한반도 접경할 수 있게 되었다. 반대로 청나라는 우수리강 이동지역과 뽀시예트만을 잃어 바다로 향하는 출구를 완전히 봉쇄당하여 내륙에 고립되게 되었다. 조선은 사상 최초로 두만강 하구부분에서 러시아와 16.5km에 이르는 국경선을 접하게 되었지만 연해주와 간도 일대에 대한 청나라의 주장에 우선권을 잃어갔다. 반면 청나라는 러시아와 국경관계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조선이 주장하는 백두산정계비와 간

책, pp.38~41.

11) 눈.뉘.뉘닌공작(닐.뉘.뉘닌), 2004, *뉴담황실 1689~1916*, 뉘닌공작 pp.62~63.

12) 눈.뉘.뉘닌공작(닐.뉘.뉘닌), 2004, pp.60~78 ; 주코프 편, 1953, 앞의 책, 38~41쪽.

13) 주코프 편, 1953, 앞의 책, 38~41쪽. 무라비요프는 이 변강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었는데, 왜냐하면 영국의 뽀시예트만 점령을 우려했기 때문이다(1859년 6월 1일 주중 러시아 공사 이그나티예프에게 보낸 무라비요프의 서한).

IV. 비테의 등장과 청일전쟁 이후 동아시아정책의 변화

1890년대 이후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은 비테(뉘넨, 1852~1913)였다. 비테는 오데사 철도의 사무원으로 출발하여 마침내 러시아 정부예산의 거의 절반을 주무르는 자리에 임명됨으로써 일약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지위로 부상했다.

1892~1903년의 재무대신으로서 비테는 재무부의 활동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재임 말기에는 실제로 몇몇 부서들을 포괄했다. 즉 재무부는 무역, 통상, 육로 및 해상 교통, 노동, 농·공업의 대부를 주관했고, 교육도 상당 정도로 관장했다. 즉위 초기에 니콜라이 2세는 비테를 '수상'으로 간주했다.

비테는 1892년까지는 동아시아에 거의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⁴⁵⁾ 그러나 그는 교통대신으로 임명되고 이어 재무대신이 된 후,⁴⁶⁾ 동아시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국가적·국제적 중요성으로부터 얻어질 이익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테는 무엇보다도 이 철도의 부설에 훨씬 더 커다란 의미를 두고 있었다. '시베리아철도 부설에 필요한 조치들'이라는 1892년 11월 18일자 보고서에서 그는 러·청의 경제통합 기반에 대해 기술했다. 여기서 그는 인도와 아삼의 차 생산이 청나라의 차 무역에 타격을 줌으로써, 새로운 경쟁에 직면한 청나라의 차무역은 조만간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완공으로 청나라 차를 신속하게 유럽으로 운송하면 청나라에 차를 수출할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고, 이와 동시에 러시아는 청나라에서 면화·모직물·금속제품 등의 판매에서 영국과 경쟁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⁴⁷⁾

비테는 시베리아횡단철도의 부설을 촉진하기 위해 강력한 협력자를 선택

42) 뉘넨, *뉘넨의 회고록* 1916, pp.7~8.

43) 황태자 니콜라이 일행의 동아시아 여행은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이었고, 이것은 러시아제국의 정책이 서부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녔다. 뉘넨, *뉘넨의 회고록* 2004, p.97.

했다. 1893년 알렉산드르 3세에게 황태자를 시베리아횡단철도 통제위원회의장에 임명하도록 설득한 조치가 바로 그것이었다. 차르는 그 같은 직위를 감당하기에는 황태자가 너무도 어리고 미숙하다고 답했다.⁴⁸⁾ 그러나 황태자는 이 위원회의 의장이 되었다. 니콜라이는 제위에 오른 뒤에도 자신의 뜻에 따라 의장직을 계속 보유하고 러시아 철도를 통한 만주 침투에 직접 관여했다. 그러나 니콜라이는 명예의장으로서 위원회의 결정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제 비테가 동아시아로 진출해 나갈 동맥으로 간주한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 계획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시베리아횡단철도 부설안은 장차 12년 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었다.⁴⁹⁾

러시아가 동아시아로의 팽창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계기는 1894년 발생한 청일전쟁이었다. 청일전쟁의 전세가 일본으로 기울자 러시아는 일본의 만주 진출과 직접적으로는 연해주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것의 구체적 목표가 부동항 확보였다.

이제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의 핵심적인 목적 중의 하나인 부동항 확보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자. 차르는 적국으로 하여금 병합을 철회케 만들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수단으로서의 부동항이 아니라, 뚜렷한 하나의 계획으로서 장기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부동항을 획득하려 하였다.

부동항 획득을 위한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을 추진한 사람은 1895년에 외무대신이 된 로바노프 로스토프스키(러.는 니콜라이 로스토프스키(1892~1906), 니콜라이 로스토프스키) 공이었다. 그는 1895년 4월 6일 차르에게 당시의 정세와 러시아가 향후 취해야 할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⁵⁰⁾ 여기에서 그는 청일전쟁이 종결되면 자국이 수동적인 정책을 펼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인지

44) 러.보. 니콜라이 로스토프스키 1903, p.105.

45) 러.보. 니콜라이 로스토프스키 1928, 니콜라이 로스토프스키(1892~1906), 니콜라이 로스토프스키 p.51.

를 결정해야만 한다고 언급하였다. 만약 러시아가 수동적인 정책을 채택한다면 청나라는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과 관련한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 국경이 안전해질 것이며, 설령 청나라가 개혁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청나라가 청일전쟁의 폐해에서 충분히 회복하기까지 숨을 고를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적극적인 정책을 채택할 경우에는 목표가 두 가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첫째, 태평양에서 부동항 획득과 둘째, 시베리아횡단철도를 더욱 편리한 노선으로 부설하기 위해서 만주의 특정지역을 병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차르는 로바노프의 보고서 중 적극적인 정책에 더 관심을 가졌다. 그가 남긴 메모는 그의 의중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었다. 즉 차르의 로바노프의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썼다. “러시아는 일년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이 필요하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부동항은 대륙(조선 남동부)에 위치한 좁고 긴 땅이어야 하고,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속령들과 반드시 연결시켜야 한다.”⁵¹⁾ 이를 위해 차르는 새로이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정책을 통해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만주에 발판을 마련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이후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실질적인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도 내리고 있었다.

1895년 4월 11일 열린 특별각료회의에서 로바노프는 러시아가 일본의 우호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그 이유는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이 “청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며 동시에 유럽 전체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일본이 남만주를 발판으로 북쪽과 아시아대륙으로 팽창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⁵²⁾ 육군대신 반노프스키 장군은 이에 대해 일본이 만주에 발판을 굳히는 것은, 러시아의 국경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차 아무르강의 경계를 근본적으로 조정하는 데에도 장애가

46) 눈 눈 눈눈눈눈눈 1915, “눈눈눈 눈눈눈 눈눈눈눈눈눈” *눈눈눈눈*, p.247.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일본에게 조선 남부를 모두 양도해서라도 일본이 만주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일본이 만주에 자국의 발판을 세우는 것을 단념하도록 외교적으로 설득해야 하는데, 만일 이 같은 설득이 실패한다면 러시아는 무력 사용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⁵³⁾

비테는 일본이 남만주에 발판을 굳히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다. 그에게 중요한 문제는 자국이 당장 행동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공되어 자국의 지위가 더 강력해지면 그때 가서 일본으로부터 어떤 양보를 받아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일본과 청나라를 동시에 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실질적으로 만주를 점령하지는 않되, 즉각적인 행동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권고하였다. 즉 러시아가 일본의 남만주 점령을 묵인하지 않을 것임을 일본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테는 이 같은 조치가 전쟁을 유발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예상과는 반대로 일본이 외교적인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러시아 함대로 일본 함대를 공격하고 일본의 항구들을 포격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비테는 회의 중 두 번째 발언에서 러시아는 청나라 영토를 절대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 같은 행동은 새로운 충돌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결국 열강의 중국 분할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비테의 주장으로는 “우리는 일본이 승전국으로서 대만, 펑호열도, 그리고 여순까지도 장악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한반도 남부를 차지하는 것까지도 용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주는 안 된다.”⁵⁴⁾는 것이었다. 그는 외무부가 이 같은 노선에 따라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이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① 러시아는 북중국의 현상을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시키는데 노력하고, 일본에게는 남만주를 병합할 의도를 단념하도록 우호적인 태도로 제의한다. 일본이 그 같은 의도를 단념하지 않는다

47) 눈 녹. 눈 녹 1928, pp.57~61.

48) 눈 녹. 눈 녹 1960, 눈 녹 단3. pp.356~357.

면, 러시아는 자국의 이해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본에게 주지시킨다. ② 청나라 및 유럽 열강에게는 “러시아가 영토를 병합할 의도가 전혀 없으나, 일본의 남만주 장악을 저지하는 것이 러시아에게는 필수적인 이해라고 생각한다.”⁵⁴⁾는 점을 통보한다.

결국 4월 16일 황궁에서 차르와 비테, 반노프스키, 로바노프, 그리고 알렉세이 대공만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고, 비테는 4월 11일 내린 결정을 승인하도록 차르를 설득하였다.⁵⁶⁾ 이로써 비테는 새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V. 러시아의 동청철도 부설권과 만주

러시아의 적극적인 동아시아정책은 만주로의 침투였다. 만주는 장차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제국으로서의 발언권을 획득할 수 있는 토대이자 중국 본토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만주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테가 설정한 것은 치타에서 만주를 관통해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동청철도의 부설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1895년 11월 11일 요동반도 반환협정이 체결된 지 3일 후 동청철도 계획을 공문화했다.

비테는 이미 1895년 7월 26일자 보고서에서 그 속내를 드러내 보였다. 그는 차르가 1895년에 설립을 승인한 러청은행이 청나라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는 사실에 덧붙여,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완공과 밀접하게 연계된 조치들을 이행하는데 러시아 정부의 매우 유용한 도구임(러청은행이 청나라의 관리를 매수할 특별기금을 제공하는 창구역할-인용자 주)을 입증하게 될 것”⁵⁷⁾이라고 시사하였다. 이처럼 비테는 시베리아철도가 만주

49) 녹.월. 1903년 1월 1903, pp.1~128.

50) 1932, “1922~1941. LII,” p.72.

51) 1932, pp.75~76-주 2.

를 관통하는 단축노선을 채택해야 한다는 자신의 확신을 암시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비테의 만주철도계획은 많은 반대에 직면했다. 우선 외무부의 아시아국장 카프니스트(눉.눉. 1932)는 비테의 정책과는 반대되는 축소된 철도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비테의 주장이 전략적·정치적 고려는 무시하면서도,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현 상황의 경제적 이점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프니스트는 철도의 경제적 개발은 러시아가 북만주의 내무행정을 통째로 인수하도록 만들 것이며, 또 그 같은 조치는 군사적 점령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두려워하였다.⁵²⁾

카프니스트의 최소화된 계획의 이면에는, 만주 동삼성에서 청나라의 인구와 이해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이유가 자리 잡고 있었다. 북서지방의 흑룡강성은 가장 넓은 지역이나 인구는 가장 적으며(40만 명), 북동쪽의 길림성은 비교적 인구가 조밀하며(62만 명), 남쪽의 목단성(심양)은 청나라 이민을 대부분 수용하여 인구가 가장 많았다(472만 명). 청나라에게 이 세 성 가운데 목단성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지만 흑룡강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지역이라고 카프니스트는 파악했다. 따라서 흑룡강성의 광활한 황무지를 관통하는 러시아 철도를 부설하는 것, 즉 “최소계획에 대해서는 청나라가 거의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⁵³⁾

프리아무르 지역 총독인 두홉스키 육군 중장도 1896년 1월 23일 비테에게 보낸 보고서를 통해 비테가 계획한 노선에 반대하였다.⁵⁴⁾ 그는 북만주통과노선이 방어상 불가능하며, 비테의 계획은 프리아무르 지역의 자원개발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제적 질서를 피하기 위해 최소화된 계획을 주장했다.

그러나 비테는 1896년 4월 12일 자신의 보고서에서 두홉스키의 비판을 반

52) 1932, p.80.

53) 1932, pp.79~80.

54) 1932, p.83.

55) 1932, p.83.

박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쾌하게 정리했다.⁵⁶⁾ 그는 최소화된 노선도 북만주를 가로지르는 노선만큼이나 방어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동아시아의 실질적인 기지는 당연히 트랜스바이칼 지역이 되어야지 프리아무르 지역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테의 보고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것은 만주철도에 대한 비테의 광범한 정치, 경제, 전략적 계획을 최초로 솔직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⁵⁷⁾

비테는 만주관통철도를 러시아의 동아시아 침투과정의 단지 하나의 출발점으로 생각하였다. 남쪽으로 향하는 여러 지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곧 일련의 사건들이 뒤따를 것이었다.” 철도는 만주의 수출입 무역의 대동맥이 될 것이었다.

비테는 철도의 정치적, 전략적 역할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철도는 러시아에게 블라디보스토크로의 병력 수송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정치적·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도 언제든지, 최단 노선으로 러시아의 병력을 서해에 연한 만주로, 그리고 청나라 수도 가까이 집중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위 지역에 상당 규모의 러시아 병력이 출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청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어디에서나 러시아의 국위와 영향력을 대폭 증강시켜 줄 것이다.⁵⁸⁾

결국 만주를 직선으로 횡단하는 노선이 받아들여졌고, 서해로 이어지는 지선은 주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연기되었다. 1896년 3월 시베리아철도위원회의 총감독이자 의장인 쿨롬진이 주최한 특별위원회는 킬코프공, 두흐스키 제독, 육군부, 해군부, 재무부, 내무부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종착지를 안정성과 편리상 최적인 블라디보스토크로 한다는데 합의하였다.⁵⁹⁾

56) 녹눣. ~~북만주~~ 1960, p.37.

57) 녹눣. ~~북만주~~ 1928, p.92.

58) 녹눣. ~~북만주~~ 1928, pp.97~98.

59) 녹. Malozemoff, 2002, p.117.

60) ~~북만주~~ 녹눣. ~~북만주~~ 1932, pp.83~91.

이제 러시아가 주장하는 동청철도를 청나라가 수용하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1896년 4월 18일에 북경주재 러시아공사 카시니는 공식적으로 만주관통철도에 대한 총리아문과의 교섭을 개시하였다.⁶⁵⁾ 그러나 1896년 10월 30일자 노스차이나 헤럴드에 '카시니협약'으로 알려진 '러·청특별협약' 전문이 실렸다. 결국 1896년 4월 30일 회의를 재개했지만 교섭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비테는 또 다른 방법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청나라의 실질적 지배자인 이홍장의 동의를 얻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비테는 4월 30일 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한 이홍장과의 교섭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는 만주관통철도의 조차권을 획득하기 위해 설득력 있는 두 가지 주장을 활용하였다. 즉 러시아와 청나라 사이의 비밀방어동맹 체결과 청일전쟁의 배상금을 위한 차관을 이홍장에게 분할로 300만 루블의 뇌물을 지불하리라는 것이었다.⁶⁶⁾

결국 1896년 6월 3일 비테, 로바노프, 이홍장은 청나라와 러시아 사이의 비밀동맹조약에 서명하였다.⁶⁷⁾ 이 동맹은 두 체결국이 동아시아에서 러시아, 청나라 영토, 혹은 조선에 대해 일본이 공격할 경우 상대국을 원조한다는 사실을 규정하였다(제1조). 그리고 일본에 대한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동안에는 청나라의 모든 항구를 러시아전함에 개방되어야 하며(제2조), 조약은 15년 동안 유효하다는 점을 규정하였다(제6조). 이 추가보장에 청나라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다음의 4조에 담겨 있다.

위협받고 있는 지점에 러시아 지상군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이들의 생존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나라 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 방향으로 길림과 아무르강 지역의 청나라 영토를 가로지르는 철도노선의 부설에 동의한다. 러시아 철도와 이 철도를 연결하는 것은, 청나라 영토에 대한 어떤 침해나 청나라 황제의 주권에 손상을 주기 위한 구실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철도의 부설권과 이용권은 러·청은행에 부여한다. 이 목적을 위해 체결해야 할 계약 조항들은 페테르부르크 주

61) *북대륙의 철도* 1932, pp.91~102.

62) *동. Malozemoff*, 2002, p.118.

63) *북대륙의 철도* 1932, p.92.

재 청나라 공사와 러·청은행이 정식으로 논의할 것이다.⁶⁸⁾

제5조는 평화 시에 이 철도로 이동하는 러시아 군대는 “운송, 수송의 필요”에 따라 정당하다고 간주될 때에 한해 장차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드디어 동청철도 부설권을 러시아가 획득했다. 그러나 동청철도는 곧바로 부설작업에 착수할 수 없었다. 먼저, 1895년 이전까지 만주는 러시아인들이 거의 찾지 않던 곳이었다. 1895년 이전에 프랑스, 벨기에, 영국의 선교사들이 목단과 길림에 있었고, 영국 상인들은 여순에 상주하였으나, 만주 어디에서도 러시아 선교사나 상인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⁶⁹⁾ 러시아 국경에 인접한 아시아 영토에서의 러시아의 탐험이나 특별조사 횡수가 포함된 러시아 참모총장의 ‘비밀’ 문건에도 1895년 이전의 만주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설명조차 없다. 주로 조선이나 북중국을 오고가는 탐험대만이 만주를 방문하였을 뿐이다. 또한 만주의 비적들이 탐사대의 작업을 지연시켰다. 따라서 1896년 4월과 5월, 러청조약에 의해 만주가 개방될 것을 기대한 몇몇 조사대원들이 만주국경에 도착하여 활동했지만 간단한 사전작업을 제외하고는 동청철도 부설은 1898년 봄까지도 시작되지 않았다.⁷⁰⁾

결과적으로 보아 1896년과 1897년의 러시아의 만주 침투는 아직까지는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64) 눈 녹. 러시아의 동아시아 팽창 1898, “러시아의 동아시아 팽창 다년간의 탐험과 발견”
러시아의 동아시아 팽창 XXXIV, pp.361~364.

65) 눈 녹. 러시아의 동아시아 팽창 1928, p.104.

66) 눈 녹. 러시아의 동아시아 팽창 1928, p.116.

67) 눈 녹. 러시아의 동아시아 팽창 1928, p.113.

68) 눈 녹. 러시아의 동아시아 팽창 1928, p.113 ; G.B. Rea, 1935, *The Case for Manchoukuo*, New York, pp.391~393.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당시 러시아는 만주나 간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았다. 또한 간도를 독립적인 지역으로 인식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만주지역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청나라와 협정을 체결하

넓. **늘닷단노**는 여순이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곳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의 항만들이 더 적합하다고 간주했으나 정치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당시 러시아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2~3년 블라디보스토크를 사용하고, 조선의 항구를 획득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⁷⁵⁾

회의의 최종 결정은 결국 여순이나 다른 어떤 항구도 점령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부동항 획득의 열망이 청나라와 조선에서의 세력권과 영토쟁탈전에서 여타 열강을 자제시키려는 정책에 밀려난 것이다.

그러나 1897년 11월 26일과 12월 11일 사이에 니콜라이 2세와 무라비요프는 11월 26일의 특별각료회의의 결정을 뒤엎고 여순 점령을 결정했다. 곧바로 1897년 12월 19일에 여순항에 러시아 함대가 입항하였다. 한편 이홍장이 청일전쟁 배상금의 마지막 지불분인 1백만 냥의 차관을 얻기 위해 러시아에 접근하였던 1897년 12월 14일, 부동항을 획득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16일에 비테는 이 차관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① 러시아만이 만주와 몽골에서의 철도부설권과 그곳의 광산 및 산업회사들의 운영권을 갖는다. ② 동청철도는 황해의 영구 동부의 한 항구까지의 지선부설권을 갖는다. ③ 러시아는 선택된 항만에 한 항구를 건설할 수 있으며 러시아기를 계약한 모든 선박이 이곳에 입항할 권리를 가진다.⁷⁶⁾ 그러나 이홍장은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홍장은 러시아의 관심을 압록강 입구의 한 항구로 돌리고, 러시아가 여순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구두 약속을 받아내려 하였다.⁷⁷⁾

러시아 차관에 따른 조건들을 청나라가 수용할 경우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여순을 일시적이고도 불확실하게 점령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보다도 가치가 있었다. 따라서 여순항 점령 2주 후, 러시아는 대 청나라 차관을 성사시키기고 보다 영구적인 부동항 확보를 위해 철수를 준비하였다.⁷⁸⁾ 그

pp.117~194.

70) 눈 녹. **뉴랴트만노** 1928, pp.129~130.

71) **베다투양실 뉴다투날리** 1982, p.103 이하.

72) **베다투양실 뉴다투날리** 1982, 무라비요프 보고서 단락 pp.22~23.

러나 1898년 2월 1일 러시아 주재 청나라 공사는 이홍장이 결국 러시아의 요구조건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려왔고, 비테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⁷⁹⁾

1898년 2월 1일 이후에는 부동항을 획득하는 것이 러시아 동아시아정책의 최우선적인 과제가 되었다. 임시 국무대신이 된 쿠로파트킨(庫魯巴特金) 장군은 공개적으로 여순항 보유를 주장하였고, 이제 비테도 반대 의사를 철회했다. 비테는 여순에서 모두 철수하는 것보다는 동아시아에서의 목적을 자제하면서 대세에 동참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⁸⁰⁾

2월 중순 특별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⁸¹⁾ 여기에는 해군제독 알렉산드르비치(亞歷山大羅維奇) 대공, 비테, 무라비요프, 쿠로파트킨, 티르토프, 해군참모총장 아벨란 제독, 육군참모총장 사하로프(沙哈羅夫) 장군 등이 참여했다. 이 회의에서는 다음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① 중립구역을 형성하기 위해 북쪽 지역, 즉 요동반도 남쪽 지역의 조차를 요구하고 ② 동청철도에서 요동반도의 한 항구까지의 철도부설권을 요구하고 ③ 그 같은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순에 육해군 합동병력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1898년 2월 20일 무라비요프는 청나라와 여순 조차 교섭을 재개하였다.⁸²⁾ 드디어 1898년 3월 27일에 청나라와 최종적인 조차 조인이 이루어졌고, 결국 러시아는 그토록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부동항을 부여받았다.⁸³⁾ 이곳은 25년 동안 조차되는 것으로 양국의 동의에 따라 갱신될 수 있었다.

1896년부터 1898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은 1894~1895년 특별각료회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만주를 관통하는 시베리아횡단철도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 것은 러시아 동아시아령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우선 동청철도는 트랜스바이칼 지역의 러시아 동아시아령의

73) 庫魯巴特金, 1982, p.102.

74) 庫魯巴特金, 1915, pp.44~46.

75) 庫魯巴特金, 1915, pp.45~46.

76) 庫魯巴特金, 1928, pp.191~193.

77) 庫魯巴特金, 1928, pp.194~195.

78) 庫魯巴特金, 1928, p.198.

여러 기지들 사이에 더욱 신속한 전략망을 마련해 주었다. 동청철도는 북만주의 자원을 개발하고 러시아령 동아시아에 새로운 식량기지를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동청철도의 독점이 확실해짐에 따라서 러시아인이 만주의 국경지대를 확고한 방어지역으로 간주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로 해결된 문제는 여순과 대련만의 조차로 부동항을 확보한 것이다.⁸⁴⁾

부동항 획득정책의 성공은 제3의 정책을 급진전시시켰고 결국 이를 성공하도록 이끌었다. 즉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동청철도라는 러시아의 전략적 축과 광범하게 분포되어 있는 전초기지를 지선으로 연결하려는 정책이 그것이다. 러시아의 정책은 이제껏 그 같은 연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부동항이 조선의 북동부나, 압록강 어귀, 평양 혹은 여순에서 철도조차의 형태로 생각되었는지, 아니면 1895년 니콜라이 2세의 계획에서처럼 좁고 긴 땅을 직접 할양하는 형태로 생각되었는지 간에, 지선과 부동항의 연결은 그 계획의 불가결한 일부였다.

그리고 1898년 7월 6일 러시아와 청나라는 동청철도에서 여순과 대련만까지의 지선을 러시아가 부설한다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지선은 남만주철도라 불렸다. 러시아의 정책의 세 국면이 이제 통합되기 시작했다. 즉 여순은 남만주철도를 통해 기름지고 인구 조밀한 남만주로의 러시아의 경제적 침투를 보호하고, 반면 남만주철도는 여순을 지원하고 유지시킨다. 동청철도는 동아시아령 러시아와 유럽령 러시아의 세력 중심지와 연결한다. 그리고 동청철도와 남만주철도는 여순의 러시아인들의 힘을 통해 페테르부르크의 정책이 북경에서 그리고 동아시아 전역에서 감지되도록 만든다는 것이었다.⁸⁵⁾

79) 눈눅, *뉴러시아* 1928, p.200.

80) 눈눅, *볼갈란디* 1960, p.116.

81) 눈눅, *볼갈란디* 1915, pp.53~54.

VII.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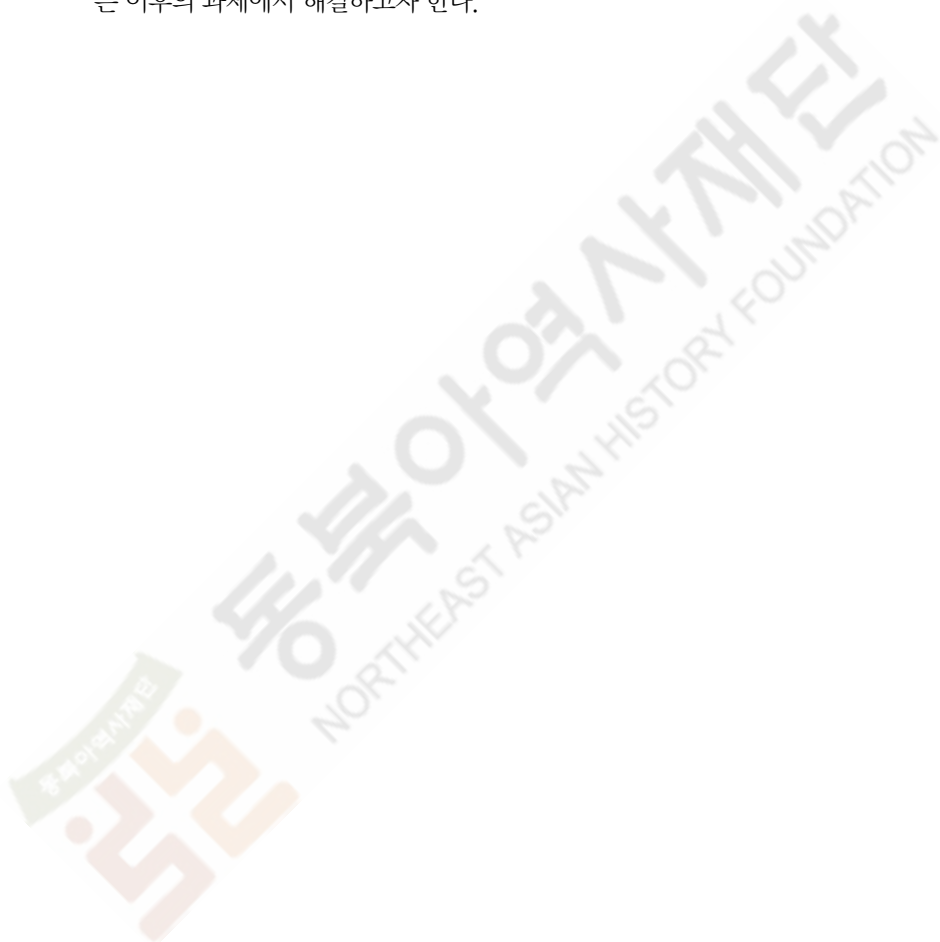
지금까지 1858년에서 1898년에 이르는 러시아의 동아시아 팽창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러시아의 동아시아로의 진출 정책이 항상 일관되게 추진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흔들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러시아는 만주의 장악과 태평양 연안의 부동항 확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외교적,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였다. 1689년 러시아는 중국과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면서 동아시아 남부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했다. 또한 아이훈 조약과 1860년 북경조약을 통해 아이훈강으로부터 아무르강에 이르는 좌안과 연해주를 장악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영역국가로 자리를 잡았다.

1890년대 초에 이르러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이권확득, 만주 장악과 부동항 확보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취하게 된다. 그 정책의 핵심에는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이 자리를 잡았다. 청일전쟁은 탐색 수준에 머물러 있던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변화시킨 계기로 작용했다. 일본이 만주를 침탈하고 여순을 장악하려 하자 동아시아로 침탈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핵심지역으로 만주를 상정하고 있던 러시아는 전쟁과 침탈의 소용돌이에 들어서고 있던 당시의 상황을 불구경하듯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재무대신이었던 비테는 일본의 만주 침탈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러시아가 일본의 주요한 적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만주를 경제적, 전략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는 시베리아횡단철도를 빠른 시일 안에 부설해야 할뿐만 아니라 만주를 가로지르는 동청철도 건설도 조속히 실현시켜야 할 과제로 상정했다. 결국 러시아는 1896년 6월 3일 이홍장과의 비밀동맹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동청철도 부설권을 손아귀에 쥐 수 있었다.

러시아의 차르 니콜라이 2세는 동아시아에서의 부동항 확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청일전쟁 이후 그 관심은 표면으로 드러났다. 니콜라이는 한반도에 있는 한 지역을 부동항으로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청나라의

여순이 부동항의 최우선적인 후보지가 되었고, 1898년 3월 청나라와 조차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러시아가 그토록 염원하던 부동항을 확보했다. 20세기 초 실제로 만주를 장악하기 위한 러시아의 만주 침투와 그 결과 빚어진 러일전쟁은 이후의 과제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ABSTRACT]

Manchuria and The Russia's Expansion into East Asia,
1858~1898

Hong, Woong-Ho

Although the expansion policy of Russia into East Asia was not always consistently driven, Russia never vacillate on the its ultimate purpose. Russia ceaselessly mobilized all the available diplomatic tactics and military resources in order to accomplish the aim: taking over Manchuria and procuring an ice-free port on the Pacific coast. In 1689, Russia moved into the territories of Eastern Siberia and Maritime Province in Siberia by concluding the Nerchinsk treaty with China.

By the early 1890s Russia adopted a more fundamental policy so as to acquire the economic benefit in East Asia, occupy Manchuria, and secure an ice-free port. The focus of the policy was to construct the railway crossing Siberia. China-Japan War(清日戰爭) became the opportunity in which the Russian foreign policy toward East Asia was changed decisively. Vitte, the secretary of treasury of Russia, thought that Japanese invasion of Manchuria was only the beginning of Japan's real national ambition, and that Japan would consequently be a big potential enemy of Russia. To hold sway Manchuria economically and strategically, therefore, Russia not only completed constructing the railroad as soon as possible, but also planned to build the Eastern China Railway(東青鐵道) over Manchuria. On 3 June 1896, Russia

finally agreed a secret alliance treaty with Li Hong Jang of China so that Russian government managed to get the Eastern China Railway charter in its hand.

Nikollai II of Russia was interested very much in obtaining of an ice-free port of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then a harbor in China was considered to be the best possible ice-free port desired for a long time. In March, 1898 Russia succeeded in procuring the Russia's long cherished ice-free port by signing the cession of territory treaty with China.

keywords

Russia, Policy of East Asia, Manchuria, the Siberian railway, Ice-free harbor acquisition, S.Y.Vitte

논문



高句麗 租稅制와 民戶編制

박 남 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논총」 14호

동북아역사재단

2006年 12月

高句麗 租稅制와 民戶編制

박 남 수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I. 머리말

삼국의 조세제에 대해서는 고구려·백제의 것만 전하는데, 고구려 조세제는 『隋書』와 『周書』, 『北史』에 소개되어 있다. 이들 사서 가운데 고구려 조세조항에 관한 내용은 『隋書』 高句麗傳에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주로 『隋書』 고구려전을 분석함으로써 고구려 조세제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고구려 조세제도는 人頭稅로서의 稅와 3等戶制에 기반한 租를 수취하였으며 그 稅額에 비추어 人頭稅가 주종이었다는 것, 그리고 人과 遊人, ‘隨其所有 量貧富差等輸之’의 의미 등에 관한 해석이 연구의 중심 과제였다.¹⁾

그러나 기왕의 연구는 중국 사서의 고구려 조세제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으로서, 중국 사서가 지니는 관점이나 서술상의 특징, 용어의 용법

1) 『隋書』 「고구려전」 조세조항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는 金基興, 1987, 「6·7세기 고구려의 조세제도」, 『한국사론』 17, 서울대 국사학과 참조.

등에 대한 천착이 없었다. 이에 필자는 「三國의 經濟와 交易活動」에서 고구려·백제의 조세제에 관한 3종의 사서를 비교함으로써, 고구려 조세조항의 경우 『隋書』와 『北史』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나 『北史』와 『周書』는 백제 租稅 조항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²⁾

또한 필자는 위의 논문에서 삼국의 조세제 관련 기사를 검토하여 삼국 개별국가의 독자적인 사회경제적 발전단계를 살피고자 하였으나, 당시 '삼국의 전쟁과 교역' 문제에 한정된 논제로 인하여 조세제나 사회경제 구성 등에 소략하였다. 특히 고구려 조세제의 실상과 이와 관련된 일반민, 그리고 새로이 획득한 인민·포로들을 편제하는 방식 및 사회경제 구성 등에 대하여 천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밝히는 것은 당시 삼국의 국가 경쟁력 비교나 고구려의 재정구조, 사회경제 발전단계를 밝히는 관건인 까닭에 후일을 기약했던 바, 본 소론에서 그 구체적 실상을 살피고자 한다.

이에 먼저 기왕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隋書』와 『周書』 고구려전의 조세제 관련 내용이 전체 고구려전 기사에서 어떻게 서술되었고, 그 내용은 어떠한 배경에서 기술되었는가를 살핌으로써 관련 기사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고구려 조세제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인 기록을 보여주는 『隋書』 고구려전의 租와 稅의 성격을, 『隋書』에 보이는 '租'와 '稅'의 용례를 통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租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른바 '三等戶'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천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논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 '遊人'의 성격을 『隋書』의 '遊'字 용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고구려의 사회경제 상황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遊女' 기사의 발생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고구려 조세제와 관련하여 고구려 민호 편제의 양상에 접근하고, 나아가 고구려 사회경제 구성 문제와 관련하여 식읍과 하호의 관계, 고구려의 정복전쟁 과정에서 민의 직접지배 방식으로의 전환, 그리고 경작과 공물 생산, 수묘역을 담당할 민들의 편제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2) 박남수, 2004, 「삼국의 경제와 교역활동」, 『신라문화』 24.

단편적인 자료로 고구려 사회경제상을 밝히는 것이 무리한 작업이라 생각되지만, 이를 통하여 고구려 사회경제사 연구에 진전이 될 수 있다면 다행이라 여기며, 많은 질정을 바란다.

II. 高句麗 租稅制 記事의 再檢討

1_ 『隋書』·『周書』 高句麗傳 租稅制 記事

주지하듯이 고구려 조세제에 관한 내용은 다음 『隋書』와 『周書』, 『北史』에 소개되어 있고, 백제의 조세제는 『周書』에 소개되고 있다.

A - ① 人稅布五匹 穀五石 遊人則三年一稅 十人共細布一匹 租戶一石 次七斗 下五斗 …… 婦人淫奔 俗多遊女 有婚嫁者 取男女相悅 然即爲之 男家送猪酒而已 無財聘之禮 或有受財者 人共之 …… 葬則鼓 作樂以送之 埋訖 悉取死者生時服玩車馬置於墓側 會葬者爭取而去(『隋書』 권81, 列傳46, 高麗)

② 其衣服與高麗略同 …… 行宋元嘉曆 以建寅月爲歲首 …… (『隋書』 권81, 列傳46, 百濟)

B - ① 賦稅則絹布及粟 隨其所有 量貧富差等輸之 土田峯薄 居處節儉 (『周書』 권49, 列傳41, 高麗)

② 其衣服 男子袴同於高麗 …… 用宋元嘉曆 以建寅月爲歲首 …… 賦稅以布絹絲麻及米等 量歲 儉 差等輸之(『周書』 권49, 列傳41, 百濟)

C - ① 稅布五疋穀五石 遊人則三年一稅 十人共細布一疋 租戶一石 次七斗 下五斗(『北史』 권94, 列傳82, 高句麗)

② 其飲食衣服 與高麗略同 …… 行宋元嘉曆 以建寅月爲歲首 賦稅以布絹絲麻及米等 量歲 儉 差等輸之(『北史』 권94, 列傳82, 百濟)

이들 자료 가운데 고구려 조세 조항에 관한 내용은 위의 세 사료 가운데 『隋書』 고구려전이 가장 자세하고, 『北史』의 경우 『隋書』의 내용을 전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주로 『隋書』 고구려전을 분석함으로써 고구려 조세제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전술하였듯이 『隋書』 동이전과 『周書』가 貞觀 10년(636)에 완성되었고, 양 사서에 기술된 삼국 관련 기사에 있어서, 『周書』가 前史들의 서술을 그대로 轉寫한 것이 아니라 前史에 없던 상태의 서술이 많아 오히려 북조의 사서인 『魏書』와 고구려·백제 등에 관한 다른 계통의 사료에 의거했을 것으로 살핀 바 있다.

『隋書』의 경우 수와 고구려의 관계로 보아 더 근원적이고 자세한 기술이 기대될 수 있으나 그러지 못하고 그 내부적인 상태를 기록할 만한 자료가 적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³⁾ 이에 『隋書』 고구려전 조세조항의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하여 『周書』보다 사료적 가치를 더 높이 평가⁴⁾하기 보다는, 양 사서가 포괄하고 있는 의미를 찾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周書』의 경우 백제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 관련 용어를 ‘賦稅’로 통일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고구려 조세제에 대하여는 ‘量貧富 差等輸之’라고 하고, 백제의 경우 ‘量歲 儉 差等輸之’라고 함으로써 고구려·백제 양국의 조세제에 대한 성격을 기술하고 있어, 고구려는 貧富를 조사하고 등급을 매겨 收稅하였으며, 백제의 경우 매년 豐儉을 헤아려 그 해의 등급을 매겨 收稅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⁵⁾

그러므로 『周書』의 관점에서 본다면 고구려 收稅의 基準은 자산의 소유에 대한 貧富의 정도가 되며, 빈부의 정도는 絹·布·粟의 생산 내지 소유한 바

3) 高柄翊, 1970, 「中國正史의 外國列傳」, 『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대 출판부, 31~32쪽.

4) 金基興, 1992, 「三國時代 稅制의 성격」, 『國史館論叢』 35, 113쪽.

5) 이러한 차이는 양국의 조세제의 기원이나 양국 생산양식상의 차이로 말미암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오늘날의 연구자들이 사료의 빈곤함을 이유로 『구당서』의 찬자가 “凡諸賦稅及風土所產 多與高麗同”이라 서술한 것을 비판없이 수용함으로써 안일하게 고구려·백제·신라의 산물이나 세제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박남수, 2004, 앞의 글, 7쪽).

〈표 1〉 『周書』·『隋書』 고구려전 비교

구분	『周書』 고구려전	『隋書』 고구려전
찬술시기	貞觀 10년(636)	貞觀 10년(636)
찬술자	唐 令狐德美 등	唐 魏徵·長孫無忌 등
대상시기	고구려 건국~577년	고구려 건국~614년
전체내용 구성	고구려의 出自 - 건국 - 지세 - 도성(別都 / 10城) - 관제(13등) - 형법 - 의복 - 서적 - 병기 - 부세 - 산물 - 풍속 - 대통(546)과 건덕 연간(577) 책봉 사실 간략 서술	고구려의 出自(건국신화 상세) - 건국(隋代까지의 世系 비교적 상세) - 지세 - 도성(三京) - 관제(12등: 육살에 대한 평가 상이) - 의복 - 병기 - 국왕 校獵 - 조세 - 형법 - 樂 - 풍속 - 개황 이후 수대의 중국과의 관계 상세 서술

에 따라 査定되고, 사정된 등급에 따라 징수됨을 알 수 있다. 『周書』의 내용을 『隋書』 고구려전 조세조항에 대비하면, 빈부의 정도에 대한 등급은 戶에 대하여 상·중·하 3등급으로 매겼으며, 이들 3등호에 대해서는 租를 수취하였던 것이라 하겠다.⁶⁾

이와 같은 기왕의 검토에도 불구하고 『隋書』와 『周書』에 보이는 고구려 조세제 관련 내용의 차이를 두 사서 찬자의 관점의 차이로만 돌리기에는 주저되는 바가 있다. 이 두 사서 고구려전을 서로 비교하여 볼 때에, 찬술 대상시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장 구성, 내용상의 간략함과 상세함, 제도에 대한 이해의 차이, 새로운 내용의 추가 등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周書』와 『隋書』의 전체적인 내용 구성을 살필 때,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隋書』가 『周書』보다도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였음을 볼 수 있다. 『隋書』 고구려전에는 고구려의 출지에서 하백녘로부터 주몽이 출생하는 고구려 건국신화를 자세히 소개하였는 바, 광개토대왕릉비에 보이는 건국신화와 같은 내용으로서 당시 고구려 건국신화가 광개토대왕릉비의 내용을 따르고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⁷⁾ 또한 『周書』에는 보이지 않는 주몽으로부터 隋代에

6) 박남수, 2004, 앞의 글, 5~11쪽.

이르는 고구려 王系를 서술하면서, 관구검과 모용씨의 고구려 침략 사실뿐만 아니라, 근초고왕의 고구려 침범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⁸⁾ 아울러 國王의 校獵 기사나 樂, 水石戰의 풍속과, ‘與新羅每相侵奪 戰爭不息’ 한 사실 등을 새로이 소개하였으며, 조세나 장례의 풍속은 『周書』보다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에 비해 『周書』는 『隋書』에 보이지 않는 대대로 관련 기사와 서적 관련 기사를 소개하면서, 형법에 있어서는 『隋書』보다도 구체성을 띠고 있다.

이는 지적되듯이 양 사서가 근거한 사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겨진다. 특히 고구려 관제에 있어서 『周書』가 대대로를 대관으로 여긴데 비해 『隋書』는 이를 서술하지 않고 대대로 대치하였으며, 『周書』가 육살을 관등으로 여긴데 대해 『隋書』는 별도의 관직으로 서술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여기에서 두 사서의 관점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양 사서의 차이는 양 사서가 근거했던 자료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周書』와 『隋書』 고구려 조세제 관련기사는 서로 보완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둘째, 『周書』 편찬 시에 근거한 자료가 무엇인지는 자세하지 않으나, 『隋書』 고구려전은 『隋書』 經籍志에 보이는 楊曄 撰『華夷帝王世紀』 30권, 『諸蕃風俗記』 2권, 『諸蕃國記』 17권, 『丘儉紀』 3권 등의 자료를 활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⁹⁾ 이들 자료는 수나라가 고구려와 비교적 잦은 사신 왕래를 통하여

7) ① “高麗者 其先出於夫餘 自言始祖曰朱蒙 河伯女感日影所孕也 朱蒙長而有材 夫餘人惡而逐之”(『周書』 권49, 『列傳』41, 百濟).

② “高麗之先 出自夫餘 夫餘王嘗得河伯女 因閉於室內 爲日光隨而照之 感而遂孕 生一大卵 有一男子破殼而出 名曰朱蒙 夫餘之臣以朱蒙非人所生 咸請殺之 王不聽及壯 因從獵 所獲居多 又請殺之 其母以告朱蒙 朱蒙棄夫餘東南走 遇一大水 深不可越 朱蒙曰 我是河伯外孫日之子也 今有難 而追兵且及 如何得渡 於是 魚鼈積而成橋 朱蒙遂渡 追騎不得濟而還”(『隋書』 권81, 『列傳』46, 高麗).

8) ① “土于紇斗骨城 自號曰高句麗 仍以高爲氏 其孫莫來漸盛 擊夫餘而臣之 莫來裔孫璉 始通使於後魏”(『周書』 권49, 『列傳』41, 百濟).

② “朱蒙建國 自號高句麗 以高爲氏 朱蒙死 子閭達嗣 至其孫莫來興兵 遂并夫餘 至裔孫位宮 以魏正始中入寇西安平 丘儉拒破之 位宮玄孫之子曰昭列帝 爲慕容氏所破 遂入丸都 焚其宮室 大掠而還 昭列帝後爲百濟所殺 其曾孫璉 遣使後魏 璉六世孫湯 在周遣使朝貢 武帝拜湯上開府 遼東郡公 遼東王 高祖受禪 湯復遣使詣關 遣授大將軍 改封高麗王 歲遣使貢不絕”(『隋書』 권81, 『列傳』46, 高麗).

획득한 정보에 바탕하였을 것이다. 『三國史記』 고구려본기에 따르면 고구려는 평원왕 때에 4차(581, 582, 583, 584), 영양왕 때에 4차(591, 592, 597, 600)에 걸쳐 사신을 보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양왕 11년(600)에 『留記』를 편찬하였는 바,¹⁰⁾ 이러한 고구려 역사서는 자연스럽게 사신을 통하여 수나라에 유입되었을 것이고, 隋의 『華夷帝王世紀』, 『諸蕃風俗記』, 『諸蕃國記』 등을 찬술할 때에 고구려 관련 자료로서 활용되었을 것이다.¹¹⁾ 더욱이 隋 嘉則殿의 서적 37만여 권이 隋·唐 교체의 혼란기를 겪고 난 唐 武德 초에 8만여 권으로 줄어들었고 『隋書』를 찬술하게 된 貞觀年間에는 남은 책마저 모두 없어진 상황에서,¹²⁾ 『隋書』의 찬술자들은 새로이 수집한 『諸蕃風俗記』·『諸蕃國記』·『華夷帝王世紀』 등을 참조하였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모두 隋朝에서도 관직을 지냈던 인물들이어서 스스로가 수나라 때 겪었던 직·간접적인 見聞과 사신들의 傳聞 등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사정을 인식하여 서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¹³⁾

『隋書』의 찬술에 참여한 秘書監 魏徵·顏師古 등이 천하의 서적을 두루

9) 『隋書』 권33, 「志」 28, 經籍二史.

10) “十一年 春正月 遣使入隋朝貢 詔大學博士李文真 約古史爲新集五卷 國初始用文字 時有人記事一百卷 名曰留記 至是刪修”(『三國史記』 권20, 「高句麗本紀」 8, 창陽王)

11) 內藤虎次郎은 隋代(581~618)에 찬술된 『東蕃風俗記』가 『隋書』에 보이는 『諸蕃風俗記』의 한 장일 것으로 추측했고, 李基東은 『翰苑』·『通典』 등에 인용되는 것으로 보아 별개의 책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해했다(李基東, 1978, 「新羅 太祖 星漢의 問題와 興德王陵碑의 發見」, 『大丘史學』 15·16).

12) 『新唐書』 권57, 「志」 47, 藝文 1.

13) 『隋書』의 紀와 傳은 魏徵·顏師古·孔穎達·許敬宗 등이 정관 10년(636)에 완성하였다. 魏徵(580~643)은 隋書의 서론만을 맡았었다. 그는 隋 말엽 瓦崗起義軍에 들어가 李密의 掌書檄이 되었다가 당에 항복하였으나, 다시 竇建德에게 잡힌 바 되었다. 당나라가 중국을 통일함으로써 당 조정에서 太子洗馬를 지냈고, 太宗이 즉위하자 諫議大夫에 발탁되었으며 정관 7년(633) 侍中에 임명되었다(『新唐書』 권97, 「列傳」 22, 魏徵). 顏師古(581~645)는 수나라 때 任安養縣尉를 지냈고 唐 貞觀 중에 魏徵 등과 함께 『隋書』의 찬술에 참여하였으며 經籍 및 晉·宋의 舊文에 능했다(『新唐書』 권198, 「列傳」 123, 顏師古). 孔穎達(574~648)은 隋 大業 초에 明經으로 선발되어 河內郡 博士를 수직하였으며 煬帝에 의해 太學助教에 보임되기도 했다. 당나라 초기에는 秦王府 文學館 學士에 임명되었다가 國子博士, 給事中 등을 지냈

구매하기 위해 진력하였고,¹⁴⁾ 『隋書』 식화지를 찬술한 長孫無忌가 당나라의 고구려 정벌 시 태종의 측근에서 보좌하였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은¹⁵⁾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나라는 고구려 정벌에 앞서 職方郎中 陳大德 答勞를 고구려에 보내어 고구려 정세를 면밀히 살폈던 바,¹⁶⁾ 그러한 사실은 당태종의 측근에서 활약했던 長孫無忌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장손무기는 『隋書』 편찬 당시에 식화지를 직접 찬술하였던 인물이었다는 만큼 고구려 조세조항에 대한 내용도 검토 내지 직접 기술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실은 『隋書』 고구려전의 새로운 기사나 새로이 첨가된 구체적인 내용이 당시에 고구려를 오고 간 사신들의 견문이나, 고구려 정벌에 앞서 취득한 정보, 찬술자 자신이 얻은 정보로부터 비롯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周書』와 『隋書』의 대상시기를 살펴볼 때에, 『周書』가 고구려 건국으로부터 北周 武帝 建德 6년(577, 고구려 평원왕 19) 고구려 평원왕을 책봉

다(『新唐書』 권198, 「列傳」123, 孔穎達). 許敬宗(592~672)은 隋 말엽에 李密 원수의 府室室에 임명되었다. 그 후 당태종 때에 著作郎, 中書舍人 兼 修國史, 給事中 兼 史職을 지냈고, 정관 17년(643) 高祖 · 太宗實錄의 수찬에 참여하기도 했다(『新唐書』 권223上, 「列傳」148上, 許敬宗).

14) 『新唐書』 권57, 「志」47, 藝文 1.

15) ① “二年 閏六月 唐太宗曰 蓋蘇文弑其君而專國政 誠不可忍 以今日兵力 取之不難 但不欲勞百姓 吾欲使契丹 · 靺鞨擾之何如 長孫無忌曰 蘇文自知罪大 畏大國之討 嚴設守備 陛下姑爲之隱忍 彼得以自安 必更驕惰 愈肆其惡 然後討之未晚也 帝曰 善 遣使持節備禮册命 ……”(『三國史記』 권21, 「高句麗本紀」 9, 寶臧王 上).

② “四年 …… 夏四月 …… 先是 …… 帝至安市城 進兵攻之 北部獯薩高延壽 · 南部褥薩高惠真 帥我軍及靺鞨兵十五萬 救安市 …… 帝悉召諸將問計 長孫無忌對曰 臣聞 臨敵將戰 必先觀士卒之情 臣適行經諸營 見士卒聞高句麗至 皆拔刀結 喜形於色 此必勝之兵也 陛下未冠 身親行陣 凡出奇制勝 皆上稟聖謀 諸將奉成算耳 今日之事 乞陛下指 帝笑曰 諸公以此見讓 朕當爲諸公商度 乃與無忌等 從數百騎 乘高望之”(『三國史記』 권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上).

16) “二十四年 帝以我太子入朝 遣職方郎中陳大德答勞 大德入境 所至城邑 以綾綺厚餉 官守者曰 吾雅好山水 此有勝處 吾欲觀之 守者喜導之 遊歷無所不至 由是悉得其纖曲 見華人隋末從軍沒留者 爲道親戚存亡 人人垂涕 故所至 士女夾道觀之 王盛陣兵 衛引見使者 大德因奉使 國虛實 吾人不知 大德還奏 帝悅 大德言於帝曰 其國聞高昌亡 大懼 館候之勤 加於常數 帝曰 高句麗 本四郡地耳 吾發卒數萬 攻遼東 彼必傾國救之 別遣舟師 出東萊 自海道 趨平壤 水陸合勢 取之不難 但山東州縣 凋 未復 吾不欲勞之耳”(『三國史記』 권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하는 기사까지를 하한으로 한 데 비해, 『隋書』는 건국으로부터 수양제 10년(614) 고구려 원정을 포기한 때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구려 조세제에 관한 내용이 『위서』나 『양서』 등 『周書』와 『隋書』 이전 시기를 다루는 사서에는 보이지 않고, 『周書』에서 “賦稅則絹布及粟 隨其所有 量貧富 差等輸之”라고 하였던 것이, 『隋書』에서 “人稅布五匹 穀五石 遊人則三年一稅 十人共細布一匹 租戶一石 次七斗 下五斗”라고 서술한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또한 『周書』로부터 『隋書』로의 내용 변화가, 개괄적인 데서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뀐 사실을 살필 수 있는데, 당시 사신의 내왕이나 고구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사실로 미루어 단순한 관점의 차이로 치부하기보다는 오히려 고구려 조세제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하게 한다.

그러므로 北周 武帝 建德 6년(577, 고구려 평양왕 19)까지의 『周書』의 조세제 내용이, 그 이후 614년까지 사이의 어느 시기에인가 『隋書』에 보이는 바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조세제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주서』와 『수서』 고구려전의 서술이 형법, 의복, 풍속 관련기사에서는 그 내용상 크게 다른 점이 보이지 않고 간략하고 상세한 점에서만 차이가 있는 반면에, 오직 조세제의 경우만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상이한 형태로 서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2_ 租와 稅, 三等戶制

『周書』와 『隋書』 고구려전이 상호 보완하는 성격을 지니고, 『隋書』가 당시에 획득한 자료로써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三國史記』 고구려본기에는 『隋書』 조세제의 내용을 보완할 만한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租나 稅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찾을 수 없고, 수양제와 당고종이 고구려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내린 조서에서 간략히 언급했을 뿐이다.

D - ① 二十三年 春正月壬午 帝下詔曰 高句麗小醜 迷昏不恭 …… 豈爲臣之禮 此而可忍 孰不可容 且法令苛酷 賦斂煩重 強臣豪族

咸執國鈞 朋黨比周 以之成俗 賄貨如市 冤枉莫申 重以仍歲災
凶 比屋饑饉 兵戈不息 役無期 力竭轉輸 身填溝壑 百姓愁苦
爰誰適從 境內哀惶 不勝其弊 廻首面內 各懷性命之圖 黃髮稚
齒 咸興酷毒之歎 省俗觀風 爰誰幽朔 弔人問罪 無俟再駕 於是
親總六師 用申九伐 …… (『三國史記』 권20, 高句麗本紀8, 창
陽王)

- ② 二十五年 …… 冬十二月 高宗 以李勣爲遼東道行軍大總管兼安撫大使 以司列少常伯安陸 處俊副之 龐同善·契苾何力爲遼東道行軍副大總管兼安撫大使 其水陸諸軍總管并轉糧使竇義積·獨孤卿雲·郭待封等 受勣處分 河北諸州租賦 悉詣遼東給軍用 …… (『三國史記』 권22, 高句麗本紀10, 寶臧王 下)

위 D-①은 수양제가 고구려 법령이 가혹하고 賦斂이 煩重하며, 役に 기한이 없는 과중함을, D-②는 중국이 고구려 정벌을 위해 하북지방의 租賦를 요동지방에 보내어 軍用に 充당한 내용이다. 따라서 위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구려에 부럼제도가 존재하며, 그것이 중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번잡하고 과중하며, 요역의 기한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신라·백제의 경우 大水나 旱蝗 등으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면 예외없이 '發倉賑恤 又復一年租調' 하거나 '復一年租調' 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의 경우 백성들이 굶주릴 경우 '一年租調' 를 면해주는 기사를 볼 수 없으며, 오직 '發使賑恤' '發倉賑給' 하거나 '發使撫恤' '王巡撫恤' 한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다.

- E - ① 二年(45) 春三月 宴^한臣 夏五月 國東大水 民饑 發倉賑給(『三國史記』 권14, 高句麗本紀2, 閔中王)
- ② 二年(49) …… 三月 暴風拔樹 夏四月 隕霜雨雹 秋八月 發使賑恤 國內饑民(『三國史記』 권14, 高句麗本紀2, 慕本王)
- ③ 五十六年(108) 春 大旱 至夏赤地 民饑 王發使賑恤(『三國史記』 권15, 高句麗本紀2, 大祖大王)
- ④ 十六年(194) 秋七月 墮霜殺穀 民飢 開倉賑給 …… (『三國史記』 권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 ⑤ 四年(273) 秋七月丁酉朔 日有食之 民饑 發倉賑之(『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5, 西川王)
- ⑥ 二年(332) 春二月 王如卒本 祀始祖廟 巡問百姓老病賑給 三月 至自卒本(『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6, 故國原王)
- ⑦ 六年(389) 春 饑 人相食 王發倉賑給(『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6, 故國壤王)
- ⑧ 三年(521) 夏四月 王幸卒本 祀始祖廟 五月 王至自卒本 所經州 邑貧乏者 賜穀人一斛(『三國史記』 권19, 高句麗本紀7, 安臧王)
- ⑨ 六年(536) 春夏 大旱 發使撫恤饑民 秋八月 蝗(『三國史記』 권19, 高句麗本紀7, 安原王)
- ⑩ 七年(537) 春三月 民饑 王巡撫賑救(『三國史記』 권19, 高句麗本紀7, 安原王)
- ⑪ 二十三年(570) 春二月晦 星隕如雨 秋七月 霜雹殺穀 冬十月 民饑 王巡行撫恤(『三國史記』 권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먼저 위의 기사에서 대체로 5세기 이전에는 ‘發使賑恤’과 ‘發倉賑給’ ‘開倉賑給’의 기사만이 보이는데, ‘發使賑恤’은 국왕이 사신을 파견하여 백성을 救恤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發倉賑給’ 또는 ‘開倉賑給’은 창고를 열어 곡식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그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6세기 무렵부터는 ‘發使撫恤’의 기사는 전대와 같으나 새로이 ‘發倉賑給’ ‘開倉賑給’의 기사가 사라지고 ‘王巡撫恤’의 기사가 나타나, 왕이 직접 지방을 순무하거나 사신을 파견하여 백성을 ‘撫恤’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5세기 이전 ‘發倉賑給’이나 ‘開倉賑給’ 기사는, 『三國志』 위지의 “고구려에는 큰 창고가 없고 집집마다 京이라는 작은 창고가 있다”¹⁷⁾는 기사와 서로 어긋난다. 가내의 작은 ‘京’의 식량으로 굶주린 백성에게 나눠주어 구휼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의 차이는 다른 데서 연유를 찾아야 할 것 같고, 그것은 뒤에 다시 서술하겠지만 諸加나

17) “…… 無大倉庫 家家自有小倉 名之爲 京”(『三國志』 권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30, 高句麗).

大家, 또는 국왕의 고급신료들이 운영하는 별도의 창고를 상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¹⁸⁾ 요컨대 5세기 이전에는 국왕이 饑民을 직접 구휼하는 형태와 諸加·大家들이 자신들이 관리·운영하던 창고를 열어 민을 구휼하는 형태가 동시에 존재했던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후 5세기를 전후한 때부터는 일반민에 대한 국왕의 직접 통치 방식이 강화되면서 사신을 지방에 파견하거나 국왕이 직접 순무하여 진휼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 평양성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성에까지 창고를 두어 비상시에 대비하는 형태로 전환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周書』와 『北史』 고구려전에는 평양성 내에 식량과 무기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 외적의 침입 시에 방비에 임한다¹⁹⁾는 사실을 전하는데, 평원왕 32년(590) 陳이 멸망했다는 것을 전해들은 왕이 두려워하여 理兵積穀 爲拒守之策을 삼았다는 것이나,²⁰⁾ 보장왕 4년(645) 당나라 침략 시 함락당한 고구려성 내에 상당량의 식량을 비축해 놓았던 상황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²¹⁾

아무튼 앞서 살폈듯이 중국인의 관점에서는 고구려에 분명히 중국과 유사한 조세제도가 있었으며, 그것이 매우 번잡하며 과중하였던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隋書』 고구려전의 조세제에 관한 내용은 『隋書』 찬술자, 곧 중국인의 관점에서 서술한 사실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에 『隋書』 고구려전 조세조

18) 권오영은 창고의 소유형태가 '취락 → 취락 내 소구역(세대복합체군) → 주거군(세대복합체) → 개별주거(세대)'로 축소되었음을 지적하였는데(권오영, 1996, 『삼한의 國』에 대한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82쪽), 이인철은 이를 바탕으로 창고 소유형태의 축소와 함께 토지의 개별 점유 내지 사적 소유 단계로 발전하였던 것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고구려 京은 토지소유가 공동소유-개별점유단계에 있었던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이인철, 2002, 『한국고대의 사회경제구성』, 『백산학보』 64, 199~200쪽). 사실 京이 개별 가구의 토지소유를 반영한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며, 이러한 논의에서 더 나아가 大加 또는 諸家が 관리·운영하는 큰 창고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을 듯하다.

19) “…… 平壤城 …… 城內唯積倉儲器備 寇賊至日 方入固守 ……”(『周書』 권49, 「列傳」41, 高麗; 『北史』 권94, 「列傳」82, 高句麗)

20) 『三國史記』 권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32년.

21) 『三國史記』 권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上.

항을 『隋書』 편찬자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필자는 일반적 의미로서의 부세가 稅와 租로 구분되며, ‘稅’는 調의 성격을, 그리고 ‘租’는 田租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隋書』 고구려전 조세조항을 풀이한 바 있으나,²²⁾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것은 아니었다. 사실 ‘租’가 田租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고정화되기 시작한 것은 당 武德 7년(624) 3월 29일에 均田制를 실시하면서 賦稅制를 정하여 每丁에 口分田과 永業田을 지급하는 동시에 租庸調를 징수하면서부터이다.²³⁾ 물론 『隋書』가 완성된 것이 貞觀 10년(636)의 일로서 이 무렵에는 이러한 관념이 일반화되어 있었겠지만, 『隋書』의 내용이 수대의 자료에 근거한 것이고, 수의 조세제도가 당나라 균전제의 전개양상과는 차이가 있으며, 『隋書』 고구려전의 대상시기가 614년까지이므로, 『隋書』에서 ‘租’와 ‘稅’를 사용한 용법을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F - ① 都下人多爲諸王公貴人左右 佃客典計 衣食客之類 皆無課役 官品第一第二佃客無過四十戶 …… 第九品五戶 其佃穀皆與大家量分其典計 官品第一第二 置三人 第三第四 置二人 第五第六及公府參軍殿中監監軍長史司馬部曲督關外侯材官議郎已上一人 皆通在佃客數中 官品第六已上并得衣食客三人 …… 客皆注家籍 其課 丁男調布絹各二丈絲三兩綿八兩祿絹八尺祿綿三兩二分租米五石 祿米二石 丁女竝半之 男女年十六已上至六十爲丁男 年十六亦半課 年十八正課 六十六免課 女以嫁者爲丁 若在室者年二十乃爲丁 其男丁每歲役不過二十日 又率十八人出一運丁役之其田畝稅米二斗 蓋大率如此……

② 元象興和之中 頻歲大穰穀斛至九錢 是時法網寬弛 百姓多離舊居闕於 賦 神武乃命孫騰高隆之分括無籍之戶 得六十餘萬 於是 僑居者各勒還本屬 是後租調之入有加焉 …… 及文宣受禪多所創 …… 以備邊要 始立九等之戶 富者稅其錢 貧者役其力 北

22) 박남수, 2004, 앞의 글, 24쪽.

23) 李弘植, 1955, 「『三國史記』의 ‘租’의 用法」, 『서울大學校 論文集-인문·사회과학-』 3 : _____, 1971,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497~498쪽.

興長城之役 南有金陵之戰 …… 兼并戶口 益多隱漏 …… 由是 姦欺尤甚戶口 租調十亡六七 ……

- ③ 至河清三年 定令乃命人居十家爲比 五十家爲閭里 百家爲族黨 男子十八以上六十五以下爲丁 十六已上十七已下爲中 十六已上爲老 十五已下爲小 率以十八受田輸租調 二十充兵 六十免力役 六十六退田免租調 …… 又每丁給永業二十畝爲桑田 其中種桑五十根榆三根棗五根 不在還受之限非此田者 悉入還受之分土 不宜桑者 給麻田如桑田法 率人一牀調絹一疋綿八兩 凡十斤綿中折一斤作絲 墾租二石 義租五斗 奴婢各准良人之半 牛調二尺 墾租一斗 義租五升 墾租送臺 義租納郡 以備水旱 墾租皆依貧富爲三臬 其賦稅常調 則少者直出上戶 中者及中戶 多者及下戶 上臬輸畧處 中臬輸次畧 下臬輸當州倉 三年一校焉 租入臺者 五百里內輸粟 五百里外輸米 入州鎮者輸粟 人欲輸錢者 准上絹收錢 ……
- ④ 高祖登庸 …… 是時 …… 自諸王已下 至於都督 皆給永業田 各有差 …… 其丁男中男永業露田皆遵後齊之制 課樹以桑榆及棗 其園宅率三口給一畝 奴婢則五口給一畝 丁男一牀租粟三石 桑土調以絹帛 麻土以布 絹帛以疋 加綿三兩 布以端 加麻三斤 單丁及僕隸各半之 未受地者 皆不課 有品爵及孝子順孫義夫節婦 免課役 京官又給職分田 ……
- ⑤ 及文宣受禪多所創 …… 以備邊要 始立九等之戶 富者稅其錢 貧者役其力 北興長城之役 南有金陵之戰 …… 兼并戶口 益多隱漏 …… 由是 姦欺尤甚戶口 租調十亡六七
- ⑥ 至大統中 又毀東宮造修文偃武隆基嬪 諸院起玳瑁樓 又於遊豫園穿池周以列館中起三山構臺以象滄海 并大修佛寺 勞役鉅萬計財用不給 乃減朝士之祿 斷諸曹糧膳及九州軍人常賜以供之 武平之後 權幸 進賜與無限 加之旱蝗 國用轉屈乃料境內六等富人調 令出錢而給事 黃門侍郎顏之推奏請 立關市邸店之稅 開府鄧長君贊成之後主大悅
- ⑦ 掌鹽掌四鹽之政令 一曰散鹽煮海以成之 二曰引池以化之 三曰形鹽物地以出之 四曰飴鹽於戎以取之 凡一鹽形鹽每地爲之禁百姓取之 皆稅焉 司倉掌辨九穀之物 以量國用 國用足即蓄其餘以待凶荒 不足則止餘用 足則以粟貸人 春頒之 秋分之 閔帝元

年初 除市門稅 及宣帝卽位 復興入市之稅 …… 高祖登庸 罷東京之役 除入市之稅

- ⑧ 高祖 …… 十六年 …… 二月 又詔社倉准上中下三等稅 上戶不過一石 中戶不過七斗 下戶不過四斗 其後山東頻年霖雨 杞宋陳龜曹戴 穎等諸州 達于滄海 皆困水災 所在 溺 …… 開皇八年五月 高彥奏 諸州無課調處及課州管戶數少者 官人祿力乘前已來 恒出隨近之州 但判官本爲牧人役力理出所部 請於所管戶內計戶徵稅 帝從之
- ⑨ 又都西有石頭津東有方山津 各置津主一人 賊曹一人 直水五人 以檢察禁物 及亡叛者 其荻炭魚薪之類 過津者 十分稅一以入官 其東路無禁貨 故方山津檢察甚簡 淮水北有大市百餘 小市十餘所 大市備置官司 稅斂旣重 時甚苦之

위 F의 자료는 『隋書』 권24, 志19, 食貨에서 租와 稅, 調의 성격을 드러내는 기사들을 발췌한 것이다. 먼저 租는 F-④의 “自諸王已下 至於都督 皆給永業田 各有差 …… 其丁男中男永業露田 皆遵後齊之制 課樹以桑榆及棗 其園宅 率三口給一畝 奴婢則五口給一畝 丁男一牀租粟三石” 에서 제왕 이하 도둑에 이르기까지 永業田을 지급하고, 丁男 등에 대한 永業露田은 모두 後齊의 제도를 따르되, 丁男에게 租粟 三石을 징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租는 F-②와 ⑤의 “戶口 益多隱漏 …… 由是 姦欺尤甚戶口 租調十亡六七 ……” 에서 볼 수 있듯이 戶口의 隱漏가 곧바로 租調의 逸失로 이어진다는 사실에서 調와 함께 戶를 단위로 징수하되, F-①의 “其課 丁男調布絹各二丈絲三兩綿八兩祿絹八尺祿綿三兩二分租米五石 祿米二石 丁女並半之” 로 미루어 보아 丁男과 丁女가 과세의 지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墾租의 경우 貧富에 따라 上·中·下 臬 3등급으로 나누었는데, 上臬는 遠處로의 運輸를, 中臬는 다음 遠處로의 運輸를, 下臬는 가장 가까운 當州倉으로의 運輸를 맡되, 3년에 1번씩 다시 平定하여 定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調는 앞서 살폈듯이 租와 마찬가지로 戶를 단위로 징수하되, “其賦稅 常調 則少者直出上戶 中者及中戶 多者及下戶” 로 정하였다. 또한 F-④의 “課

樹以桑榆及棗 …… 桑土調以絹纒 麻土以布 …… 未受地者 皆不課”에서 볼 수 있듯이 桑土와 麻土를 지급하여 각각 絹纒와 布로 調를 징수하였으며, F-⑤와 ⑥에서 調는 빈부의 차에 따라 징수하였고, 富人의 調는 6 내지 9등급으로 나누어 錢으로 징수하되, 貧者의 경우 調 대신 役을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稅는 F-⑤와 ⑥에서 調와 함께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F-⑥에서 富人의 調를 錢으로 징수한 것이나, F-⑤에서 9등호제를 정하면서 “富者稅其錢 貧者役其力”이라 하고 이를 ‘租調’로 기술한 것은 그러한 사실의 반영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는 F-⑧의 開皇 8년(588) 5월 高 頌이 奏한 “諸州無課調處及課州管戶數少者 官人祿力乘前已來 恒出隨近之州 但判官本爲牧人役力 理出所部 請於所管戶內計戶徵稅”라고 한 데서도 확인된다. 이들 稅目으로는 18세 이상 자에게 課役하되 租穀運을 위한 丁役의 田畝 稅米 2斗(F-①)를 비롯하여, 6~9등호제에 따라 富者들이 錢으로 내는 稅(F-②·⑤·⑥), 社倉에 조식을 내려 삼등호제에 따라 내는 三等稅(F-⑧), 關市를 세워 징수하는 邸店之稅(F-⑥)와 시장의 점포에 부과하는 入市之稅(F-⑦), 鹽掌四鹽之政令에 따라 거둬들이는 鹽稅(F-⑦), 其荻炭魚薪之類의 경우 津을 건너는 자에게 거둬들이는 1/10稅(F-⑨) 등이 확인된다. 특히 F-⑦에 보이는 鹽稅의 경우 별도의 掌鹽掌四鹽之政令을 정하여 백성이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徵稅하고 있어, 오늘날 일종 소비세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으로 『隋書』 식화지의 租와 調, 稅의 용법을 살핀 결과, 租는 調와 함께 戶를 단위로 永業田을 지급하여 징수하되, 貧富에 따라 上·中·下梟 3등급으로 나눠 운수에 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調는 桑土와 麻土를 지급하여 빈부의 차에 따라 등급을 나누되, “其賦稅常調 則少者直出上戶 中者及中戶 多者及下戶”라 하여 上·中·下戶로 구분하고, 부자는 錢으로 징수하였으나 빈자는 役으로 대신하였다. 이러한 調는 稅와 혼용하여 사용하였는데, 稅에는 그밖의 穀運을 위한 丁役의 田畝稅, 三等稅, 邸店之稅와 入市之稅, 鹽稅, 其荻炭魚薪之類의 過津稅 등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에 『隋書』 고구려전 조세 조항 “人稅布五匹 穀五石 遊人

則三年一稅 十人共細布一匹 租戶一石 次七斗 下五斗”은, 『隋書』의 찬자가隋의 조세제도에 비추어 고구려에서 永業田적인 田土를 3등호로 나눠 지급하고 이에 대해 田租를 차등 징수한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租의 징수액만으로 살펴볼 때에, 고구려 上戶의 징수액 1石은 수나라 丁男의 租米 五石의 1/5에 불과하다. 그런데 수나라의 경우 租의 부담은 戶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과세의 지표는 丁男과 丁女 등이었고, 租米의 경우 丁男이 5石, 丁女는 그 반액인 2.5石이었다. 만일 고구려 丁男의 租 부담액을 5斗로 가정한다면, 고구려 上戶는 2명의 丁男 또는 1명의 정남과 2명의 정녀, 中戶는 1명의 丁男과 1명의 丁女, 下戶는 1명의 丁男 또는 2명의 丁女 등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구려 조호의 3등호제가 정남과 정녀의 구성비율로 나눠 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본고 Ⅲ장 2절 「民戶編制의 展開」에서 후술 하듯이 봉상왕 9년(300) 궁실을 수리하기 위하여 국내 15세 이상의 남녀를 징발한 기사에서²⁴⁾ 4세기 무렵 정남과 정녀를 요역의 징발 기준으로 삼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그 연원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남과 정녀의 징발과 징세는 家口를 기준으로 민호를 편제하던 전통에서 비롯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고국천왕 16년(197) ‘出官穀 以百姓家口多小 賑貸有差’라고²⁵⁾ 한 田代법의 시행시 家口數를 기준으로 하였던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고구려의 조세제도는 수나라의 사례에 견주어 丁男과 丁女의 비율에 따라 戶의 등급을 매기고 각 戶의 人丁數에 따라 戶別로 토지가 사여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때에 인정수는 각 호별 토지의 다과로 연결되며, 그에 따른 호별 빈부의 차이로 租의 징수액이 정해졌던 바, 이러한 사정이 『周書』

24) 『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 5, 烽上王 9년 8월.

25) “十六年 秋七月 墮霜殺穀 民飢 開倉賑給 冬十月 王 于質陽 路見坐而哭者 問何以哭爲 對曰 臣貧窮 常以傭力養母 今歲不登 無所傭作 不能得升斗之食 是以哭耳 王曰 嗟乎 孤爲民父母 使民至於此極 孤之罪也 給衣食 以存撫之 仍命內外所司 博問鰥寡 孤獨老病貧乏不能自存者 救恤之 命有司 每年自春三月至秋七月 出官穀 以百姓家口多小 賑貸有差 至冬十月 還納以爲恒式 內外大悅”(『三國史記』 권16, 「高句麗本紀」 4, 故國川王).

고구려전에서는 '빈부의 차이를 헤아려 징수' 한 사실로 서술되었고, 『隋書』에는 3등호를 기준으로 收租한 것으로 전해진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고구려의 租가 3등호로 나누어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처에는 정남과 정녀를 기준으로 지급한 토지를 기반으로 하였다는 데서 당나라 균전제 시행 이전 과도적 성격을 띤 田租로 보고자 한다.²⁶⁾

이는 후술하듯이 고구려에 있어서 2세기 말엽부터 이미 일반민의 경지소유가 보편화되어 있었고, 4세기 무렵에서는 傭作이 일반화되었으며, 6세기 무렵에는 田宅의 매매까지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할 때, 일반 농민에 대한 토지 지급을 전제로 사적 경리와 사적 소유가 발전하는 역사적 발전과정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고구려의 課田과 田租 징수과정은, 唐代 均田制 하에서의 課稅 과정, 곧 戶內의 人數와 年齡에 따라 課田額을 산출하고 이에 응하여 田租를 결정하는 방식에²⁷⁾ 상응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구려의 田租가 戶 단위로 징수되었다는 점에서 後趙의 石勒이나 北魏 前期의 田租制에 기원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戶를 단위로 田租를 부과한 것은 5호 16국 시대의 혼란으로 田土의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한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戶內의 人員과 年齡에 의하여 課田額과 田租額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田租는 실제로 占田額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었다.²⁸⁾ 이처럼 北魏의 戶等區分에 의한 田租 수취는 戶調의 수취 기준을 따른 것으로서, 고구려의 전조는 북위의 이러한 전통과 관련될 것으로 여겨진다.

稅의 경우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나,²⁹⁾ 『隋書』의 용법에 비추어 대체로 桑

26) '租'는 토지에 대하여 일정량을 징수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田租'로 풀이되거나와(李弘植, 위의 글), 양기석은 고구려의 경우 戶가 보유한 경지면적에 따라 租를 부과한 것으로서 면적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頃畝制가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였다(梁起錫, 1987, 「百濟의 稅制」, 『백제연구』 18, 충남대 백제연구소, 11쪽).

27) 堀敏一, 1975, 「魏晉의 占田·課田と給客制의 意義」, 『均田制의 研究』, 岩波書店, 74쪽.

28) 堀敏一, 1975, 위의 글, 74~77쪽.

29) 기왕의 논자들은 『수서』 「고구려전」 稅 항목의 수세물품 곧 布와 穀, 細布로써 볼 때에 稅는 일종 調와 같은 성격을 지닌 것으로 추측하여 왔다(洪承基, 1974, 「1~3세기 민의 존재형태에 대한 일고찰」, 『歷史學報』 63, 42~43쪽 ; 양기석, 1987, 앞

田과 麻田을 지급하고 징수하는 調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고구려의 稅(調)는 『隋書』의 용법(F-①)에 나타난 調布·祿絹·祿綿·租米처럼 세분화되지는 않았으나, ‘人稅布五匹 穀五石’이라 하여 布 5匹과 穀 5石이 人丁別로 징수되었다. 다만 『隋書』의 용례에 비추어 稅 또한 田租와 마찬가지로 人丁數에 따라 桑田과 麻田이 지급되고 그것이 『周書』의 대상시기인 577년까지는 戶別 貧富差로 나타나 과세의 기준이 되다가, 577년 이후 『隋書』의 대상시기 하한인 614년 사이 어느 시기에 人丁別로 과세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隋書』에 기록된 인정별 세액은 수나라와 동일하게 戶別 人丁이 될 수도 있었지만, 신라의 麻田 공동경작의 사례³⁰⁾나 신라촌락장적에서 과실수와 상전·마전의 촌락 공동 소유의 양상과 유사한 형태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고구려도 상전과 마전이 공동 경작되고 공동 납세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³¹⁾ 당해지역의 인정수에 인정별 세액을 곱한 것이 당해지역의 세액 총량이 될 것이다.

의 글, 10쪽). 이에 대해 金基興은 『수서』 「고구려전」 조세 조항의 ‘稅’를 인두적租·調체계로 풀이하였다(김기흥, 1992, 앞의 글, 121~123쪽).

30) “阿達城太守級滄漢宣 教民以某日齊出種麻 不得違令”(『三國史記』 권47, 「列傳」7, 素那)

31) 石上英一은 신라 調制의 특징으로서 村調를 들고, 7세기 후반 이후의 국가적 과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律令制 이전부터의 調를 調府의 확충, 賦課기준의 확립, 촌락 파악의 강화에 따라 발전한 것이라 풀이하였다(石上英一, 1974, 「古代における日本の稅制と新羅の稅制」, 『古代朝鮮と日本』, 朝鮮史研究會, 249쪽). 安秉佑는 麻田의 경작 방법이 民田과 달랐을 것으로 전제하고, 이를 촌락공유지의 잔재로서 공동경작되고 麻布 또한 공동 직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調의 주요한 항목으로 보았다(安秉佑, 1992, 「6~7세기의 토지제도」, 『한국고대사논총』 4, 307~311쪽).

Ⅲ. 遊人과 遊女の 성격

1_ 遊人

『隋書』 고구려전 조세조항을 살펴보면 稅(調)는 人丁과 遊人으로 나뉘어 징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人은 稅 이외에 租를 내는 답세층으로서 빈부에 따라 삼등호로 구분되는 일반 고구려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人丁에 대응하는 遊人의 성격에 대하여는 貧窮³²⁾· 傭民說,³³⁾ 부용민인 말갈· 거란 등이 종족설,³⁴⁾ 隋末從軍沒留하여 流客적인 성격을 띤 중국인³⁵⁾이라는 주장과 賣淫女說,³⁶⁾ 樂人說,³⁷⁾ 경제력이 부족하여 떠돌아다니는 流氓說³⁸⁾ 등이 있다.

필자 또한 이에 대하여 人丁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어 일정 지역에서 정착하여 사는 존재였고, 遊人은 주거 이동이나 수시로 인위적인 편제가 가능한 존재로서 3년에 한 번씩 재편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들의 擔稅額으로 보아 오히려 上戶의 田租額보다도 부담이 많았던 것으로 보았다. 특히 稅額으로 미루어 보아³⁹⁾ 고구려 제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人丁에 기초한 稅(調)의

32) 白南雲, 1933 『朝鮮社會經濟史』, 改造社, 191쪽; 리지린·강언숙, 1976, 『고구려사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08쪽; 이인재, 1990, 「신라통일 전후기 조세제도의 변동」, 『역사와 현실』 4, 역사비평사, 97쪽.

33) 李基白·李基東, 1982, 『韓國史講座』 고대편, 일조각, 241~242쪽; 이인재, 1990, 위의 글, 96~98쪽.

34) 金基興, 1987, 앞의 글, 11~29쪽; 金賢淑, 1992, 「高句麗의 靺鞨支配에 관한 試論的考察」, 『韓國古代史研究』 6, 248~250쪽.

35) 金樂起, 2000, 「高句麗의 遊人」에 대하여, 『백산학보』 56, 186쪽.

36) 柳永博, 1987, 「高句麗의 稅制와 遊女問題」, 『斗溪李丙燾博士 九旬紀念 韓國史學論叢』.

37) 권주현, 2000, 「高句麗 遊人」考, 『慶北史學』 23.

38) 曹祥鉉, 2003, 「고구려 遊人」의 성격 검토, 『韓國古代史研究』 32.

39) 필자는 고구려 稅額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과세액을 신라 태조 무열왕 때의 市價 布 1필에 租 30석에서 50석에 이르는 가치(『三國遺事』 권1, 「太宗春秋公」)를 기준으로 환산한 바 있다. 곧 細布는 재료인 麻의 생산 및 방직 과정 등으로 미루어 공동

징수에 있었으며, 이러한 人丁은 烟을 단위로 편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한 바 있다. 고구려 세제가 稅(調)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良田이 없고 토지가 척박하여 항상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구려 경제의 근간이 정복지의 공물 징수에 있었던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고구려 조세제는 전통적인 공물 수취의 양상과 새로이 중국으로부터 전입된 것으로 여겨지는 田租制가 결합된 형태가 아닌가 이해된다.⁴⁰⁾

그러나 필자의 이러한 추론에도 불구하고 遊人의 성격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주지하듯이 『隋書』에서 遊人의 용례는 고구려전 조세조항이 유일하다. 따라서 遊人의 성격에 대하여 더 이상의 검토를 어렵게 한다. 다만 『隋書』에는 다양한 ‘遊’의 용례가 보이는 바, 이를 통하여 유인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한다.

『隋書』에는 ‘遊’의 용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 의미의 巡遊·遊幸·遊獵, 遊園·遊泳·遊觀·遊·遊宴·遊·行遊·遊行·游食을 비롯하여 遊說, 交遊·賢才與遊·聘遊·孔門之游와 같은 交遊의 의미, 遊學·遊太學과 같은 修學의 의미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武官의 명칭 가운데 하나로 左右衛驍騎游擊前左右後軍將軍·遊 隊⁴¹⁾·左右遊擊·驍騎游擊前後左右等四軍將軍·驍騎游擊將軍·游騎·游夾·遊俠 등에 사용되기도 하고, 천문에서의 “仰遊雲以觀日月”이나 “有遊氣以厭日光” “觀玉儀之遊”라고 하여⁴²⁾ 천

작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安秉佑, 1992, 앞의 책, 307~313쪽; 박남수, 1992, 「新羅 上代 手工業과 匠人」, 『國史館論叢』 39, 54~55쪽; _____, 1996, 「신라의 성장과 수공업 경영형태」, 『신라수공업사』, 신서원, 34~35쪽), 섬세한 삼실을 켜는 絲과정이 고급기술이어서 신라의 경우 조공품으로 많이 사용된 고급 직물이었던 만큼(박남수, 1996, 「각종 수공업기술의 발달」, 위의 책, 71~72쪽), 후에 비하여 그 상품가치가 매우 높다고 보아, 布를 그 최저가인 30석으로 細布를 포의 최고가인 50석으로 환산함으로써 人丁에 대한 調는 穀 155석에 해당하고, 遊人 10인이 3년에 내는 調는 50석으로서 1년에 한 사람이 1.64석의 調를 내는 것으로 추정하여, 遊人의 세액은 上戶가 내는 田租 1石보다도 상회한 것으로 보았다(박남수, 2004, 앞의 글, 124~125쪽).

40) 박남수, 2004, 앞의 글, 124~126쪽.

41) “步遊 馬遊 左右各三隊是爲武賁”(『隋書』 권12, 「志」 7, 禮儀 7).

42) 『隋書』 권19·20·21, 「志」 14·15·16, 天文 上·中·下.

체의 운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그리고 遠遊冠⁴³⁾·遠遊五梁冠·遠遊三梁冠이라 하여 태자의 예복의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遊자의 용례 외에도 '游手爲事'로 표현된 일련의 상업과 관련된 용례들이 주목된다.

- G-① 開皇三年正月帝入新宮 …… 是時 山東尚承齊俗 機巧姦僞避役惰遊者 十六七 四方疲人或詐老詐小規免租賦 高祖令州縣 大索貌閱戶口不實者 正長遠配 而又開相糾之科 大功已下兼令析籍各爲戶頭以防容隱 於是 計帳進四十四萬三千丁 新附一百六十四萬一千五百口(『隋書』 권24, 志19, 食貨)
- ② 京兆王都 所在俗具五方人物混淆 華戎雜錯 去農從商 爭朝夕之利 游手爲事 競錐刀之末 貴者崇侈 靡賤者薄仁義 豪彊者縱橫 貧僂者窘蹙 鼓屢驚盜賊不禁 此乃古今之所同焉(『隋書』 권29, 志24, 地理 上 河源郡)
- ③ 模寫爲西域圖記 共成三卷合四十四國 仍別造地圖 窮其要害 從西頃以去北海之南 縱橫所巨 將二萬里 諒由富商大賈 周遊經涉 故諸國之事 罔不知(『隋書』 권67, 列傳32, 裴矩)
- ④ 字文化及左翊衛大將軍述之子也 …… 又以其弟士及 …… 見人子女狗馬珍玩 必請託求之 常與屠販者 遊以規其利(『隋書』 권85, 列傳50, 字文化及)

위의 '遊'자 용례에서, G-①은 機巧姦僞하여 役을 피하는 惰遊者가 10에 6~7명 정도여서 租賦의 감세로 이어지므로 수나라 조정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던 사실을 살필 수 있다. G-②는 농사일을 버리고 상업에 종사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游手爲事'로, G-④는 字文化及이 상인들과 어울려 놀면서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隋書』에서의 이러한 관념은 G-③에서 보듯이 상인들의 속성이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며 상행

43) “遠遊冠之制 案漢雜事 曰太子諸王服之故 淮南子曰 楚莊王冠通梁組纓 注云 通梁遠遊也 晉令皇太子諸王給遠遊冠”(『隋書』 권12, 「志」 7, 禮儀 7, 遠遊冠之制).

위를 한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隋書』에서는 진나라 때에 중원의 난으로 인하여 스스로 거처를 떠나 남쪽으로 도망하여 흩어져 살면서 마땅히 토착하지 못한 이들을 ‘僑人’이라 일컬었고, 각 주군현에 편적하여 그 소출을 부담케 하였는데 ‘其無貫之人不樂州縣編戶者’들의 경우 ‘浮浪人’으로 일컬었음을 살필 수 있다.⁴⁴⁾ 따라서 기왕의 연구자들이 遊人을 부랑인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隋書』에서는 말갈·거란인의 경우 별도의 종족으로 여겨 ‘말갈·거란인’으로 명기하고 있는 바, 비록 고구려의 영역에 말갈·거란인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여 『隋書』 고구려전 조세조항의 유인을 말갈·거란인으로 보는 것도⁴⁵⁾ 문제가 있다. 『三國史記』에도 말갈의 경우 동명왕 즉위년에 이미 그 침해를 우려하여 정벌한 기사가 있으며,⁴⁶⁾ 이후 장수왕대부터 고구려사에 나타나는 말갈이나 거란은 고구려 대외 전쟁시 군대를 동원하는 대상이었고,⁴⁷⁾ 말갈 병으로써 거란병을 치는 경우도 있었다.⁴⁸⁾ 그런데 이들 말갈과 거란은 당나라

44) “晉自中原喪亂 元帝寓居江左 百姓之自拔南奔者 竝謂之僑人 皆取舊壤之名 僑立郡縣 往往散居 無有土著 而江南之俗 火耕水耨 土地卑濕 無有蓄積之資 諸蠻僞洞 霑沐王化者 各隨輕重 收其物 以裨國用 又嶺外酋帥 因生口翡翠明珠犀象之饒 雄於鄉曲者 朝廷多因而署之 以收其利 歷宋齊梁陳 皆因而不改 其軍國所需雜物 隨土所出 臨時折課市取 乃無恒法定令 列州郡縣 制其任土所出 以爲徵賦 其無貫之人 不樂州縣編戶者 謂之浮浪人 樂輸亦無定數 任量准所輸 終優於正課焉 ……” (『隋書』 권24, 「志」 19, 食貨).

45) 金基興, 1987, 앞의 글, 11~29쪽.

46) 『三國史記』 권13, 「高句麗本紀」 1, 始祖東明聖王 즉위년.

47) 말갈병을 동원한 기사로서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 6, 長壽王 56년; 권19, 「高句麗本紀」 7, 文咨明王 16년; 권20, 「高句麗本紀」 8, 창陽王 13년; 권21, 「高句麗本紀」 10, 寶臧王 上 4년; 권22, 「高句麗本紀」 10, 寶臧王 下 13·14·20·22년 조 기사를 들 수 있다. 또한 거란병의 경우 小獸林王 8년 거란이 침범하자 물리친 기사(『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 6, 小獸林王)와 광개토왕 즉위년에 거란을 북벌한(『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 6, 廣開土王) 기사가 보인다. 특히 『三國史記』 권20, 「高句麗本紀」 8, 창陽王 23년조 수양제의 조칙 가운데 ‘兼契丹之黨 度劉海戍 習鞞鞬之服 侵斫遼西’라고 하여 고구려가 거란과 말갈을 전쟁에 동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의 고구려 침략 시에는 오히려 당병의 휘하 세력으로 백제·신라군 등과 함께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⁴⁹⁾ 이들을 고구려 통치권역 안에서 조세를 부담하는 대상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

그런데 위 G의 기사에 나타난 『隋書』의 상업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 『隋書』에서의 稅의 용법, 곧 調의 성격을 지니는 稅와 아울러 穀運을 위한 丁役의 田畝稅, 그리고 三等稅, 邸店之稅와 入市之稅, 鹽稅, 其荻炭魚薪之類의 過津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隋書』에 나타난 '稅'의 용례로 미루어 보아, 『隋書』 고구려전에서 遊人이 냈던 稅는 '邸店之稅와 入市之稅, 鹽稅, 其荻炭魚薪之類의 過津稅'의 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고구려 유인은 바로 상인의 신분으로 稅를 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아울러 『수서』 고구려전의 遊人은 고구려 사회에서 乙弗과 마찬가지로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하거나,⁵⁰⁾ 온달전에서와 같이 金釧을 사고 田宅·奴婢·牛馬·器物을 파는⁵¹⁾ 상인과 유사한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고구려 상인들은 수나라의 사례에서처럼 稅의 부담자로서 을불과 같이 각 지방관의 통제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을불은 東村人 再牟와 함께 소금을 팔러다녔다고 했는 바 일종 크고 작은 商團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

48) “十三年 …… 冬十月 王遣將安固 出師及靺鞨兵擊契丹 松漠都督李窟哥禦之 大敗我軍於新城”(『三國史記』 권22, 「高句麗本紀」 10, 寶臧王 下).

49) “二年 閏六月 唐太宗曰 蓋蘇文弑其君而專國政 誠不可忍 以今日兵力 取之不難 但不欲勞百姓 吾欲使契丹·靺鞨擾之何如 ……”(『三國史記』 권21, 「高句麗本紀」 9, 寶臧王 上).

“三年 十一月 於是凡頓舍供備之具 減者太半 詔諸軍及新羅百濟奚契丹 分道擊之 ……”(『三國史記』 권21, 「高句麗本紀」 9, 寶臧王 上).

50) “美川王(一云好壤王) 諱乙弗(或云憂弗) …… 子乙弗畏害出遁 始就水室村人陰牟家 傭作 陰牟不知其何許人 使之甚苦 其家側草澤蛙鳴 使乙弗 夜投瓦石禁其聲 晝日督之樵採 不許暫息 不勝艱苦 周年乃去 與東村人再牟販鹽 乘舟抵鴨 將鹽下寄江東 思收村人家 其家老 i 請鹽 許之斗許 再請不與 其 i 恨烈 潛以屢置之鹽中 乙弗不知 負而上道 i 追索之 諷以庚屢 告鴨 宰 宰以屢直 取鹽與 i 決苔放之”(『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 5, 美川王).

51) “溫達 高句麗平岡王時人也 …… 公主獨歸 …… 乃賣金釧 買得田宅·奴婢·牛馬·器物 資用完具”(『三國史記』 권45, 「列傳」 5, 溫達).

고, 이러한 상단에 대해 국가가 10인을 단위로 편제한 것이 『隋書』 고구려전의 10인을 단위로 3년에 한 번씩 징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 한다. 사실 3년에 한 번씩 징세하는 경험은 고구려뿐만 아니라 수나라에도 있었던 바, 賦稅常調의 담세그룹을 상호·중호·하호로 나누되 3년에 1번씩 다시 상정한 것은⁵²⁾ 이러한 고구려 유인의 담세 내용과도 상통한다고 할 것이다.

2. 遊女

遊人の 성격과 관련하여 『隋書』·『周書』에는 각각 ‘婦人淫奔 俗多遊女’ ‘風俗好淫 不以爲愧 有遊女者 夫無常人’ 이라고 하여 고구려의 풍속에 ‘遊女’ 들이 존재하였음을 소개하고 있다. 『北史』에도 ‘風俗尚淫 不以爲愧 俗多遊女 夫無常人’ 이라 하여 『周書』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찍이 이병도는 遊女는 遊人과 대비하여 설명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徒食者와 같은 다른 성격의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그 해석을 유보한 바 있다.⁵³⁾ 이에 대해 遊女란 賣淫女로서 遊人과 동일하게 사용되었고, 유인이 내는 稅는 일종 賣淫稅의 성격을 띤다는 주장⁵⁴⁾과 고대 일본의 遊部를 樂部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樂人을 지칭한다는 주장,⁵⁵⁾ 전사자나 포로의 부인⁵⁶⁾이나 고구려 말 각종 役의 동원으로 인하여 남편 또는 아버지를 잃고 부랑하게 된 빈곤층의 여자라는 주장⁵⁷⁾ 등이 있었다. 이처럼 遊女의 성격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고 이를 담세의 대상인 遊人과 관련시키는 주장이 있으므로, 遊女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52) “其賦稅 常調則少者直出上戶 中者及中戶 多者及下戶 上臬輸遠處 中臬輸次遠 下臬輸當州倉 三年一校焉”(『隋書』 권24, 第19, 食貨).

53) 李丙燾, 1959, 『韓國史』 古代篇, 震檀學會 編, 564쪽.

54) 柳永博, 1987, 앞의 책; 김선주, 2000, 「고구려 遊女의 성격」, 『역사민속학』 11.

55) 權五榮, 2000, 「古代韓國의 喪葬儀禮」, 『한국고대사연구』 20, 20~21쪽.

56) 金樂起, 2000, 앞의 글, 183쪽.

57) 曹祥鉉, 2003, 앞의 글, 284~288쪽.

遊女는 『隋書』·『주사』·『北史』 고구려전에만 기록되어 있으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기록이 이미 『三國志』 고구려전 혼인관계 기사로부터 비롯하므로 이들 관련 기록을 비교하면 7세기 초엽 중국 사서에 나타난 遊女の 실체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H - ① …… 俗多遊女 有婚嫁者 取男女相悅 然卽爲之 男家送猪酒而已 無財聘之禮 或有受財者 人共恥之(『隋書』 권81, 列傳46, 高麗)
- ② …… 風俗好淫 不以爲愧 有遊女者 夫無常人 婚娶之禮 各無財幣 若受財者 謂之賣婢 俗甚恥之(『周書』 권49, 列傳41, 高麗)
- ③ …… 好歌舞 常以十月祭天 其公會衣服 皆錦繡金銀以爲飾 …… 風俗尚淫 不以爲愧 俗多游女 夫無常人 夜則男女_{ᄃᆞᆫ}聚而戲 無有貴賤之節 有婚嫁 取男女相悅卽爲之 男家送猪酒而已 無財聘之禮 或有受財者 人共恥之 以爲賣婢, …… 信佛法 敬鬼神 多淫祠 有神廟二所(『北史』 권94, 列傳82, 百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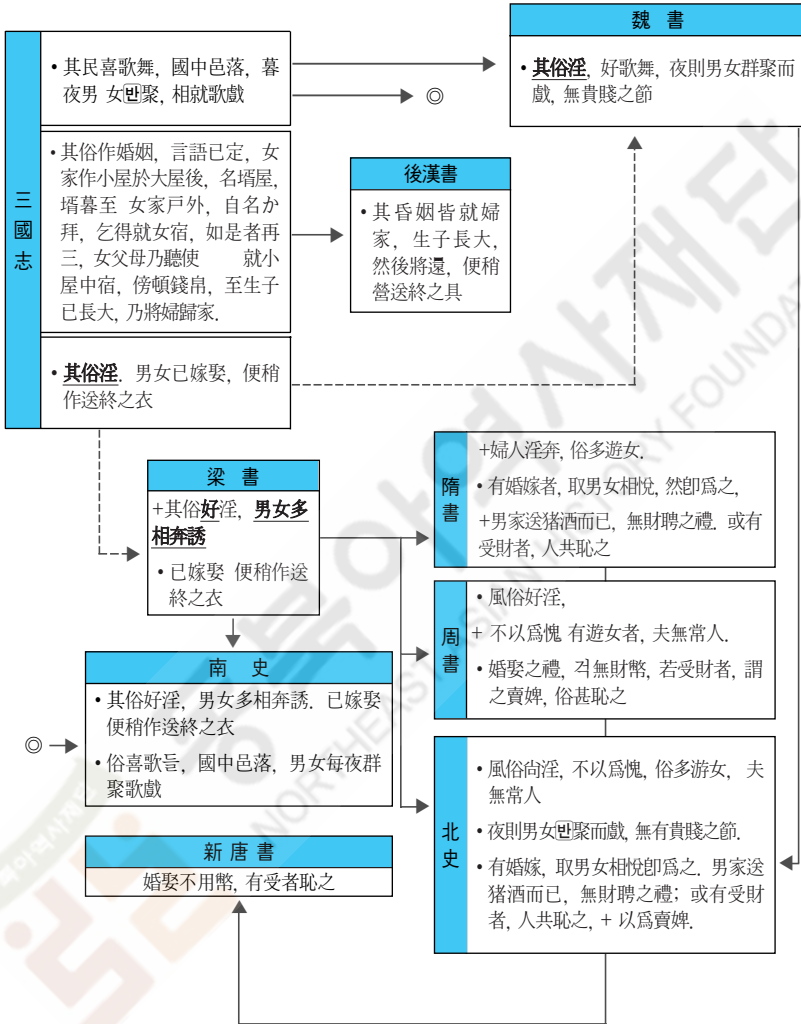
- I - ① 其俗節食 好治宮室 於所居之左右立大屋 祭鬼神 又祀靈星·社稷 …… ① 其民喜歌舞 國中邑落 暮夜男女_{ᄃᆞᆫ}聚 相就歌戲 …… 以十月祭天 國中大會 名曰東盟 其公會 衣服皆錦繡金銀 以自飾 大加主簿頭著 如 而無餘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其國東有大穴 名隧穴 十月國中大會 迎隧神還于國東上祭之 置木隧于神坐 無牢獄 有罪諸加評議 便殺之 沒入妻子爲奴婢 ② 其俗作婚姻 言語已定 女家作小屋於大屋後 名婿屋 婿暮至女家戶外 自名_{ᄃᆞᆫ}拜 乞得就女宿 如是者再三 女父母乃聽使就小屋中宿 傍頓錢帛 至生子已長大 乃將婦歸家 ③ 其俗淫 男女已嫁娶 便稍作送終之衣 厚葬 金銀財幣 盡於送死 積石爲封 列種松柏(『三國志』 권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30, 高句麗)
- ② 其昏姻皆就婦家 生子長大 然後將還 便稍營送終之具 金銀財幣盡於厚葬 積石爲封 亦種松柏(『後漢書』 권85, 東夷列傳75, 高句麗)
- ③ 其俗淫 好歌舞 夜則男女群聚而戲 無貴賤之節(『魏書』 권100, 列傳 88, 高句麗)
- ④ 好治宮室 於所居之左立大屋 祭鬼神 …… 以十月祭天大會 名曰東明 其公會衣服 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頭所著似

而無後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其國無牢獄 有罪者 則會諸加評 議殺之 沒入妻子 其俗好淫 男女多相奔誘 已嫁娶 便稍作送終 之衣(『梁書』 권54, 列傳48, 高句麗)

- ⑤ 俗喜歌謠 國中邑落 男女每夜群聚歌戲 …… 其俗好淫 男女多 相奔誘 已嫁娶 便稍作送終之衣 其死葬 有槨無棺 好厚葬 金銀 財幣盡於送死 積石爲封 列植松柏 兄死妻嫂(『南史』 권79, 列 傳69, 高句麗)
- ⑥ 其俗多淫祀 事靈星神·日神·可汗神·**꺄**神 國城東有大穴 名神隧 皆以十月 王自祭之 俗愛書籍 至於衡門^엔養之家 各於 街衢造大屋 謂之 堂 子弟未婚之前 晝夜於此讀書習射(『舊唐 書』 권199 上, 列傳149 上, 高麗)
- ⑦ 婚娶不用幣 有受者恥之 服父母喪三年 兄弟踰月除 俗多淫祠 祀靈星及日·**꺄**·可汗等神 國左有大穴日神隧 每十月 王皆 自祭 人喜學 至窮里^엔家 亦相矜勉 衢側悉構嚴屋 號^ㄷ堂 子弟 未婚者曹處 誦經習射 ……(『新唐書』 권220, 列傳145, 高麗)

먼저 고구려 혼인풍속과 관련하여 가장 빠른 시기의 기록은 『三國志』 위 지 고구려전의 기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隋書』 등의 혼인 기사와 관련하여 위 『三國志』 I-①은 내용상 ㉠의 歌舞 기사와 ㉡의 서옥제 관련 혼인기사, 그리고 ㉢의 혼인 직후 送終之衣를 만드는 풍속을 소개하는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후한서』는 이러한 『三國志』 기사 가운데 혼인기사(I-①, ㉡·㉢)를 간략히 서술한 것이고(I-②), 『위서』는 歌舞 기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이를 ‘淫’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양서』는 『三國志』의 혼인 직후 送終之衣를 만드는 풍속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면서 ‘已嫁娶’의 일종 도입부로서 ‘男女多相奔誘’를 추가하고 그러한 풍속을 ‘好淫’한 것이라 하였다. 이처럼 고구려 풍속이 好淫하고 男女相悅에 의해 혼인하는 것으로 기록한 『양서』의 전통은 『隋書』·『周書』로 이어졌고, 『北史』에서는 『양서』의 전통과 함께 『위서』의 가무에 대한 기사가 더해지는 복합적인 성격으로 나타난다. 특히 『隋書』·『周書』·『北史』에서는 고구려 풍속에 ‘遊女’와 ‘婚娶不用幣’의 전통이 새로이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들 3서에 보이는 ‘婚娶不用幣’의 전통은

〈표 2〉 『隋書』·『周書』·『北史』 고구려 歌舞·婚姻관계 기사 계통도



『신당서』에까지 이어진다.

결국 『隋書』와 『北史』에 보이는 고구려 혼인 풍속과 관련된 好淫·遊女 관계 기사는 『三國志』 위치로부터 비롯한 『양서』의 '好淫' 기사에 새로이 '遊女'와 '婚娶不用幣' 기사를 덧붙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의 관건은 『三

〈표 3〉 『隋書』·『周書』·『北史』 고구려 婚姻관계 기사

	好淫	遊女	婚嫁
隋書	婦人淫奔	俗多遊女	有婚嫁者, 取男女相悅, 然卽爲之, 男家送猪酒而已, 無財聘之禮. 或有受財者, 人共恥之
周書	風俗好淫, 不以爲愧	有遊女者, 夫無常人	婚娶之禮, 尅無財幣, 若受財者, 謂之賣婢, 俗甚恥之
北史	風俗尙淫, 不以爲愧,	俗多遊女, 夫無常人 夜則男女 ^㉔ 聚而戲, 無有貴賤之節	有婚嫁, 取男女相悅卽爲之, 男家送猪酒而已, 無財聘之禮; 或有受財者, 人共恥之, 以爲賣婢

國志』의 ‘淫’ 관련 기사와 『양서』 고구려전의 ‘好淫’ 기사의 상관성, 그리고 ‘유녀’와 ‘혼인’ 기사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三國志』의 “其俗淫 男女已嫁娶 便稍作送終之衣” 기사가 『양서』에서 “其俗好淫 男女多相奔誘 已嫁娶 便稍作送終之衣”로 바뀌게 된 바, 『三國志』의 기사는 ‘남녀가 결혼하고 나서 곧바로 壽衣를 만든다는 것이 중국인의 유교적 관점에 볼 때에 도리에 맞지 않다’ ‘淫’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其俗淫’이란 ‘男女已嫁娶 便稍作送終之衣’에 대한 『三國志』 편찬자의 평가로 판단되며, 위 기사에서 男女相悅之事와 같은 의미의 음란성을 찾기가 힘들고, I-⑦의 “俗多淫祠 祀靈星及日·偃^㉔·可汗等神”에서처럼 유교적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을 ‘淫’으로 표현한 사례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서』와 『양서』의 찬자는 『三國志』의 ‘其俗淫’을 男女相悅의 의미로 파악함으로써, ‘其俗淫’과 ‘男女已嫁娶 便稍作送終之衣’가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위서』의 경우 “好歌舞 夜則男女群聚而戲 無貴賤之節”를, 『양서』의 경우 “好歌舞 夜則男女群聚而戲”한 사실에 “其俗好淫 男女多相奔誘”를 추가하여 서술함으로써 이후 각 사서의 찬자들은 『위서』와 『양서』의 풀이를 따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隋書』·『周書』·『北史』에는 이전 시기의 사서에서 보이지 않는 ‘遊女’와 ‘婚娶不用幣’의 풍속을 새로이 소개하고 있거니와, 특히 혼례에 재화를 사용하지 않는 풍속의 등장은 서옥제가 기록상에 사라지는 것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隋書』·『周書』·『北史』 고구려 婚姻관계 기사를 내용별로 구분하면, 好淫·遊女·婚嫁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비교하면 몇 가지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好淫 관련 기사에서 『隋書』가 淫奔의 대상을 婦人에 한정하고 있는데 대해, 『周書』와 『北史』는 고구려 풍속 전반으로 淫亂을 좋아하며 이를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遊女에 대하여 『隋書』는 遊女가 많음을, 『周書』는 遊女란 ‘夫無常人’을, 『北史』는 『周書』의 내용에 더하여 遊女란 ‘夫無常人’으로 ‘밤이면 남녀가 무리지어 모여 노는데 貴賤의 구분이 없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셋째, 婚嫁의 예속에 財聘의 예가 없다는 점은 모두 동일하나, 『隋書』와 『北史』는 모두 ‘남녀가 서로 좋아하기만 하면 결혼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隋書』와 『北史』 모두 고구려 결혼 풍속을 好淫과 遊女로 서술하게 된 것은, 『三國志』 ‘其俗淫 男女已嫁娶 便稍作送終之衣’ 기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위서』와 『양서』의 찬술자들이 『三國志』의 ‘도리에 어긋나다’는 의미의 ‘淫’을 ‘淫亂’의 의미로 풀이하면서, 각각 ‘好歌舞 夜則男女群聚而戲’ 기사와 관련시키거나, ‘其俗好淫 男女多相奔誘’를 덧붙여 설명함으로써, 『隋書』와 『北史』에서는 『양서』의 풀이를 따라 고구려 결혼 풍속을 음란한 것으로 여기고, 여기에 遊女の 의미를 덧붙였던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遊女는 앞서 살폈듯이 밤늦게 歌舞하는 것을 좋아하는 고구려 풍속을 좇은 혼전의 여인들이 ‘常人’이 없이 가무에 열중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짐작된다.⁵⁸⁾ 『隋書』 곳곳에는 이러한 가무를 즐기는 것을

58) 遊女에 대한 기록으로서 “貞觀 15年 …… 上見職方郎中陳大德使高麗 …… 八月己亥 自高麗還 大德初入其境 欲知山川風俗 所至城邑 以綾綺遺其守者曰 …… 往往見中國人 自云家在某郡 隋末從軍沒于高麗 高麗妻之以遊女 與高麗錯居 胎將半矣 …… ”(『資治通鑑』 권196, 『唐紀』 12)가 주목되는데, 여기에서 수의 고구려 침공 시 포로가 된 수나라 군졸에게 遊女와 혼인하여 고구려 사회에 안주케 하였던 사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사에서 遊女の 성격은 논외로 한다면, 혼전의 여인이었다는 사실만은 확인할 수 있다.

‘遊’자로 표현하고 있으며, 『北史』에서도 이들 遊女의 설명에 뒤이어 밤늦도록 歌舞를 즐기는 풍속을 소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유녀들이 즐긴 가무의 풍속은 『三國志』에 소개한 가무의 풍속에 다름아닌 것이다. 결국 『隋書』·『周書』·『北史』를 찬술할 당시에 중국인들은 정해진 짝이 없이 歌舞를 즐기는 婚前의 여인들을 遊女로 불렀고, 그러한 여인들의 모습이 중국인의 유교적 도덕관에서는 매우 음란한 것으로 비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IV. 高句麗의 階級構成과 民戶 編制

1_ 下戶의 性格과 食邑制

『隋書』 고구려전의 조세제에서, 고구려는 人丁을 단위로 調를 징수하고, 田作을 하지 않는 遊人, 곧 상인들 또한 10인을 단위로 3년에 한번씩 과세하였던 사실을 상정할 수 있었다. 특히 田租의 경우 貧富의 차에 따른 三等戶制에 의하여 세를 부과했는데, 貧富의 차이는 田土의 多寡를 의미하는 바, 이는 丁男과 丁女, 곧 人丁의 多寡에 의한 課田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삼등호제의 구분에 관하여 『隋書』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중·하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나, 고구려의 경우 “租戶一石 次七斗 下五斗”라고 하여 빈부차이가 어떤 정형에 의해 법제화된 ‘상호·중호·하호’의 구분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隋書』 고구려전의 조세제가 시행되었을 7세기 초엽 어느 시기에 인가는 분명히 고구려 사회 내에서 과세 대상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인정수를 기준으로 한 민호의 편제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고구려가 언제부터 이들 과세 대상인 인정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고 편제했는가가 관건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고구려 일반민의 계급 구성의 변화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가운데 하나로서 下戶의 계급 문제

를 들 수 있다.

먼저 下戶에 대해서는 1~3세기 무렵 자연농의 존재를 상정하기도 하지만, 그 계급적 성격에 대해서는 노예설과 농노·준노예설,⁵⁹⁾ 일반민설 등의 주장이 있었다. 대체로는 『三國志』 부여전의 기사를 바탕으로 하호=일반민설이 정설화된 듯한데, 연맹왕국시대 읍락 내부의 사회구성을 加·豪民·民(下戶)·奴婢로 상정하고, 加의 下戶에 대한 지배는 읍락 안의 유력자인 豪民을 매개로 이루어진다고 풀이하고 있다.⁶⁰⁾ 또 이들 下戶=民을 후대의 양인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自給(自營)農民과 傭作農民으로 분류하기도 한다.⁶¹⁾ 필자는 삼한의 사회경제 구성을 언급하면서 삼한의 하호를 부여·고구려의 '加'에 해당하는 읍군이나 읍장의 지배를 받는 자로서 삼한 소국 단위의 지배계층도 포괄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삼한의 계급구성을 臣智·豪民의 지배계층과 이들에게 집단으로 착취당하는 일반 백성 및 奴 등으로 파악한 바 있다.⁶²⁾ 당시 필자의 논의는 삼한에 한정된 것이었고, 『三國志』 하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J - ① 高句麗在遼東之東千里 …… 其國有王 其官有相加·對盧·沛

59) 북한학계에서는 1956년 「삼국의 사회-경제구성에 관한 토론회」에서 下戶의 성격을 백남운·임건상과 같이 삼국을 노예제 사회로 보는 논자의 경우 고전적 노예 또는 동방적 노예로 풀이하였으며, 김광진·김석형과 같은 봉건론자는 봉건적 예속민 또는 노예적 상태에 두어진 예농층으로서 양인 농민의 시원을 이룬 것으로 보았다(김광진 외, 1989, 『삼국시기의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회』, 일송정 참조).

60) 李基東, 1982, 「城邑國家와 聯盟王國」, 『韓國史講座』 I 古代篇, 97~98쪽.

61) 洪承基, 1974, 앞의 글.

62) 『三國志』의 찬자가 삼한을 74소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듯이 중국 군현이 그들의 통치체제 안에서 삼한사회를 파악함으로써, 『三國志』 「韓傳」의 하호만은 다른 나라들의 그것과 다른 특이한 성격의 존재로 본 바, 저들이 인정한 읍군·읍장을 제외한 소국단위의 지배층들까지도 下戶로 파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삼한의 하호는 중국 군현에서 정식으로 인수·의책을 내린 臣智·邑君 등과 일반백성을 제외한 한정된 수효의 계층으로서, 비록 이들이 중국 군현으로부터 정식으로 인수와 의책을 받을 수는 없었으나 囚徒·奴婢와 같은 처지의 일반 백성을 통치하는 계급으로서 중국 군현과 교류하던 존재가 아니었겠는가 추정된다(박남수, 1996, 앞의 글, 36~40쪽).

者·古雛加·主簿·優·丞·使奴·↓③⑨, 尊卑各有等級
 …… 諸大加亦自置使者·↓③⑨ 名皆達於王 如卿大夫之家臣
 會同坐起, 不得與王家使者·↓③⑨ 同列 其國中大家不佃作 坐
 食者萬餘口 下戶遠擔米糧魚鹽供給之 其民喜歌舞 …… 無大倉
 庫 家家自有小倉 名之爲 京 …… 無牢獄 有罪諸加評議 便殺
 之 沒入妻子爲奴婢 …… 沃沮·東濊皆屬焉…… 拔奇怨爲兄
 而不得立 與涓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 詣康降 還住沸流水……
 (『三國志』 권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30, 高句麗)

- ② 夫餘 …… 國有君王 皆以六畜名官 有馬加·牛加·加·拘
 加·大使·大使奴·使者 邑落有豪民 民下戶皆爲奴僕 諸加別
 主四出 道大者主數千家 小者數百家 …… 用刑嚴急 殺人者死
 沒其家人爲奴婢 竊盜一責十二 …… 以弓矢刀矛爲兵 家家自有
 鎧仗 …… 有敵 諸加自戰 下戶俱擔糧飲食之 …… (『三國志』 권
 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30, 夫餘)
- ③ 無大君長 自漢以來 其官有侯·邑君·三老 統主下戶(『三國志』
 권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30, 濊)
- ④ 景初中(237~239)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鮮于嗣 越
 海定二郡 諸韓國臣智 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其俗好衣 下
 戶詣郡拜謁 皆假衣 自服印綬衣 千有餘人 …… 其俗少綱紀
 國邑雖有主帥 邑落雜居 不能善相制御(『三國志』 권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 ⑤ 其俗 國大人皆四五婦 下戶或二三婦 婦人不淫 不妬忌 不盜竊 少
 諍訟 其犯法 輕者沒其妻子 重者滅其門戶 …… 下戶與大人相逢
 道路 逡巡入草 傳辭說事 或 或カ 兩手據地 爲之恭敬 對應聲
 日噫 比如然諾(『三國志』 권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倭)

위의 『三國志』 고구려전(J-①)에서 3세기 무렵까지 고구려에는 坐食者로 불리는 지배계급과 下戶로 치칭되는 피지배계급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其民喜歌舞'에서 하호와 별개의 신분으로서 '民'이 존재하였고, '有罪諸加評議 便殺之 沒入妻子爲奴婢'에서 '奴婢'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高句麗·夫餘·濊의 下戶는 삼한의 경우와 사뭇 다른 것처럼 나타나

고 있다.

부여의 경우 下戶관계기사의 내용은 “國有君王 皆以六畜名官 有馬加·牛加·加·拘加·大使·大使₂·使者 邑落有豪民 下戶皆爲奴僕”이라 하여, 문장 구성이 國과 邑落의 두 개 단락으로 구성되었고, “諸加自戰”과 “下戶俱擔糧飲食之”가 서로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실 문장 구성 그대로 풀이한다면, ‘나라에는 모두 六畜名으로서 官名을 삼는데 馬加·牛加·加·拘加·大使·大使₂·使者가 있다. 邑落에는 豪民·民·下戶가 있는데 모두 奴僕이다’라고 이해된다. 특히 “諸加自戰 下戶俱擔糧飲食之”에서 諸加-下戶의 대응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서, 下戶는 諸加에 예속되었고, 앞의 ‘其民喜歌舞’에서 하호와 별개의 신분으로서 ‘民’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⁶³⁾

諸加와 下戶의 대응 관계는, 고구려의 大家=坐食者和 下戶(J-②), 濊의 侯·邑君·三老와 下戶의 관계(J-③)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또한 『三國志』 고구려전에서 拔奇가 涓奴加와 더불어 각각 ‘下戶三萬餘口’를 거느리고 公孫康에게 투항한 사례에서도, 下戶는 국왕의 형인 拔奇와 涓奴部の 수장인 涓奴加에 예속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三國志』 倭傳의 大人과 下戶(J-⑤)에서는 양자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나, 大人에 대한 下戶의 공경의 모습에서 그 신분적 차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倭傳에 나타난 下戶는 2~3

63) 홍승기는 “邑落有豪民下戶”의 ‘民下戶’를 ‘民 즉 下戶’로 풀이한 바, 『삼국지』 「고구려전」 기사 안에서 ‘民’과 ‘노비’를 구분하고, 諸加-下戶의 대응관계를 상정하면서도(홍승기, 1974, 앞의 글, 21~27쪽) 같은 문단 내의 ‘其民喜歌舞’의 ‘민’은 간과하였다. 그 결과 ‘하호’의 ‘일반 백성층’으로서의 성격을 추출하였으나, ‘민층’ 내부에서 ‘하호’와의 차이를 간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金到勇도 홍승기의 견해를 수용하여 ‘民 즉 下戶’로 풀이하면서, 하호 자체가 초시대적 표현으로서 삼등호제의 下戶 또는 貧民層으로 보고 分半地代를 지불한 농노로 그 성격을 규정하였다(金到勇, 2000, 「下戶에 대한 一考察」, 『釜山女大史學』 12). 그러나 『삼국지』의 하호는 『삼국지』 자체의 기술방식에 따라 분석해야 할 것이며, 이를 시대를 달리하여 편찬된 사서류의 ‘빈민’이나 삼등호제의 ‘하호’와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인철은 부여의 하호는 민으로, 고구려의 하호는 일반농민, 식읍민, 피정복민으로, 예의 하호는 주민들로서 대부분 농민일 것으로, 그리고 삼한의 하호는 일반농민이나 상인으로 각각 풀이하고, 이들 하호가 한국고대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이인철, 2002, 앞의 글, 211~215쪽).

명의 부인을 거느릴 수 있는 존재로서, 韓의 下戶가 詣郡朝謁 皆假衣 自服 印綬衣' 한 사실에 견줄 수 있다.

이들 下戶는, 『三國志』 고구려전에서 보듯이 大家의 좌식자 계급에게 멀리서 米糧과 魚鹽을 공급하며, 諸加가 전투에 나갔을 때에 직접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식량을 운반하여 공급하는 존재였다. 또한 “有罪諸加評議 便殺之 沒入妻子爲奴婢”에 보이는 奴婢나 『三國志』 고구려전의 ‘民’, 동 부여전 “以弓矢刀矛爲兵 家家自有鎧仗”의 家家를 구성하는 존재와도 신분상으로 구분되는 존재였을 것으로 믿어진다.⁶⁴⁾

그러면 부여전의 ‘家家’를 구성하는 존재와 고구려전의 ‘民’은 과연 이들 하호와 어떻게 구분되는가. 『三國志』 부여전에서 보듯이 ‘家家’의 구성원은 집에 병장기를 두고 있었던 만큼 전투요원이었음에 분명하므로 식량을 나르는 역할만을 수행한 하호와 다르며, 고구려에 있어서 坐食者 계급에게 米糧과 魚鹽을 공급하는 하호는 歌舞를 즐기는 민이나 罪가 있을 때에 諸加的 評議에 의해 몰입당한 奴婢와도 구별되는 것이다.

이들 하호는 ‘發使賑恤’이나 ‘開倉賑恤’, ‘賑貸’의 대상으로서⁶⁵⁾ ‘力田自

64) 일찍이 丘秉朔도 “고구려 노동법은 상층권자의 지배하에 있는 일반민과 하층민인 노비, 하호 등에 이르기까지 적용되었던 것”(丘秉朔, 1970, 『韓國古代 社會法制史 研究(一)』, 『우석 문리대·법경대 논문집』 4, 518~519쪽)이라고 하여, 하호와 민, 일반민을 구분하여 살핀 바 있다. 또한 趙法鍾은 ‘하호’를 국가 공민인 ‘민’이나 개별적·인신적으로 보다 철저히 예속당한 신분층인 ‘노비’와 구분되는 ‘집단적 종속적으로 예속된 신분층’으로 파악한 바 있다(趙法鍾, 1997, 『한국고대사회의 신분과 부당』, 『한국고대사연구』 12, 155~157쪽).

65) “二年(45) 春三月 宴[한]臣 夏五月 國東大水 民饑 發倉賑給”(『三國史記』 권14, 「高句麗本紀」 2, 閔中王).
 “五十六年(108) 春 大旱 至夏赤地 民饑 王發使賑恤”(『三國史記』 권15, 「高句麗本紀」 3, 大祖大王).
 “十六年(194) 秋七月 墮霜殺穀 民飢 開倉賑給 冬十月…… 仍命內外所司 博問鰥寡 孤獨老病貧乏不能自存者 救恤之 命有司 每年自春三月至秋七月 出官穀 以百姓家口 多小 賑貸有差 至冬十月 還納以爲恒式 內外大悅”(『三國史記』 권16, 「高句麗本紀」 4, 故國川王).
 “二年(332) 春二月 王如卒本 祀始祖廟 巡問百姓老病賑給”(『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 6, 故國原王).

給'하거나 '傭' 하며,⁶⁶⁾ 徒民 또는 力役に 동원되는⁶⁷⁾ 民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특히 '民'은 '賑恤' 등 각종 국가의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농상을 장려하는 대상이었던 만큼,⁶⁸⁾ 국가 곧 국왕의 통치권에 속한 존재였고 당연히 역역과 조세의 부과대상이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런데 奴婢와 구별되는 신분으로서의 下戶는, 諸加나 大家에게 米糧을 공급했으므로 諸加나 大家의 토지를 경작하는 일도 담당하였으리라 추측된

- “六年(389) 春 饑 人相食 王發倉賑給”(『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 6, 故國壤王).
 “三年(521) 夏四月 王幸卒本 祀始祖廟 五月 王至自卒本 所經州邑貧乏者 賜穀人一斛”(『三國史記』 권19, 「高句麗本紀」 7, 安臧王).
 “六年(536) 春夏 大旱 發使撫恤饑民 ……”(『三國史記』 권19, 「高句麗本紀」 7, 安原王).
 “二十三年(581) 春二月晦 星隕如雨 秋七月 霜雹殺穀 冬十月 民饑 王巡行撫恤 十二月 遣使入隋朝貢 高祖授王大將軍遼東郡公”(『三國史記』 권19, 「高句麗本紀」 7, 平原王).
- 66) “十三年(191) 夏四月 [左可慮等] 聚衆攻王都 王徵畿內兵馬平之 …… 晏留言於王曰 微臣庸愚 固不足以參大政 西鴨 谷左勿村乙巴素者 琉璃王大臣乙素之孫也 性質剛毅 智慮淵深 不見用於世 力田自給 大王若欲理國 非此人則不可 王遣使 以卑辭重禮 聘之 ……”(『三國史記』 권16, 「高句麗本紀」 4, 故國川王).
 “十六年(194) …… 冬十月 王 于質陽 路見坐而哭者 問何以哭爲 對曰 臣貧窮 常以傭力養母 今歲不登 無所傭作 不能得升斗之食 ……”(『三國史記』 권16, 「高句麗本紀」 4, 故國川王).
 “美川王(一云好壤王)(300) 諱乙弗(或云憂弗) 西川王之子古鄒加G.固之子 初烽上王 疑弟G.固有異心 殺之 子乙弗畏害出遁 始就水室村人陰牟家 傭作 陰牟不知其何許人 使之甚苦 其家側草澤蛙鳴 使乙弗 夜投瓦石禁其聲 晝日督之樵採 不許暫息 不勝艱苦 ……”(『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 5, 美川王).
- 67) “二十一年(247) 春二月 王以丸都城經亂 不可復都 築平壤城 移民及廟社 ……”(『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 5, 東川王).
 “九年(300) …… 八月 王發國內男女年十五已上 修理宮室 民乏於食 困於役 困之以流亡 ……”(『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 5, 烽上王).
 “十八年(408) 秋七月 築國東禿山等六城 移平壤民戶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 6, 廣開土王).
 “十四年(631) 春二月 王動衆築長城 東北自扶餘城 東南至海[東 當作西 舊唐書亦作西] 千有餘里 凡一十六年畢功”(『三國史記』 권20, 「高句麗本紀」 8, 榮留王).
 “蓋金又奏築長城東北西南 時男役女耕 役至十六年乃畢”(『三國遺事』 권3, 「興法」 3, 寶藏奉老 普德移庵).
- 68) “二十五年(583) 二月 下令 減不急之事 發使郡邑勸農桑”(『三國史記』 권19, 「高句麗本紀」 7, 平原王).

다. 이들이 정착하였던 토지는 諸加나 大家에게 지급된 식읍이었으리라 짐작되는데, 사실 『三國史記』 고구려본기에서는 건국 초기부터 이들 諸加나 大家에 해당하는 지배층에게 새로이 획득한 지역을 城邑으로 편입하여 다스리게 하거나, 食邑을 지급하여 왔다.

K- ① 二年(B.C.36) 夏六月 松讓以國來降 以其地爲多勿都 封松讓爲主 麗語謂復舊土爲多勿 故以名焉(『三國史記』 권13, 高句麗本紀1, 東明聖王)

② 六年(B.C.32) …… 冬十月 王命烏伊·扶芬奴 伐太白山東南苻人國 取其地爲城邑(『三國史記』 권13, 高句麗本紀1, 東明聖王)

③ 四年(56) 秋七月 伐東沃沮 取其土地爲城邑 拓境東至滄海 南至薩水(『三國史記』 권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④ 十六年(72) 秋八月 曷思王孫都頭 以國來降 以都頭爲于台(『三國史記』 권15, 高句麗本紀 3, 太祖大王)

⑤ 二十二年(74) 冬十月 王遣桓那部涿者薛儒伐朱那 虜其王子乙音爲古鄒加(『三國史記』 권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⑥ 十一年(280) 冬十月 肅慎來侵 屠害邊民 …… 王於是 遣達賈往伐之 達賈出奇掩擊 拔檀盧城 殺酋長 遷六百餘家於扶餘南烏川 降部落六七所 以爲附庸 王大悅 拜達賈爲安國君 知內外兵馬事 兼統梁貊·肅慎諸部落(『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5, 西川王)

⑦ 元年(292) 春三月 殺安國君達賈 王以賈在諸父之行 有大功業 爲百姓所瞻望故 疑之謀殺 國人曰 微安國君 民不能免梁貊·肅慎之難 今其死矣 其將焉託 無不揮涕相弔(『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 5, 烽上王)

L- ① 十一年(B.C.9) 夏四月 …… 鮮卑果開門出兵追之 扶芬奴將兵走入其城 鮮卑望之 大驚還奔 扶芬奴當關拒戰 斬殺甚多 王舉旗鳴鼓而前 鮮卑首尾受敵 計窮力屈 降爲屬國 王念扶芬奴功 賞以食邑 辭曰 此王之德也 臣何功焉 遂不受 王乃賜黃金三十斤·良馬一十匹(『三國史記』 권13, 高句麗本紀1, 琉璃明王)

② 八年(172) 冬十一月 …… 王然之 瑯城固守 漢人攻之不克 士卒飢餓 引還 答夫帥數千騎追之 戰於坐原 漢軍大敗 匹馬不反 王

大悅 賜答夫坐原及質山爲食邑(『三國史記』 권16, 高句麗本紀4, 新大王)

- ③二十年(246) 秋八月 魏遣幽州刺史毋丘儉 將萬人 出玄 來侵 王將步騎二萬人 逆戰於沸流水上敗之 斬首三千餘級 又引兵 再戰於梁貊之谷 又敗之 斬獲三千餘人 …… 魏軍擾亂 不能陳 遂自樂浪而退 王復國論功 以密友·紐由爲第一 賜密友巨谷·青木谷 賜屋句鴨·杜訥河原以爲食邑 追贈紐由爲九使者 又以其子多優爲大使者 是役也 …… (『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5, 東川王)
- ④二年(293) 秋八月 慕容 來侵 王欲往新城避賊 行至鵠林 慕容 知王出 引兵追之 將及 王懼 時新城幸北部小兒高奴子 領五百騎迎王 逢賊奮擊之 軍敗退 王喜 加高奴子爵爲大兄 兼賜鵠林爲食邑 (『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5, 烽上王)

위의 기사 K-①·②·⑤는 고구려에 來降한 주변 小國의 수장들에게 상응하는 고구려 관등을 내리고 기존 지배력을 인정하여 통치하도록 한 사실을, 그리고 L-①·②·③·④는 軍功이 있는 고구려 신하에게 정벌지나 軍功者와 유관한 지역을 食邑으로 하사했던 사례를 보여준다. 또한 K-⑥·⑦은 3세기 말엽 숙신지역을 정벌하여 부용으로 삼은 達賈를 安國君으로 삼아 知內外兵馬事와 함께 梁貊·肅慎諸部落을 통할하게 하였던 바, 梁貊·肅慎諸部落을 통할하는 권한은 K-⑦에서 보듯이 그가 죽을 때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明臨答夫가 質山을 식읍으로 받아(L-②) 그가 죽은 이후 질산에 묻혔던 사실⁶⁹⁾과 비교되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3세기 후반 무렵 일종 지방관으로 파견되었던 중앙관료의 지위와 해당 지역의 통치방식은 여전히 식읍주나 식읍의 그것과 유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食邑을 지급받거나 해당 지역을 통할하는 권한을 받았던 이들은, 來降한 小國의 首長이나 軍功者, 고구려의 고급 관료군이였다. 이들은 『三國

69) “十五年(179) 秋九月 國相答夫卒 年百十三歲 王自臨慟 罷朝七日 乃以禮葬於質山 置守墓二十家 ……” (『三國史記』 권16, 「高句麗本紀」 4, 新大王).

志』 고구려전에서 지칭하듯이 국왕의 臣僚이면서 大加들이었고, 拔奇나 涓奴 加처럼 下戶를 거느렸으며, 위 『三國史記』의 사례처럼 식읍을 지급받는 존재였다. 이들은 3세기 중엽의 고구려 좌식자계급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식읍을 어떻게 운영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새로이 편입된 城邑이나 附庸으로 삼은 지역의 운영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되는 바, 고구려가 臣屬한 沃沮로부터 조세를 수취하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식읍의 운영방식을 살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M. 沃沮諸邑落渠帥 皆自稱三老 則故縣國之制也 國小 迫於大國之間 遂臣屬句麗 句麗復置其中大人爲使者 使相主領 又使大加統責其租稅 貂布·魚·鹽·海中食物 千里擔負致之 又送其美女以爲婢妾 遇之如奴僕(『三國志』 권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30, 沃沮)

위의 기사에서 고구려는 沃沮를 臣屬하면서 沃沮의 大人을 고구려의 使者로 임명하여 옥저를 다스리게 하고, 옥저의 大加로 하여금 그 지역의 租稅를 총괄하여 책임지게 함으로써 그 지역 특산물인 貂布·魚·鹽·海中食物 등을 천리 밖 고구려까지 운송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신속지역인 옥저에 대한 통치방식은 食邑의 사여 조건, 곧 식읍지가 대체로 새로운 영토 편입지나 정복지, 부용지 등이었다는 점과 유사한 것으로 미루어, 식읍의 운영방식과 거의 동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옥저지역은 고구려 중앙정부, 곧 국왕의 통치권 안의 臣屬地였는데 비해, 食邑은 국왕이 有功者나 來降者들에게 그 지역의 통치권을 맡긴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옥저의 사례에 비추어 식읍의 운영방식은, 식읍을 사여받은 고구려 대가나 고급 관료군이 자신의 家臣인 使者·▼衣·先人을 파견하여 해당 식읍지의 일종 '조세'를 수취하는 방식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사실이 『三國志』 고구려전에 “其國中大家不佃作 坐食者萬餘口 下戶遠擔米糧魚鹽供給之”로 기술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下戶는 해당 식읍지역에 편입되어 식읍주의 가신인 使者·▼衣·先人의 지휘 하에 식읍지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특산물을 생산하여 식읍주에게 제공하고, 다시 이들 산물을 식읍주에게 운송하는 일을 맡았던 것이라 하겠다.⁷⁰⁾

또한 앞서 살폈듯이 下戶는 『三國志』에 나타나는 諸加 또는 大家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들이 奴婢 또는 生口와 계급적 구성이 다르다는 관점에서⁷¹⁾ 食邑地에 편성된 民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하호 관계기사가 『三國志』 이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식읍 사여기사도 봉상왕 2년(293) 高奴子에게 鵠林을 食邑으로 사여하는 기사를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호는 식읍을 전제로 존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식읍·하호기사의 소멸과 함께 諸大加亦自置使者·▼衣·先人 기사 또한 『三國志』에서만 보이고, 그 이후 사서에 보이지 않은 바, 이 또한 고구려 사회에

70)李玉은 “下戶는 食邑地 住民으로서 그 食邑地 所有者에 대하여 租賦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았으나, 하호를 征服地의 被征服民으로 파악하였다(李玉, 1973. 3, 「三國時代의食邑, 下戶および私田의起源」, 『韓』 2-7, 韓國學研究院, 8~10쪽). 하호를 被征服民으로 파악한 견해는 일찍이 金洸鎭이 제기한 바 있다(金洸鎭, 1937, 「高句麗社會의生産樣式」, 『普專學會論文集』 3, 740쪽). 물론 고구려가 대체로 새로운 정복지를 식읍지로 사여하였다는 점에서 하호에 피정복민 일부가 포함될 수 있으나,李玉이 濊의 侯·畝君·三老가 통합하였던 下戶까지도 『삼국지』 찬자가 고구려 피정복민으로 파악함으로써 하호로 기술하게 된 것이라고 본 것은 무리가 있으며, 씨의 주장대로라면 拔奇나 涓奴加가 거느리고 갔던 下戶들까지 피정복민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할 것이다.

71) 生口의 계급적 성격에 대해서는 “[建光 2년(122)] 遂成還漢生口 詣玄兎降 自今以後 不與縣官戰鬥 而自以親附送生口者 皆與贖直 人四十匹 小口半之”(『後漢書』 권85, 「列傳」 75, 東夷 高句麗)라고 하여, 2세기 초엽 고구려가 중국 군현에 대하여 漢人 포로를 돌려보내면서 그 대가로 포로 1인당 검포 40필, 小口에게는 그 절반을 각각 지불한 데서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贖直價는 중국 군현의 옥구를 반영하는 것이지만(박남수, 1996, 앞의 글, 36쪽), 生口가 매매되는 노예적 성격의 계급적 속성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노비 또한 민의 처지를 박탈당해 노비로 전락한 것이 “…… 有罪 諸加評議 便殺之 沒入妻子爲奴婢 ……”(『三國志』 권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高句麗)나 『漢書』 「地理志」 고조선 八條犯禁의 “相盜者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 人五十萬”에서 살필 수 있는 바, 生口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盧重國은 沒入된 사람이나 籍沒된 재물은 범죄의 유형 즉 公私에 따라 공적인 경우는 公私奴婢나 官物이 되었을 것이고 사적인 성격의 것일 경우에는 私奴婢나 私物이 되었을 것으로 보았다(盧重國, 1979, 「高句麗律令에 關한 一試論」, 『東方學志』 21, 29쪽).

서의 식읍제 소멸과 관계된 때문으로 보고자 한다. 곧 이들 大加의 家臣이었던 ‘使者·▼衣·先人’은 식읍과 하호의 소멸로 大加를 위한 식읍지 산물의 수취 등의 역할이 소멸되었고, 국가로서도 기존의 大加에게 지급했던 식읍지를 직접 지배함으로써 大加의 가신층을 국가 관료층에 흡수함으로써 이들 명칭이 더이상 사서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⁷²⁾

그러므로 위의 서천왕 11년(280) 梁貊·肅慎諸部落을 정벌하여 부용으로 삼은 達賈에게 그 지역을 식읍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종 지방관 파견형식을 취하여 통할한 것은, 국가가 모든 영토에 대해 직접 지배하고자 한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⁷³⁾ 이후 봉상왕 2년(293) 高奴子에게 鵠林을 食邑으로 수여한 기사는 식읍제로부터 국가의 직접지배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양태로 이해된다. 이러한 식읍지에 대한 국가의 직접지배 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라, 기존 식읍지에 예속되었던 하호 또한 국가가 직접지배하는 ‘民’ 層으로 재편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_ 民戶編制의 展開

고구려 民層의 구체적인 편성 양상은 사서상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대체로 고구려 초기에는 투항한 소국을 성읍으로 삼아 民層에 편입하는 방식과 정복지를 유공자의 식읍으로 삼아 그 백성을 식읍민으로 편입하는 경우가 있었으

72) 趙法鍾은 하호를 종족적으로 예속된 존재로 파악하면서, 4세기 말부터 大加의 하호 집단이 더 이상 사적 예속의 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공적 질서 체계로 편입되었음을 지적하고, 그 단초는 대무신왕대에 비류부장의 탐학을 다스린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趙法鍾, 1997, 앞의 글, 164쪽). 씨의 하호의 성격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4세기 말 민호 확보를 위한 고구려의 정책적 변화를 주목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73) 金基興은 조세제의 체계화 과정에서 해당 주민에 대한 수취체계는 공납적 수취체계에서 지방관에 의한 직접수취체계로 나아간 것으로 보았거니와(金基興, 1999, 앞의 글, 163~164쪽), 梁貊·肅慎諸部落을 정벌하여 부용으로 삼은 이 지역에 대해 達賈를 파견한 것은 바로 기존 식읍체계 또는 공납체계에서 지방관에 의한 직접 수취체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나타난 사례로서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고구려 정복전쟁과 전리품

연도	정벌지	전리품	비고
東明聖王 6년 (B, C, 32)	伐太白山東南狩入國	取其地爲城邑	『三國史記』 권13, 高句麗本紀1
大祖大王 4년 (56)	伐東沃沮	取其土地爲城邑	『三國史記』 권15, 高句麗本紀3
大祖大王 22년 (74)	伐朱那	盧其王子乙音爲古鄒加	『三國史記』 권15, 高句麗本紀3
西川王 11년 (280)	肅慎來侵 屠害邊民 …… 王於是 遣達賈 往伐之	拔檀盧城 殺酋長 遷六百餘家 於扶餘南烏川 降部落六七所 以爲附庸	『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5
美川王 3년 (302)	侵玄緣郡	虜獲八千人 移之平壤	『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5
美川王 14년 (313)	侵樂浪郡	虜獲男女二千餘口	『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5
廣開土王 즉위년 (391)	南伐百濟	拔十城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6
	北伐契丹	虜男·女五百口 又招諭本國 陷沒民口一萬而歸	
	攻陷百濟關彌城	拔	
廣開土王 4년 (394)	戰於湏水之上	虜獲八千餘級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6
永樂 5년(395)	討裨麗	破其三部洛六七百營 牛馬群 羊 不可稱數 於是旋駕	廣開土王陵碑
永樂 6년(396)	討伐殘國	殘主困逼, 獻出男女生口一 千人 細布千匹, …… 得五十八 城村七百 將殘主弟并大臣 十人 旋師還都.	廣開土王陵碑
永樂 20년(410)	東夫餘舊是鄒牟王屬 民, 中叛不貢, 王躬 率往討	其慕化隨官來者 味仇婁鴨盧 卑斯麻鴨盧 社婁鴨盧 肅斯舍 [鴨盧] □□□鴨盧, 凡所攻 破城六十四 村一千四百	廣開土王陵碑
장수왕 63년 (475)	侵百濟	殺其王扶餘慶 虜男女八千而 歸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6
文咨王 13년 (504)	扶餘爲勿吉所逐 涉 羅爲百濟所并	但黃金出自扶餘 珂則涉羅所 產……二品所以不登王府 實 兩賊是爲 世宗曰 ……使二邑 還復舊墟 土毛無失常貢也	『三國史記』 권19, 高句麗本紀7; 『魏書』 권100, 列傳88, 高句麗
文咨王 21년 (512)	侵百濟陷加弗·圓山 二城	虜獲男女一千餘口	『三國史記』 권19, 高句麗本紀7
창陽王 18년 (607)	襲新羅北境	虜男女三千而還	『三國史記』 권20, 高句麗本紀8
창陽王 19년 (608)	襲新羅北境	虜獲八千人	『三國史記』 권20, 高句麗本紀8
		拔新羅牛鳴山城	

나, 3세기 후반에 들어서 식읍제가 소멸되면서 토지와 인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부터 고구려는 보다 적극적인 정복전쟁을 통하여 토지와 人民, 그리고 물화의 획득에 진력하였다.⁷⁴⁾

〈표 4〉에서 고구려 초기의 전쟁은 정복지를 城邑으로 편입하거나 附庸하는 것이 주종이었으나, 4세기에 들어서면서 영토의 확장과 함께 토지와 물산, 인민의 획득에 주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⁷⁵⁾ 특히 고구려 건국 초에는 앞서 살핀 來降者뿐만 아니라 정복지 지배자층과 그 인민을 재지에 두고 고구려 통치체제 안에 수용하였으나, 4세기 무렵부터는 영토를 획득함과 아울러 해당 지역의 인민을 고구려 내지로 데려오는 형태가 많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소수림왕대부터 추진하여 온 율령체제를 정비하고 전제왕권을 수립한 바탕 위에서,⁷⁶⁾ 인민, 곧 그 노동력에 대한 국가적 욕구가 많아졌음을 반영하거나,⁷⁷⁾ 전쟁을 통하여 획득한 포로들은 生口와는 구별되어 고구려 통치체제에 편입했던 것이라 하겠다.⁷⁸⁾

곧 광개토대왕릉비 永樂 5년(395)조의 “百殘新羅 舊是屬民”이라는 기사

74) 토지와 백성의 획득 관련 기사는 『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 5, 美川王 3년(302)·14년(313)조; 권18, 「高句麗本紀」 6, 故國壤王 7년(390)조 기사를 비롯하여,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 6, 廣開土王 원년·4년조 기사, 그리고 광개토대왕릉비 영락 5년(395)·6년(396)·20년(410);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 6, 長壽王 63년(475); 권19, 「高句麗本紀」 7, 文咨王 13년(504)·21년(512); 권20, 「高句麗本紀」 8, 蒼陽王 18(607)·19(608)년; 권22, 「高句麗本紀」 10, 寶臧王 下 14년(654) 등이 있다.

75) 戰爭 또는 投降에 의한 복속과 인민의 조치에 대해서는 韓錫勳, 1960, 「古代國家成長過程에 있어서의 對服屬民施策(上)」, 『歷史學報』 12 참조. 다만 전쟁 포로를 일괄적으로 국가에 예속되거나 將臣에게 분배되었던 노비신분으로 파악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76) 盧重國, 1979, 앞의 글, 112~117쪽.

77) 金鍾璿은 광개토대왕의 전쟁기사에서, 고구려 전쟁의 목적이 노예화와는 무관하게 주로 영토의 확장과 농업인구의 확보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金鍾璿, 1992, 「三國時代의 戰爭捕虜에 관하여」, 『歷史學報』 136, 8~19쪽).

78) 趙法鍾 또한 광개토대왕릉비 수묘인이 일반신분층으로 편제된 데 주목하여, 4세기 말 5세기 초 중래 지역의 종족적 집단예속민을 더 이상 존속시키지 않고 일반민으로 파악하면서 고구려 국가의 성격을 일층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趙法鍾, 1997, 앞의 글, 165~166쪽).

나 동 9년(399)조에서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어 “以奴客爲民 歸王請命”한다는 기사, 그리고 동 20년(410)조의 “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에서, 고구려가 백제·신라의 인민 또는 부용국의 인민을 속민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동 6년(396)조에서 새로이 획득한 인민을 백제왕이 현상한 生口와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守墓人烟戶조에서 수묘인을 ‘遠近舊民’ 이라 하여 民層으로 파악하였던 바, ‘所略來韓穢’란 일종 새로운 정복지에서 획득한 인민으로서 ‘舊民’에 대응하는 ‘新民’으로 파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⁹⁾ 이러한 기록들로 미루어 보아 고구려는 전쟁을 통하여 획득한 인민들을 새로운 고구려의 인민으로 편입하려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⁸⁰⁾

사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장수왕대에는 3세기 중엽보다도 民戶가 3배 증가하게 되었거니와,⁸¹⁾ 이는 새로이 정복한 영토의 확장과 아울러 전쟁을 통하여 획득한 인민들을 고구려의 민호로 편입하고자 하는 국가적 노력의 결실이라고 하겠다.⁸²⁾ 이들 새로이 고구려 민호로 편입된 이들은 농지의 경작뿐만 아니라 각종의 생산활동과 수묘역 등에 투입되었고, 결국 조세원으로서 국가 재정의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⁸³⁾

79) 손영중은 5세기 초엽 고구려 사회는 당당한 중앙집권적 봉건통치를 갖춘 발전기의 봉건사회, 봉건국가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수묘연호는 결코 노예나 노비가 아니라, 양인신분이거나 후세의 신랑역천층에 해당하는 신분의 사람으로 이해하였다(손영중, 1986, 「광개토대왕릉비에 보이는 수묘인연호의 계급적 성격과 립역방식에 대하여」, 『역사과학』 3, 15~17쪽).

80) 金洸鎭은 고구려가 정복전쟁을 통하여 복속한 피정복지에 대한 직접지배를 강화해 가는 과정을, ‘피정복사회에 대하여 정치적 내지 경제적 교섭을 통하여 자기 계급적 재관계를 복속사회에 이식시키고, 권력과 부를 집중시킨 바, 고구려 중심지대의 직접적 지배는 고구려 종속사회에 대한 통제와 공납의 보충 및 자기 세력의 새로운 진출을 꾀한 것’으로 설명하였다(김광진, 1937, 앞의 글, 775~776쪽).

81) “遼東南一千餘里 東至柵城 南至小海 北至舊夫餘 民戶參倍於前魏時”(『魏書』권100, 「列傳」 88, 高句麗)

82) 박남수, 2004, 앞의 글, 129쪽.

83) 金基興은 고구려가 전쟁의 수행을 위하여 수취증대를 피하면서 수취대상을 확보하는 정책으로서 피정복민을 점차로 정상적인 구성원 곧 민의 범주로 편제함으로써 항구적인 수취원으로 확보해 갔던 것으로 보았다(金基興, 1999, 앞의 글, 157~158쪽).

고구려 민호 편성의 양상을 보여주는 다음 기사들을 주목할 수 있는데, 민의 경작과 편성양상을 보여주는 N그룹, 광물 등을 생산하여 國用に 充당하는 O-①·②와 축성역에 동원되는 O-③·④·⑤ 그룹, 그리고 守墓役 관련 내용을 보여주는 P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을 듯하다.

- N- ① 十二年(190) 秋九月 京都雪六尺 中畏大夫沛者於 留·評者左可慮 皆以王后親戚 執國權柄 其子弟 并恃勢騎侈 掠人子女 奪人田宅 國人怨憤 王聞之怒欲誅之 左可慮等 與四椽那謀叛(『三國史記』 권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 ② 十三年(191) …… 晏留言於王曰 微臣庸愚 固不足以參大政 西鴨谷左勿村乙巴素者 琉璃王大臣乙素之孫也 性質剛毅 智慮淵深 不見用於世 力田自給 大王若欲理國 非此人則不可 王遣使以卑辭重禮聘之……(『三國史記』 권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 ③ 十六年(194) …… 冬十月 王 于質陽 路見坐而哭者 問何以哭 爲 對曰 臣貧窮 常以傭力養母 今歲不登 無所傭作 不能得升斗之食 是以哭耳 王曰 嗟乎 孤爲民父母 使民至於此極 孤之罪也 給衣食 以存撫之 仍命內外所司 博問鰥寡孤獨老病貧乏不能自存者 救恤之 命有司 每年自春三月至秋七月 出官穀 以百姓家口多小 賑貸有差 至冬十月 還納以爲恒式 內外大悅(『三國史記』 권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 ④ 美川王(一云好壤王)(300) 諱乙弗(或云憂弗) 西川王之子古鄒加 G.固之子 初烽上王疑弟G.固有異心 殺之 子乙弗畏害出遁 始就水室村人陰牟家 傭作 …… 不勝艱苦 周年乃去 與東村人再牟販鹽 …… (『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5, 美川王)
- ⑤ 三年(521) 夏四月 王幸卒本 祀始祖廟 五月 王至自卒本 所經州邑貧乏者 賜穀人一斛(『三國史記』 권19, 高句麗本紀7, 安祿王)
- ⑥ 溫達 高句麗平岡王(559~590)時人也 …… 家甚貧 常乞食以養母 …… 公主獨歸 宿柴門下 明朝 更入 與母子備言之 溫達依違未決 其母曰 吾息至陋 不足爲貴人匹 吾家至 固不宜貴人居 公主對曰 古人言 一斗粟猶可噉 一尺布猶可縫 則苟爲同心 何必富貴然後可共乎 乃賣金釧 買得田宅·奴婢·牛馬·器物 資用完具 ……(『三國史記』 권45, 列傳5, 溫達)

⑦ 四年(645) …… 夏四月 …… 李世勣·江夏王道宗 攻蓋牟城拔之 獲一萬人·糧十萬石 以其地爲蓋州 張亮帥舟師 自東萊渡海 襲卑沙城 城西面懸絕 惟西門可上 程名振引兵夜至 副總管王大度先登 五月城陷 男女八千口沒焉 李世勣進至遼東城下 帝至遼澤泥 二百餘里 人馬不可通 將作大匠閻立德 布土作橋 軍不留行 度澤東 王發新城·國內城步騎四萬救遼東 …… 我軍力戰不克 死者萬餘人 見捉勝兵萬餘人 男女四萬口 糧五十萬石 以其城爲遼州 …… 初莫離支遣加尸城七百人 戍蓋牟城 李世勣盡虜之 其人請從軍自效 帝曰 汝家皆在加尸 汝爲我戰 莫離支必殺汝妻子 得一人之力 而滅一家 吾不忍也 皆 賜遣之 以蓋牟城爲蓋州 …… 世勣遂攻安市 …… 帝以遼左早寒 草枯水凍 土馬難久留 且糧食將盡 召班師 先拔遼蓋二州戶口度遼 乃耀兵於安市城下而旋 …… 徙遼蓋巖三州戶口 入中國者七萬人 ……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 上)

○- ① 銀礫函(渾) 凝鮮疊^은 『齊書東夷傳』 銀山在國西北 高驪採以爲貨 高驪記云 銀山在安市東北百餘里 有數百家 採之以供國用』 (『翰苑』 高麗條)

② 正始中(504~507) 世宗於東堂引見其使芮悉弗 悉弗進曰 高麗係誠天極 累葉純誠 地產土毛 無愆王貢 但黃金出自夫餘 珂則涉羅所產 今夫餘爲勿吉所逐 涉羅爲百濟所并 國王臣雲惟繼絕之義 悉遷于境內 二品所以不登王府 實兩賊是爲 世宗曰 …… 昔方物之愆 責在連率 卿宜宣朕旨於卿主 務盡威懷之略 披書^은 輯寧東裔 使二邑還復舊墟 土毛無失常貢也 …… (『魏書』 卷100, 列傳88, 高句麗)

③ 九年(300) …… 八月 王發國內男女年十五已上 修理宮室 民乏於食 困於役 困之以流亡 ……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5, 烽上王)

④ ① 十四年(631) 春二月 王動衆築長城 東北自扶餘城 東南至海 千有餘里 凡一十六年畢功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① 二十五年(642) 春正月 遣使入唐朝貢 王命西部大人蓋蘇文 監長城之役 冬十月 蓋蘇文弑王(『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② 蓋金又奏築長城東北西南 時男役女耕 役至十

六年乃畢(『三國遺事』 권3, 興法3, 寶藏奉老 普德移庵)

- ⑤ ① 己丑年五月廿八日始役 西向十一里小兄相夫若牟利造作 ② 己酉年三月廿一日 自此下向 東十二里 物苟小兄 俳百頭作節矣 ③ 己丑年三月 廿一日自此下 向[下]二里 內[中]百頭上 位使 丈作 節矣 ④ 丙戌十 二月中 漢城下 後小兄文達 節自此 西北行 涉之 ⑤ 卦婁盖切小 兄加群自 此東廻上□ 里四尺治 (平壤城 石刻)
- ⑥ 乙亥年八月前部 小大使者於九婁治 城六百八十四間(籠吾里山城 磨崖石刻)

P-① 三十七年(18) 夏四月 王子如津溺水死 王哀慟 使人求屍不得 後沸流人祭須得之 以聞 遂以禮葬於王骨嶺 賜祭須金十斤-田十頃 (『三國史記』 권13, 高句麗本紀 1, 琉璃明王)

- ② 十五年(179) 秋九月 國相答夫卒 年百十三歲 王自臨慟 罷朝七日 乃以禮葬於質山 置守墓二十家 …… (『三國史記』 권16, 高句麗本紀4, 新大王)

- ③ ① 守墓人烟戶 賣句余民國烟二看烟三 東海賈國烟三看烟五 敦城民四家盡爲看烟 于城一家爲看烟 碑利城二家爲國烟 平穰城民國烟一看烟十 連二家爲看烟 俳婁人國烟一看烟 三 …… 細城二家爲看烟 ② 國 | 上廣開土境好太王 存時教言 祖王先王 但教取遠近舊民 守墓酒掃 吾慮舊民轉當羸劣 若吾萬年之後 安守墓者 但取吾躬巡所略來韓穢 令備林掃 言教如此 是以如教 令 取韓穢二百廿家 慮其不知法則 復取舊民一百十家 合新舊守墓戶 國烟세看烟三百 都合三百새家 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唯國 上廣開土境好太王 盡爲祖先王 墓上立碑 銘其烟戶 不令差錯 又制 守墓人 自今以後 不得更相轉賣 雖有富足之者 亦不得擅買 其有違令 賣者刑之 買人制令 守墓之(廣開土大王陵碑)

먼저 民의 농지 경작과 관련된 기사 가운데, N-①·②에서 2세기 말엽 고구려 일반민은 이미 ‘力田自給’의 農地를 소유하였고, N-③·④에서 2세기 말부터 4세기 무렵에 이르기까지는 빈궁한 民의 경우 남의 집에 ‘傭作’하는

〈표 5〉 보장왕 4년(645) 당나라 침략시 함락된 고구려성의 상황

당병 함락 고구려성	성 중의 인구수	성 중의 식량
趨建安城	破我兵殺數千人	
攻蓋牟城拔之	獲一萬人	糧十萬石
襲卑沙城	男女八千口沒	
王發新城·國內城步騎四萬救遼東 死者千餘人		
遼東城	我軍力戰不克 死者萬餘人 見捉勝兵萬餘人 男女四萬口	糧五十萬石
白巖城	得城中男女萬餘口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으며, N-⑥에서 6세기 말엽에는 田宅의 매매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볼 수 있다. 이는 2세기 말엽부터 일반민의 경지 소유가 보편화되어 있었고, 사적 경리가 가능하였던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⁸⁴⁾

특히 일반민의 사적 경리와 관련하여 N-②·⑤에서 家口 단위로 진대법이나 진휼이 시행되었음을 주목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고구려 民戶의 編成이 家口數를 단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실 O-①에서는 銀鑛의 채굴을 위하여 ‘數百家’를 두었다는 데서 銀鑛의 채굴을 위한 민의 편성 또한 ‘家’를 단위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守墓役의 경우에도 동일하였던 바, P-②·③에서 2세기 중반이나 5세기 초엽의 수묘인은 모두 家를 단위로 편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⁵⁾ 이는 N-⑦에서 고구려 加尸城 군사 700명이 당병의 포로가 되자 당병으로 종군하고자 하는데 대해 唐帝가 “汝家皆在加尸 汝爲我戰 莫離支必殺汝妻子 得一人之力 而滅一家”라고 한 데서, 고구려 군대 편성 또한 가족을 단위로 해당 지역에 편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가족 단위로 편성된 城의 규모는 7세기 전반 당나라가 고구려를 정벌할 당시 蓋牟城, 卑沙城, 白巖城 등은 8천~1만여 명, 규모가 큰 요동성의 경우 군대를 포함하여 6만여 명의 인구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성에는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저장하였던 듯한데, 개모성의 경우 인구 1만 명에 10만 석을,

84) 洪承基는 이들 民을 良人農民으로 지칭하고, 自給農民과 傭作農民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홍승기, 1974, 앞의 글, 29~40쪽).

85) 손영중, 1986, 앞의 글, 15쪽.

요동성의 경우 6만여 명의 인구에 50만 석을 비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 양식은 1인당 0.8~1石의 곡식으로, 『隋書』 고구려 조세조항에서 1戶가 내는租의 양에 해당한다. 만일 이를 일반화할 수 있다면, 고구려 일반민이 내는租는 해당 지역의 통치에 소용되는 비용에 충당된 것이 아니었겠는가 추측해 볼 수도 있겠다.

한편 수묘인 편성과 관련하여 P-②가 식읍지의 '民'을 대상으로 한데 비해, P-③은 고구려 통치권역의 '舊民'과 '新來韓滅'를 대상으로 하여 편성하였고, 특히 P-③의 '新來韓滅'는 앞서 살폈듯이 이미 고구려 인민으로 편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⁸⁶⁾ 이들 '新來韓滅'는 정복지의 인민이라는 점에서⁸⁷⁾ 2세기 후반 명림답부에게 전공의 대가로 質山지역을 食邑으로 내려 그 식읍민으로 수묘인을 구성한 것과 동일하나, 명림답부의 경우 식읍지역을 근거로 수묘역에 당하게 하고, 호태왕릉묘의 경우 사방 정복지의 인민을 이주시켜 수묘

86) 수묘인의 사회적 처지에 대해서는 노예설과 농노적 자연농민으로 보는 설로 나뉜다. 전자는 白南雲·勞幹·王健群으로 대표되는데 당시 사회가 노예제 사회라는 점과 수묘지의 천민적 속성, 그 구성이 전쟁 포로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주장하였으며, 후자는 金錫亨·耿鐵華로 대표되는데 수묘인이 家를 구성하고 일정한 자기경리를 가졌다는 점에 그 논거를 두고 있다(金賢淑, 1989, 「광개토왕비를 통해 본 고구려 수묘인의 사회적 성격」, 『한국사연구』 65, 24~25쪽). 한편 이필영은 수묘인의 매매 사실로 미루어 노예신분이었던 것으로 풀이하였고(이필영, 1987, 「한국 고대의 장례의식 연구」, 『論文集』 17, 한남대 동아문화연구소, 274쪽), 金賢淑은 수묘인은 직역변동의 자유가 없고 거주지 또한 제한되는 비자유민으로 양의 역이 아닌 수묘역에 고정적 세습적으로 종사하는 직역인으로서, 일반 자연촌에 거주하는 양인보다는 일단 낮고 개별적 노예보다는 다소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金賢淑, 1989, 위의 글, 25~34쪽). 이에 조인성도 김현숙과 유사한 관점에서 '수묘인이 원거주지로부터 사민되어 각 왕에게 사적으로 예속됨으로써, 노비보다는 우월하나 그렇다고 양인이 아닌 마치 부곡민과 같은 존재로 보았다(조인성, 1988, 「廣開土大王陵碑를 통해 본 高句麗의 守墓制」, 『韓國史 市民講座』 3, 103쪽). 조법중은 수묘인의 성격이 집단적 예속민적 성격을 띤 복속민이지만 광개토대왕 당시 고구려 사회 구성이 이 같은 일반민화를 특징지워지고 있음에서 수묘역이란 고역을 수행하는 일반민으로 파악하였다(趙法種, 1995, 「廣開土大王陵碑文에 나타난 守墓制研究」, 『韓國古代史研究』 8, 236쪽).

87) 武田幸男, 1979, 앞의 책, 84~85쪽; 李道學, 2002, 「광개토대왕릉비문의 國烟과 看烟의 성격에 대한 再檢討」, 『韓國古代史研究』 28, 98~103쪽.

역에 당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종래 식읍지의 인민을 수묘역에 당하게 했던 것에서 고구려에 편입된 인민을 수묘역에 당하게 하였다는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이는 3세기 후반부터 일어난 변화, 곧 식읍지까지도 국가의 통치권역에 포함시킨 일련의 변화과정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들 수묘역의 경우 비록 건국 초기의 모습이긴 하지만 P-①에서 보듯이 장례를 치르고 祭需에 충당하기 위해 祭須金十斤·田十頃 이라 하여 제수비용과 田을 내렸는데, 이러한 조치는 1회적인 것이 아니라 매년의 제수를 위한 항례적인 조치로서 이해된다. 이를 P-②·③에 적용할 수 있다면 수묘역에는 마땅히 祭需와 수묘인의 생활을 위한 조치가 있었을 것이고, P-①의 사례처럼 수묘인의 생활을 위한 조치로서 田을 지급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⁸⁸⁾

사실 광개토태왕릉비를 세우면서 “이전의 선왕들이 遠近의 舊民들로 守墓케 했던 것인데, 舊民이 羸劣할까 염려하여 몸소 所略하여 데려온 韓穢들로 守墓토록 하려 했으나, 저들이 법칙을 알지 못할까 하여 舊民들과 함께 편성하고 명문으로 새겨 烟戶가 差錯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수묘인들은 서로 轉賣하지 말며, 富足之者가 마음대로 사지 못하도록 하되, 영을 어기고 이를 사는 자는 형벌에 처하고, 사는 자는 수묘역에 편성한다”는 법제를 발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기왕에는 ‘守墓인들이 파는 것과 富足한 자가 사는 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거니와, 위 명문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수묘인 스스로가 팔 수 있는 것이었고 富足한 자들이 사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것이 재화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팔고 사는 대상은 P-①의 사례로 미루어 보아 수묘인에게 수묘역의 대가로 주어졌을 ‘田’이 아니었나 짐작되며, 수묘인이 파는 것을 염려했다는 점에서 개별경리가 허용된 ‘田’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⁸⁹⁾

88) 조법중은 수묘인 국연과 간연의 烟이란 표현은 국가적 토지지급과 연결된 호구를 지칭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수묘활동을 위한 경제적 기반으로서 토지가 지급되었으며, 국연이 실질적인 수묘활동을 진행하고, 간연은 농경 및 제반 생산활동을 통해 수묘활동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았다(趙法種, 1995, 앞의 글, 213~218쪽).

이들 수묘역은 “取韓穢二百廿家 慮其不知法則 復取舊民一百十家 合新舊 守墓戶 國烟새看烟三百 都合三百새家”에서 국연 30가, 간연 300가, 총 330가로 구성되었다는 데서, 간연 10가를 단위로 국연 1명이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⁹⁰⁾ 이러한 편성 방식은 P-②의 명림답부의 수묘역에 ‘20가’가 배치된 데서 ‘10가’를 단위로 역이 편성되던 전통이 있었지 않았나 짐작할 수 있다. 사실 『隋書』 고구려전에서 商團을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遊人’이 10인을 단위로 편성된 것은 이러한 고구려 고유의 역체계 편성방식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⁹¹⁾

그런데 고구려의 역역 동원은 O-③에서 보듯이 4세기 무렵에는 宮室의 수리를 위해 15세 이상의 남녀 모두가 징발되다가, O-④의 ‘男役女耕’에서 보듯이 7세기 전반의 요역에는 丁男에 한정하고 있다. 앞서 필자는 『隋書』 고구려전 조세조항의 삼등호제가 정남과 정녀의 구성비율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상정하였던 바, 『隋書』 고구려전 조세조항은 7세기 전후의 과도기적 조세조항으로서 4세기 무렵부터 내려온 조세제의 내용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된다.

아무튼 이와 같은 요역의 편성방식은 O-①의 안시성 동북쪽 은광 수백가의 은의 생산에도 적용되었으리라 추측되는데, 이들은 O-⑤·⑥에서 보듯이 小兒이나 小大使의 지휘 하에 番上하였으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공동의 역이 필요한 O-②의 황금·珮 등의 생산에도 O-①의 은광이나 O-⑤의 축성, P의

89) 조법종도 매매의 대상이 수묘인이 아니라 지급받은 토지였을 것으로 본 바 있다(趙法種, 1995, 앞의 글, 219~220쪽).

90) 손영중은 국연은 부유한 戶로서 수묘역을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층이고, 간연은 영세한 호로서 10호가 합해서 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층으로서 『隋書』 「高句麗傳」의 遊人이 10인을 단위로 편성된 것에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손영중, 1986, 앞의 글, 17쪽). 한편 趙仁成은 국연과 간연, 구민과 신래한예의 비율이 각각 1:10, 1:2로 되어 있어 그 구성이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파악하면서, 국연 1가와 간연 10가가 하나의 노동단위를 구성하였을 것으로 보았다(趙仁成, 1988, 앞의 글, 94~95쪽)

91) 조법종은 각 왕릉에 실질적 수묘역을 수행한 수묘인의 규모는 기본적으로 20家였던 것으로 보고, 국연과 간연의 대응관계는 『수서』 「고구려전」 조세조항에서 10인이 한 조가 되어 국가적 징세단위로 파악되는 양상과 통하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趙法種, 1995, 앞의 글, 199·218~219쪽).

수묘역과 유사한 형태의 입역 방식에 의해 운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광개토태왕릉비의 수묘인은 平壤城 石刻이나 籠吾里山城 磨崖 石刻에 보이는 小兒 또는 小大使에 상응하는 國烟과 10가를 단위로 번상 수묘역에 당하는 간연으로 구성되거나, 아니면 국가에 직접 예속되어 국가적 관리 하에 수묘역에 임하는 國烟과 번상의 방식으로 수묘에 임하는 看烟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⁹²⁾

요컨대 고구려 民은 생구·노비와 구별되는 존재로서 농지의 경작이나 공물의 생산, 축성·수묘역 등에 종사하고, 租와 稅를 부담함과 아울러 요역에 징발되어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특히 고구려 민호의 편제방식의 변화는 4세기 초엽을 전후한 어느 때부터 있었을 고구려 정치·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러한 변화는 결국 국가가 민을 직접 지배하는 방식으로의 변화와 함께 공물징수 체제로부터 田租와 調 중심의 조세제도로 발전하는 과정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특히 수묘인은 신분적으로는 民이었으나, 수묘역이란 제한된 신역을 징발하는 대신에 전지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국가가 민을 직접 지배하는 체제를 강화하면서, 고구려는 국가가 직접 조세를 수취하여 중앙재정의 소용에 당하거나, 각 성을 단위로 창고를 두고 당해 지방관이 조세를 수취하여 지방재정을 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6세기에 들어서면서 고구려 조세제도는 일반민과 상인층까지도 포괄하였으며, 이민족에 대해서는 종래의 공물 징수의 방식과 필요시 군사를 징발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역역 동원은 잦은 전쟁과 외침으로 인하여 매우 가혹하였던 바,

92) 대체로 기왕의 논자들은 국연은 간연을 지휘감독하고 수묘역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지는 존재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김현숙, 1989, 앞의 글, 46쪽; 조인성, 1998, 앞의 글, 99쪽). 다만 손영종은 국연과 간연은 선상립역하는 番次가 다를 수도 있고, 또 번치는 같더라도 국연이 몇 사람의 간연을 통솔하는 패두(십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협한 일을 하였을 수도 있고, 또 국연은 호수(정정-정식립역자)로 간연은 그 뒷바라지를 하는 봉족으로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손영종, 1986, 앞의 글, 17쪽). 조법종은 손영종의 세 가지 가능성 가운데 세 번째 안을 좇아 국연이 실질적인 수묘활동을 진행하고, 간연은 농경 및 제반 생산활동을 통해 수묘활동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았다(趙法種, 1995, 앞의 글, 213~218쪽).

그 징발 대상은 정남과 정녀를 바탕으로 한 것이 점차 정남을 중심으로 운영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던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고구려 조세제에 관한 내용은 『隋書』와 『周書』, 『北史』에 소개되어 있는데, 기왕의 연구에서는 주로 가장 구체적인 기사를 보여주는 『隋書』 高句麗傳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이미 「三國의 經濟와 交易活動」이라는 글에서 『隋書』와 『周書』, 『北史』에 전하는 고구려 조세 관계 기사를 살피고, 서로 보완적인 성격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당시에 「三國의 戰爭과 交易」이란 한정된 논제로 인하여 고구려 조세제나 사회경제 구성 등에 대해 소략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고구려 조세제도가 고구려 사회경제 발전과정을 밝히는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民戶의 編制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관점에서, 중국 사서에 보이는 고구려 조세제 기사를 『수서』의 용례와 비교 검토하여 『수서』 고구려전의 租와 稅, 三等戶制에 대한 의미를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기왕에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遊人의 성격을 『수서』의 용례에 비추어 밝히고, 이와 관련하여 遊女의 기사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검토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수서』 고구려전 조세조항에서 고구려 민호편제의 실마리를 찾아, 고구려 사회경제 구성과 관련한 하호와 식음의 문제, 4세기를 전후한 시점에서 민의 직접지배 방식으로의 전환과 수묘인, 그리고 민호편제의 조세제와의 관련 등을 천착하였다. 이에 그 결과를 요약하여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 사서 고구려 조세제 관계기사에 대해 서로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주서』와 『수서』는 貞觀 10년(636)에 완성되었다. 양 사서에 보이는 내용상의 차이는 그 근거한 자료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상호 보완적인 성격

을 띠는 것이었다. 특히 『수서』 고구려전의 기사는 수나라와 고구려 양국사신의 왕래로부터 획득한 정보와 『隋書』 식화지를 찬술한 長孫無忌 등과 같이 수나라의 대신으로 있다가 당나라의 관료가 되어 『수서』에 찬술에 참여한 이들의 직·간접적인 견문, 그리고 『수서』 경적지에 보이는 『華夷帝王世紀』, 『諸蕃風俗記』, 『諸蕃國記』 등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였던 만큼, 『주서』보다도 구체성을 띠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양 사서 고구려전의 대상시기에 있어서 『수서』가 고구려 건국으로부터 北周 武帝 6년(577) 고구려 평원왕을 책봉하는 기사까지를, 『주서』가 고구려 건국으로부터 수양제가 고구려 원정을 포기한 양제 10년(614)까지를 하한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北周 武帝 建德 6년(577, 고구려 평원왕 19)까지의 『周書』의 “賦稅則絹布及粟 隨其所有 量貧富差等輸之”라는 고구려 조세제가, 그 이후 614년까지 사이의 어느 시기에인가 『隋書』의 “人稅布五匹 穀五石 遊人則三年一稅 十人共細布一匹 租戶一石 次七斗 下五斗”라는 보다 구체화된 내용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수서』 고구려전의 租와 稅, 三等戶制를 『수서』 식화지의 용례와 비교 검토하여, 租는 丁男과 丁女の 비율에 따라 戶의 등급을 매기고 각 戶의 人丁數에 따라 호별로 토지가 사여되어 부과되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인구수가 각 호별 토지의 다과로 연결되며, 그에 따른 호별 빈부의 차이에 따라 租의 징수액이 정해졌던 바, 이러한 사정이 『周書』 고구려전에서는 ‘빈부의 차이를 헤아려 징수’한 사실로 서술되지 않았나 짐작하였다. 특히 租의 징수액으로 보아 고구려 上戶는 2명의 丁男 또는 1명의 정남과 2명의 丁女, 中戶는 1명의 정남과 1명의 정녀, 下戶는 1명의 정남 또는 2명의 정녀 등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고구려 租戶의 3등호제는 정남과 정녀의 구성비율로 나뉘어졌을 가능성을 상정하였다. 이러한 고구려의 課田과 田租의 책정 과정을 唐代 均田制 하의 課稅 과정에 상응하며, 戶를 단위로 田租가 부과된 것은 北魏의 전통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稅는 『隋書』의 용법에 비추어 대체로 桑田과 麻田의 경작으로부터 납부하는 調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인정되었다. 고구려의 稅(調)는 『隋書』에

나타난 調布·祿絹·祿綿·租米처럼 세분화되지는 않았으나, 布 5匹과 穀 5石이 징수되었다. 다만 『隋書』의 용례에 비추어 稅 또한 田租와 마찬가지로 人丁數에 따라 桑田과 麻田이 지급되고, 그것이 『周書』의 대상시기인 577년까지는 戶別 빈부차로 나타나 과세의 기준이 되다가, 577년 이후 614년 사이의 기간에 인정별로 과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遊人을 『수서』에 나타난 ‘遊’자의 다양한 용례로부터 검토하여, 『수서』의 찬술자들이 상업을 ‘游手爲事’로 여긴 것을 주목하고, 이를 『수서』에 나타난 ‘稅’의 용례와 비교하여 『隋書』 고구려전에서 遊人이 냈던 稅는 邸店之稅와 入市之稅, 鹽稅, 其荻炭魚薪之類의 過津稅의 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고구려 유인은 바로 상인의 신분으로 稅를 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乙弗이 東村人 再牟와 함께 배를 타고 다니며 소금을 팔았던 사례에서 각 지방관의 통제 하에 있던 일종 商團의 설정이 가능하였고, 이들에 대해 국가가 10인을 단위로 편제한 것이 『隋書』 고구려전의 10인을 단위로 3년에 한 번씩 징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추정하였다. 이처럼 3년에 한 번씩 징세하는 것은, 수나라에서 賦稅常調의 담세그룹을 상호·중호·하호로 나누어 3년에 1번씩 다시 상정하였던 사례와 비교되었다.

넷째, 『수서』·『주서』·『북사』의 遊女 관계기사는 『삼국지』 위지 고구려전의 “其俗淫 男女已嫁娶 便稍作送終之衣” 기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곧 『위서』와 『양서』의 찬술자들이 『三國志』의 ‘도리에 어긋나다’는 의미의 ‘淫’을 ‘淫亂’의 의미로 풀이하면서, 각각 “好歌舞 夜則男女群聚而戲” 기사와 관련시키거나, “其俗好淫 男女多相奔誘”를 덧붙여 설명하였는 바, 『隋書』와 『北史』에서는 『양서』의 풀이를 따라 고구려 결혼 풍속을 음란한 것으로 여기고, 여기에 遊女の 의미를 덧붙였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에 『隋書』·『周書』·『北史』를 찬술할 당시에 중국인들은 정해진 짝이 없이 歌舞를 즐기는 婚前的 女인들을 遊女로 불렀고, 그러한 女인들의 모습이 중국인의 유교적 도덕관에서는 매우 음란한 것으로 비추게 된 결과 ‘遊女’ 관계 기사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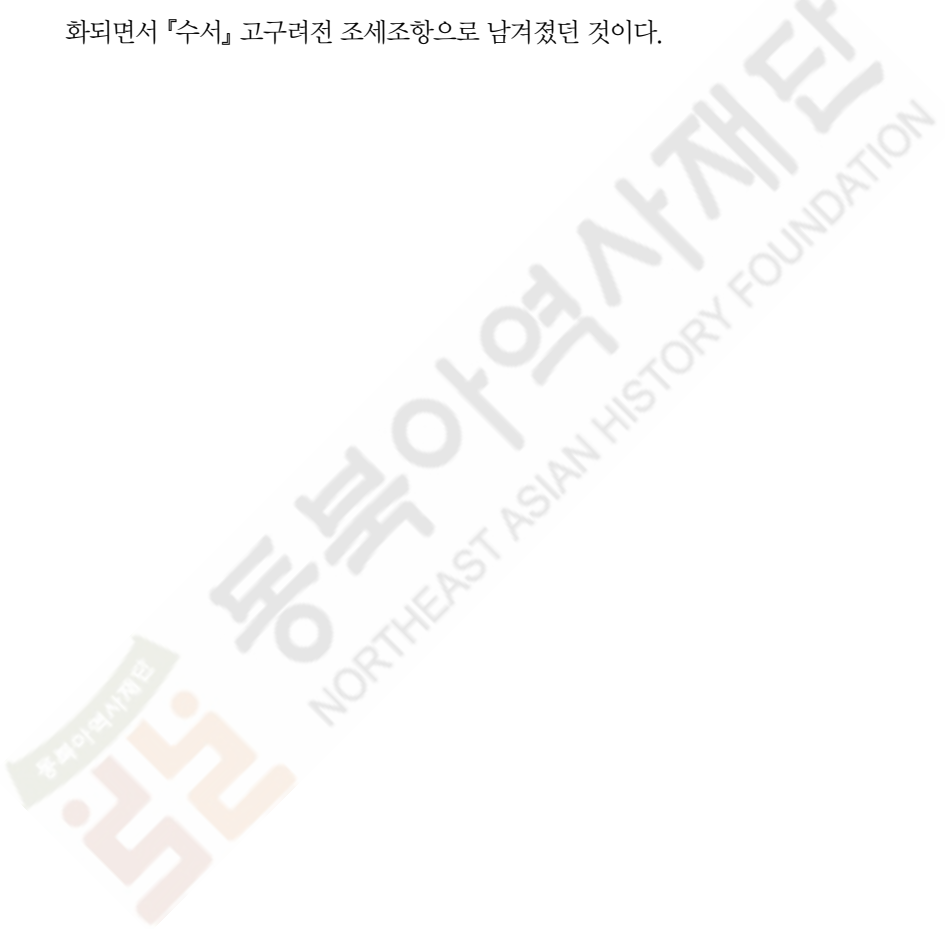
다섯째, 고구려 계급 구성의 변화과정을 하호와 민의 관계 및 그 성격, 제가 또는 대가와 하호의 관계, 하호와 식읍의 관계, 국가의 민층에 대한 직접 지배로의 전환과정 속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삼국지』 위지 부여전의 “國有君王 皆以六畜名官 有馬加·牛加·加·拘加·大使·大使_{ᄃᆞ}·使者 邑落有豪民 下戶皆爲奴僕”을 “나라에는 모두 六畜名으로서 官名을 삼는데 馬加·牛加·加·拘加·大使·大使_{ᄃᆞ}·使者가 있다. 邑落에는 豪民·民·下戶가 있는데 모두 奴僕이다”라고 풀이하고, “諸加自戰 下戶俱擔糧飲食之”에서 諸加-下戶의 대응관계를 확인함으로써, 下戶는 諸加에 예속되었고, “其民喜歌舞”로부터 하호와 별개의 신분으로서 ‘民’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들 奴婢와 구별되는 신분으로서의 下戶는, 諸加나 大家에게 米糧을 공급했으므로 諸加나 大家의 토지를 경작하는 일도 담당하였을 것인데, 이들이 경작하였던 토지는 諸加나 大家에 지급된 食邑이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식읍의 운영은 3세기 무렵 고구려가 옥저를 통치하던 방식으로부터 식읍을 사여받은 고구려 대가나 고급 관료군이 자신의 家臣인 使者·_{ᄃᆞ}衣·先人을 파견하여 해당 식읍지의 일종 ‘조세’를 수취하는 방식이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아울러 下戶가 諸加 또는 大家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고, 奴婢 또는 生口와 계급적 구성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食邑地에 편성된 民戶를 ‘下戶’로 일컫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3~4세기 무렵 국가가 식읍뿐만이 아니라 식읍민을 직접 지배해가면서, 이들 식읍과 하호, 제가 또는 대가의 가신이었던 사자·조의·선인들이 기록에서 사라지게 된 바, 이러한 현상은 국가가 기존 식읍지에 예속되었던 하호들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는 민층으로 재편성하는 과정과 흐름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여섯째, 고구려 民戶編成의 展開過程을 정복전쟁의 전리품 획득, 그리고 민의 경작과 편성양상, 공물의 생산과 축적역, 수모역 관련기사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고구려 역대 정복전쟁의 전리품을 검토함으로써 고구려 초기 전쟁이 정복지의 城邑 편입과 附庸으로 일관하던 것이, 4세기에 들어서면서 영토의 확장과 아울러 토지와 물산의 획득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특

히 고구려 건국 초에는 來降者뿐만 아니라 정복지 지배자층과 그 인민을 재지에 두고 고구려 통치체제 안에 수용하였으나, 4세기 무렵부터는 영토를 획득함과 아울러 해당 지역의 인민을 고구려 내지로 데려오는 형태가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인민의 內地로의 徙民은, 그 노동력에 대한 국가적 욕구가 많아졌음을 반영하는데, 이 무렵에는 이미 전쟁을 통하여 획득한 포로들을 生口와 구별하여 고구려 통치체제에 편입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구려 민은 생구·노비와 구별되는 존재로서 농지의 경작이나 공물의 생산, 축성·수묘역 등에 종사하고, 租와 稅를 부담함과 아울러 요역에 징발되어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수묘인은 신분적으로는 민이었으나, 수묘역이란 제한된 신역을 징발당하는 대신에 전지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수묘역은 小兒 또는 小大使에 상응하는 國烟과 10가를 단위로 番上하는 看烟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공물생산이나 축성에 동원되는 역 또한 이러한 체제와 동일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역체제는 4세기 무렵에는 宮室의 수리를 위해 15세 이상의 남녀 모두 징발되다가 7세기 전반의 요역에는 '男役女耕'이라 하여 丁男에 한정하고 있고, 『隋書』 고구려전 조세조항의 삼등호제가 정남과 정녀의 구성비율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바 『隋書』 고구려전 조세제 기사는 4세기 무렵부터 내려온 조세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7세기 전후 과도기적 조세 조항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요컨대 고구려 민은 생구·노비와 구별되는 존재로서 농지의 경작이나 공물의 생산, 축성·수묘역 등에 종사하고, 租와 稅를 부담함과 아울러 요역에 징발되어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3세기 무렵에 보이는 하호는 신분적으로는 노비·생구와 구별되는 민층에 속하나, 제가 또는 대가에 예속되어 이들의 식읍을 경작하는 민층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이들은 4세기 무렵 국가가 민층을 직접 지배하는 정책을 강화하면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민층으로 편제되었다. 고구려 민호의 편제방식의 변화는 4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의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조세제 면에서 공물징수 체제로부터 田租와 調 중심의 조세제도로 발전하는 과정을 수반한 것이었다. 고구려는 국가가 민을 직접 지배하는 체제를 강화하면서, 국가가 직접 조세를

수취하여 중앙재정의 소용에 당하거나, 각 성을 단위로 창고를 두고 당해 지방관이 조세를 수취하여 지방재정을 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6세기에 들어서면서 고구려 조세제도는 일반민과 상인층까지도 포괄하였으며, 이러한 제 양상은 『주서』 고구려전에 비로소 반영되었고, 7세기 전반 좀더 구체화되면서 『수서』 고구려전 조세조항으로 남겨졌던 것이다.



[ABSTRACT]

The Tax System and Tenant Farmer
Formation of Koguryo

Park, Nam-Soo

This article is to explain the Koguryo's tax system and its development. Generally speaking, the tax system of a country reflects not only its socio-economic developments but also its social stratifications. And so, I focus, in this article, the dynasty's tax system through in these prospects. In order to the understanding of Koguryo's tax system, the most important work, I think, is to be researched in the China's well-known public history books, Koguryo section of *SueSer* (隋書), which included many neighbouring countries histories. Specially it described Koguryo's tax system and its operation such as grain tax(租), tax(稅), the system of three grade for tenant farmer(三等戶制).

Through *Sueser*, I could understand Koguryo's tax was consisted of between general grain tax from the land, and tax like tribute tax(調) imposed mulberry field(桑田) and hemp field(麻田). Considering in many Chinese history books and specially *Sueser*, the letters Youin(遊人) could be understood as trades people(商人), and Youyer(遊女) as virgins who likes dance and sing a song.

Generally speaking, Koguryo's People(民) was very important

part of tax system. They had mainly practiced agriculture, and they had been burdened to tax such as grain tax, tax, corvee duty(役). By the three century, low household(下戸) class had been appeared which contrasted the lower class such as nobi(奴婢) and servants(生口). I think that they might be bound into the class of clan patriarchs(諸家) and great clan patriarchs(大加). By the four century, they was transformed into general people class of People(民) as Koguryo had strengthened its power and centralization. All these new change and formation of the tenant farmer(民戸) by that time not only reflected the dynasty's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the transformation from the tribute-oriented(貢物) to the grain tax(田租) and tribute tax(調) system in tax system. Also by seven century, as the state could control all the people by intensifying tax system, the government used all the taxes not only to run central government but also to control the lower provinces and territories of Koguryo.

keywords

tax system, grain tax, tax the system of three grade for tenant farmer, tribute tax, Youin, Youger, low household, nobi, servants, clan patriarchs, great clan patriarchs, formation of the tenant farmer, the tribute-oriented, the grain tax, tribute tax, *Sueser*

고구려어 재구를 위한 기초적 연구

- 'ㅍ' 자의 고대 새김 재구를 중심으로 -

손희하

「동북아역사논총」 14호

동북아역사재단

2006年 12月

고구려어 재구를 위한 기초적 연구

- '王' 자의 고대 새김 재구를 중심으로* -

손 희 하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I. 서론

우리는 어떤 한자를 가리키거나 익힐 때에 새김(訓, 釋)과 음을 한데 결합하여 한자의 이름처럼 이른다.¹⁾ 이를테면, '天'은 '하늘천' 자라 하고, '地'는 '따지' 자라고 하는 식이다. 이기문(1972ㄷ)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우리 한민족만의 고유한 관습인데, 이처럼 한자의 새김과 음이 고착한 것은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뜻글자인 한자의 소리와 뜻을 차용하여 당시 우리말을 표기한 것

* 손희하(1985 : 18~20, 1991 : 89~93)에서 『千字文』(광주본, 병자본), 『千字文』(大東急記念文庫本)에 나오는 '王' 자의 새김 어휘 '기즈 / 기츠'의 어의 구명을 중심으로 간단히 논의한 바가 있다. 이 글은 '王' 자의 고대 새김 재구에 초점을 맞추어 논지를 확대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1) '새김'이란 한자의 이름처럼 굳어진 대표 의미를 나타내는 우리말을 일컫는 용어이다.

새김은 예로부터 訓, 釋, 諺譯, 字訓, 諺釋 등으로 일컬어 왔으며,

- 訓 : 今俗訓京字云徐伐(『三國遺事』 1 : 新羅 始祖 赫居世)
- 釋 : 凡一字有數釋字 或不取常用之釋(『訓蒙字會』 凡例)
- 諺譯 : 修補 增益略成完書總三千字 就加諺譯(『新增類合』 序)

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새김에 대한 연구는 해당 자료를 편찬 간행한 당시의 국어 실상을 파악하는 데에 큰 몫을 하므로 국어사, 특히 어휘사와 방언사 연구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²⁾ 여러 지방에서 수차에 걸쳐 퍼낸 새김 자료는 시대에 따른 지역 방언을 적잖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김 연구가 국어학에 이바지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고대 국어 연구의 기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어 계통 문제를 논의하는 데에도 좋은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³⁾ 새김은 다른 낱말과는 달리 시대가

- 字訓：每當誦讀之際 不惟只識字訓而已 必須反覆紬繹觸類而長之(『御製千字文』序)
- 釋義：華人言與字一 故識其字體而音義具焉 東人言與字二 故以方言 釋義辨音而復求之字體 所以煩而難也(『字類註釋』序)
- 諺釋：訓蒙字會…… 最博而備諺釋而註錄 今倣其意而諺釋實難(『字類註釋』序)

현재 학계에서는 '새김, 釋, 字釋, 訓, 字訓, 諺釋, 釋訓, 諺解' 등 여러 용어를 함께 쓰고 있다. 남광우(1966) 등에서는 '訓'이라 일컫고 있다. 『三國遺事』에서 '訓'이라고 칭한 용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용어는 늦어도 삼국 시대 이후 써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기문(1972)에서는 '釋'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訓'이라는 용어가 옛부터 써 내려온 전통을 이은 것이라기보다 일본 학계의 영향이기 때문에 일본 학계에서 쓰는 '訓'과 구별하고자 『訓蒙字會』 등 근세 조선 시대의 문헌에서 '訓'과 함께 써온 '釋'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다. 최범훈(1975)에서는 '字釋'이라 일컫고 있다. '釋'이라고 하면 경서에서 볼 수 있듯이 《한자의 뜻풀이》를 일컫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피한 것이다. 그리고 김희진(1987)에서는 '字訓'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전통성과 '자음'에 대한 대비성을 고려하여 사용한 용어이다. 이처럼 현재 학계에서는 학자에 따라 용어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이훈중·성원경(1975)에서는 한 논문에서조차 '釋訓', '字訓', '訓' 등의 여러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이기문(1981), 손희하(1991) 등에서 써온 '새김'이라는 용어는 중세 국어 문헌에서 직접 쓴 보기는 아직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사기다'라는 동사를 《解》나 《釋》이라는 의미로 자주 쓴 것을 볼 때에 '사김(새김)'이라는 용어는 일찍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종래 써 왔을 뿐 아니라 순 우리말 용어인 '새김'으로 일컫기로 한다.

- 2) 새김을 새김 자료 간행 시기의 어휘 자료로 이용할 때에는 새김이 당시의 일상어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새김은 새김 자료를 퍼낸 때의 어휘를 보여 주기도 하지만 새김 자료를 퍼낸 때에 쓰지 않는 낱말도 새김에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 모든 국어사 자료가 그렇듯이 복각판인 경우가 많이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곧, 새김 자료에 나오는 낱말 모두를 고스란히 당시 낱말로 이용할 수는 없다.

바뀌어도 쉽사리 변하지 않는 보수성을 띠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오늘날에도 새김말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於 늘어’, ‘也 이끼야’라 하고 있으며, ‘地 따지’, ‘李 오얏리’처럼 고어가 남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세 새김 자료에는 그것을 펴낸 때에는 이미 사어가 되어버린 낱말이 나타나며, 이들 가운데에서 방언과 고대 국어 낱말을 적잖이 찾아낼 수 있다.⁴⁾

주지하는 바와 같이 향가를 비롯하여 고대 인명, 지명, 관직명 등 고대 국어 자료는 한자음과 새김을 빌려 표기하여 놓았다. 최근에 잇달아 발견한 석독 구결 자료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들을 표기 당시의 한자음과 새김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고대 한국 한자음에 대한 연구는 박병채(1971)를 비롯하여 유창균(1991) 등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 온 편이나, 고대 새김 연구는 새김 연구 자체가 이기문(1971)에 와서야 뒤늦게 눈을 뜬 탓으로 이기문(1972; 1982; 1989), 손희하(1984; 1986; 1991; 1995) 등에서 부분적으로 시도했을 뿐 종합적이고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직 없다. 고대 한국 한자음을 재구하지 않고 고대 국어를 연구할 수 없듯이 고대 새김을 재구하지 않고서는 고대 국어를 연구할 수 없다. 따라서 고대 국어를 좀 더 정확히 해독하기 위해서는 고대 새김 연구가 필수 불가결하고, 또 다른 연구보다도 이를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고대 새김을 모아 놓은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이두를 모아 적은

3) 새김 어휘에서는 고대 국어 낱말을 적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새김에서 찾아낸 고대 국어 어휘는 부족한 고대 국어 어휘를 집고, 나아가 국어 계통 문제 논의에 필요한 어휘를 보충해 줄 수 있다.

새김 연구는 이 밖에 한자·한문 교육 면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새김 연구 의의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기문(1972), 손희하(1991) 등을 참조하길 바란다.

4) 이를테면, ‘간담다(涼), 바라(處), 아투다(未), 안득/안득(不), 오힐다(同), 짐죽(漣), 바지/바치(工), 곳갓(妾), 구들(房), 구름(萬), 그르(珍), 괴즈/기초(王), 마음(任), 나먹다(妍), 나오먹다(麗), 납쌌다(嬌), 덜아비(陶), 므(丙), 비츠다(飽), 알다(良), 슴(阿), 모시다(牧), 무들기(), 손(丁), 아시 띠다(帛), 외춤(w.), 외푼다(刻), 혀털다(吃) 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중세 새김이나 지방판 새김 자료에 나오는 새김 연구를 통하여 매우 부족한 고대 국어 어휘 자료를 집고 더할 수 있다.

책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책도 있을 법하다. 새김이 고유한 우리 것이고 차자 표기가 고대부터 이루어진 것이며 『千字文』이 백제 때에도 있었음을 생각할 때에, 차자 표기한 『千字文』이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만약 이러한 자료를 찾아낸다면 고대 국어 연구에 커다란 전환이 있을 터이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재 남아 있는 새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고대 새김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고대 새김은 고대 차자 표기 자료나 후대 새김 자료를 가지고 재구할 수 있겠는데, 고대 새김을 재구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가 있을 것이다. 고대 새김을 직접 보여 주거나 암시하는 고대 차자 표기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서 고대 새김을 추출한 다음에 이를 후대 새김 자료에서 검토하는 방법이 하나요, 후대의 새김을 완전히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고대 차자 표기 자료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다른 하나이다.⁵⁾ 여기에서 이들 태도는 접근하는 방향에 따라 나누어지는 태도이지 근본적인 방법상에는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전자의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이 연구는 고구려어 재구를 위한 기초 연구로 고대 차자 표기 해독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고대 새김을 재구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이 글에서는 고구려 지명에 나타나는 ‘王’ 자를 대상으로 삼아 고대 새김을 재구하고자 한다.

‘王’ 자의 고대 새김을 재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대 차자 표기 자료를 정리하여 살펴본다. 곧 고대 차자 표기 자료를 정리하고 용례를 검토, 분석하여 고대 새김을 직접 보여주거나 암시하는 고구려 차자 표기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서 새김을 추출한 다음에 이를 후대 새김 자료에서 검토하기로 한다.⁶⁾ 이를 위해서는 고구려 지명, 인명, 관직명을 비롯하여 향가, 고려 시대 구결, 이두,

5) 고대 새김 자료에는 “今俗訓京字云徐伐(『三國遺事』 1 : 13-1)”처럼 새김을 직접 알려 주는 자료와 “買忽—云水城(『三國史記』 37 : 3-1)”처럼 석음독 복수 표기를 통하여 새김을 암시해 주는 것이 있다(새김 자료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는 손희하(1991 : 12~18)를 참조하기를 바람).

6) 자료 검색을 위해서는 손희하(2004)와 문화관광부·국립국어연구원(2004)을 자료로 삼아 <통합형 한글 자료 처리기(깍깍새 ; SynKDP) 1,55판> 검색기를 이용하였다. 여기에 이 사실을 밝혀 만든 이의 노고에 감사한다. 아울러 국어정보화를 더욱 밀어 올리기를 바란다.

고대 차자 표기 자료, 중세 이후 차자 표기 자료, 지명 자료 등을 정리 검토한다. 그런 다음에 15세기 안해본 할주에 나오는 새김 및 『百聯抄解』, 『類合』, 『新增類合』, 『倭語類解』, 『千字文』, 『訓蒙字會』 등 한자 초학서나 한시 입문서 등에 나오는 중세 이후 새김 자료를 망라하여 정리하고, 정리한 새김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따져서 고대 새김 여부를 검증하기로 한다. 이때에 일본어 등 인근 제어, 알타이어 자료도 아울러 비교 고찰하여 고대 새김 여부를 검증하는 데에 원용하도록 한다.⁷⁾

II. 본론

‘ㅁ’자의 고대 새김을 재구하기 위해서 먼저 ‘ㅁ’자가 등장하는 고대 차자 표기 자료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차자 표기인지 한문인지 여부는 자료 검토 후에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일단 고대 문헌 자료에 나오는 표기를 모두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송기중(2004: 727)에 따르면 ‘ㅁ’자는 고대 국어 어휘 자료 표기에서 568어에 걸쳐 등장할 정도로 빈번히 쓴 글자이다.⁸⁾ 곧 ‘ㅁ’자는 고대 국어 어휘 자료 표기에서 5위를 점할 정도로 다수 어휘 표기에 나오는 한자이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차자 표기 자료가 아니라 한자어 표기에 등장하는 것이다. 이제 이 가운데에서 고구려와 관계있는 어휘 자료 표기를 들면

- 7) 특히 일본은 우리처럼 고대로부터 차자 표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와 한자 차용 표기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일본의 고대 훈을 검토하는 일은 우리 고대 새김을 재구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필자는 손희하(1995)에서 ‘ㄱ’자를 통하여 일본 자료를 원용한 고대 새김 재구 가능성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본 바가 있는데,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낸다면, 고대 새김을 좀더 바르게 재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8) 고대 국어 어휘 자료 표기에 나오는 최다수 어휘 표기자를 순서대로 10자 들면 다음과 같다.

縣 895, 城 679, 大 585, 山 572, 王 568, 郡 416, 州 356, 金 329, 國 287, 寺 276

다음과 같다.⁹⁾

- (1) ㄱ. 壬岐縣(壬岐縣¹⁰⁾ / 玉岐縣¹¹⁾ 一云皆次丁[12] [고. 지.]〈『三國史記』 卷 第三十七 雜志 第六 地理四 高句麗·百濟 高句麗 牛首州〉
- ㄴ. 王逢縣一云皆伯 漢氏美女迎安臧王之地 故名王逢¹³⁾ [고. 지.]〈『三國史記』 卷 第37 雜志 第六 地理四 高句麗·百濟 高句麗 漢山州〉
- (2) □ 開土境好太王[고. 인.] 〈광개토왕비〉
 簡王[발. 인.]〈『唐書』 중327〉
 無恤王[고. 인.] 〈『三國遺事』 1卷-1紀異-樂浪國-01〉
 高王[발. 인.]〈『三國遺事』 1卷-1紀異-靺鞨-渤海-01〉
 夫婁王[부. 인.]〈『三國遺事』 1卷-1紀異-高句麗-02〉

9) 이 글에서 고구려와 관계있는 어휘 자료란 고구려, 부여, 백제 등의 자료를 일컫는다. 여기에서 부여와 백제의 어휘 자료를 함께 넣는 이유는 이들 언어 상호 관계에서 언어의 상이성을 찾기 어려운 데에다가, 고구려가 부여로부터,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왕의 인명 등 지배 계층이 사용하는 언어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 있는 언어 자료는 고대 삼국의 언어가 같고 다름을 판단하는 근거로 이용하기 어려우며(송기중 2004 : 2~3), 오히려 언어 차가 없었을 개연성을 암시하는 것이 적잖다(김방한 1983 : 106).

자료는 논지와 관련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일부 자료만 들기로 한다. 모두 드는 것은 번거로운 일일 뿐 논지 전개에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http://gate.dbmedia.co.kr/chonnam/>에 실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CD-ROM 譯註 三國史記』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용례 약호는 다음과 같다.

고.=고구려, 백.=백제, 부.=부여, 발.=발해, 인.=인명, 지.=지명

- 10) 原本「壬」, 三國史節要·鑄字本「王」. 本書 卷35 地理2와 高麗史·輿地勝覽에 의거하여 수정함. 榮·朝·權·烈·舜·浩「王」.〈정문연 역주〉
- 11) 『북한본』, 玉岐縣(현 인제군 서화면).
- 12) 유창균(1980 : 325)에서는 ‘丁’ 자의 새김은 ‘岐’ 자의 새김과 같은 것이라고 보았고, 양주동(1965 : 77)에서는 ‘皆次丁’을 ‘皆次’ 자의 오기로 보았는데, ‘ ’ 자와 ‘岐’ 자의 대응이 ‘丁’ 자와 ‘岐’ 자의 대응보다 쉽게 수긍되어 이 글에서는 ‘皆次’로 본다. ‘ ’ 자와 ‘岐’ 자의 대응에 대해서는 뒤에 기술한다.
- 13) 原本 判讀不能. 三國史節要에 의거 보충함. 鑄字本「迎」. 榮·朝·權·烈·燾·浩「迎」, 北·舜「逢」.〈정문연 역주〉

東明王 甲申立 理十八. 姓高 名朱蒙 一作鄒蒙[고. 인.] <『三國遺事』
1卷-1王曆-00-01>
瑠璃王 一作累利 又孺留[고. 인.] <『三國遺事』 1卷-1王曆-00-01>
大虎(武)神王 名無恤 一作味留 姓解氏[고. 인.] <『三國遺事』 1卷-1
王曆-00-01>
溫祚王[백. 인.] <『三國遺事』 1卷-1王曆-00-01>
.....

위에 든 자료 (1), (2)는 인명, 지명 표기로 모두 고유명사 표기이다. 이 중
에서 (1)은 ‘ㅍ’ 자가 고구려 차자 표기에 등장하는 복수 표기 자료로 논지 전
개에 유용하다.

주지하다시피 『三國史記』 제37 권 소재의 지명어에는 같은 지명의 새김
표기와 음 표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많다. 그동안 지적해온 바이지만,
위 (1) ㄱ ‘王岐 : 皆次 ’에서 ‘王’은 새김 표기, ‘皆次’는 음 표기로 서로 대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⁴⁾ 일단 여기에서 고구려어에 ‘皆次’가 ‘왕’

14) 『三國史記』 제37 권 소재의 지명어에는 같은 지명의 새김 표기와 음 표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많으므로 이 용례에서도 새김 표기와 음 표기의 대응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먼저 ‘ㄱ’자와 ‘岐’자는 ‘갈래’라는 의미가 대응한다.

• ([아]物之岐頭 又分形(麻)<『全韻玉篇』 상 : 1ㄴ>, [아]物之岐頭 우씨어질 · 두가장귀질,
分形也 거덕널(麻아)<『新字典』 1 : 1ㄴ>, 1 가닥 아, 가장귀 아, 물건의 가닥진 형상, 또 나
뭇가지의 아귀, 2 총각 아, 어린아이의 머리를 두 가닥으로 나누어 팅아서 머리의 양쪽에
뿔 모양으로 잡아 맨 것.<『신자해』 4>)

• 岐(기) 鳳翔山名 古公始居 周文王 所封峻也(支)<『全韻玉篇』 상 : 26ㄴ>, [기] 鳳翔山名 산이름
[詩] 古公亶父至于~下, 峻也 놈홀[詩] 克~克 (支)<『新字典』 1 : 41ㄴ>, 1 산이름 기 섬서성
기산현에 있는 산. 주왕조의 발상지. 2 높을기 산 같은 것이 높음. 3 갈래질기 갈림길 기,
가닥이 집. 또 옆으로 갈려나간 길. 岐와 동자.<『신자해』 145>)

다음으로 이를 제외한 ‘王’과 ‘皆次’도 뒤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새김 표기와 음 표
기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1) ㄴ. ‘王逢縣一云皆伯’에서는 ‘王’과 ‘皆’, ‘逢’과 ‘伯’의 대응을 통하여 ‘王’은
새김 표기, ‘皆’는 음 표기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王’에 ‘皆次’와 ‘皆’가 대응하
는 것으로 되는데, 대부분 ‘皆’를 ‘皆次’의 생략 표기로 보고 있다(이병선(1982 :
262), 천소영(1990 : 127), 임병준(2000), 최남희(2005 : 101) 등 참조하기를 바람).
『日本書紀』, 『古事記』 등의 기록 ‘홀시’ 등으로 미루어 볼 때에 ‘皆’가 ‘皆次’의 약

의 뜻으로 쓰인 것을 추정할 수 있다(유창균, 1980 : 290 ; 이기문, 1982 ; 이병선, 1982 : 160~161 ; 김방한, 1983 : 103~106).¹⁵⁾ ‘皆次’와 같은 의미이며 음상이 비슷한 자료를 동일한 시대의 기록으로 볼 수 있는 『日本書紀』, 『古事記』 등 일본 사료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곧, 『日本書紀』, 『古事記』 등 일본 사료를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 시대의 고유명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임금’을 뜻하는 ‘王, 君, 主’ 자 등을 다음에 보이는 것처럼 ‘きし’, ‘こきし’, ‘こにきし’ 등으로 새김 표기하고 있다.

- (3) 新羅王子(こきし)〈『日本書紀』 6 垂仁天皇〉
 百濟王(こにきし)〈『日本書紀』 9 神功皇后〉
 新羅(しらき)王(こきし)〈『日本書紀』 14 雄略天皇〉
 加須利君(かすりのきし)〈『日本書紀』 14 雄略天皇〉
 軍君(こにきし) ≧ 支君也)〈『日本書紀』 14 雄略天皇〉
 鳴王(せまきし)〈『日本書紀』 16 武烈天皇〉
 斯麻王(しまきし)〈『日本書紀』 16 武烈天皇〉
 麻那君(まなきし)〈『日本書紀』 16 武烈天皇〉
 斯我君(しがきし)〈『日本書紀』 16 武烈天皇〉
 法師君(はふしきし)〈『日本書紀』 16 武烈天皇〉
 百濟國君(くたらのこにきし)〈『古事記』 중〉
 新羅國王(しらきのこにきし)〈『古事記』 중〉

유창균(1983 : 23~2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 『日本書紀』, 『古事記』 등

기일 가능성이 있으나, ‘王’에 해당하는 말에 ‘皆次’와 ‘皆’가 이형태로 함께 존재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 15) 이홍직(1990 : 2672)에 의하면, ‘王岐縣’은 오늘날 강원도 인제군에 속하는데, 이 지역은 원래 백제 땅이었으며, 한때는 신라에 예속되기도 한 곳이다. 따라서 이 지명이 어떤 언어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실로 어렵다. 『三國史記』에 고구려 지명편에 실려 있으며, 발해어에 ‘왕’을 ‘基下’라고 한다는 기록에 힘입어 여기에서는 고구려어로 보고자 한다. 발해는 고구려 유민이 세운 나라이므로 발해어는 바로 고구려어로 볼 수 있는데, ‘왕’을 뜻하는 ‘基下’가 음상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俗謂王曰‘可毒夫’,日‘聖主’,日‘基下’.其命爲‘敦’〈『唐書』 219 北狄 渤海〉

의 기록은 당시 일본인이 백제인의 발음을 듣고 직접 기록한 것도 있을 것이나, 거의 대부분은 『百濟記』, 『百濟新撰』, 『百濟本記』 등 백제측 사료를 근거로 전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본다.¹⁶⁾ 그렇다면 위의 표기에서 한자 기록은 백제 측의 것으로 볼 수 있고, 표음은 백제의 원음을 일본의 음운으로 재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에 위에서 인용한 ‘王, 君, 主’자의 새김 표기 ‘키시’는 『三國史記』 제37 권 소재의 지명어에 나오는 ‘皆次’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高麗史』의 다음 기록 또한 왕을 뜻하는 고구려어 ‘皆次’의 존재를 더욱 굳혀 준다. 곧 『高麗史』의 다음 기록은 ‘왕’에 해당하는 말 ‘皆次’의 후대형을 고려초에 개성에서 사용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¹⁷⁾

(4) 之與王方言相類 故太祖因姓王氏〈『高麗史』世系 9ㄴ〉

위 기록은 “種 之田 而種麻也〈『高麗史』世系 9ㄴ〉”에 대한 익제 이제현의 주석이다. 이 기록은 ‘ ’을 뜻하는 말과 ‘王’을 뜻하는 말이 고려초에 서로 비슷했음을 증언한다.

‘ ’를 일컫는 순우리말은 15세기 이래 ‘기장’이다.

(5) 기밭 〈『구급방』, 상, 018a〉

糜 기장미 俗呼~子〈『東訓』 上12 뒤〉

기장 : 糲 俗呼米曰黃米〈『東訓』 上12 뒤〉

黍 기장 : 黍 不粘者爲~粘者爲 又黍蜀曰蜀~〈『東訓』 上12 뒤〉

‘기장’에 해당하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 시기의 차자 표기는 『朝鮮館譯語』에 ‘吉雜色~吉雜色二’로 나오며, 『鄉藥救急方』에 ‘只叱’으로 나온다.

16)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백제는 고구려로부터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백제 지배 계층이 사용하는 언어는 고구려어와 다르지 않은 언어로 보고자 한다.

17) 이에 대해서는 이기문(1982 ; 1991)의 고찰이 상세하다.

(6) 只叱 (黍米 俗云 『鄉救』 目48b4)

吉雜色 (黍米 『朝譯』 경09-107)

吉雜色二 (黍米 『朝譯』 아09-107)

이들 표기는 후대형을 참조할 때에 *깃(-) 을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 국어에서 기장의 방언형에 아직 어형이 장형화하지 않은 ‘깃<경남> [거제]’ 이 존재한다.

(7) 깃(기장(黍))<경남>[거제]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볼 때에, 위 (4) 『高麗史』 기록은 ‘ ’ 를 일컫는 말로 *깃(-) 과 비슷한 말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⁸⁾ 이처럼 『高麗史』 기록에서 ‘ ’ 를 일컫는 말로 *깃(-) 과 비슷한 말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면, ‘ ’ 와 비슷한 음상을 가진 ‘王’ 을 뜻하는 말은 *깃(-) 과 비슷한 말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皆次’ 의 후대형이 아닐까 한다.

‘皆次’ 의 후대형은 다음과 같이 16세기 한글 문헌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8) 王 千字왕<『千字文』(광주본) 6ㄱ>

王 千字왕<『千字文』(병자본) 4ㄴ>

王 千字왕<『千字文』(大東急記念文庫本) 6ㄱ>

『千字文』(광주본, 병자본), 『千字文』(大東急記念文庫本)에 나오는 ‘王’ 자의 새김 ‘千 / 千’ 가 바로 이것이다. 이 ‘千 / 千’ 는 이들 『千字文』(광주본) 계통에만 보일 뿐 다른 일반 문헌 자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보수성이 강한 다른 새김 자료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다.¹⁹⁾ 이것으로 보아서 ‘王’ 자

18) 이기문(1963 ; 1982=1991)에서 ‘只叱’ 이 *kic 이었을 가능성을 논급한 바가 있다.

의 새김 '긔즈 / 기츠' 는 이미 당대에는 사라진 말을 이들 자료가 새김 자료의 보수성으로 말미암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⁰⁾

종래 '王' 자의 새김에 나오는 '긔즈 / 기츠' 에 대하여 이기문 (1972 : 248), 최학근(1980 : 218)에서는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에 나타나는 '箕子' 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기문(1982), 김방한(1983 : 103~106)에서는 《王》을 의미하는 말로 보았다.

이는 후자의 주장이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王' 자의 새김에 나오는 '긔즈 / 기츠' 를 '箕子' 로 보는 것은 다음 기록으로 보아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9) 十世孫 仇衡王 普通[梁武帝] 辛丑[521] 在位十二年 壬子[532] 讓國于新羅 法興王 移御于山淸郡王山水晶宮 在年丁丑[557 ; 진흥왕 18년] 薨王后諱桂花父分 卯葬(『 水伊叱] 陵在山淸郡王山水晶宮[今

19) '긔즈 / 기츠' 가 나오는 이들 『千字文』(광주본) 계통은 뜻을 알기조차 어려운 낱말이 많을 정도로 다른 새김 자료에 비하여 더 보수적이다.

'王' 자의 새김은 다른 새김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현재의 새김과 같은 계통인 '님금 / 림금 / 님금 / 임금' 들로 나온다.

ㅍ 님금왕<『신유』 상 : 19ㄴ, 『송천』 4ㄴ>

ㅍ 님금왕<『내천』, 『경천』, 『신천』, 『갑천』 6ㄱ>

ㅍ 님금왕<『칠천』, 『정천』, 『오천』 5ㄱ, 『육천』 3ㄱ>

ㅍ 님금□[왕]<『영천』 6ㄱ>

ㅍ 님왕<『용천』 5ㄱ>

ㅍ 임금왕<『서천』 5ㄱ>

ㅍ 림금왕<『행천』 5ㄱ>

ㅍ 님군왕<『홍천』 5ㄱ>

ㅍ 조희왕 世見曰~(本)님금왕 君也 (又)왕홀왕~天下 (又)왕성왕 盛也 (又)全往 <『註解千字文』 6ㄱ>

ㅍ 님금왕 三代天子稱~自泰以後列國稱~又去聲~天下<『訓蒙字會』 중 : 1ㄱ>

ㅍ 님금왕 君也 大也 尊稱~父 又~霸 興也 長也 盛也 往也<『字類註釋』 상 : 32ㄱ>

ㅍ [왕] 君也 인군왕 (陽) 盛也 왕성할왕 ○保有天下 인군노릇할왕(중)<『字典釋要』 하 : 1ㄱ>

20) 이는 이들 낱말이 다른 문헌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점과 이들 새김이 보이는 자료가 다른 여느 자료보다도 보수성이 더 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혹시 이들 낱말이 16세기 전라도 광주 부근의 방언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西面花溪 西邱 四面 皆七箕子陵(『金相轍 世系履行券』世系)

주지하다시피 기자릉은 평안남도 평양시 기림리에 있는데, 위 기록에 의하면 경상남도 산청군에도 기자릉이 무려 7개나 있다. 따라서 위 기록에 나오는 ‘箕子’는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보통 명사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바로 ‘王’ 자의 새김에 나오는 ‘기즈’를 차자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王’ 자의 새김에 나오는 ‘기즈 / 기츠’는 고유 명사가 아닌 ‘王’에 해당하는 보통 명사로 보고자 한다.²¹⁾

위에서 ‘王’ 자의 새김 ‘기즈 / 기츠’는 새김 자료의 보수성으로 말미암아 16세기 즈음에 나타날 뿐 이미 중세 이후에는 사라진 말로 보았는데,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에 보이는 ‘항것/항것主’의 ‘것’은 ‘기즈 / 기츠’의 후대 화석형으로 봄 직하여 주목할 만하다.

(10) 두 사르미 眞實로 네 항것가(『월인석』, 08, 094b)

네 옛데 항것 背叛 ㅎ야 가는다 ㅎ고 스 초로 두소닐 미야와 長者
손디 날어늘 (『월인석』, 08, 098b)

항것시 종의게 그 집블 거느려서 이를 맞디고 종이 항거시 ㄱ게
음식글 그럴시 종이 모습 ㅅ장 항것 섬기고 항것순 ㅍ 거스로 종
을 쥐주느니 종과 항거시 ㅎ 모습모로 힘스면 집빋 이리 도ㅎ리
라(『正俗』, 15b~16a)

동니 갈 제 제 항것드려 달라 ㅎ니(순천김)

놈이 날오되 네 항것과 닷티사니 물내라 ㅎ면 버서날이라 ㅎ
야늘(『속삼강』, 중, 충, 005a)

항거시 죄을 니블이니 항것죄니 괴고 내 살움을 다 못ㅎ리라 ㅎ

21) 아직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에 나오는 ‘箕子’ 또한 고유 명사가 아니라 ‘王’에 해당하는 보통 명사를 차자 표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기문(1982)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최남선(1973)에서 ‘箕子’가 본래는 종족을 가리켰고 뒤에는 왕을 가리킨 ‘기오지(日子)’란 낱말에 ‘箕子’를 부회하였다고 본 것은 이러한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더라<『속삼강』, 중, 충, 005a~005b>

삼 년을 최복하다 민 향것 박질이과 응싱의 부쳐의 신쥬 블 블
거늘 개동이 손조 신쥬 밍 7라<『동삼충』, 1, 081b>

우리 노비 등도 향것님 덕분의 향나도 주그니 업시 다 사란노라
향고 다곰 즐겨향더라 향고<『병자기』, 138>

종과 향것과는 님금과 신하의 분이 인니니 섬기기를 정성을 다향
야 조금도 어긋로며 거스리디 말올씨니라<『경민해』, 007b>

문 흘 이를 시저도 평상에 향것드려 문 향로다 향여 늦곳 아니턴
종을 주겨 버리니 향거식기기가 괴여서 더 큰 기기 어디 이실고<
진주하>

향것 여히고 논외 곳의 가 춤아 어이 살니 가디 말고져 향디<『서
궁일』, 048a>

나갓다가 보고 제 향것 드려 니르라 온 스이에 쥘여 느리드라 제
방의 가<『서궁일』, 063a>

밭 劉村 짜흔 이제 향것식 농소 1라 더로 향여 7음 아더니<『박신
해』, 3, 038a>

뜰윗 조식의 아버와 종의 향것과 안해의 지아버와 아이 형은 비
록 가히 무를 일이 이실디라도 글로써 증인티 말라<『선조
행』, 048>

네 향것놈의 되상이 만스무척이라 즉금 괴절향여시니 제거든 구
호향고 아직 후리쳐 두라<『명두보월빙』, 1, 233>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의 관직명이나 왕호 등에 보이는 ‘耆次’, ‘近支’, ‘吉支’, ‘吉師’, ‘吉士’, ‘吉次’, ‘居西干’의 ‘居西’ 등은 ‘耆次’와 음상과의 미가 유사하여 자주 비교해 오고 있다.

(11) 上位使者比正六品一名乙耆次<『翰苑』, 30 高麗>

其州縣六十。大城置¹³薩一，比都督；餘城置處閭近支，亦號道使，
比刺史 <『唐書』, 220 東夷傳 高麗>

百濟王姓夫餘氏，號於羅瑕，民號爲¹⁴吉支夏言竝王也<『周書』, 49
異域 上 百濟>

고대 국어 자료가 빈약한 현재로서는 이들 어휘 표기 또한 주목할 만한 귀중한 자료이다. 만약 이들이 ‘皆次’와 동원어에서 파생한 것이거나 해당어의 의미 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앞에서 말한 바처럼 ‘箕子’가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를 차자 표기했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들 음상의 유사성이 동원어로부터의 파생인지 해당어의 의미 변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우연에 의한 것인지를 지금으로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이들 표기와 상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좀더 고구를 기다리기로 한다.²²⁾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三國史記』 제37 권 소재의 고구려 지명어에 나오는 ‘皆次’는 ‘王’을 의미하는 고구려어로 보인다. 『日本書紀』, 『古事記』 등 일본 사료 백제어 전사 기록에도 동일한 어휘로 볼 수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신라 왕호 ‘居西干’의 ‘居西’를 동일한 어휘로 볼 수 있다면 왕을 일컫는 말은 3국이 같았을 개연성이 높다.

『千字文』(광주본, 병자본), 『千字文』(大東急記念文庫본)에 나오는 ‘王’자의 새김 ‘기즈 / 기츠’로 나오고 있음을 볼 때에 ‘皆次’는 ‘기즈 / 기츠’의 선대형 *기지 / *기치’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²³⁾ 따라서 ‘王’자의 고구려

22) 터키어의 ‘klral’이 ‘皆次’와 음상이 비슷하여 주목해볼 직하다.

klral (· · ·), kral; king / ~î (-), royal, ~içe, queen.

~iyet (· · · ·) -ti, -lik; kingdom; kingship (A Turkish-English Dictionary)

하지만 우리말의 계통이 불명확한 지금으로서는 터키어의 ‘klral’이 ‘皆次’와 동원어에서 나왔다거나 한쪽이 차용했다고 판단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도 좀더 고구를 기다리기로 하고 참고로 들어 둔다.

23) 이돈주(1981)에 따르면, 중세 국어의 한자음에서 /ʌ/로 반영된 것은 어느 이른 시기 — 『鷄林類事』의 한자음 전사를 고려할 때에 늦어도 12세기 이전에는 /-i/였다. 이돈주(1981)에서는 중국어의 지섭이 /i>i/로 된 때문에 국어의 한자음에서도 /i>ʌ/의 변화가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희하(1985 : 19, 1991 : 91)에서는 ‘皆次’가 『千字文』(광주본, 병자본), 『千字文』(大東急記念文庫본)에 나오는 ‘王’자의 새김 ‘기즈 / 기츠’나 이의 선대형 *기지 / *기치’를 표기한 것으로 보았으나, ‘기즈 / 기츠’의 선대형 *기지 / *기치’를 표기한 것으로 수정하고자 한다.

기왕의 해독을 몇 들면 다음과 같다.

박병채(1968 : 78) kai^hi, 유창균(1980 : 301~302) kə^r, 이기문(1982) kic(V), 임병준(2000 : 94~98) kə^si, 최남희(2005 : 250) 그스(kə^sə^h).

새김은 ‘끼즈 / 기츠’의 선대형인 *끼지 / *기치로 재구하고자 한다.²⁴⁾

III. 결론

이 연구는 고구려 인명·지명·관직명 고찰을 통하여 고대 새김을 재구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이는 고대 차자 표기 해독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고대 국어를 정확히 해독하기 위해서는 고대 한자음 재구와 동시에 고대 새김

24) 흔히 고대 차자 표기 연구에서는 중국 상고음이나 중고음에서 출발하여 우리 한자음을 재구하곤 하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중국 상고음이나 중고음 자체가 우리 한자음 등을 고구하여 재구한 것인 데에다가, 결국에는 다시 이 중국 재구음을 한국 한자음에 대비하여 우리 고대 한자음을 추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보다는 우리 중세 한자음을 토대로 중국 상고음이나 중고음을 참조하여 우리 고대 한자음을 재구하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 아닌가 한다. 중국 상고음이나 중고음은 우리 고대 한자음을 밝혀내기 위한 방증 자료로서만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참고로 ‘ष’자와 ‘次’의 중국 상고음과 중국 중고음과 한국 전승 한자음을 들어 두면 다음과 같다.

• 상고음

ष : 성모 見	운모 脂	동동화 ked	칼그렌 ker	주법고 krer
이진화·주장집 kei				
次 : 성모 清	운모 脂	동동화 ied	칼그렌 i꺄	주법고 jier
이진화·주장집 ei				

• 중고음(<http://www.eastling.org/tdfweb/midage.aspx>)

ष : 中古聲母 見	中古韻母 皆	中古聲調 平	中古攝 蟹	中古開合 開
中古等 二等	高本漢 kaí	王力 kɛi	董同和 kɛi	周法高 kɛi
李榮 kɛi	邵榮芬 kɛi	蒲力本 ka꺄i	鄭張尙芳 k꺄i	潘悟云 k ɛi
反切 古諧				
次 : 中古聲母 清	中古韻母 脂	中古聲調 去	中古攝 止	中古開合 開
中古等 三等	高本漢 tshi	王力 tshi	董同和 tshjei	周法高 tshili
李榮 tshi	邵榮芬 tshil	蒲力本 a꺄i	鄭張尙芳 tshil	潘悟云 tshi
反切 七四				

• 한국 전승 한자음

ष : 기 次 : 츠

재구가 필수 불가결하고, 또 다른 연구보다도 이를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三國史記』 제37 권 소재의 고구려 지명어에 나오는 ‘王’ 자를 대상으로 삼아 고대 새김을 재구하고자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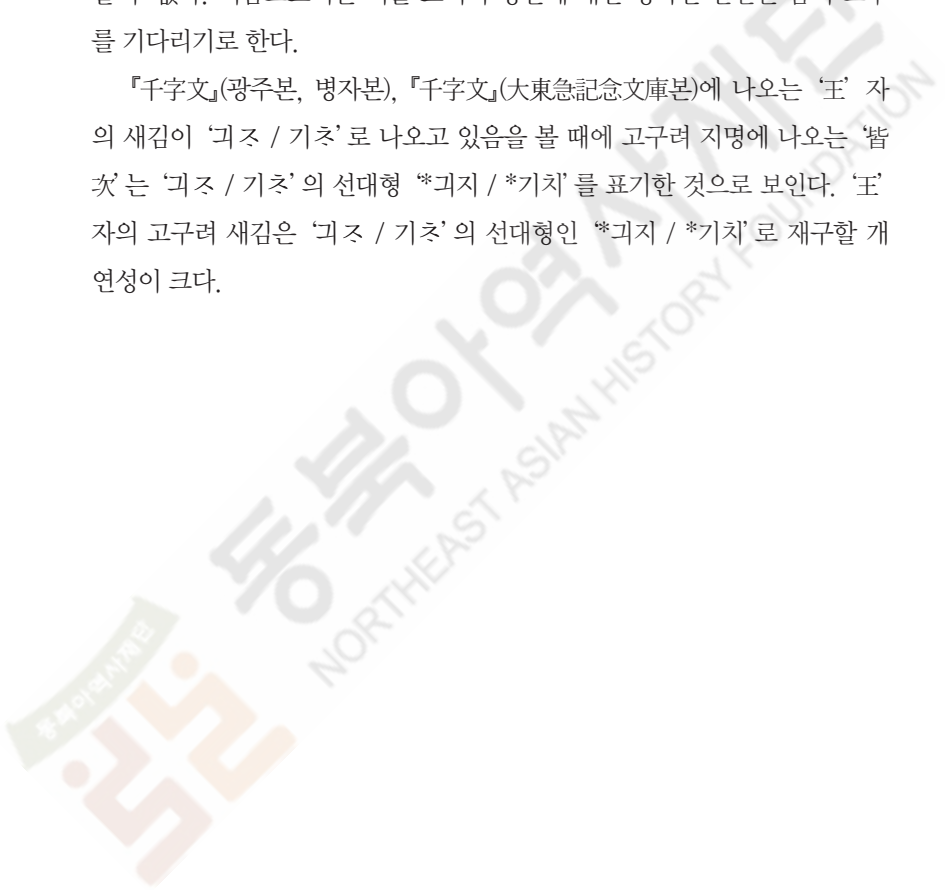
‘王’ 자의 고대 새김을 재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대 차자 표기 자료를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곧 고대 차자 표기 자료를 정리하고 용례를 검토, 분석하여 고대 새김을 직접 보여 주거나 암시하는 고구려 차자 표기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서 새김을 추출한 다음에 이를 후대 새김 자료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고구려 지명, 인명, 관직명을 비롯하여 백제나 신라의 지명, 인명, 관직명, 왕호, 향가, 고려 시대 구결, 이두 등 고대 차자 표기 자료, 중세 이후 차자 표기 자료, 지명·방언 자료 등을 정리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에 15세기 인쇄본 할주에 나오는 새김 및 『百聯抄解』, 『類合』, 『新增類合』, 『倭語類解』, 『千字文』, 『訓蒙字會』 등 한자 초학서나 한시 입문서들에 나오는 중세 이후 새김 자료를 망라하여 정리하고, 정리한 새김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따져서 고대 새김 여부를 검증하였다. 이때에 일본어 등 인근 제어, 알타이어 자료도 아울러 비교 고찰하여 고대 새김 여부를 검증하는 데에 원용하고자 하였다.

『三國史記』 제37 권 고구려 지명어 복수 차자 표기에 ‘王’ 자가 나타난다. ‘王’ 자에 대응하여 나오는 ‘꺄次’ 는 ‘왕’ 을 의미하는 고구려어 보통 명사로 고려초에 개성에서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신라 왕호에 ‘居西干’ 이 나오고, 『日本書紀』, 『古事記』 등 일본 사료 백제어 전사 기록에도 동일 어휘로 볼 수 있는 것(きし)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왕을 일컫는 말은 3국이 같았을 개연성이 높다. 16세기 한글 문헌 『千字文』(광주본)과 동계통의 문헌인 『千字文』(병자본, 大東急記念文庫본)에 보이는 ‘기즈 / 기츠’ 가 이의 후대형으로 보인다. 다른 한글 문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5세기 중엽 이전에 이미 사어화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에 보이는 ‘향것/향것(主)’ 의 ‘것’ 은 ‘기즈 / 기츠’ 의 후대 화석형으로 봄 직하여 주목할 만하다.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의 관직명이나 왕호 등에 보이는 ‘꺄次’, ‘近支’,

‘吉支’, ‘吉師’, ‘吉士’, ‘吉次’, ‘居西干’의 ‘居西’ 등과 발해어에서 ‘왕’을 뜻하는 ‘基下’는 ‘기즈 / 기츠’와 음상이 비슷하여 하여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들 음상의 유사가 동원어로부터의 파생이나 해당어의 의미 변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차용이나 우연에 의한 것인지를 지금으로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이들 표기와 상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좀더 고구를 기다리기로 한다.

『千字文』(광주본, 병자본), 『千字文』(大東急記念文庫本)에 나오는 ‘王’자의 새김이 ‘기즈 / 기츠’로 나오고 있음을 볼 때에 고구려 지명에 나오는 ‘皆次’는 ‘기즈 / 기츠’의 선대형 *기지 / *기치’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王’자의 고구려 새김은 ‘기즈 / 기츠’의 선대형인 *기지 / *기치’로 재구할 개연성이 크다.



〈참고 문헌〉

가. 1차 자료

- 『高麗史』.
- 『廣才物譜』, 19세기 초; 영인판, 1998, 『광재물보·광재물보(한글 색인)』, 흥문각.
- 『國漢會語』, 1895; 영인판, 1988, 태학사.
- 『金相輓世系履行券』.
- 『東國正韻』, 1447; 영인판, 1972, 건국대학교 출판부.
- 『同文類解』, 1748; 영인본, 1956, 연희대 동방학연구소.
- 『東韓譯語』, 이의봉, 1789, 『古今釋林』; 영인판, 1977, 아세아문화사.
- 『百聯抄解』 東京大本, 16세기 중엽~말엽, 東京大 중앙도서관 소장, 목판본, ; 영인판, 1973, 『국문학연구』 4, 효성여대 국어국문학 연구실.
- 『三國史記』 정덕본, 김부식, 1512, 목판본; 영인판, 1931, 『三國史記』, 고전간행회.
- 『三國史記』, 김부식, 1512, 이강래 교주본, 1998, 『원본 삼국사기』, 한길사.
- 『三國遺事』 정덕본, 일연, 1512, 목판본; 영인판, 1931, 『三國遺事』, 고전간행회.
- 『三國遺事』, 일연, 이민수 역, 1983, 을유문화사.
- 『新字典』, 최남선, 1915, 조선광문회, 필자 소장.
- 『類合』 高裕相본, 고유상, 1918, 東서관.
- 『類合』 武橋山간본, 19세기 중엽, 목판본.
- 『類合』 戊申간판본, 19세기 중엽~말엽?, 목판본.
- 『類合』 仙巖寺판본, 17세기 중엽?,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소장, 목판본.
- 『類合』 松廣寺판, 1730,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소장, 목판본, ; 영인판.
- 『類合』 冶洞山간본, 19세기 중엽, 목판본.
- 『類合』 靈藏寺판, 1700, 유탁일 소장, 목판본; 영인판.
- 『類合』 七長寺판, 1664,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소장, 목판본; 영인판.
- 『類合』 乎隱齋장판본, 18세기 중엽~말엽?, 정신문화연구원 소장, 목판본.
- 『字類註釋』, 1856, 정운용, 김일근 소장, 필사본; 영인판, 1985, 건국대출판부.
- 『字典釋要』, 지석영, 1906, 증정부도판, 필자 소장.
- 『全韻玉篇』, 1796, 서명응, 필자 소장.
- 『正蒙類語』, 1884, 이승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朝鮮館譯語』.
- 『註解千字文』 중간본, 홍태운 서, 1804, 광통방, 규장각·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판

- 본 ; 흥윤표 소장, 목판본 ; 영인판, 동양학연구소, 1973, 『千字文』, 단국대학교출판부.
- 『註解千字文』 초간본, 1752, 홍성원 서, 규장각 소장, 목판본, 개원사.
- 『千字文』 甲戌중간본, 1634?, 1694?, 1754?, 국립중앙도서관 · 규장각 소장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 목판본.
- 『千字文』 甲午판, 이무실 서 사간본, 1894, 규장각 소장, 목판본.
- 『千字文』 庚寅중보본, 165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 목판본.
- 『千字文』 光州판, 1575, 東京대 중앙도서관 소장, 목판본 ; 영인판, 동양학연구소, 1973, 『千字文』, 단국대학교출판부.
- 『千字文』 內閣文庫본, 1583, 일본 국립公文書館 內閣文庫 소장, 목판본 ; 영인판, 동양학연구소, 1973, 『千字文』, 단국대학교출판부.
- 『千字文』 大東急記念文庫본, 1575 이후?, 16세기 중엽?, 일본 大東急記念文庫 소장, 목판본.
- 『千字文』 大東急記念文庫본, 1575 이후?, 16세기 중엽?, 일본 大東急記念文庫 소장, 목판본 ; 영인판, 조선학회, 1979, 『조선학보』 93.
- 『千字文』 丙子본, 1576, 1636?, 1696?, 일본 대마역사민속자료관 소장, 목판본; 영인판, 최세화 편, 1987, 『병자본 천자문 · 고성본 훈몽자회 고』.
- 『千字文』 북약본, 1601, 목판본.
- 『千字文』 松溪書本, 乙丑, 1865? 18세기 말엽~19세기 초엽, 송계 서, 일본 궁내청 書陵部 소장, 목판본 ; 영인판, 조선학회, 1979, 『朝鮮學報』 98.
- 『千字文』 松廣寺本, 1730, 일본 천리대 중앙도서관 소장, 목판본 ; 영인판, 손희하, 1993, 『千字文(송광사판): 연구 · 색인 · 자료 영인』, 태학사.
- 『千字文』 辛未하중간본, 1691, 교서관, 고려대 중앙도서관 소장, 목판본.
- 『千字文』 嶺南大本 · 신미복각본(?), 18세기?, 영남대 중앙도서관 소장, 목판본.
- 『千字文』 龍門寺판, 康熙, 1700?, 유탁일 소장, 목판본.
- 『千字文』 六字본, 20세기?, 손희하 · 규장각 소장, 목판본.
- 『千字文』 丁巳본, 이무실 서 삼간본, 1857, 목판본; 영인판.
- 『千字文』 七長寺판, 1661,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소장, 목판본 ; 영인판.
- 『千字文』 學古堂서본, 學古堂서, 1915, 목판본.
- 『千字文』 杏谷판, 1862, 도수희 소장, 목판본 ; 영인판.
- 『千字文』 紅樹洞판, 1858~1861? 19세기 중엽, 고려대 중앙도서관 소장, 목판본.
- 『初學要選』, 노명호, 1918.
- 『通學徑編』, 황응두, 1916, 혜연서루.

『**郷藥救急方**』.

『**訓蒙字會**』 규장각본, 1613, 목판본 ; 영인판, 『**訓蒙字會**』(내각문고본·존경각본·규장각본·한계본), 홍문각.

『**訓蒙字會**』 東京대학본, 1592 이전, 목판본 ; 영인판, 동양학연구소, 1971, 『**訓蒙字會**』, 단대출판부.

『**訓蒙字會**』 叡山本, 1527, 일본 比叡山 延曆寺 叡山문고 소장, 활판본 ; 영인판, 동양학연구소, 1971, 『**訓蒙字會**』, 단대출판부.

『**訓蒙字會**』 존경각본, 1527, 목판본 ; 영인판, 『**訓蒙字會**』(내각문고본존경각본·규장각본·한계본), 홍문각.

남광우 편, 1995, 『**고금 한한 자전**』, 인하대학교 출판부.

남광우 편, 1997, 『**교학 고어사전**』, 교학사.

동아출판사 한한대사전 편집부 편, 1982, 『**동아 한한 대사전**』, 동아출판사.

민중서림 편집국 편, 1997, 『**한한 대사전**』, 전면 개정·증보판, 민중서림.

『**신자해**』.

『**唐書**』.

『**周書**』.

『**翰苑**』.

『**古事記**』, 일본문학 총서 간행회, 1928, 동경 : 내외서적 주식회사.

『**日本書紀**』 상, 하, 坂本太郎 외 3인 교주, 1967, 1965, 동경 : 암파서점.

Hony, H. C., 1946, *A Turkish - English Dictionary*,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Gale, James S, 1897, 『**韓英字典 한영 즈던 Korean-English Dictionary**』, ; 영인판, 요코하마: Yokohama Bunsha.

Ridel, 1880, 『**한불 즈던 韓佛字典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Yokohama, ; 영인판.

나. 전자 자료

문화관광부·국립국어연구원, 2003, 「한국 방언 검색 프로그램」, 『2003 21세기 세종 계획 한민족 언어 정보화』.

문화관광부·국립국어연구원, 2004, 「역사 자료 말뭉치(1998~2003)」, 『21세기 세종

계획 1·2단계 사업 결과물」.

손희하, 2004, 「새김 어휘 자료 말뭉치」, 1.5판.

『CD-ROM 譯註 三國史記』, <http://gate.dbmedia.co.kr/chonnam/>,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http://www.eastling.org/tdfweb/midage.aspx>

〈통합형 한글 자료 처리기(깜짝새 ; SynKDP) 1.55판〉 검색기

다. 논저

강경구, 1997, 『삼국사기 원전연구: 차자 표기 체계적 검토』, 도서출판 학연문화사.

강병윤, 2000, 『고유 지명어 연구』, 박이정.

강신항, 1995, 『朝鮮館譯語 연구』, 성균관대 출판부.

_____, 1998, 『朝鮮館譯語의 음운론적 연구』, 태학사.

권인한, 2005, 『중세 한국 한자 음훈 집성』, 제이앤씨.

국립국어연구원 편, 1998,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김방한, 1983, 『한국어의 계통』, 민음사.

김수경, 1989, 『세나라시기 언어력사에 관한 남조선 학계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평양: 평양출판사.

김영일, 2002, 『삼국사기·지리지의 지명고찰』, 『한글』 257.

김창호, 1992, 「고구려 금석문의 인명 표기」, 『선사와 고대』, 3-1.

김철준, 1990, 『한국고대사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김희진, 1987, 『훈몽자회의 어휘적 연구: 자훈의 공시적 기술과 국어사적 변천을 중심으로』, 숙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남광우, 1966, 「훈몽자회의 한자음·훈 연구」, 『가람 이병기 박사 송수 논문집』; 『국어국문학』 39·40.

_____, 1973, 『조선(이조) 한자음 연구: 임란전 현실 한자음을 중심으로』, 일조각.

류렬, 1983, 『세나라시기의 리두에 대한 연구: 사람, 벼슬, 고장 이름의 표기를 통하여』,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박병채, 1968, 「고대삼국의 지명어회고」, 『백산학보』5, 백산학회.

_____, 1971, 『고대국어의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손희하, 1984, 『千字文' 자석 연구: 난해어의 어의 구명을 중심으로』, 전남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_____, 1986, 『「천자문」 자석 연구(2)』, 전남대 『어문논총』, 9.
- _____, 1991, 『새김 어휘 연구』, 전남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_____, 1995, 「『正』 자의 고대 새김」, 『국어사와 차자 표기』, 태학사.
- 송기중, 2004, 『고대 국어 어휘 표기 한자의 자별 용례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송하진, 2000, 『고대 지명어 연구』, 광주 : 전남대학교출판부.
- 안병호, 1996, 「일부 고구려 지명에 대한 분석」, 『인문 연구』 17-2.
- 양주동, 1965, 『고가연구』 증정판, 일조각.
- 유창균, 1975, 「고구려인명표기에 나타난 용자법의 검토」, 『동양학』 5.
- _____, 1980, 『한국 고대 한자음의 연구』 I, 대구 : 계명대출판부.
- _____, 1983, 『한국 고대 한자음의 연구』 II, 대구 : 계명대출판부.
- _____, 1991, 『삼국시대 한자음 연구』, 민음사.
- 유창돈, 1964, 『이조어 사전』, 연세대학교출판부.
- 이강로, 1996, 「고구려, 백제 마을·벼슬 이름의 길잡이 연구」, 『한글』 232.
- 이관식, 1991, 『한국 고대 인명어 연구』, 보고서.
- 이기문, 1963, 「13세기 중엽의 국어 자료」, 『동아문화』 1.
- _____, 1968, 「고구려의 언어와 그 특징」, 『백산학보』 4.
- _____, 1971ㄱ, 「어원 수제」, 『김형규 박사 송수 기념 논총』, 일조각.
- _____, 1971ㄴ, 『訓蒙字會 연구』, 서울대출판부.
- _____, 1972ㄱ, 『국어사 개설』, 민중서관.
- _____, 1972ㄴ, 「석봉천자문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55~57.
- _____, 1972ㄷ, 「『천자문』 해제」, 『천자문』, 단국대출판부.
- _____, 1972ㄹ, 「한자의 석에 관한 연구」, 『동아문화』 1.
- _____, 1977, 『국어 음운사 연구』 수정판, 국어학총서 3, 탑출판사.
- _____, 1981ㄱ, 「천자문 연구(1)」, 『한국문화』, 2.
- _____, 1981ㄴ, 『한국어형성사』, 삼성미술문화재단.
- _____, 1982, 「백제어 연구와 관련된 몇 문제」, 『백제연구』 개교 기념 특집호.
- _____, 1989, 「고대국어 연구와 한자의 새김 문제」, 『진단학보』, 67.
- _____, 1991,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 이기문·손희하 편, 1995, 『천자문 자료집』(지방천자문 편), 박이정출판사.
- 이돈주, 1981, 「지섭(止攝) 한자음과 /ㄱ/ 음의 반영」, 『한글』 173·174.
- 이병선, 1982, 『한국 고대 국명 지명 연구』, 아세아 문화사.
- 이은규, 2006, 『고대 한국어 차자표기 용자 사전』, 제이앤씨.

- 이정룡, 2002, 『한국 고지명 차자표기 연구』, 경인문화사.
- 이홍직, 1990, 『한국사대사전』 상·하 개정판, 서울: 교육도서.
- 이훈중·성원경, 1975, 「한자훈·음의 변천 연구」, 건국대 『학술지』 19.
- 임병준, 2000, 『고구려말의 차자표기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세경, 1990, 『고대 차자 복수 인명 표기 연구』, 국학 자료원.
- 천소영, 1990, 『고대 국어의 어휘 연구』, 고대민족문화연구소.
- 최남선, 1973, 『육당 최남선 전집』 2, 현암사.
- 최남희, 1999, 『고대국어 표기 한자음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_____, 2002, 「고구려어 표기 한자음 형성 배경과 그 어휘 연구」, 『한글』 258.
- _____, 2004, 「고구려 지명에 반영된 고구려한자음과 어휘 고찰」, 『새얼 어문 논집』 16.
- _____, 2005, 『고구려어 연구』, 박이정.
- 최범훈, 1975, 『『천자문』 자석 연구: 광주판 『천자문』을 중심으로』, 『한국 어학 논고』, 통문관.
- 최학근, 1980, 「천자문에 대해서」, 『국어국문학』, 83.
- 한글 학회, 1992, 『우리말 큰사전』 4(옛말과 이두), 어문각.
- 藤本幸夫, 1977, 「朝鮮版『千字文』地方性」, 『國語國文』 46 - 4, 京都대학 문학부 국어 국문학 연구실
- _____, 1980, 「朝鮮版『千字文』の系統: 其一」, 『朝鮮學報』, 94.

[ABSTRACT]

the Reconstruction for the *Saegim* of the Koguryo
Language

– Centering on the Reconstruction for the Saegim of the Chinese
Written Character ‘王’ –

Son, Heui-Ha

This study aims to reconstruct saegim of the Chinese written character ‘王’ in Old Korean.

‘*Saegim*’ is the Korean language representing common meaning traditionally attributed to the Chinese written character such as ‘*Haneul*’ and ‘*Tta*’ in ‘天 : *Haneul*《sky》Chon’ and ‘地 : *Tta*《ground》Ji’. It’s formulation went back to the times of Old Korean. It is our ancestor’s invention made to write down the Korean language by means of borrowing the ideogram of the Chinese language before the invention of *Hunminjeong-eum*. It takes on the character of conservativeness.

A study on *saegim* is playing a very important role in identifying the status quo of the Korean language at the time when the various literature of *saegim* were published. Furthermore, this study cannot be too much emphasized to study of the history of Korean dialects or vocabulary, because it is expected that the literature on *saegim* published several times in several areas had reflected diachronic and

geographically different dialects.

Meanwhile, the study on *saegim* may contribute to the study of Old Korean, because there are some cases in which the words of the Old Korean language remain like fossils in *saegims*. Furthermore, the reconstruction of *saegim* of Old Korean is necessary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characters of the Old Korean language. Through the study of *saegims*, we can find out the clues of the solution for the problems of the class of the Korean language. The study of *saegims* may also contribute to the education of Chinese writings.

To reconstruct *saegim* of Old Korean, it has been inquired of whether *saegim* in the Old Korean was used, compared with *yidu* (Chinese characters at first simply were arranged in Korean word order. Later, however, certain characters came to be used to put a sentence partially into Korean syntax and so to clarify its meaning. This writing system is known as *yidu*), *hyangch'al* (a more sophisticated writing system to express Korean words with Chinese characters which have the same meaning), the names of places, official titles, and old borrowed expressions, etc.

As a result of this study */*kiötsi/* or */*kits'i/* was reconstructed for *saegim* of the Chinese written character '王' in Old Korean.

keywords

Saegim word, the Korean language representing common meaning traditionally attributed to the Chinese written character, Reconstruction of *saegim* of Old Korean, Reconstruction of *saegim* of the Chinese written character '王' in Old Korean, the names of places, *Koguryo* language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 중세, 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중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제1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타 연구실장이 수행한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 실무총괄 담당자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이라 한다)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총괄 담당자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재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외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 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발송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투고 원고 일체를 반납하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B, C), (A, B, D), (B, B, C), (B, C, C), (A, C, C)

4)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 (A, C, C), (A, C, D), (A, D, D), (C, C, C), (B, B, D), (B, C, D), (C, C, D), (D, D, D)

5)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 상의 우선 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 하에 차기호 또는 차차기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투고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 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시 사진 해상도는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매 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의 순서로 번호 매김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8. 각주에서 고증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증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齋鶴擁,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시 인용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 ※이 투고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 집필자 소개 (집필순)

하원호(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오병수(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구범진(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조교수)
홍용호(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박남수(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손희하(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편집위원 소개

위원장 : 배진수(동북아역사재단 실장)
위 원 : 김은숙(한국교원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손승철(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최덕수(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이현혜(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여호규(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유용태(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부교수)
김병렬(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성환(계명대학교 일본학과 부교수)
도시환(동북아역사재단 부연구위원)
장석호(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홍성근(동북아역사재단 부연구위원)
윤재운(동북아역사재단 부연구위원)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14호(2006. 12)

초판 1쇄 인쇄 2006년 12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06년 12월 30일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미군동 267 임광빌딩 본관 11~12층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0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